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다운 예산분석관
이미선 예산분석관

지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허성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3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

II. 주요 사업 분석 / 14

〈회계·기금 공통〉

- 1. 반도체 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14
 - 1-1. 반도체 분야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16
 - 1-2.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24
 - 1-3.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투명성 확보 필요 28
 - 1-4. 반도체 분야 주요 인프라 사업의 체계적 구축지원 필요 34
 - 1-5.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44
- 2. 비R&D 출연사업의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 2-1. 비R&D 출연사업의 일괄협약 및 일괄정산 시정 필요 49



CONTENTS

| | |
|---|----|
| 2-2.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집행 저조 및 장비심의 방식 개선 필요 | 60 |
|---|----|

〈일반회계〉

| | |
|--|-----|
| 3.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70 |
| 3-1. 수입선다변화지원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 필요 | 72 |
| 3-2.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중장기 지속방안 마련 필요 | 81 |
| 3-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보조사업 공시 의무 준수 필요 등 | 85 |
| 4.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 불용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 초래 | 100 |
| 5.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부진 문제 | 109 |
| 6.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연 및 불용 문제 | 115 |
| 7.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의 수요부족에 따른 사업 미착수 문제 | 121 |
| 8.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 125 |
| 9.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 실적 개선 필요 | 131 |
| 10.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사업의 추가 지연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37 |
| 11.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불용액 발생 문제 등 .. | 142 |
| 12.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 연계 필요성에 따른 지연 | 149 |
| 13. 본부기본경비 집행 문제 시정 필요 | 154 |



CONTENTS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4.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1
 - 14-1.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발생 문제 …… 162
 - 14-2. 석탄비축자산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필요 …… 170
 - 14-3. 에특회계의 법정부담금 세입감소 및 자원안보 세출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1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 외투기업 현금지원 이월 과다 발생 및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의 보조금 교부 지연 문제 …… 185

[중소벤처기업부]

I. 결산 개요 / 197

- 1. 현 황 …… 197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04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05

II. 주요 사업 분석 / 207

〈일반회계〉

- 1.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207
- 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사전 기획 면밀히 수행 필요 등 …… 213



CONTENTS

- 3.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20
- 4.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및 지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 완화 필요 225
- 5. 글로벌 창업허브의 입주·멤버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배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 등 239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 6.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248
- 7. 동반성장 협약 기업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254
- 8. 해외거점센터의 해외 진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방지 및 해외거점센터·유관기관 해외사무소의 기능 중심의 일원화 또는 연계·운영 필요 261
- 9.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개소 전 운영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등 · 271
- 10.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 검토 등 279

〈기술보증기금〉

- 11. 기술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사고 리스크 관리 필요 28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2.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기획 필요 292
- 1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수요 과다 산정 문제 301
- 14.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 사전 분석 필요 등 308
- 15.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의 부작용 발생 문제 등 319



CONTENTS

| | |
|--|-----|
| 16.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성과관리 필요 | 325 |
| 17.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사업 수요 파악 필요 | 337 |
| 18.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 시 사업 연속성 유지 필요 | 347 |
| 19.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 제고 등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 | 358 |

[지식재산체]

I. 결산 개요 / 369

| | |
|--------------------------------|-----|
| 1. 현 황 | 369 |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75 |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376 |

II. 주요 사업 분석 / 37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 |
|---|-----|
| 1. 상표 심사지원 사업의 전문기관 관리 강화 필요 | 377 |
| 2.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낙찰차액 전용을 통한 신규 플랫폼 구축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386 |
| 3. 과태료·가산금 수납 관리 강화 및 변리사 관라·의무교육 재설계 필요 | 394 |



산업통상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조 9,166억 800만원으로, 6조 5,709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조 5,513억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7%) 되고, 196억 2,3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188,767 | 188,767 | 188,570 | 186,458 | 172,920 | 13,538 | - | 92.7 |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6,070,222 | 5,910,301 | 4,390,707 | 3,968,298 | 3,964,241 | 4,057 | - | 99.9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53,044 | 53,044 | 53,044 | 84,228 | 82,234 | 1,995 | - | 97.6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284,287 | 2,284,287 | 2,284,287 | 2,331,814 | 2,331,814 | - | - | 100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 | - | - | 128 | 95 | 33 | - | 74.2 |
| 합계 | 8,596,320 | 8,436,399 | 6,916,608 | 6,570,926 | 6,551,304 | 19,623 | - | 99.7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조 2,593억 8,400만원으로, 12조 1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1,45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34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6,084,286 | 6,782,799 | 6,779,588 | 6,743,085 | 1,187 | 35,316 | 99.5 |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2,483,649 | 2,703,929 | 2,358,222 | 2,320,202 | 18,768 | 19,252 | 98.4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187,855 | 1,288,670 | 1,293,062 | 1,108,323 | 125,892 | 58,848 | 85.7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822,812 | 1,822,812 | 1,822,812 | 1,822,803 | - | 9 | 100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5,700 | 5,700 | 5,700 | 5,700 | - | - | 100 |
| 합계 | 11,584,302 | 12,603,910 | 12,259,384 | 12,000,113 | 145,847 | 113,425 | 97.9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6조 3,159억 4,500만원으로, 7조 6,347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771억 5,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6.5%)되고, 2조 5,255억 900만원은 미수납되어 321억 3,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입계획액 | | 계획현액 | 징수 결정액(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 235,212 | 235,212 | 235,212 | 258,560 | 258,560 | - | - | 100 |
| 무역보험기금 | 5,780,733 | 6,080,733 | 6,080,733 | 7,376,236 | 4,818,593 | 2,525,509 | 32,134 | 65.3 |
| 합계 | 6,015,945 | 6,315,945 | 6,315,945 | 7,634,796 | 5,077,153 | 2,525,509 | 32,134 | 66.5 |

자료: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6조 3,159억 4,500만원으로, 5조 771억 5,300만원이 지출(집행률 80.4%)되고, 1,25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지출계획액 | | 계획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확진기금 | 235,212 | 235,212 | 235,212 | 258,560 | - | 19,086 | 109.9 |
| 무역보험기금 | 5,780,733 | 6,080,733 | 6,080,733 | 4,818,593 | - | 106,234 | 79.2 |
| 합계 | 6,015,945 | 6,315,945 | 6,315,945 | 5,077,153 | - | 125,320 | 80.4 |

자료: 산업통상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145억 5,400만원 (△22.3%)이 적은 2조 1,35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7,149억 2,700만원(△68.8%)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2,196,834 | 2,688,536 | 2,688,536 | 2,056,897 | △631,639 | △139,937 |
| 기금 | 4,653,679 | 61,604 | 61,604 | 78,689 | 17,085 | △4,574,990 |
| 합계 | 6,850,513 | 2,750,140 | 2,750,140 | 2,135,586 | △614,554 | △4,714,927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453억 8,400만원(△3.4%)이 적은 9조 8,95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4,746억 100만원(△13.0%)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전년 대비 (C-A) | |
|----|---------------|-----------|------------|-----------|----------------|------------|
| | | 예산 | | 결산 (C) |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8,906,954 | 9,084,104 | 10,099,152 | 9,753,768 | △345,384 | 846,814 |
| 기금 | 2,463,490 | 142,075 | 142,075 | 142,075 | - | △2,321,415 |
| 합계 | 11,370,444 | 9,226,179 | 10,241,227 | 9,895,843 | △345,384 | △1,474,601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산업통상부의 자산은 15조 5,111억 5,000만원, 부채는 3조 4,546억 2,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565억 2,5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1조 5,469억 8,400만원, 유·무형자산 3조 9,290억 6,700만원, 기타자산 350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352억 5,300만원(1.5%)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등의 증가에 따른 금융자산 2,036억 8,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4,834억 4,800만원, 충당부채 6,228억 2,900만원, 기타부채 2조 3,483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422억 2,300만원(△46.8%)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무역보험기금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전입 등에 따라 기타부채가 1,039억 8,400만원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예수금 감소에 따라 차입부채가 3조 1,491억 6,1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자 산 | 15,511,150 | 15,275,897 | 235,253 | 1.5 |
| Ⅰ. 금융자산 | 11,546,984 | 11,343,299 | 203,685 | 1.8 |
| Ⅱ. 유·무형자산 | 3,929,067 | 3,902,501 | 26,566 | 0.7 |
| Ⅲ. 기타자산 | 35,099 | 30,097 | 5,002 | 16.6 |
| 부 채 | 3,454,625 | 6,496,848 | △3,042,223 | △46.8 |
| Ⅰ. 차입부채 | 483,448 | 3,632,609 | △3,149,161 | △86.7 |
| Ⅱ. 총당부채 | 622,829 | 619,876 | 2,953 | 0.5 |
| Ⅲ. 기타부채 | 2,348,347 | 2,244,363 | 103,984 | 4.6 |
| 순 자 산 | 12,056,525 | 8,779,049 | 3,277,476 | 37.3 |
| Ⅰ. 기본순자산 | 17,797,635 | 17,802,315 | △4,680 | 0.0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 △6,779,954 | △9,945,450 | 3,165,496 | △31.8 |
| Ⅲ. 순자산 조정 | 1,038,844 | 922,184 | 116,660 | 12.7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조 431억 8,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9조 7,397억 3,900만원, 관리운영비 2,582억 7,900만원, 비배분비용 2,423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4,487억 5,700만원, 비배분수익 7,467억 4,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6억 4,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361억 8,100만원(13.2%) 증가한 8조 448억 2,9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비 증가 및 지급준비금환입액 감소 등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9,008억 7,600만원 증가와 법인세비용 증가 등에 따른 비배분비용 1,021억 4,7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2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프로그램(1조 7,538억 2,500만원)과 산업경쟁력기반구축 프로그램(1조 3,178억 9,200만원),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1조 2,413억 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660억 5,200만원과 경비 922억 2,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962억 4,600만원과 법인세비용

1,365억 200만원 등으로,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988억 8,100만원, 자산처분이
 익 1,429억 9,500만원 및 지출금반납금 1,527억원 등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부담
 금수익 16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8,290,982 | 7,390,106 | 900,876 | 12.2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9,739,739 | 9,227,549 | 512,190 | 5.6 |
| 나. 프로그램 수익 | 1,448,757 | 1,837,443 | △388,686 | △21.2 |
| II. 관리운영비 | 258,279 | 253,244 | 5,035 | 2.0 |
| III. 비배분비용 | 242,311 | 140,164 | 102,147 | 72.9 |
| IV. 비배분수익 | 746,743 | 674,866 | 71,877 | 10.7 |
|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 8,044,829 | 7,108,648 | 936,181 | 13.2 |
| VI. 비교환수익 등 | 1,648 | 1,991 | △343 | △17.2 |
| VII. 재정운영결과(V-VI) | 8,043,181 | 7,106,657 | 936,524 | 13.2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조 7,790억 4,9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2조 565억 2,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조 2,774억 7,600만원(37.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8조 431억
 8,100만원 발생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조 6,671억 5,600만원, 재원
 의 조달 및 이전은 7조 6,535억 100만원이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
 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4조 1,717억 6,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기타이전비용 등 재원의
 이전 6조 5,182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268
 억 3,1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7억 5,000만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3조 4,329억 2,500만원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1,056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기초순자산 | 8,779,049 | 9,343,796 | △564,747 | △6.0 |
| II. 재정운영결과 | 8,043,181 | 7,106,657 | 936,524 | 13.2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7,653,501 | 6,478,598 | 1,174,903 | 18.1 |
| IV. 조정항목 | 3,667,156 | 63,312 | 3,603,844 | 5,692.2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 12,056,525 | 8,779,049 | 3,277,476 | 37.3 |

자료: 산업통상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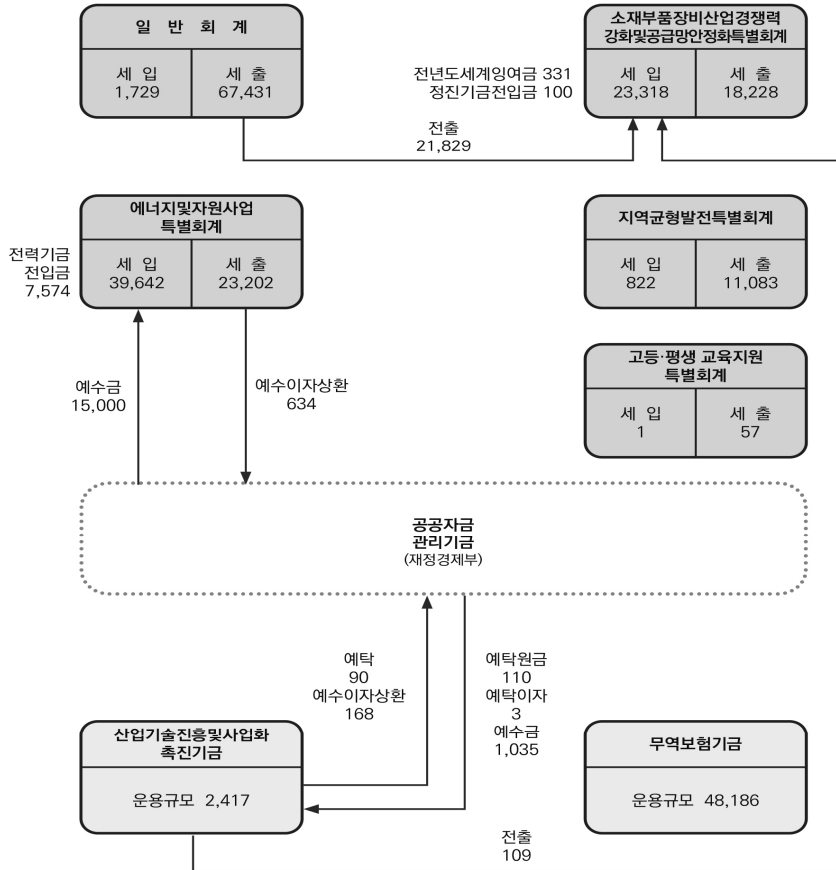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로 2조 1,829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로 109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7,574억원 전입되었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5,000억원 예수하였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34억 예수이자 상환하였다.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9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168억원을 예수이자 상환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110억원을 예탁원금 회수하였으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3억원의 예탁이자수입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1,035억원 예수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R&D혁신스케일융자(이차보전),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③ 유전개발사업출자 등이 있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는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약 28억원이 감액(140억원 → 112억원) 되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은 내역사업인 '전용 비축기지 구축'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및 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약 125억원이 감액(2,132억원 → 2,007억원) 되었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중장기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 497억원이 감액(506억원 → 8억원) 되었다¹⁾.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산업통상부는 ① 미국 신행정부 대응체계구축 및 대미 아웃리치 총력 전개 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② 무역보험 공급 및 수출마케팅·물류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수출외투 상승모멘텀을 유지하며, ③ 반도체법 제정,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극복, 산업 AX 및 로봇·바이오 육성 등을 통해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반도체 분야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이 하락 추세이므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증장기 구축계획과 단계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통상부 소관 비R&D 출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일괄협약 및 일괄정산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단년도 회계주의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연차협약 및 연차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생산 재개, 비축 체계 강화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2027년 종료 예정인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 지원 사업은 재가동생산확대 시설이 다시 중단축소되지 않도록 증장기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

원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공시 및 중요재산 공시 의무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의 구체성 미흡이나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 이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석탄비축자산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짐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집행 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반도체 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분야 지원사업은 총 37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다. 본예산은 3,783억 2,1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656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440억 1,800만원이며, 이 중 5,433억 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내역사업)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17,900 | 17,900 | 17,900 | 17,200 |
| SDV 아키텍처를 위한 In-vehicle 초고속 통신반도체 기술개발(R&D) | 4,580 | 4,580 | 4,580 | 4,580 |
|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 4,250 | 4,250 | 4,250 | 4,250 |
| 개방형반도체종합교육관조성타당성조사 용역 | 0 | 0 | 97 | 86 |
| 고신뢰반도체상용화를위한팹리스검사검증지원 | 3,000 | 3,000 | 3,000 | 3,000 |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용자 | 36,390 | 36,390 | 36,390 | 36,390 |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 | 1,750 | 1,750 | 1,750 | 1,750 |
|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신뢰성검증센터구축 | 3,240 | 3,240 | 3,240 | 3,240 |
|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 16,529 | 16,529 | 16,529 | 16,529 |
|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 2,400 | 2,400 | 2,400 | 2,400 |
|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 2,000 | 2,000 | 2,000 | 2,000 |
| 반도체아카데미구축 | 4,710 | 5,710 | 5,710 | 5,710 |
|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 4,762 | 4,762 | 4,762 | 4,762 |
|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 | 17,800 | 17,800 | 17,800 | 17,800 |
|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 600 | 600 | 600 | 600 |
| 산업혁신기반구축(R&D) | 12,116 | 12,116 | 12,116 | 12,116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8개 내내역) | 42,850 | 42,850 | 42,850 | 42,850 |
|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 4,320 | 4,320 | 4,320 | 4,320 |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내역사업)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R&D) | 7,798 | 7,798 | 7,798 | 7,798 |
| 시스템반도체IPBank플랫폼구축 | 6,212 | 6,212 | 6,212 | 6,212 |
|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 2,400 | 2,400 | 2,400 | 2,400 |
|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 8,670 | 8,670 | 8,670 | 8,670 |
|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 2,960 | 2,960 | 2,960 | 2,960 |
|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 | 11,150 | 11,150 | 11,150 | 11,150 |
|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 30,239 | 30,239 | 30,239 | 30,239 |
|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 개발(R&D)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 - | 62,440 | 62,440 | 62,440 |
|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 3,631 | 3,631 | 3,631 | 3,631 |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4개 내역) | 30,008 | 30,008 | 30,008 | 30,008 |
| 지능반도체개발실증지원 | 2,712 | 2,712 | 2,712 | 2,712 |
| 차세대지능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 46,310 | 46,310 | 46,310 | 46,310 |
|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 100 | 100 | 100 | 100 |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 0 | 99,860 | 99,860 | 99,860 |
| 탄소산업기반조성(R&D) | 1,400 | 1,400 | 1,400 | 1,400 |
|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 7,210 | 9,510 | 9,510 | 9,510 |
|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R&D) | 6,654 | 6,654 | 6,654 | 6,654 |
|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 21,170 | 21,170 | 21,170 | 21,170 |
| 합계 | 378,321 | 543,921 | 544,018 | 543,307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반도체 분야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가. 현황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략에 이어 2024년에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간 연계 및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며, 관련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5년 12월에는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통해 ‘반도체 세계 2강’을 목표로 1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NPU개발·상용화 본격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로 조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확충,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등을 통한 소부장인력 확보, 광주-부산-구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6년 6월 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반도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생산거점을 조기 완성하여 5년내 메모리반도체 생산능력을 2배로 확충하고,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산업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남권을 제2의 생산 기지로 조성하고,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충청권에는 대규모 HBM 패키징 팹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메모리, AI 반도체에 대한 기술개발-설계-실증-제도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인재 10만명 양성 및 소부장, 파운드리 지원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반도체 분야 계획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 금융·세제·우수인력·소부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감한 기술혁신으로 반도체 혁명 선도 · AI시대 반도체 수요 예측을 통한 전략품목 육성 · 국산 AI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 AI반도체 가치사슬 간 연계, 성장 생태계 조성 · AI반도체 산업을 이끌 미래 혁신인재 양성 |
|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반도체 세계 2강 ① 기술·생산 리더십: NPU개발·상용화 본격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②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미들택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플래그쉽 프로젝트 ③ 소부장인력: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프로젝트,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설계 허브 구축(선도기업 유치) ④ 남부권 혁신벨트: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광주-부산-구미 특화 클러스터 조성 |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0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 반도체 분야 주요 추진내용 ① 속도전: 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성, 5년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충 ② 거점전: (서남권) 제2의 생산 거점, (동남·대경권) 소부장 혁신 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③ 선도전: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④ 총력지원: 소부장, 인력양성(반도체 10만명 양성), 파운드리 등 지원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중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202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원정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1년 5,964억 달러에서 2023년 5,445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성장을 회복하여 2025년 8,308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조 3,51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분야 시장조사기업인 영국 OMDIA는 2027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대비 16.4% 수준으로 확대된 후 2030년 1조 6,0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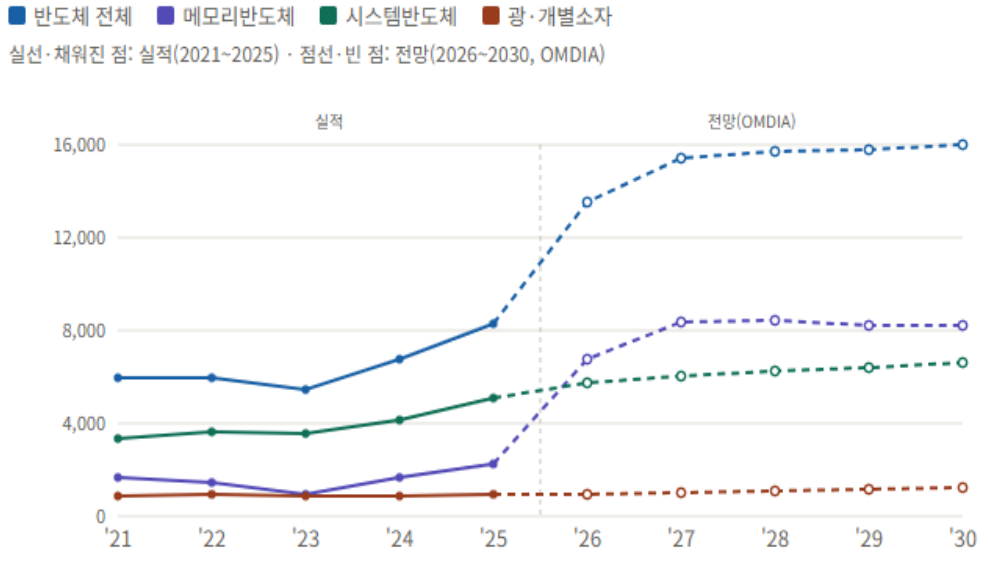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5,095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61.3%)을 차지하였으나, AI 확산 및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 및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2026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023년 966억 달러에서 2026년 6,775억 달러로 약 7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8,19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5,095억 달러에서 2030년 6,629억 달러로 연평균 5.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개별소자 시장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기차 및 전력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실적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반도체 전체 | 5,964 | 5,987 | 5,445 | 6,740 | 8,308 |
| 메모리반도체 | 1,697 | 1,459 | 966 | 1,700 | 2,284 |
| 시스템반도체 | 3,359 | 3,601 | 3,580 | 4,151 | 5,095 |
| 광개별소자 | 907 | 927 | 899 | 888 | 930 |
| 전망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반도체 전체 | 13,513 | 15,426 | 15,731 | 15,781 | 16,024 |
| 메모리반도체 | 6,775 | 8,379 | 8,421 | 8,206 | 8,194 |
| 시스템반도체 | 5,778 | 6,034 | 6,229 | 6,432 | 6,629 |
| 광개별소자 | 960 | 1,013 | 1,082 | 1,143 | 1,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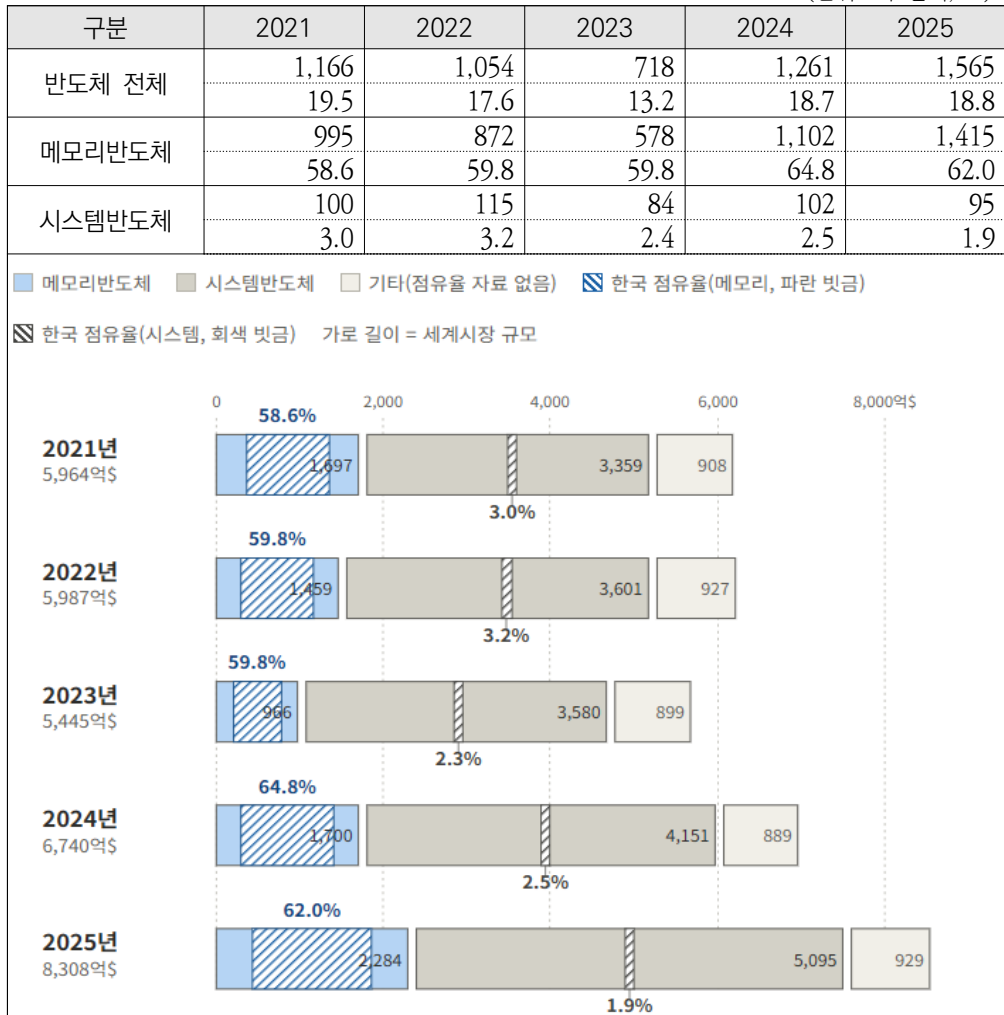
자료: 영국 OMDIA(2026.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규모 역시 2021년 1,166억 달러에서 2023년 718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24년부터 회복하여 2025년에는 1,56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9.5%에서 2023년 13.2%까지 하락하였다가 2024년 18.7%, 2025년 18.8%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속적으로 60%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2024년에는 64.8%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2021년 3.0%에서 2022년 3.2%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3년 2.4%, 2024년 2.5% 수준이었으나 2025년 1.9%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자료: 영국 OMDIA(2026.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에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서 2010년 이후 총 6회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산업 수요와의 괴리, 제한적 지원 등으로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2012년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3대 유망분야 및 소재 공정 등에 대한 투자계획과 반도체 수요·공급 및 설계·생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에서는 팹리스¹⁾의 시장점유율을 2018년 1.6%에서 2022년 3.0%로 높이고, 2030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파운드리²⁾의 경우 2018년 16.0%에서 2022년 20.0%, 2030년에는 35.0%까지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1)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칩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계·판매에 집중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의미한다.

2)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 산업에서 다른 회사(팹리스 등)가 설계한 칩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반도체 제조(위탁생산) 사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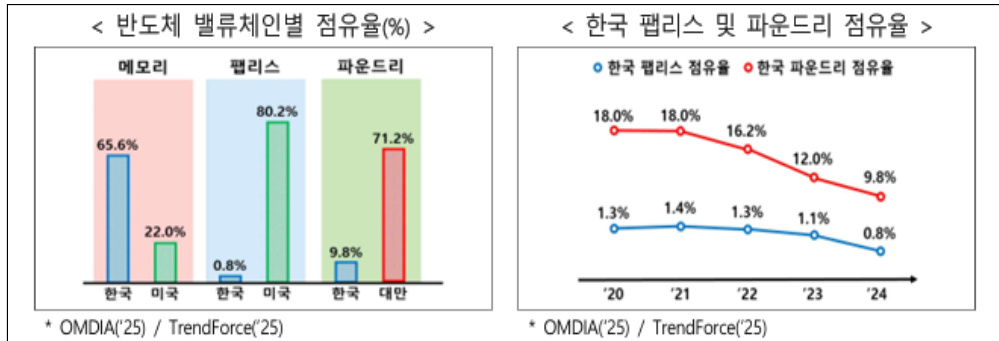
[시스템반도체 지원 주요 정책 추진경과]

| 구분 | 주요내용 |
|---------------------------|--|
|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방향(2012) | · 시스템반도체 산업,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 중심 육성 계획 발표 |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7) | · 3대 유망분야(저전력·초경량·초고속), 소재 공정 등 투자 · 반도체 수요·공급 협력, 설계·생산 컨소시엄 구성 |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2019) | · 팹리스 시장점유율: ('18) 1.6 → ('22) 3.0 → ('30) 10.0%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8) 16.0 → ('22) 20.0 → ('30) 35.0% · 자동차/바이오/에너지 등 5대 분야 수요연계 강화 등 R&D, IP, 사업화,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종합 지원 |
| K-반도체 전략 (2021)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용수 및 전력 인프라 지원: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 · 전주기 인력 양성 지원: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 · R&D 투자 및 「반도체 특별법」제정 본격 논의 |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2023) | ·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용인) 구축 ·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메가 클러스터' 구축 · 설계-제조-후공정 전반 생태계 업그레이드 ·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 R&D 지원 ·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 및 수출지원 |
|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2025) | · (비전) 반도체 세계 2강 ① 기술·생산 리더십: NPU개발·상용화 본격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②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미들텍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③ 소부장·인력: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프로젝트,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설계 허브 구축(선도기업 유치) ④ 남부권 혁신벨트: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광주-부산-구미 특화 클러스터 조성 |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12월에 발표한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팹리스의 시장점유율은 0.8%로 2018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역시 2020년 18%에서 2024년 9.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지원 주요 정책 추진경과]



자료: 산업통상부,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이와 같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수요기업) 기반이 미흡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2025.12.)」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및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통상부가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2025.12.)」을 통해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제시했던 정책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 수립 보다는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패키징(packaging)은 칩을 기판에 연결하고 성능(열-전력-신호 무결성)을 완성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1-2.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가. 현황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고, 특화단지 지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및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기존 반도체 산업 지원체계 및 관련 법률]

| 분야 | 주요 법률 | 주요 내용 |
|----------------|---|---|
|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반도체 분야 포함 산업기술개발 지원 · 반도체 분야 포함 산업기술 실증, 사업화 및 기술혁신 지원 |
|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특화단지 인허가 특례 등 |
| 공급망 안정화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품목 국산화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
| 기술보호 및 경제안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해외기술유출 방지 |
| 인력양성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첨단산업인재 지원 ·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 설치 |
|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 · 일반 산업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상향(2022~) ·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 신설(2023) 및 상향(202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2026년 1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의결되면서 메모라·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체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분석의견

2026년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6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바, 산업통상부는 시행령이 차질 없이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세부 지원제도의 운영 기준과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 시행령 부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률안은 2024년 6월 19일 최초 발의된 이후 다수의 유사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동 대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절차, 운영 방식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특별법」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 구분 | 조항 | 주요 내용 |
|----------|----------------------|--|
| 지원체계 | 제2장 제5조~ 제1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전망, 관련 통계 작성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대통령 소속) ·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지원조직) 신설 |
| 반도체 클러스터 | 제3장 제11조~ 제1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변경, 해제 ·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수립 ·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도로 등) 지원 ·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
| 반도체 산업지원 | 제4장 제16조~ 제3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산업 R&D사업, 실증센터 구축, 중소기업 지원 ·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지원 ·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대상 우선 선정, 신속 조사, 면제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면제 신청 가능 ·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입지 특례 · 소부장 및 공급망 내재화 특례,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특례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 인력양성 | 제5장 제32조~ 제3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
| 특별회계 | 제6장 제35조~ 제4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 · 예산의 이월 특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 예외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적으로 시행령 제정은 ‘법령안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공포’의 절차로 진행되고, 약 5~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시행령 제정의 단계별 소요기간]

| 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 평가 | 입법 예고 |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회의 심의 | 국무 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
| 30~60일 | 10일 이상 | 15~30일 | 40~60일 | 15~20일 | 20~30일 | 7~10일 | 5일 | 7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연장 될 수도 있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 | | | | | | |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법 시행 이후 시행령 부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투명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⁴⁾은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중화 방식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은 625억 8,0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 62,580 | 62,580 | 62,580 | - | - | 55,923 | 55,923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용인과 평택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⁵⁾에 따라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용인·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총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대규모 산업단지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선로를 구축해야 하나, 용

4) 코드: 일반회계 3171-482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평택 주변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민수용성이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평택 일반산단(1개), 용인 국가산단(2개), 용인 일반산단(2개) 등 총 5개 구간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 1조 7,248억원 중 민간부담금의 약 70%인 8,851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4월 1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중화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내용 | ·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 필요전력(10GW) 이상을 공급하기 위한 5개 송전선로(82.4km) 지중화 사업비 지원 ① 평택일반(신평택-고덕#3), ② 용인국가(서안성-신이동), ③ 용인국가(신안성-신기흥), ④ 용인일반(신안성-동용인), ⑤ 용인일반(신원주-동용인) |
| 사업기간 | · 2021~2038년(국고는 2025년 추경부터 지원) |
| 사업수행기관 | · 한국산업단지공단(출연)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12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625억 8,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월 29일 사업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다.⁶⁾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이 12월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사업기간을 2026년 3월말까지로 설정하였고, 3월말까지 두 사업자는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였다.

6) 2025년 사업비는 SK하이닉스 423.5억원, 삼성전자 200.9억원이다.

[2025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추진경과]

| 구분 | 주요내용 |
|-------------|-----------------------------|
| 2025.4.15.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국무회의) |
| 2025.5.8.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청(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
| 2025.12.23.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 2025.12.29. | 협약 체결(사업자↔한국산업단지공단) |
| 2026.3.31. | 2025년 사업 완료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에는 5개 구간 중 3개 구간의 설계비 및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625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의 집행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내용 | 2025 | | 2026 |
|---------|---------------|--------|--------|--------|
| | | 추경 | 집행 | 예산 |
| 신평택-고덕3 | 지중화 공사비 일부 보조 | 19,740 | 19,740 | 46,900 |
| 서안성-신이동 | 설계비 일부 보조 | 420 | 420 | 910 |
| 신안성-동용인 | 지중화 공사비 일부 보조 | 42,420 | 42,420 | 8,050 |
| 신안성-신기흥 | 설계비 일부 보조 | - | - | 63 |
| 합 계 | | 62,580 | 62,580 | 55,923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경영상 비밀유지 사항 포함 등의 사유로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12월 23일 완료되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는 ① 검토안과 ② 대안의 두 안으로 도출되었다. ① 검토안의 경우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총사업비 1조 7,248억원 보다 3,709억원 증가한 2조 957억

원이고, ② 대안은 3,338억원 증가한 2조 586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안을 최종 사업비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규모는 8,851억원에서 9,158억원으로 307억원 증액되었다.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단위: 억원)

| 사업명 | 요구 총사업비 (A) | 조사결과 | | | |
|---------------------------|-------------------|---------|---------|---------|---------|
| | | ① 검토안 | | ② 대안 | |
| | | 총사업비(B) | 증감(B-A) | 총사업비(C) | 증감(C-A) |
| 용인평택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 17,248 | 20,957 | 3,709 | 20,586 | 3,338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증가액 2,663억원은 예비비 및 부가세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국고 지원과 관련한 공사비 등 증가분은 48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수립한 사업계획과 적정성 검토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외부 검증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비비나 부가세가 포함되게 된 배경이나 사유, 적정 국고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과정 등을 검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7)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의28)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

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경우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¹⁰⁾에 따라 송전시설 등 보안목표시설의 정보, 건설공사의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전력 공급 협약 등 법인 간 경영상 비밀유지사항 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결과 공개가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¹¹⁾

물론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아니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 6. (중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1)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 사업은 예타 면제 요구 시 부처에서 제기한 총사업비 규모(1.72조원)에 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2.1조원으로 약 3,000억원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적정성 검토 과정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진 2명과 외부 연구진 5명이 참여하였는데, 타 사업 사례와 달리 외부 연구진 5명이 송전선로·변전설비 및 전력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A사의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유사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구진 구성 현황]

| 사업명 | KDI 연구진 | 외부 연구진 | 감수/검토 | KDI 외 기관 구성 |
|--------------------|---------|--------|-------|--------------|
|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 2명 | 5명 | - | 1개(A사) |
| S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 2명 | 7명 | 1명 | 3개(기업1, 대학2) |
| 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 | 2명 | 13명 | - | 2개(기업2) |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 | 2명 | 5명 | 2명 | 3개(기업3) |

주: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요구안 대비 3,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비공개되어 검토 과정의 논의내용 및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외부 연구진이 특정 엔지니어링 기업 소속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 및 영업비밀 등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검토 결과 등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에는 학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 반도체 분야 주요 인프라 사업의 체계적 구축지원 필요

가. 현황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¹²⁾은 AI 반도체 시제품 제작 전 설계 단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동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상의 시스템과 검증 장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72억 1,0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장비 구축비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95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팹리스기업 첨단 장비 공동이용 지원 | 7,210 | 9,510 | 9,510 | 9,510 | - | - | 13,390 | 13,39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¹³⁾은 팹리스, IP 기업의 반도체 설계와 성능 검증을 위해 설계 검증 장비 및 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 검증인력을 육성하며, 기업에서 개발한 검증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4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12) 코드: 일반회계 3171-389

13) 코드: 일반회계 3171-432

[2025회계연도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 2,400 | 2,400 | 2,400 | 2,400 | - | - | 2,855 | 2,855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¹⁴⁾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 2,000 | 2,000 | 2,000 | 2,000 | - | - | 2,125 | 2,125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반도체 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동일한 장소에 팹리스 기업의 설계 검증을 위한 목적의 인프라 구축을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고, 고가의 동일한 장비를 각각의 사업에서 별도로 구축하는 등 단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

14) 코드: 일반회계 3171-435

으므로,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증장기 구축계획과 단계별 투자전략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지원할 필요가 있다.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AI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국비 31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2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팹리스 기업이나 IP기업이 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지원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비 14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7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두 사업의 전문기관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로 다르지만, 실제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업수행기관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24년 착수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경기도 판교 글로벌융합센터 내에 150평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고, 에뮬레이터 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내 75평 규모의 전용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및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개요]

| 구분 |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
|----------------|--|--|
| 사업내용 | AI 반도체 설계 단계의 오류 검증을 위한 시스템 및 검증 인프라 구축 | 팹리스, IP기업의 반도체 설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및 인력 지원 |
| 총사업비 | 총 452억원 (국비 313억원, 지방비 50억원, 기관 89억원) | 총 227억원 (국비 143억원, 지방비 70억원, 기관 14억원) |
| 사업기간 | 2025~2027년(3년간) | 2024~2028년(5년)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수행기관 (장비구축)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두 사업 모두 동일한 공간에 반도체 설계 및 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사업을 통해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장비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이면서 고가 장비인 ‘설계검증 에뮬레이터 장비(Palladium Z2)’를 두 사업에서 각각 구축할 계획인데, 동일한 기관 내에 동일한 장비를 별도 사업을 통해 중복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두 사업의 동일 장비구축 내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장비명 | 구축장소 | 구축연도 | 구축비용 |
|-----------------------------|---|----------------------------|------|-------|
|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 SoC 검증용 CPU 기반 에뮬레이터 플랫폼 (Palladium Z2) | 시스템반도체개발 지원센터 내 전용공간 | 2024 | 6,710 |
|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 AI반도체 고성능 Emulator 서버 2대 (Palladium Z2) | | 2026 | 5,000 |

자료: 산업통상부

에뮬레이터 장비의 추가 구축 필요성에 대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 구축된 에뮬레이터와 연동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버룸에 설치하여 보다 큰 용량의 AI반도체 검증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Palladium Z2는 1대당 3개사를 지원할 수 있고, 회로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1개사에서 한 번에 3~6개월에 걸쳐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로 동일한 장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¹⁵⁾

15) 산업통상부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한 Palladium Z2 장비에 대해 2026년 상반기 9개사를 지원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에는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각 사업의 Palladium Z1, Z2 장비 활용실적]

| 사업명 | 활용장비명 | 지원기업명 | 지원기간 |
|--------------------------|--------------------------------|-----------|---------------------|
| 시스템반도체검증 지원센터구축 | Palladium Z2 | ㈜딥엑스 | 2025.7.1.~10.31. |
| | | 보스반도체 | 2025.7.1.~12.31. |
| | | 에이디테크놀로지 | 2025.7.21.~11.27. |
| | | 넥스트칩 | 2025.8.4.~12.29. |
| | | 메타앙코르 | 2025.8.1.~12.26. |
| | | 실버칩스 | 2025.7.2.~2026.1.2. |
| | | Uxfactory | 2025.8.1.~10.1. |
|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 Palladium Z1 (타 사업으로 구축) | ㈜딥엑스 | 2025.11.4.~12.31. |
| | | 보스반도체 | 2025.11.3.~11.28. |
| | | 에이디테크놀로지 | 2025.7.21.~12.31. |
| | | 넥스트칩 | 2025.8.4.~8.15. |
| | | 메타앙코르 | 2025.8.1.~12.31. |
| | | 디오터시아 | 2025.11.7.~12.31. |

자료: 산업통상부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통상부의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과 시스템반도체검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사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편적으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단편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건축 사업 준공 시까지 임시 공간을 활용하여 반도체 장비를 구축·활용한 후 이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향후 이전 설치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거나 기업 지원이 일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인프라 구축 사업 기획 시부터 이와 같은 측면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구미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평가센터 시설을 구축하고, 센터 내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의 시험·평가·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4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내용 | - 센터부지 확보, 기반시설 확보, 공간 확보 등(지사체) -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국고) |
| 총사업비 | 총 304억원 (국비 145억원, 지방비 150억원, 기관 9억원) |
| 사업기간 | 2024~2028년(5년간)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수행기관 (장비구축)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미) |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국비 지원액과 지방비로 장비를 구축하고, 건축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각각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부는 2024년 3종, 2025년 6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2024년 장비에 대한 구입 공고가 2025년 4월과 6월이 되어야 시행되었고, 8월과 12월에 구축이 완료되었다. 2025년 구축 장비 6종도 마찬가지로 2025년 10월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상반기 중 4종이 구축되었고, 하반기 중 2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 건축의 경우 2026년 6월 현재 시험평가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허가 및 조달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을 11월에 완료한 후 연내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2024~2025년도 장비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장비명 | 정부지원금 | 공고일 | 계약일 | 완료일 |
|------|---|-------|-------------|-------------|-------------|
| 2024 | Xe-Plasma Focused Ion Beam System (FIB) | 1,529 | 2025.6.17. | 2025.6.23. | 2025.12.22. |
| | Micro CT System (CT) | 1,361 | 2025.6.17. | 2025.6.23. | 2025.12.26. |
| |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GCMS) | 65 | 2025.4.23. | 2025.4.29. | 2025.8.27. |
| 2025 | MicrofigureMeasuring Instrument (Alpha-Step) | 270 | 2025.10.16. | 2025.11.21. | 2026.3.13. |
| | Thermal Topography | 657 | 2025.10.10. | 2025.11.11. | 2026.5.30. |
| |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OES) | 115 | 2025.10.27. | 2025.12.15. | 2026.1.21. |
| | Non-Contact Sheet Resistance Measuring System | 199 | 2025.10.14. | 2025.12.15. | 2026.3.26. |
| | 용량성결합 플라즈마식각장치 | 188 | 2025.10.27. | 2025.12.11. | 2026.8.30. |
| |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ystem (XPS) | 800 | 2025.10.16. | 2026.1.14. | 2026.12.15. |
| 합계 | | 5,184 |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4년과 2025년 예산으로 도입한 장비는 임시로 마련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구축하였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센터 입주가 가능해지는 2028년 1월 이전에 구축하는 장비 12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임시공간에 설치한 후, 센터 건축이 완료되면 장비를 이전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즉,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장비 총 18종 중 12종은 임시공간에, 나머지 6종은 센터 완공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장비 구축 및 설치 계획]

(단위: 종)

| 구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구축 장비 | 3 | 6 | 3 | 3 | 3 | 18 |
| 설치 공간 | 임시공간 설치 후 이전 설치 | | | 시험평가센터 설치 | | -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센터 완공 이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임시공간에 구축한 12종의 장비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고, 장비 이전 전후 안정화 기간 동안 기업의 활용 수요에 일부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반도체 분야 인프라 구축 사업의 기획 시부터 이러한 측면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 장비이용 기업 수, 기술지원 건수의 실적을 집계하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 신규로 구축한 장비의 활용 실적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수행기관에서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장비의 활용 실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과대왜곡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집계 방식을 변경하여 투입과 성과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장비이용 기업 수, 기술지원 건수, 연구시설·장비 구축건수의 3개로 설정하였다. 2025년 기준 장비이용기업 수의 목표는 25건이었고, 기술지원 건수는 15건이었으며, 연구시설·장비 구축건수의 목표는 6건이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3개 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비이용기업 수는 목표인 25건 대비 75건을 달성하여 달성도가 300%였고, 기술지원 건수는 목표인 15건 대비 32건을 달성하여 달성도가 213%였다. 또한, 연구시설·장비 구축건수는 목표 6건 대비 7건을 달성하여 달성도가 116%였다.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현황]

(단위: 건, %)

| 성과지표 | 2025 | | | 측정산식 |
|---------------|------|----|-----|--|
| | 목표 | 실적 | 달성도 | |
| 장비이용기업 수 | 25 | 75 | 300 | $\Sigma(\text{실제 검증 장비 및 기술지원 서비스 실제 이용 기업 건수})$ |
| 기술지원 건수 | 15 | 32 | 213 | $\Sigma(\text{기술 지원 건수})$ |
| 연구시설·장비 구축 건수 | 6 | 7 | 116 |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 건수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실제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가동률은 0%인데, 이는 2025년 구축한 7종의 장비가 모두 12월중 도입됨에 따라 2025년에는 실제 기업들이 해당 장비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5년도 시설장비 활용실적]

(단위: 건, %)

| 장비명 | 구축완료일 | 활용 기관수 | 활용건 | 가동률 | 비고 |
|------------------------------|------------|--------|-----|-----|-------------------------------|
| 고성능 실시간 오실로스코프기반 표준적합성 장비 | 2025.12.24 | - | - | 0.0 | 장비가 연말에 도입되어 장비 지원실적이 발생하지 않음 |
| 반도체 웨이퍼 성능검증용 프로브스테이션 | 2025.12.24 | - | - | 0.0 | |
| 초고속 임의신호 발생기 | 2025.12.12 | - | - | 0.0 | |
| 광대역 주파수 분석기 | 2025.12.17 | - | - | 0.0 | |
| 고주파 벡터 신호 발생기 | 2025.12.24 | - | - | 0.0 | |
| PCIe 5.0프로토콜 Exerciser | 2025.12.03 | - | - | 0.0 | |
| Emulator 온라인 서비스용 호스트 서버 패키지 | 2025.12.15 | - | - | 0.0 |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이용기업 수, 기술지원 건수 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기 구축된 장비를 기업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지원을 시행한 실적을 동 사업의 실적으로 집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정 투입을 통한 효과를 면밀히 측정하여 평가하고, 향후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사업과 같은 성과 집계 방식은 실제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과다 계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재정 투입과 성과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가. 현황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¹⁶⁾은 에너지·수소·차·AI·바이오 분야의 수요기업인 글로벌 대기업·공사와 반도체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테스트-시범활용-상용화까지의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반도체기업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5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나, 2026년부터는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재기획되어 지원된다.

[2025회계연도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 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 개발(R&D)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 | - |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은 응용분야 수요기업과 반도체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나 사업화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수요기업으로의 실증 및 초기 구매 연계 강화 등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6) 코드: 일반회계 3561-418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에는 2023년 100억원, 2024년 105억원, 2025년 105억원이 투입되어 국고 기준 총 350억원이 지원되었다.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단위: 백만원)

| 과제명(협약기간) | 주관기관 | 수요기업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
| 수소차 가스 공급시스템용 마이크로 융합 수소압 측정 소자 및 디지털 반도체 센서 모듈 개발 (2023.4.~2025.12.) | 대양전기 공업(주) | 현대 자동차 | 7,535 | 5,950 |
| 드론탐지를 위한 고출력 화합물 반도체와 AI 융합 기반 고해상도 다중 빔 레이더 모듈 개발 (2025.4.~2027.12.) | 알에프코어 주식회사 | 한화 시스템 | 7,083 | 5,500 |
| 스마트홈용 Batteryless BLE기반 AI SOC 및 SW 기술 개발(2023.10.~2026.6.) | (주)싸이닉 솔루션 | (주)지트론 | 7,702 | 5,800 |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전력변환장치 개발 (2023.4.~2026.3.) | 한국전력 공사 | 인텍전기 전자(주) 등 | 11,349 | 5,950 |
| 첨단 모빌리티 구동시스템의 고장진단 및 예지를 위한 SoC 기술개발(2023.4.~2026.6.) | 수퍼게이트 주식회사 | 우수AMS 주식회사 | 8,113 | 5,899 |
| 타액을 이용한 무채혈·비침습 방식의 당뇨 센서와 시스템 반도체가 내장된 측정기 개발 (2023.4.~2025.12.) | 동문아나텍 | (주)씨에스 테크놀로지 | 7,964 | 5,900 |
| 합계 | | | 49,746 | 34,999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종료된 5개 과제의 사업화 실적을 살펴본 결과, 5개 중 2개 과제(타액을 이용한 무채혈·비침습 방식의 당뇨 센서와 시스템반도체가 내장된 측정기 개발, 스마트홈용 Batteryless Ble기반 AI SOC 및 SW 기술개발)에서는 사업화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고, 3개 과제에서는 2023년 1,500만원, 2024년 4억 3,300만원, 2025년 15억 200만원, 총 총 19억 5,100만원의 사업화 실적이 발생하였다.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주관기관 | 수요기업 | 정부 출연금 | 사업화 연도 | 사업화금액 | |
|--|-------------------|-----------------|-----------|-----------|-----------------|-----------------|
| | | | | | 수요 기업 사업화 | 수요 기업 사업화 |
| 수소차 가스 공급시스템용 마이크로 융합 수소압 측정 소자 및 디지털 반도체 센서 모듈 개발 | 대양전기 공업(주) | 현대 자동차 | 5,950 | 2024 | 176 | 176 |
| | | | | 2025 | 1,093 | 1,093 |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전력변환 장치 개발 | 한국전력 공사 | 인텍전기 전자(주) 등 | 5,950 | 2023 | 15 | 15 |
| | | | | 2024 | 46 | 46 |
| | | | | 2025 | 128 | 128 |
| 첨단 모빌리티 구동시스템의 고장 진단 및 예지를 위한 SoC 기술개발 | 수퍼 게이트 주식회사 | 우수AMS 주식회사 | 5,899 | 2024 | 211 | - |
| | | | | 2025 | 282 | - |
| 타액을 이용한 무채혈·비침습 방식의 당뇨 센서와 시스템 반도체가 내장된 측정기 개발 | 동문 아나텍 | (주)씨에스 테크놀로지 | 5,900 | - | - | - |
| 스마트홈용 Batteryless BLE기반 AI SOC 및 SW 기술 개발 | (주)싸이닉 솔루션 | (주)지트론 | 5,800 | - | - | - |
| 합계 | | | 29,499 | - | 1,951 | 1,458 |

주: 2025년 성과는 검증 중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3~2025년의 사업화 실적 19억 5,100만원은 5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총액(294억 9,900만원)의 6.6%로 저조한 수준이고, ‘첨단 모빌리티 구동시스템의 고장진단 및 예지를 위한 SoC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수요기업으로의 사업화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동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일반적인 R&D 사업과 달리 수요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요기업이 기술 검증과 실증, 초기 구매를 담당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 지원이라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수요기업으로의 제품에 실제 적용될수 있도록 실증 및 초기구매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에 산업통상부는 총계 기준 457개 세부사업에서 16조 2,506억 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은 151개, 총 4조 4,199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 내부거래를 포함한 비R&D 사업은 306개, 총 13조 3,414억 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A) | 집행액(B) | 집행률(B/A) |
| 457개 세부사업 | 165,869 | 179,065 | 162,506 | 90.8 |
| R&D(151개) | 44,209 | 44,241 | 44,199 | 99.9 |
| 비R&D(306개) | 121,659 | 134,824 | 133,414 | 99.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비R&D 사업 중에서도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집행된 사업은 총 107개이며, 2025년 예산현액 1조 857억원 중 1조 579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산업단지환경조성(2,682억원) 등 31개 사업은 연차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반납예정이고, 그 외 76개 사업은 일괄협약 및 일괄(단계)정산 대상으로 예산현액 2,622억원 중 2,621억원이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출연금(350-02목)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사업명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A) | 집행액(B) | 집행률(B/A) |
| 사업출연금(107개) | 8,230 | 10,857 | 10,579 | 97.4 |
| 연차정산(31개) | 5,641 | 8,235 | 7,958 | 96.6 |
| 일괄협약정산(76개) | 2,589 | 2,622 | 2,621 | 99.9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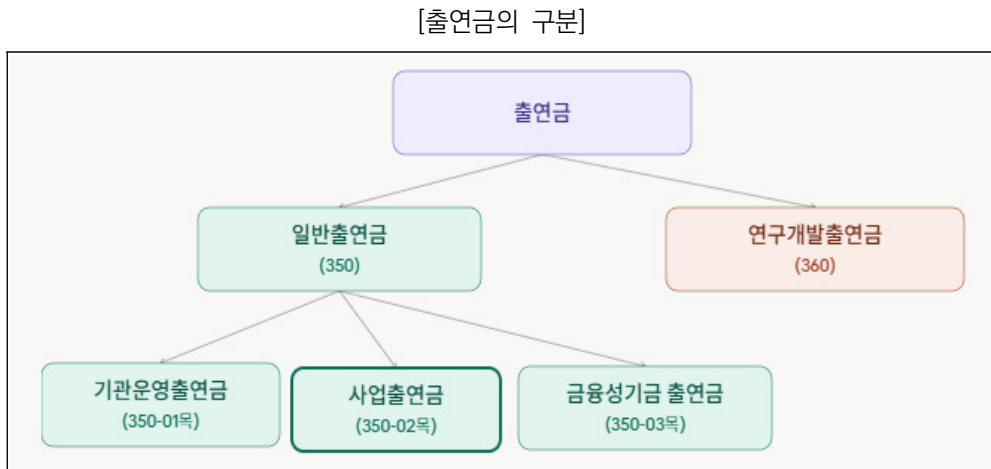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2-1. 비R&D 출연사업의 일괄협약 및 일괄정산 시정 필요

가. 현황

출연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행 형태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12조¹⁾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은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연금은 크게 일반출연금(350)과 연구개발출연금(360)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연금은 다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으로 구분된다.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결산 기준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출연금(350-02목) 사업 중 일괄협약 및 일괄(단계)정산을 거치는 76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일괄협약-정산 출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액 |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 20,277 | 20,277 | 20,277 |
|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 1,530 | 1,530 | 1,530 |
|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사업 | 2,400 | 2,400 | 2,400 |
|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 8,670 | 8,670 | 8,670 |
|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 | 4,200 | 4,200 | 4,200 |
|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 | 2,972 | 2,972 | 2,972 |
|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3,743 | 3,743 | 3,743 |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2,818 | 2,818 | 2,818 |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 1,650 | 1,650 | 1,650 |
| 시스템반도체 IP Bank 플랫폼 구축 | 6,212 | 6,212 | 6,212 |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 4,740 | 4,740 | 4,740 |
|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 700 | 700 | 700 |
|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 인력양성사업 | 2,960 | 2,960 | 2,960 |
| 미래 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 | 555 | 555 | 480 |
|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700 | 700 | 700 |
| 반도체아카데미구축 | 4,710 | 5,710 | 5,710 |
| 배터리아카데미구축 | 6,000 | 6,000 | 6,000 |
|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 3,700 | 3,700 | 3,700 |
| 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 3,000 | 3,000 | 3,000 |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 2,000 | 2,000 | 2,000 |
|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 2,400 | 2,400 | 2,400 |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 2,240 | 2,240 | 2,240 |
|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 1,351 | 1,351 | 1,351 |
|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 2,229 | 2,229 | 2,229 |
|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 1,000 | 1,000 | 1,000 |
|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 4,000 | 4,000 | 4,000 |
|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 800 | 800 | 800 |
|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 1,826 | 1,826 | 1,826 |
|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 11,150 | 11,150 | 11,150 |
|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 7,210 | 9,510 | 9,510 |
|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 | 2,000 | 2,000 | 2,000 |
|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 2,000 | 2,000 | 2,000 |
| 미래 모빌리티 총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 3,000 | 3,000 | 3,000 |
|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 1,300 | 1,300 | 1,300 |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 300 | 300 | 300 |
|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XR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 2,500 | 2,500 | 2,500 |
|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 | 5,300 | 5,300 | 5,300 |
|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 3,400 | 3,400 | 3,400 |
|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 | 2,822 | 2,822 | 2,822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액 |
|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제조실증 기반구축 | 1,200 | 1,200 | 1,200 |
|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 3,500 | 3,500 | 3,500 |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 4,000 | 4,000 | 4,000 |
| 모빌리티실제환경모사전자파장해평가시스템구축 | 2,600 | 2,600 | 2,600 |
|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 2,400 | 2,400 | 2,400 |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 1,920 | 1,920 | 1,920 |
|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 3,200 | 3,200 | 3,200 |
|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 6,400 | 6,400 | 6,400 |
|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 9,240 | 9,240 | 9,240 |
|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 2,400 | 2,400 | 2,400 |
|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 3,240 | 3,240 | 3,240 |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 2,000 | 2,000 | 2,000 |
| 저능형반도체 개발 실증지원 | 2,712 | 2,712 | 2,712 |
| 바이오트윈기반미래차부품고도화기반구축 | 1,100 | 1,100 | 1,100 |
|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 2,500 | 2,500 | 2,500 |
|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 1,300 | 1,300 | 1,300 |
| 특장차수소파워팩기술지원기반구축 | 2,200 | 2,200 | 2,200 |
|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 | 3,600 | 3,600 | 3,600 |
|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2,100 | 2,100 | 2,100 |
|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 3,000 | 3,000 | 3,000 |
|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평가 플랫폼 구축 | 3,150 | 3,150 | 3,150 |
|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 3,200 | 3,200 | 3,200 |
|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 6,000 | 6,000 | 6,000 |
|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2,560 | 2,560 | 2,560 |
| e모빌리티 전기차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 1,500 | 1,500 | 1,500 |
|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 5,000 | 5,000 | 5,000 |
|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지원 | 3,000 | 3,000 | 3,000 |
|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생산 기반구축 | 2,855 | 2,855 | 2,855 |
|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1,660 | 1,660 | 1,660 |
|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 2,250 | 2,250 | 2,250 |
| 모빌리티 인증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 2,000 | 2,000 | 2,000 |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 8,020 | 8,020 | 8,020 |
|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 4,730 | 4,730 | 4,730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3,286 | 3,286 | 3,286 |
|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기반조성 | 1,700 | 1,700 | 1,700 |
|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 | 2,263 | 2,263 | 2,263 |
|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사업 | 4,762 | 4,762 | 4,762 |
| 합계 | 258,913 | 262,213 | 262,138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사업출연금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비R&D 출연사업에 대해 일괄협약 및 일괄(단계)정산을 도입하여 사실상 계속비 사업처럼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년도 회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 의결 의무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예산 편성·집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2조2)에 따라 국가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는 ‘단년도 회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3)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단년도 회계주의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3조4)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5)에 따라 연차협약이 아닌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을, 제13조제7항6)에 따라 연차정산 대신 단계정산을, 제14조제1항7)에 따라 연차평가 대신 단계평가를

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한다.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R&D 사업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의 장기성 및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률로 「국가재정법」의 예외를 허용한 특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년도 회계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계속비의 국회 의결을 통한 집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근거로 비R&D 출연사업에 대해서도 일괄협약과 단계평가, 단계정산을 시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에는 일괄협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요령 제32조의4에는 단계평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34조에는 단계정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하며,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R&D사업과 비R&D사업 모두 일괄협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4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 30일 전에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R&D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해서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산업통상부의 경우 RCMS)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 비R&D 사업에 대한 단계정산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괄협약·단계평가·단계정산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의4(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R&D 사업에 대한 일괄협약, 단계평가, 단계정산 방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단년도 회계주의의 예외적인 집행을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연사업이 3~5년 단위로 포괄 운영되면서 연차협약 및 정산이 생략될 경우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성과를 확인하도록 한 재정통제 구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계속비의 경우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에서 의결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의 비R&D

출연사업은 사실상 계속비와 유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사업을 수행하는 타 부처의 경우에도 비R&D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및 반납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연사업에 대한 협약·정산·평가 운용 현황]

| 구분 | | 협약 | 정산/반납 | 평가 | 근거 |
|-----------------|------|---------|------------|----------|--------------------|
| 산업 통상부 | R&D | 일괄 | 단계/단계 정산 후 | 선정/단계/최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비R&D | (최대10년)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과기 정통부 | R&D | 일괄 | 단계/단계 정산 후 | 선정/단계/최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비R&D | 연차 | | | 연차/매년 |
| 중소 벤처 기업부 | R&D | 일괄 | 단계/단계 정산 후 | 선정/단계/최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비R&D | (최대10년) | | | 연차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계속비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비R&D 출연사업에 대해 매년 협약과 평가, 정산을 실시하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비R&D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수당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비R&D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서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지는 혼란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 비R&D 출연사업의 세부 비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며, 같은 규정 <별표5>에 따라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구분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구분 | | 내용 |
|------------|--|--|
| 직접비 |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4대보험료(근로계약 체결시) |
|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 |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등 |
|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SW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등 |
|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
| | 보안수당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비용 | |
| 간접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비목 체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8)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별표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목 체계와 동일한다.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산업통상부가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이에 맞추어 정비·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기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는 R&D 사업뿐만 아니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비R&D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은 R&D와 비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제로 설계된 연구비 비목 체계가 비R&D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지는 혼란과 제도 운영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비R&D 출연사업에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연구수당을 계상·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비R&D 출연사업 중 연구수당을 지급한 사업은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등 42개 사업이며, 8억 6,400만원의 연구수당이 참여인력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비R&D 출연사업 연구수당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연구수당 지급액 |
|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 19,656 | 107 |
|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 4,542 | 95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2,864 | 75 |
|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 8,910 | 60 |
|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 1,294 | 54 |
| 기타 37개 사업 | 153,547 | 473 |
| 합계(총 42개) | 190,813 | 864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인센티브) 성격의 비용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수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R&D 사업에까지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연구수당의 성격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별표2>에 따른 연구수당 사용용도]

| 구분 | | 내용 |
|-----|------|--|
| 직접비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타 부처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R&D 출연사업에 연구수당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⁹⁾,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R&D 출연사업에서 연구수당을 집행한 사례에 대해, 기 지급된 연구수당의 환수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¹⁰⁾한 바 있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고

10)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R&D 출연사업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수당 관련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 내용 | | 시정요구 유형 |
|---|-----------|--|---------|
| 원자력안전 기반구축 단위사업 중 연구수당 관련 개선방안 등 강구 필요 | 관련 사업명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기반구축 단위사업 (원자력안전규제(1701-403), 방사선안전규제 (1701-404), 원자력안전기반조성 (1701-401), 방사선안전기반조성(1701-402)) | 시정 |
| | 지적사항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단위사업은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안전규제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R&D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R&D 사업과 유사하게 연구수당이 지급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R&D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연구수당을 R&D사업에 대하여 정책상특별히 인정되는 인건비성 지출로 언급함. | |
| | 시정요구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R&D 사업인 원자력안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연구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기 지급된 연구수당의 환수 반영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자료: 국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비R&D 출연사업을 통해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해 환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연구수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D사업과 비R&D사업을 동일한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대해서도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규율하거나 비목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집행 저조 및 장비심의 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에 따라 관리되는 비 R&D 출연사업은 총 81개 3,534억원이다. 비R&D 출연사업은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기반구축 사업과 인력양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반구축 사업이 81개 중 7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산 규모도 전체 3,534억원 중 3,088억원으로 87.4%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사업명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액 | 집행률(B/A) |
| 비R&D사업(81개) | 3,337 | 3,534 | 3,533 | 99.9 |
| 기반구축(72개) | 2,939 | 3,088 | 3,087 | 99.9 |
| 인력양성(9개) | 398 | 446 | 446 | 100.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0조제1항¹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계좌 및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RCMS”)에 등록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RCMS의 구축·운영, 집행·정산 등의 업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0조제4항¹²⁾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다.

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나. 분석의견

비R&D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비R&D 기반구축 사업이 장비구축 공간의 건축 지연, 장비 발주 지연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장비구축이 공간 건축 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비를 편성하고, 장비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R&D 기반구축 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기관에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각각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민간 자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출연금은 장비구축비와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편성되고, 장비가 구축되는 공간에 대한 건축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나 민간 자원이 활용되고 있다.¹³⁾

그러나 2025년 산업통상부 소관 비R&D 기반구축 사업 집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비R&D 기반구축 사업에서 지자체 매칭 지연, 장비 구축 공간 건축 지연, 장비 발주 및 도입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기관 실집행이 저조하고, 출연금 상당액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RCMS 시스템 상 2025년도 비R&D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305억 9,700만원 포함 예산현액 1,390억 4,400만원 중 793억 9,300만원을 실집행하였고, 250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연구개발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연구개발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이는 기획예산처의 각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기반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상 건축비는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 구분 | 내용 | 국비 인정기준 | |
|-----|------------------------------|---------|--------|
| | | 非예타 | 예타 |
| 건축비 |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등 | 불인정 | 불인정 |
| 장비비 | 장비구축비 | 70% 상한 | 50% 상한 |
| | 장비운영비 | 70% 상한 | 50% 상한 |
| R&D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제외 연구개발비 | 불인정 | 50% 상한 |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2025회계연도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RCMS 상 연구개발기관 집행액]

(단위: 억원, %)

| 구분 | 2025 | | | | | |
|-----------|------------|-------------|-------------|----------------------|-------------|----------|
| |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출연금 | 예산현액 (A) | 연구개발 기관 집행액(B)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률(B/A) |
| 기반구축(72개) | 306 | 1,084 | 1,390 | 794 | 251 | 57.1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20% 미만인 2개, 20% 이상~40% 미만이 9개, 40% 이상~60% 미만이 24개, 60% 이상~80% 미만이 17개, 80% 이상이 20개 사업이었다.

[2025회계연도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실집행률 구간별 사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 연구개발기관 실집행률 구간별 사업 수 | | | | | |
|-----------|----------------------|-------------------|-------------------|-------------------|--------|----|
|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합계 |
| 기반구축(72개) | 2 | 9 | 24 | 17 | 20 | 72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개발기관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례로는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고신뢰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 검증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사업¹⁴⁾은 EV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센터 내 EV배터리 용접-접합공정 및 성능평가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19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14) 코드: 일반회계 3171-427

[2025년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적행 저조 사례]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률 (B/A) | 비고 |
|---|------------|-------------|------------|-------------|--------------|---|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2차년도) | 813 | 2,666 | 1,047 | 1,619 | 39.3 | 지방비 입금 지연, 건축 행정절차 지연, 장비 발주·제작 지연 |
|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1차년도) | - | 2,895 | 1,334 | 1,561 | 46.1 | 지방비 지급 지연, 건축(리모델링) 지연, 장비 발주·도입 지연 |

주: 각 사업별 전문기관 사업관리비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연구개발기관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 6,600만원 중 10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적행률이 39.3%로 저조하였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2억 3,400만원만 집행한 것이며,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이월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적행이 저조한 것은 2024년 지방비 입금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 착수가 수개월 지연되었고,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등을 무상대부하는 데 행정절차가 지연된 데 기인한다. 이에 당초 2025년 4분기에 센터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9개월 이상 지연된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사업의 건축(리모델링) 진행 상황]

| 구분 | 당초 계획 | 실제 추진 현황 | 사유 |
|-----------|-----------|-----------|--|
| 기본설계 | 2024년 3분기 | 2025년 3분기 | 1차년도 지방비 입금 지연 - 2025년 1월 입금 |
| 실시설계 | 2024년 4분기 | | |
| 건축인허가 | 2025년 1분기 | 2025년 4분기 |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등 행정절차(무상대부) 진행 지연 |
| 착공신고 및 착공 | 2025년 2분기 | 2025년 4분기 | 설계 및 건축인허가 지연 |
| 준공 | 2025년 4분기 | 2026년 3분기 | 2026년 9월 준공 예정 |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지방비 매칭이 지연되거나, 건축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장비 구축 공간의 준공 이후에 설치·운영이 가능한 대형 장비들의 발주 및 도입 일정도 함께 지연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된 장비구축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장비 구축과 건축 공정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현재는 정부출연금에 포함된 장비구축비와 지방비·민간재원으로 추진되는 건축사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 지연 시 장비 구축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 중 다수 사업에서 장비구축 공간의 건축 지연, 장비 발주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장비구축이 공간 건축 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비를 편성하고, 장비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입하는 고가 장비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비도입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를 제도화하여, 장비 구축의 필요성·중복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정 이후 장비 심의 절차에 따른 도입 지연, 사업비 이월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R&D 사업으로 도입하는 고가 장비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비R&D 사업으로 도입하는 고가 장비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먼저, 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15)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16)과 제18조제1항17)에

1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6)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심의회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중략)

따라 R&D 사업에서 구축하는 3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친다. 장비심의회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구체화된 장비에 대해 실시하는 ‘본심의’와 이후 구체화되는 장비에 대한 ‘상시 심의’로 구분되며, 본심의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기획예산처에서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이상의 R&D 사업 장비심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의 비R&D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장비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점에 사전 심의가 아닌, 예산 확정 이후 사후 심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1조¹⁸⁾에 따라 기반구축 사업 수행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18)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희·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i-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희·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희·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9조제5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비R&D 출연사업 장비심의 현황]

| 구분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 예산 편성 시 | - | 용역 수행 (2025년) NFEC (2026년) 미정 |
| 예산 집행 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관리전문기관)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¹⁹⁾에 따르면,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나 저활용·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²⁰⁾에 따라 1억원 미만이면서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통상부 소관 비R&D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장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저활용·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0)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3. 불용 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4. 시제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회 예산 확정 이후 구축 장비가 구체화되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일련의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장비 발주 지연, 사업비 이월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 23억 1,600만원 중 17억 2,000만원을 활용하여 4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5월 사업 개시 이후 9월 장비 수요조사 및 자체장비도입심의, 11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완 등을 거쳐 2026년 3월이 되어서야 장비 도입 공고를 시행하였다.

또 다른 예로, ‘저탄소미래차부품시제작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2025년 4월 사업 착수 이후 연속형 단조기 등 2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자체심의를 5월,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9월에 완료하였으나, 실제 장비 공고는 2026년 4월에 이루어졌고, 제작 장비 특성 상 장비 구축은 2027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장비가 구체화되고, 도입 심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집행률은 26.8%, 저탄소미래차부품 시제작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집행률은 9.3%로 저조하였으며, 재정 집행 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장비 심의·공고 지연 사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구축장비 | 도입비용 (국고) | 도입 절차 | | | | |
|--------------------------------|--------------------|--------------|---------------------|-----------|---|-----------|------------|
| | | | 수요조사 | 자체심의 | 중앙심의 | 공고일 | 완료예정일 |
| 빅데이터기반상용 배터리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 | 축방전기 등 4종 | 1,720 | '25.9.17. ~10.2. | '25.9.24. | '25.11.26. (보완) '26.1.15. (인정) | '26.3.12. | '26.11.30. |
| 저탄소미래차부품 시제작생산기반 구축 | 연속형 단조기 등 2종 | 7,250 | - | '25.5. | '25.7. (보완) '25.9.16. (인정) | '26.4.00. | '27.6.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번째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나 유사·중복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불인정된 장비 구입비를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예산 확정 이후 장비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재정의 효율성보다는 주어진 예산의 집행 측면에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다.

사전 심의 필요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장비 구축의 필요성, 유사중복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예산에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출연하여 비R&D 장비에 대한 사전 도입심의를 제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NFEC에서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을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연구용역비(260-01목)로 전용한 후 당초 계획(3억 2,000만원) 대비 소규모(4,100만원)로 조정하여 NFEC을 통해 시범 운영하였다.

[2025회계연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전용 (2025. 6.2.) | 산업기술정보화 및정책지원 (3133-304) | 320-02 | 320 | 산업기술정보 화및정책지원 (3133-304) | 260-01 | 사업특성과 전문검토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부 비R&D사업 구축장비검토 도입 용역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원사업 |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 |
| 과제명 | 산업부 비R&D사업 구축장비검토 도입 용역 |
| 연구기간 | 2025.7.~8. (2개월) |
| 연구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 역시 3억 2,000만원으로, 산업통상부는 NFEC에 출연하여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2025년과 마찬가지로 NFEC의 여력이 되지 않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지정기관 없이 용역을 통해 장비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할 경우 심의의 전문성·일관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고가 장비의 도입 필요성, 기존 장비와의 유사중복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장기간 축적된 장비 데이터와 전문인력,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단기 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별·연도별 심의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입하는 고가 장비에 대해서도 장비 구축의 필요성과 중복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정 이후 장비심의 절차에 따른 도입 지연, 사업비 이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장비심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²¹⁾

21)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 중 성격이나 내용 측면에서 R&D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와 협의하여 R&D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¹⁾은 수입선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정보 분석, 공급망컨설팅,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45억 4,700만원이었으나 대미 관세로 촉발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5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905억 4,500만원 중 87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 | 4,547 | 90,545 | - | 90,545 | 87,071 | - | 3,474 | 135,036 | 813,345 |
| 수입선다변화지원 | 3,811 | 5,251 | - | 5,251 | 3,901 | - | 1,350 | 5,184 | 9,127 |
| 공급망컨설팅지원 | 300 | 300 | - | 300 | 300 | - | - | 300 | 300 |
| 글로벌공급망 정보분석 | 436 | 436 | - | 436 | 436 | - | - | 436 | 436 |
|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 | 14,558 | - | 14,558 | 12,434 | - | 2,124 | 29,116 | 29,116 |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 - | 70,000 | - | 70,000 | 70,000 | - | - | 100,000 | 100,000 |
|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 - | - | - | - | - | - | - | - | 674,366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74-306

2025년 기준 동 사업은 수입선다변화지원, 공급망컨설팅지원, 글로벌공급망정보분석,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의 총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를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중국산과의 단가차액을 수입기업에 지원하고, 주요 품목의 대체 수입처를 발굴검증하려는 것이고, ② 공급망컨설팅 지원 내역은 국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③ 글로벌공급망 정보분석 내역은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 수집, 공급망 현안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④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을 보조하려는 것이고, 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 내역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입자·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사업수행기관 |
|------------------------|--|--------------------|
| 수입선다변화지원 |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를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중국산과의 단가차액을 수입기업에 지원 및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에 대비한 대체 수입처 발굴·검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공급망컨설팅지원 | 국내 소부장 기업 대상 공급망 안정화 관련 컨설팅 지원 | |
| 글로벌공급망 정보분석 |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DB 구축, 공급망 안정품목 수급 동향 수집, 공급망 현안 분석 등 수행 | |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 보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 생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입자·설비 보조금 지급 | |

자료: 산업통상부

3-1. 수입선다변화지원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 필요

가. 현황

요소(Urea)는 화학산업의 원료나 비료, 자동차,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국내 기업의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소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지원 사업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를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중국산과의 단가차액을 수입기업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38억 1,100만원이었으나, 대미 관세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1회 추경에서 14억 4,000만원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52억 5,100만원 중 3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수입선다변화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 | 4,574 | 90,545 | - | 90,545 | 87,071 | - | 3,474 | 135,036 | 813,315 |
| 수입선다변화지원 | 3,811 | 5,251 | - | 5,251 | 3,901 | - | 1,350 | 5,184 | 9,127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은 KOTRA를 중심으로 대체수입선을 발굴하는 사업과 요소 수입기업에 중국산과의 단가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2025년 대체수입선 발굴에는 본예산 7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요소 단가차액 지원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되었다.

[2025년도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내용 | 2025예산 |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 (불용) |
|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요소 수입 차액보조 지원금> · (본예산) $1,347\text{원(환율)} / \$ \times 150\$ \times 2,500\text{톤/월} \times 12\text{개월} \times 50\% = 3,031$ · (추경안-중동·유럽산 등) $1,450\text{원(환율)} / \$ \times 240\$ \times 4,000\text{톤/월} \times 1\text{개월} \times 90\% = 1,440$ <대체수입선 발굴> 780 | 3,811 | 5,251 | 3,901 (1,350)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수입선다변화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5년 중국의 요소 수출이 재개되면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당초 설정한 제3국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행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내 생산 재개, 비축 체계 강화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중국산 대비 단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해 왔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중동 및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하였다.

[요소 수입선다변화 내역사업의 본예산과 추경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추경 |
|-------------|-----------------------------------|------------------------------------|
| 지원물량 | 연간 3만톤 | 추가 4,000톤 |
| 지원국가 | 중국 이외 국가 주로 베트남, 일본 등 | 중동, 유럽 등으로 추가 수입국 다변화 유도 |
| 보조율 | 단가차액의 50% | 단가차액의 90% |
| 1톤당 보조금액 | 150\$×50%=75\$ (기업 차액 부담=75\$) | 240\$×90%=216\$ (기업 차액 부담=24\$) |
| 지원예산 | 3,031 | 1,440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두 차례에 걸친 요소 수입단가 차액 지원 결과, 추경을 통해 중동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 및 공동구매를 통해 4,000톤의 수입 계획은 달성하였으나, 본예산을 통해서는 2만 2,200톤을 수입하여 목표물량(3만톤)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본예산 차수별 추진 결과]

(단위: 톤, 백만원)

| 목표 총량 | | 1차 기간 (‘25.1.1.~6.30.) | | 2차 기간 (‘25.7.1.~12.31.) | | 실적 총량 | |
|--------|-------|---------------------------|-----|----------------------------|-----|--------|-------|
| 물량 | 지원금 | 물량 | 지원금 | 물량 | 지원금 | 물량 | 지원금 |
| 30,000 | 3,031 | 16,180 | 944 | 6,020 | 271 | 22,200 | 1,215 |

자료: 산업통상부

베트남일본 등 국가로의 요소 수입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했던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중반 이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함에 따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저렴한 중국산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국내 요소 수입량 중 65.4%는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이는 중국의 요소수출 심사가 중단되기 전인 2023년에 비해서는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2.7%p 하락한 수치이나, 2024년에 비해서는 38.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023~2025년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입국별 비중 현황]

(단위: %)

| 순 위 | 2023 | | 2024 | | 2025 | |
|--------|-----------|-------------|-----------|-------------|-----------|-------------|
|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 1 | 중국 | 88.1 | 베트남 | 53.1 | 중국 | 65.4 |
| 2 | 베트남 | 5.2 | 중국 | 27.1 | 베트남 | 23.1 |
| 3 | 카타르 | 3.4 | 일본 | 8.8 | 일본 | 5.8 |
| 4 | 사우디아라비아 | 1.4 | 카타르 | 4.7 | 카타르 | 2.5 |
| 5 | 일본 | 1.4 | 사우디아라비아 | 3.4 | 사우디아라비아 | 2.3 |
| 6 | 인도네시아 | 0.3 | 인도네시아 | 2.9 | 이집트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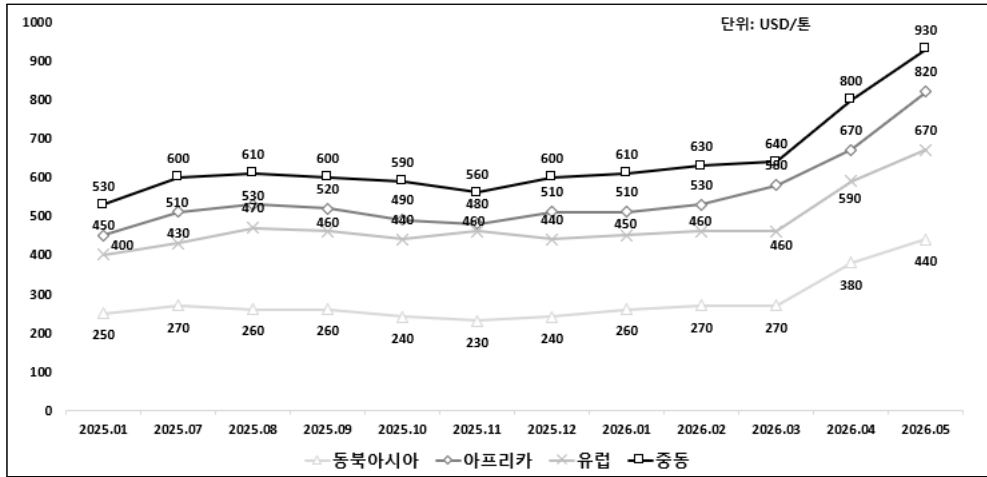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요소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중국산과의 단가 차액 일부를 보조하는 현 정책수단은 중국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요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요소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란의 카타르 공격으로 요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동산 요소 가격은 2026년 2월 27일 톤당 484달러에서 5월 기준 톤당 930달러까지 급등하였다. 또한, 중국 역시 2026년 3월 기준 자국 내 비료 공급 확보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여 사실상 수출 허가를 중단한 상황이다.

2)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4년의 경우 사실상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지속되었던 해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요소 가격 변동 추이]



자료: IMARC Group, Urea Pricing Report, 2026. 6. 5.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요소 시장에 대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대체 수입선의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LNG를 원료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 차질로 원료 수급에 영향을 받아 요소 생산 및 수출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자국의 가스전을 기반으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될 경우 가격 상승 및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의 수입 다변화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최근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공급 자체가 축소되고 주요 수출국이 자국 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협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2025년 집행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글로벌 요소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다변화 정책의 실효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요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더라도 글로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요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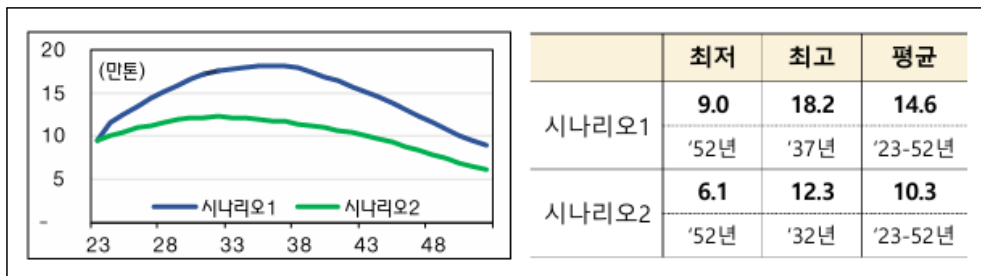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요소 공급망을 관리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국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거나 비축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2024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차량용 요소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요소 수요 대부분은 산업용 및 농업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소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차량용 요소에 국한하기보다는 산업용·농업용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요소 수급 안정화 전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24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다. 이후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2025.3.25.)’에서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2025.3.25.)」을 심의하면서 국내 생산 재개 방안(1안)과 수입 다변화 지원 방안(2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① 차량용 요소의 수요 전망과 ② 대안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축확대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먼저, 차량용 요소의 수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현재 연간 차량용 요소의 수요는 9만톤 수준인데, 2030년대 중반에는 12~18만톤까지 증가한 후 하락 전환하고, 2023년부터 2052년 평균 수요는 10~15만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요소의 수요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SCR) 부착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차량용 요소의 시나리오별 수요 전망]



자료: 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2025.3.25.)」

다음으로, 대안별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을 재개하는 방식은 건설 후 20년간 운영하는 데 약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를 하는 경우 20년간 약 1,200억원~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대안별 비교 종합]

| 구분 | (1안) 민간 국내생산 | (2안)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
|-----------|--------------------------|---------------------------|
| 연간 비용 | 약 260~290억원(5~7만톤 생산 기준) | 50~70억원(연간 수요 9만톤 기준) |
| | 건설비 관련: 약 100~120억원 | 비축 확대: 약 10~20억원 |
| | 운영비 관련: 약 160~170억원 | 수입 다변화: 약 40~50억원 |
| 20년 비용 | 약 5,100억원(5만톤 생산 기준) | 1,200~1,700억원(수요전망 시나리오2) |
| | 약 5,800억원(7만톤 생산 기준) | 1,800~2,500억원(수요전망 시나리오1) |

자료: 산업통상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2025.3.25.)」

그러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2025.3.25.)」은 국내 요소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이나 농업용 요소의 수입 및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고, 글로벌 요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정부의 요소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차량용 요소 중심으로 수립·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차량용 요소가 물류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에 사회적 혼란이 크게 나타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요소 수입량은 2025년 약 65만톤 이상이고, 차량용 요소는 이 중 14% 수준인 약 9만톤 정도에 불과한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나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 부착 확대 등으로 차량용 요소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요소의 국내 생산 재개 보다는 수입 다변화 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3~2025년 산업용·차량용·농업용 요소 수입물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산업용·차량용 | 356,050 | 358,197 | 304,179 |
| 농업용 | 367,129 | 379,406 | 349,555 |
| 합계 | 723,179 | 737,603 | 653,734 |

자료: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차량용 요소의 경우 물류 대란 등으로 단기간에 사회적 혼란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은 있으나, 산업용 요소가 부족할 경우 반도체나 화학산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농업용 요소가 부족할 경우 비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식량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가격 인상 및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등으로 비료 공급망 위기가 대두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공급망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6월 5일 ‘비료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

다음으로,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2025.3.25.)」에서 대안별 연간 비용을 추정하면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연간 40~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미 2026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연간 9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요소 가격 상승 시 정부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2025년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이 차량용 요소에 대한 수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수입선다변화 사업 역시 차량용 요소 수입분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는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실제 수급 차질이 발생했던 품목 위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를 떠나 차량용과 산업용, 농업용 요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이는 주로 순도 및 품질관리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요소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은 어느 한 용도에 국한되어 검토되기 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뉴스1,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 2026.6.5.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요소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차량용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요소 수급 안정화 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3-2.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중장기 지속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고위험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 사업은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및 반도체 공정용 소재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145억 5,800만원 중 12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위험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 | 4,547 | 90,545 | - | 90,545 | 87,071 | - | 3,474 | 135,036 | 813,345 |
| 고위험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 | 14,558 | - | 14,558 | 12,434 | - | 2,124 | 29,116 | 29,116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3조4)는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및 증설,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이에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2개 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선정하여 가동률 50% 기준,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에 대해 국고 보조율 7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5년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내용 | 2025예산 |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 (불용) |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 단가차액(미공개)×생산량(미공개, 가동률 50% 한도)×국비보조율(70%) = 14,558 | - | 14,558 | 12,434 (2,124)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2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2027년 사업 종료 이후 재가동된 시설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증장기 운영방안이나 후속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사업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국내 업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를 완화할 목적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설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제조 능력에 비해 관련 원소재 공급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절차를 강화했던 사례를 계기로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자립화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불화수소의 원소재이며 반도체 공정용 소재인 무수불산이나,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97%, 95%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반면에 2025년 기준 무수불산의 국내 생산 업체는 국내 전체 수요의 15% (9,000톤) 수준만 생산이 가능하고, 흑연 생산 업체는 연간 생산능력이 국내 전체 수요의 80% (70,000톤) 수준이나 수입 대비 경제성이 낮아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2종을 선정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가동하도록 한 후 가동률 한도 50%,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의 70%를 국고로 보조하기로 하였다.

[2025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사업기간 | · 사업기간 : 2025년부터 24개월 |
| 수행기관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지원대상 |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예 : 반도체 공정용 소재및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등) · 생산시설이 있음에도 원가 경쟁력 열위로 생산유지가 어려운 기업 |
| 지원내용 | ·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의 70% · 생산시설 가동률 50% 수준 · 2025년은 6개월분 지원 |
| 지원규모 | · 145억 5,800만원 |

자료: 산업통상부

추경 예산의 국회 확정 이후 산업통상부는 2025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하였고, 신청기업 9개사 11개 품목에 대해 심의한 후, 8월 20일에 개최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1개 품목의 1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는 9월 12일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 후 하반기 생산량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025년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기업 선정 현황]

| 구분 | 접수기간 | 신청기업 | 선정기업 | 지원규모 |
|----|------------------|-------------|------------|--------------|
| 내용 | 2025.5.21.~6.19. | 9개사, 11개 품목 | 1개사, 1개 품목 | 124억 3,400만원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당초 2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개 품목은 2025년 내에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예산 21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다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현재 공장 재가동 준비 중으로, 준비 완료 후 생산 재가동 실적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부터 24개월간만 지원될 예정으로,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생산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지원한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 조달, 국내 정제 및 가공, 수요기업 공급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체계가 일정 수준 구축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기업과의 거래 기반 및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해외 저가 공급과의 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국고 지원 종료 후에는 어렵게 재가동한 생산시설이 다시 가동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단기간의 생산 보조만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 종료 후 수요기업이 다시 저가 수입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생산체계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2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2027년 사업 종료 이후 재가동된 시설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장기 구매계약 확대, 공공 비축 연계 등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이나 후속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3-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보조사업 공시 의무 준수 필요 등

가.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⁵⁾은 공급망경제안보 관련 첨단전략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설비 투자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 | 4,547 | 90,545 | - | 90,545 | 87,071 | - | 3,474 | 135,036 | 813,345 |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 - | 70,000 | - | 70,000 | 70,000 | - | - | 100,000 | 100,00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2025년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4개 분야를 지원하였다. 지원내용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입지를 매입하거나 건설투자, 기계장비 구입 등의 설비에 투자할 경우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현금을 보조하는 것이다. 국고보조율은 수도권·비수도권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 지자체지원금 확보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5) 코드: 일반회계 3574-306의 내역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 | | |
|-----------|---|------|-----|--------|------|-----|--------|
| 사업기간 | · 사업기간 : 2025~2027년 | | | | | | |
| 수행기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기업(간접보조사업자) | | | | | | |
| 지원대상 | · (2025) 반도체이차전자바이오·디스플레이 · (2026) 반도체이차전자바이오·디스플레이 + 로봇방산 | | | | | | |
| 지원내용 | · 기업의 신규 입지(토지매입비) 및 설비투자비(건설투자, 장비구입) 일부 | | | | | | |
| 지원한도 | · 전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 | | | | |
| 지원율 한도 | 구 분 | 중견기업 | | | 중소기업 | | |
|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수도권 | 12% | 18% | 70% 이상 | 16% | 24% | 60% 이상 |
| | 비수도권 | 24% | 16% | 60% 이상 | 30% | 20% | 50% 이상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통해 선정한 22개 기업에 대해 기업별 사업기간(2~3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시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추경을 통한 정책효과와 즉시성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7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7월 23일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다. 9월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11월 서면평가현장조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지원대상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추진경과]

| 일자 | 내용 |
|------------|---|
| 2025.7.18.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
| 2025.7.25. | 지원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 공고 - 접수기간: 7.25. ~ 9.26. |
| 2025.11. |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발표평가 |
| 2025.12. |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사업 집행 결과 총 22개사를 선정하여 2027년까지의 투자계획 5,560억 8,000만원에 대해 2025년 국고보조금은 686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분야별로는 이차전지 분야 10개 기업에 414억 3,400만원을 보조하여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반도체 분야 8개사에 234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각각 1개사씩 지원하였다.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선정 결과]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 바이오 | 반도체/ 이차전지 | 반도체/ 디스플레이 | 합계 |
|----------------|---------|---------|-------|-------|--------------|---------------|---------|
| 기업수 | 8 | 10 | 1 | 1 | 1 | 1 | 22 |
| 투자계획 | 281,699 | 249,766 | 5,500 | 4,890 | 4,750 | 9,475 | 556,080 |
| 2025년 국고보조금 | 23,494 | 41,434 | 300 | 999 | 900 | 1,516 | 68,643 |

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집행 사업관리비(1,319백만원)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5년에 선정된 22개사 중 6개사는 총 투자기간이 2026년까지이고, 16개사는 202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총 투자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1차년도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투자가 진행되는 6개사에 대해서는 총 투자계획 1,819억 100만원의 8.7%인 157억 6,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2025년에 전액 교부하였고, 2027년까지 투자가 진행되는 16개사에 대해서는 총 투자계획 3,741억 8,000만원의 14.1%인 528억 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2025년에 전액 교부하였

다. 이에 따라 N사와 R사의 경우 2025년 투자계획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A사B사 등 5개 기업에는 2025년 투자계획과 동일한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다.

[2025년도 선정 기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국고보조액]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업명 | 투자계획 | | | | 2025 국고보조금 (C) | 전체 보조율 (C/B) | 2025 보조율 (C/A) |
|----------------|---------|-------------|---------|---------|-----------|----------------------|--------------------|----------------------|
| | | 2025 (A) | 2026 | 2027 | 합계 (B) | | | |
| 2년 투자 기업 | D사 | 73,542 | 50,058 | - | 123,600 | 1,500 | 1.2 | 2.0 |
| | J사 | 2,335 | 2,535 | - | 4,870 | 1,168 | 24.0 | 50.0 |
| | N사 | 6,430 | 25,722 | - | 32,152 | 9,645 | 30.0 | 150.0 |
| | O사 | 9,529 | 1,500 | - | 11,029 | 2,250 | 20.4 | 23.6 |
| | S사 | 500 | 5,000 | - | 5,500 | 300 | 5.5 | 60.0 |
| | V사 | 1,400 | 3,350 | - | 4,750 | 900 | 18.9 | 64.3 |
| | 소계 | 93,736 | 88,165 | - | 181,901 | 15,763 | 8.7 | 16.8 |
| 3년 투자 기업 | A사 | 720 | 4,418 | 240 | 5,378 | 720 | 13.4 | 100.0 |
| | B사 | 1,200 | 12,804 | 4,278 | 18,282 | 1,200 | 6.6 | 100.0 |
| | C사 | 10,000 | 3,150 | 21,850 | 35,000 | 4,200 | 12.0 | 42.0 |
| | E사 | 2,933 | 32,414 | 16,832 | 52,180 | 2,933 | 5.6 | 100.0 |
| | F사 | 10,815 | 12,618 | 12,617 | 36,050 | 10,815 | 30.0 | 100.0 |
| | G사 | 627 | 3,870 | 513 | 5,010 | 266 | 5.3 | 42.4 |
| | H사 | 1,860 | 2,720 | 1,620 | 6,200 | 1,860 | 30.0 | 100.0 |
| | I사 | 409 | 391 | 200 | 1,000 | 240 | 24.0 | 58.7 |
| | K사 | 90 | 544 | 121 | 755 | 90 | 11.9 | 100.0 |
| | L사 | 37,000 | 58,800 | 21,200 | 117,000 | 9,000 | 7.7 | 24.3 |
| | M사 | 1,546 | 2,374 | 420 | 4,340 | 1,041 | 24.0 | 67.3 |
| | P사 | 3,341 | 7,765 | 1,500 | 12,606 | 3,000 | 23.8 | 89.8 |
| | Q사 | 11,361 | 25,318 | 9,336 | 46,014 | 9,000 | 19.6 | 79.2 |
| | R사 | 3,159 | 9,811 | 7,030 | 20,000 | 6,000 | 30.0 | 189.9 |
| T사 | 1,229 | 1,765 | 1,897 | 4,890 | 999 | 20.4 | 81.3 | |
| U사 | 4,376 | 1,107 | 3,992 | 9,475 | 1,516 | 16.0 | 34.6 | |
| 소계 | 90,666 | 179,869 | 103,646 | 374,180 | 52,880 | 14.1 | 58.3 | |
| 합계 | 184,402 | 268,034 | 103,646 | 556,081 | 68,643 | 12.3 | 37.2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3년 동안 진행되는 기업의 입지·설비투자액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면서 1차년도에 사업기간 동안의 보조액을 전액 교부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 추경을 통한 정책효과의 즉시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3조6)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과 2027년 기업 투자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2025년에 모두 지급한 것은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7)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8)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교부되는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9조9)는 보조사업의 실

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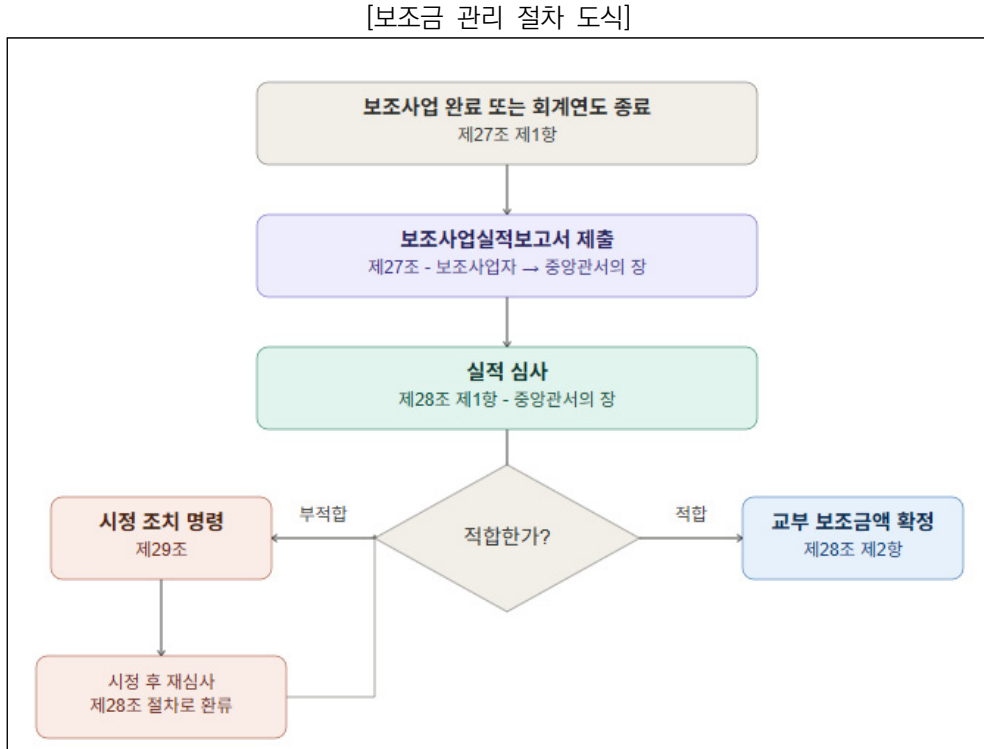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적이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와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액 확정, 제29조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 절차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에서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기업의 투자보조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1차년도에 전액 교부함으로써 회계연도별 실적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더라도 이후 교부 규모를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집행을 관리하는 등 사전적 관리 수단의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회계연도별 보조금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설되었다. 추경예산은 신속한 경기 대응과 투자 촉진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임에도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의 실제 투자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2~3년 동안 나누어서 지원하여도 되는 재원을 당해연도에 일괄 교부하였고, 이와 같은 집행으로 인해 추경예산의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추경 재원이 기업 내에 2~3년간 유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

이에 따라 22개사에 지급된 2025년 추경예산 686억 4,300만원 중 2025년말 기준 실집행액은 239억 4,500만원(34.9%)에 불과하였고, 2026년 6월말 기준 252억 7,300만원(56.5%) 수준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 | | | | | 2026.6. | | |
|-----|--------------------|------------|----------|------------|--------------|-------------------|------------|--------------|
| | 당해연도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집행률 (B/A) | 전년도 이월액 (C) | 집행액 (D) | 집행률 (D/C) |
| 집행액 | 68,643 | - | 68,643 | 23,945 | 34.9 | 44,698 | 28,885 | 64.6 |

자료: 산업통상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통해 선정한 22개 기업에 대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별 사업기간(2~3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일시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추경을 통한 정책효과의 즉시성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0)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의 다년도 투자가 조기에 착수되고, 민간 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재원을 1차년도에 일괄 교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2025년 보조사업자 중 다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2027년까지의 기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2025년에 전액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22개사가 실질적으로 2025년 집행한 규모는 239억 4,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잔액은 모두 2026년으로 이월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등 정보공시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보조사업자 공시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¹¹⁾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¹²⁾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해당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초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중순 기준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공시된 곳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1곳이며, 간접보조사업자인 22개사는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조사업자 공시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비(합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부담금 | 자기 부담금 |
|------|-----------------------------------|-----------|---------|--------|---------|--------|
| 2025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70,000 | 70,000 | - | - |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제1항13)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회계연도를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기획예산처는 다년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때는 각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간접보조사업자 22개사의 보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0일 이월명세서 제출 및 이월 승인이 완료되었고, 2025회계연도 내에 사업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보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1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14)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22개사에 대한 “사업기간(종료일) 기준으로는 모두 2026년도에 사업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들의 공시 수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회계연도 2026년)”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시스템 상 정보공시 대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동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22개사는 2025년 협약기간이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시스템 상 정보공시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2026회계연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보공시 메뉴가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가 22개사에 2~3년에 걸쳐 집행이 가능한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하고, 협약기간 역시 2개년도에 걸쳐 설정하였기 때문에 시스템 상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의무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보공시 제도가 지향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¹⁵⁾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5년에 2~3년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상당액의 보조금 이월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결과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시 의무 이행 여부가 사업 종료 이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삭감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을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상 목록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시스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요재산 공시

다음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16)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자 등이 해당 재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7)는 중요재산의 범위와 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고, 제3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상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18)는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를 국고보조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증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증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은 10년, 기계·장비 등은 5년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내용이 기업의 입지와 설비투자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기계·장비 등의 중요재산이 공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및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는 보조사업을 통한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고 있지 않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시스템)에 공시된 산업통상부 소관 보조사업 중요재산목록에는 동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¹⁹⁾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중요재산은 일정 기간 임의처분이 제한되는 데, 이는 중복 지원이나 편법 처분,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2025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신규사업 기획용역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원칙이나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물품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19)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자 최종 확정일 회계연도 종료일(2025.12.)에 근접한 시점(2025.11.)에 이루어졌고, 2025년 말 기준 취득 자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평가위원회 운영, 성과 관리 및 제도개선 등 사업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동 사업 예산 700억원 중 1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도 사업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건비 | 경상경비 | 시스템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 합계 |
|-----|-----|------|---------|-------|-------|-------|
| 집행액 | 870 | 36 | 50 | 154 | 209 | 1,319 |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일반용역비로는 콜센터 운영 및 홍보전시관 운영 용역 등에 3,930만원 과 연구용역 1억 7,000만원 등 총 2억 93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5년도 일반용역비 집행 상세내역]

(단위: 천원)

| 지급일자 | 거래처명 | 집행용도 | 집행액 |
|-------------|---------------|-------------------|---------|
| 2025.8.19. | 주식회사 아이피투비 | 콜센터 용역 | 15,600 |
| 2025.10.27. | (주)누리안이앤씨 | 홍보전시관 구성 용역 선금지급 | 15,840 |
| 2025.11.17. | (주)누리안이앤씨 | 홍보전시관 구성 용역 잔금 지급 | 3,960 |
| 2025.11.24. | 주식회사 아이피투비 | 콜센터 용역 | 3,900 |
| 2025.12.24. | 주식회사 이노싱크 컨설팅 | 상생파운드리 신규기획 자금 | 170,000 |
| 합계 | | | 209,300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은 동 사업 직접 수행이 아닌 신규사업(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위해 집행되었다. ‘상생파운드리 신규기획’ 공고문을 살펴보면, 해당 용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상생 파운드리랩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 용도와

의 부합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²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증 갈등, 대미 관세 및 통상리스크 심화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산 내재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생 파운드리'를 국내 파운드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재정을 활용하여 민간의 파운드리 투자를 촉진하는 상생팹 기획은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투자지원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상생파운드리팹 사전 기획용역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상생파운드리팹 사업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응 |
| 용역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생파운드리팹 사전 기획 용역 |
| 기획사업명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12인치 레거시 반도체 상생파운드리팹 구축사업' |
| 용역기간 | 2025.10.21.~12.26. |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 주요내용 | 민-관협력 '상생 파운드리' 사업의 타당성 분석, 기술성 평가, 신규사업 기획 관련 조사 대응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²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증 갈등, 대미 관세 및 통상리스크 심화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산 내재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생 파운드리'를 국내 파운드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생팹 기획은 공급망 안정 및 투자지원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동 사업은 대미 관세에 따른 경제 난관을 극복하고자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고, 해당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상리스크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란 하더라도, 추경 편성 목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에 추경 재원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향후 이와 같은 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 불용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 초래

가. 현황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252억 1,300만원이나 반도체 특화단지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설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1,17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추경 예산 1,422억 2,100만원 중 83억 6,600만원을 감액 이용하였고, 예산현액 1,338억 5,500만원 중 1,148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지원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본예산 | 추경 |
| 첨단전략산업특 화단지기반시설 지원구축 | 25,213 | 142,221 | - | △8,366 | 133,855 | 114,812 | - | 19,043 |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²⁾에 따라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171-364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제20조3)에 따라 산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역은 총 12개 특화단지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구분 | 반도체(2) | 이차전지(4) | 디스플레이(1) | 바이오(5) |
|----|-----------------|--------------------------|----------|-----------------------------------|
| 지역 |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 충남 천안/아산 | 인천/시흥, 대전 유성, 춘천/홍천, 전남 화순, 안동/포항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본예산 252억 1,300만원을 통해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제1회 추경을 통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고,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과 변전소 구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1,170억 8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년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지원구축 내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산업 | 위치 | 구축시설 | 2025 | |
|---------|----------|--------------|---|--------------------------|---------|
| | | | | 본예산 | 추경 |
| 포항 | 이차 전지 | 블루밸리 국가산단 | 염 처리수 지하관로(약 11km) (본예산) 24,000백만원×30% → (추경) 24,000백만원×50% | 7,130 | 11,930 |
| 청주 | | 오창2산단 | 전력공급시설(4km) (본예산) 14,650백만원×25% → (추경) 14,650백만원×40% | 3,593 | 5,791 |
| 새만금 | | 국가산단 | 전력공급시설(11.2km) (본예산) 43,400백만원×25% → (추경) 43,400백만원×40% | 10,780 | 17,290 |
| 울산 | | 미포국가 산단 | 진입도로(1.9km) (본예산) 14,000백만원×25% → (추경) 14,000백만원×50% | 3,430 | 6,930 |
| 용인 | | 반도체 | 일반산단 | 폐수처리시설 (추경) 49,930백만원 | - |
| 평택 | 일반산단 | | 변전소, (추경) 49,930백만원 | - | 49,930 |
| 기획평가관리비 | | | (본예산) 4개 지역×70백만원 → (추경) 6개 지역×70백만원 | 280 | 420 |
| 합계 | | | | 25,213 | 142,221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각 사업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포항의 경우 포항시에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지하관로를 10.58km 규모로 매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240억원)의 50%인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② 청주의 경우 1개사 공장 주변에 154kV 선로 4km와 전력맨홀 10개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146.5억원)의 약 40%인 57억 9,1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③ 새만금의 경우 4개 기업의 신규 착공 예정 공장 주변에 154kV 6km와 22.9kV 5.2km를 연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434억원)의 40%인 173억 6,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④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미포국가산단으로의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140억원)의 50%인 70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⑤ 용인의 경우 1개사

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3조 6,102억원) 중 5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며, ⑥ 평택의 경우 1개사에서 2단지 변전소를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2,206억원) 중 5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2025년 지원대상 사업지별 내용]

| 구분 | 이차전지 | | | | 반도체 | |
|----------|------------------------------|-------------------------------------|----------------------------------|--|--------------------------------------|-------------------------------|
| | ①포항 | ②청주 | ③새만금 | ④울산 | ⑤용인 | ⑥평택 |
| 기간 | 2024~2026 | 2024~2026 | 2024~2026 | 2025~2028 | 2024~2035 | 2023~2026 |
| 내용 | 처리수 지하관로 10.58km 매설 | 154kV 선로 4km 및 전력맨홀 10개 설치 | 154kV 6km, 22.9kV 5.2km 연장 | 도로확장 L=1.9km, B=10m/ 2차로 → 20m/4차로 | 폐수처리시 설 확충(FAB 1기분, 39만톤/일) | 2단지변전소 확충(345kV, 0.5GW) |
| 총사업 비 | 240억원 | 146.5억원 | 434억원 | 140억원 | 3조 6,102억원 | 2,206억원 |
| 국비 | 120억원 (50%) | 57.91억원 (40%) | 173.6억원 (40%) | 70억원 (50%) | 500억원 (정액 지원) | 500억원 (정액 지원) |
| 지원 대상 | 포항시 | 1개사 | 4개사 | 울산광역시 | 1개사 | 1개사 |

주: 국비 지원규모에는 기획평가관리비 일부 포함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동 사업 예산의 이용은 2025년 12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동 사업에서 83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용 사유는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해외무역관의 임차료 등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2025회계연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이용 (2025. 12.15.) | 첨단전략산업특 화단지기반시설 구축지원 (364) | 350-02 (사업 출연금) | 8,366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310) | 320-01 (민간경상 보조) |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임차료 등 부족분 총당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및 증액 추경을 시행하였으나, 인허가 미취득, 기업의 투자 철회 등으로 감액 이용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에 이어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등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4)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비지원 비율은 2024년 8월 30일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 제2024-140호)」 제4조제3항5)을 근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에 따라 15~3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왔다.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 제2024-140호)」 제4조(지원방법) ③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15~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당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 구분 | 단지별 투자 규모 | | | 비수도권 | 수도권 |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 |
| 상 |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 30조원 이상 | 10조원 이상 (포항·울산) | 30% | 25% |
| 중 | 10~100조원 | 3~30조원 (천안·아산) | 1~10조원 (청주·세만금) | 25% | 20% |
| 하 | 10조원 미만 (구미) | 3조원 미만 | 1조원 미만 | 20% | 15% |

주: 2024년 7월 신규로 선정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미정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 4월 14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하기로 하였고, 제1회 추경이 확정된 후인 2025년 5월 13일 고시를 개정하였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개정 내용]

| 구분 | 단지별 투자 규모 | | | | 비수도권 | 수도권 |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바이오 | | |
| 상 |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 30조원 이상 |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 5조원 이상 (인천·시흥, 대전) | 50% | 40% |
| 하 | 100조원 미만 (구미) | 30조원 미만 (천안·아산) | 10조원 미만 (청주, 세만금) | 5조원 미만 (춘천·홍천, 화순, 안동·포항) | 40% | 30%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사업 추진 결과 다른 사업지의 경우 협약 체결, 착공 및 사업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①포항과 ③세만금 사업지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구체적으로 ①포항은 예산액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③세만금은 172억 9,000만원 중 83억 6,600만원을 감액 이용한 후 예산 현액 89억 2,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만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0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2025년 지원대상 사업지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차전지 | | | | 반도체 | | 합계 |
|-----|--------|-------|--------|-------|--------|--------|---------|
| | ①포항 | ②청주 | ③새만금 | ④울산 | ⑤용인 | ⑥평택 | |
| 예산액 | 11,930 | 5,791 | 17,290 | 6,930 | 49,930 | 49,930 | 142,221 |
| 이전용 | - | - | △8,366 | - | - | - | △8,366 |
| 집행액 | - | 5,791 | 1,881 | 6,930 | 49,930 | 49,930 | 114,892 |
| 불용액 | 11,930 | - | 7,043 | - | - | - | 19,043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지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본 결과, ①포항의 경우 염 처리수 지하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미 기본설계·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관할기관(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③새만금의 경우 총 4개사의 전력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B사는 수요감소 등으로 투자가 취소되었고, C사와 D사는 미국 관세를 회피하고자 국내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였다.

[집행부진 사업지의 추진경과 및 집행부진 사유]

| 구분 | | 포항 | 새만금 | |
|------|-------------|------------------|-----------------|---------------------------|
| | | | 1개사 | 3개사 |
| 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4.1.~2024.9. | 2025.1.~2025.5. | 미정 |
| | 환경영향평가 | 2023.11.~2024.1. | 미대상 | 미대상 |
| | 공사기간 | 2025.7.~2026.7. | 2025.5.~2026.6. | 미정 |
| 집행결과 | | 인허가를 받지 못해 미착공 | 집행완료 (A사) | 투자 취소(B사), 투자 철회 (C사, D사)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6)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① 포항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 및 착공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이 었다는 점에서 인허가 미취득으로 인해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다.

또한 ③ 새만금 사업지의 경우에도 3개사 모두 착공시점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업들이 12월에 사업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비 일부가 불용되었다.

구체적으로 4개사 중 B사의 경우 2025년 7월 공장 착공 이후 7월에 배전선로 설계에 들어가고, 9월에 배전선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12월 3일 사업 철회를 통보하였고, C사의 경우 2025년 8월 공장 착공 이후 9월 중 배전선로 설계·착공할 계획이었으나 12월 9일 사업을 철회하였다. 또한, D사의 경우에도 9월 중 배전선로 설계·착공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2월 24일 사업 철회를 통보하였다.

[2025년 새만금 지역 수행기관별 당초 추진계획 대비 변동사항]

| 구분 | 당초 계획(6월 기준) | 변동사항(12월 기준) |
|----|---|-------------------------|
| A사 | - 1차 공장 착공(2024.2.) - 22.9kV 완공(2024.12.) - 154kV 설계(2025.3.) 및 착공(2025.5.) | - 배전선로 완공(2026.3.) |
| B사 | - 공장착공(2025.7.) - 배전선로 설계·착공(2025.7.~9.) | - 사업 철회 통보(2025.12.3.) |
| C사 | - 공장착공(2025.8.) - 배전선로 설계·착공(2025.9.) | - 사업 철회 통보(2025.12.9.) |
| D사 | - 공장착공(2025.8.) - 배전선로 설계·착공(2025.9.) | - 사업 철회 통보(2025.12.24.)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고시 제2024-140호)」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시에도 새만금 지역의 3개사 모두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업들이 연도 말에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환경 및 투자계획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2024년 ‘구미첨단전략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 20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던 점⁷⁾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 사전준비 현황, 기업의 투자 의지,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동 사업에는 2024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교량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이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되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착공 준비(사전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가 선행되지 않아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후 전액 미교부 불용처리한 바 있다.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부진 문제

가. 현 황

친환경차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¹⁾은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설비투자 및 M&A 등 전환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 5,494 | 7,513 | - | 7,513 | 7,513 | - | - | 7,379 | 7,379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자금수요 부품기업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이 산업은행 등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업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2.0%p의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차 전환 부품기업이나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 및 M&A 투자비, R&D 비용 등이다.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대상 | 이차보전율 | 상환조건 | 기업별 지원한도 |
|--|--------------------------|--|-------------------------------------|
| 친환경차 전환 부품기업 등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 및 M&A 투자비, R&D 비용 등 | 중견기업 1.5%p 중소기업 2.0%p | (시설/M&A) 3년 거치 8년 이내 (R&D/경영안정) 3년 거치 5년 이내 | (시설/M&A/R&D) 100억원 (경영안정) 5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M&A자금 등 투자용도의 신규대출 약 5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3억 9,300만원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50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 관세 부과로 자동차 부품 수출 업계의 경영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약 2,500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시행을 위해 19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현황]

| 구분 | 자금용도 | 지원대상 | 대출규모 | 이차보전금 |
|------|------|--|---------------------|----------|
| 본예산 | 투자 | 친환경차 전환 부품기업 등 | 3,194억원 (신규 500) | 5,406백만원 |
| 추경예산 | 경영안정 | 친환경차 부품을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실적 보유기업 | 2,500억원 | 1,927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은 2025년 추경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요 부족에 따라 목표로 한 2,500억원의 15%를 달성하는 데 그쳤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타 부처 유사 사업과 현장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친환경차 부품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대출원금 약 3,194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 중 신규 대출 규모는 500억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 차액은 3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 신규 자금을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였고, 총 63건에 대해 약 3,200억원이 접수되었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중 심사를 거쳐 총 14건, 약 722억원에 대해 용자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10건에 대한 470억원의 대출이 시행되었다. 이는 신규 대출에 대한 당초 목표 500억원 대비 30억원 가량 적은 규모였다.

[본예산 신규대출 실행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 접수(기업) | | 선정(전문기관) | | 대출 실행(은행) | |
|---------------------------------|--------|-----|----------|-----|-----------|-----|
| | 대출원금 | 신청건 | 대출원금 | 추천건 | 대출원금 | 승인건 |
|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본예산-투자자금) | 3,200 | 63 | 722 | 14 | 470 | 10 |

자료: 산업통상부

반면,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신규대출액은 약 375억원으로 목표금액 2,500억원의 15.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5월 29일 추경예산에 대한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권역별 사업설명회, 라디오·SNS 홍보 및 지역별 간담회 추진 등 적극적인 수요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초 9월 30일 접수 마감일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접수 결과 총 128건, 629.5억원 규모로 수요가 저조하였고, 이 중 110건, 543.5억원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총 78건, 375억원에 불과하였다.2)

2) 추천금액 대비 대출실행액이 저조한 것은 금융기관 여신심사 시, 신용담보 등 재무적 건전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대출거절, 일부 금액 승인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추경예산 신규대출 실행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 접수(기업) | | 선정(전문기관) | | 대출 실행(은행) | |
|----------------------------------|--------|-----|----------|-----|-----------|-----|
| | 대출원금 | 신청건 | 대출원금 | 추천건 | 대출원금 | 승인건 |
|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추경예산-경영자금) | 629.5 | 128 | 543.5 | 110 | 375.4 | 78 |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추경예산에 대한 신규대출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액 75억 1,300만원 중 5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억 8,700만 원은 국고 반납하였다.

[2025년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해연도 교부액(A)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집행률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국고반납) |
|-------|-------------|---------|-------|---------|-------|----------|-------------|
| | | | | | (B/A) | | |
| 이차보전금 | 7,333 | - | 7,333 | 5,546 | 75.6 | - | 1,787 |
| 사업운영비 | 180 | - | 180 | 180 | 100.0 | - | - |
| 합계 | 7,513 | - | 7,513 | 5,726 | 76.2 | - | 1,787 |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대출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추경안 편성 시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대출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용자)(1,000억원,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5,000억원, 증액), 금융위원회의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시설·운영자금 4조원 신설) 등 친환경차 관련 부품기업도 경영안정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은 대출 수요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하는 것과 달리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실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

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고, 정부 재원을 기초로 용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보다 저신용 기업에도 대출 실행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대출금리를 보더라도 친환경차보급촉진이자보전 사업의 경우 대출 금리 평균(2025년 12월 기준)이 중소기업 4.73%, 중견기업 4.65% 수준이었는데, 이는 시중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 즉, 시중은행 대출 이자율이 타 부처의 용자사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이 아닌,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2.85%)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3.65%) 등을 신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한 대미 관세 피해기업 용자지원 사업 현황]

| 구분 | 친환경차보급촉진 이자보전 |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용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용자) |
|---------------|--|------------------------|--|----------------------------|
| 소관 |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 |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 |
| 지원업종 | 자동차 부품업계 | 전 업종 | 전 업종 | 전 업종 |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전체 기업 |
| 지원요건 | 대미 수출실적 입증 | 대미 수출실적 입증 | 재해, 경영애로 | 관세 피해 입증 |
| 자금용도 | 경영자금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운영자금 |
| 지원방식 | 이자보전 | 용자 | 용자 | 용자 |
| 대출목표 | 2,500억원 | 1,000억원 | 5,000억원 | 시설자금(1조원), 운영자금(3조원) |
| 만기 | 2026년말까지 (최대 17개월) | 시설자금(10년), 운전자금(6년) | 5년 이내 | 시설자금(15년), 운영자금(1년) |
| 이자율, 이자보전율 | [시중은행 대출금리 - 2.0%p(중소), - 1.5%p(중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 재해: 1.9% 고정 경영: (정책자금 기 준금리 + 0.5%p) | 시설: 최저 국고채, 운영: 산은 최저금리 |
| | | '25년 2분기 기준금리: 3.15% | | |
| 대출실행 기관 | 시중은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한국산업은행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친환경차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추경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저조했던 것은 중소기업부나 금융위원회 등에 업종과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했고, 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높을 경우 더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차보전 방식에 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 등에 따라 금리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용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 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타 부처의 유사 사업 등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연 및 불용 문제

가. 현황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¹⁾은 향후 10~20년 후 신시장을 형성할 전략 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소기술실증 및 시제품·생산공정 등 통합솔루션을 종합 개발·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고, 42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 5,000 | 5,000 | - | 5,000 | 800 | - | 4,200 | 4,030 | 4,030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① 생산 자동화 및 로봇, ② 에너지, ③ 모빌리티,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⑤ 바이오·의료의 5개 전략분야에서 기존시장을 혁신하거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10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며, 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연구소·기업 등이다.

2025년 예산은 신규과제 12개와 총괄과제 1개를 상반기 중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부는 총괄과제 1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8억원을 연구관리전문기관에 교부하였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174-367

[2025년도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 | 집행 |
|------|--|-----------------------------------|
| 신규과제 | (1단계) 신규 12개×400 ×9/12개월=3,600 (총괄과제) 신규 1개×1,870 ×9/12개월=1,400 | (총괄과제) 신규 1개×1,714 ×5/12개월=800 |
| 합계 | 5,000 | 800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은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결여 등 신규 기획내용의 미비로 예타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5년 예산의 84%가 불용되는 등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역시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2)에 따라 2024년 8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으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총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 예타 면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총 사업기간 | 총 사업규모 |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 2025~2034년 (총 10년) | 978,582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면제 |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3)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시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증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부터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였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까지 동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총괄지원과제와 신규과제 12개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추진경과]

| 주요내용 |
|-------------------------------------|
| ▶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2024.8.) |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2024.10.~2025.11.)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의 기획 내용의 미비로 적정성 검토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5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2025년 예산의 84%가 불용되는 등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

먼저, 2024년 10월에 착수한 적정성 검토 결과가 2025년 11월이 되어야 확정되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10년 동안 총사업비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증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9,786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는 3,026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 수준만 인정되었다. 특히 총사업비 중 국고지원 규모가 37.6% 수준으로 줄어든 데 비해 민간부담은 11.8%만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동 사업의 기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원안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테마별 RFP를 기반으로 도출되었고, 총괄 과제의 경우 기존 유사사업(산업기술알키미스트)과의 단계별 지원전략에서 중복 수행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민간참여 및 분담 의향도 원안에서 다소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구분 | 사업계획서(원안)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대안) |
|------|--|--|
| 사업기간 | 2025~2034년 (총 10년) | 2025~2035년 (총 11년) |
| 총사업비 | 9,785.82억원 (국고 7,250억원, 민자 2,535.82억원) | 3,026억원 (국고 2,726억원, 민자 300억원)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비는 미확정된 테마별 RFP를 기반으로 도출되어 산정 근거 미약 · 총괄 과제는 단계별 지원전략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복 수행되는 활동이 포함되는 등 예산 과다 · 민간참여의향 조사 결과 당초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일부 테마의 분담 의향이 과소하고, 일부는 분담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추진 방식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테마별 사업비와 민간 부담금은 유사사례를 통해 산정 · 총괄 과제는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확보 후 중복 활동 등을 조정하여 효율화 · 사업 착수 첫해에는 신규 테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p.26

한편,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50억원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8억원을 배정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는 8억원을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교부하였으며⁴⁾, 적정성 검토에서 불인정된 42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4) 산업통상부는 2025년 8월 총괄지원과제 공고를 시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연구테마 구체화 및 과제기획 등을 추진하였다.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 예산 수시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대상액 | 배정액 | 예산 배정일 | 수시배정 사유 | 집행부진 사유 |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 5,000 | 800 | 2025. 12.17. | 국무회의('24.8) 의결 에 따른 계획을 이행 하기 위해 수시배정 필요 | '25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5.11. 적정성 검토 결과 8억원으로 감액됨 에 따라 불용액 발생 |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0년 3월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8월 예타 면제 직후 차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원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등 신규 기획 내용이 미비하여 결과 도출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의 16%만 타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예산의 상당부분(84%)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한편, 국회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시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R&D 사업을 제외하도록 2026년 1월 29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향후 추진되는 신규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2025년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이 예타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던 비효율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사전 점검(연구형R&D) 및 사업추진심사(구축형R&D)를 거치게 된다.

[대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제도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
| <p>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
| <p>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의 경우처럼 사업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 점검 결과 도출 지연 및 사업비 감액 등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의 수요부족에 따른 사업 미착수 문제

가. 현황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¹⁾은 2만 3,000m³급 암모니아 병커링 선박²⁾ 건조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 시스템을 탑재·실증함으로써 암모니아 선박 기자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한국형암모니아 병커링선박건조지원 | 500 | 500 | - | 500 | 229 | - | 271 |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은 국내 개발 기자재 시스템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두 차례 공고에도 신청 수요가 전무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사업 미추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기획 및 수요예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171-370

2) 병커링 선박은 선박이 항구가 아닌 다른 선박(또는 육상 저장시설)에서 연료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친환경 연료(LNG 등) 공급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의미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950억원(국고 200억원, 민간부담 75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에 선박 건조사양을 확정하고, 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박 설계 건조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목표 | · 암모니아 병커링 선박 기술 및 운용기술 내재화를 위한 선박 건조 · 암모니아 병커링 선박 설계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시스템 선박 적용 지원 · 암모니아 병커링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모델 확보 지원 |
| 사업기간 | 2025~2028년 (총 4년) |
| 총사업비 | 총 950억원 (국고 200억원, 민간 750억원)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25년 추진계획 | · 선박 건조사양 확정, 건조사업자 선정 및 선박 설계 건조 계약 체결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신청기관이 전무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3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2025년 7월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부처에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한 예산 2억 2,900만원은 실집행 불용처리하였다.

[2025년도 공모차수별 신청 및 선정 현황]

| 구분 | 기간 | 신청 | 선정 | 신청자격 |
|-------|------------------|----|----|-------------------------|
| 1차 공모 | 2025.1.20.~3.20. | - | - | 공공성을 갖는 선박용 암모니아 병커링 관련 |
| 2차 공모 | 2025.4.2.~4.30. | - | - |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기존에 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해상에서 실증하고, 그 과정에서 트랙레코드(track record)를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의 ‘디젤-무탄소 연료 이중연료 엔진 및 핵심 부품기술개발(2021~2024년)’ 과제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2022~2025년)’, ‘중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내연기관 개발 및 실증(2023~2026년)’ 과제 등에 총 250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해상 중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부품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관련 선행 R&D 과제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
| 소재부품기술개발(R&D) - 디젤-무탄소 연료 이중연료 엔진 및 핵심 부품기술개발 | 2021~2024 | 8,217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 | 2022~2025 | 4,500 |
| - 중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내연기관 개발 및 실증 | 2023~2026 | 12,300 |
| 합계 | - | 25,017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의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상에서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 축적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동 사업의 중단 사유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사업 기획 당시에 비해 선박건조비용이 상승하여, 당초 95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1,3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의 글로벌 탄소세 도입이 1년 지연되는 등 규제환경이 변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선박건조비용 상승이나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으나, IMO의 글로벌 탄소세 도입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고, 2026년 하반기로 도입 결정이 미뤄졌다는 점³⁾에서 대외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3) 경향신문, “트럼프 반대에도 ‘해운 탄소세’ 순항...기후솔루션 ”IMO, 연말 합의 가능성“, 2026.5.4.
조선비즈, “선박탄소세 전면폐기 요구하는 美“, 2026.3.29.

특히, 해외 여러 나라(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

[해외 주요국의 암모니아 벙커링선 개발 현황]

| 구분 | 주체 | 개발 현황 |
|------|------------------------|---|
| 싱가포르 | 해양항만청 | 암모니아 발전 및 벙커링 프로젝트(2023.10.) 등 |
| 일본 | MITSUI E&S 등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
| 이탈리아 | Fratelli Cosulich | 중국 Nantong 조선소와 암모니아 벙커링선 건조 합작 MOU 체결(2022.9.) 등 |
| 노르웨이 | Azane Fuel Solutions 등 | 부유식 암모니아 벙커링 터미널 및 공급(최대 15척) 계약 체결(2022.4.)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의 미추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기획 및 수요예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울산항 내 PTS(Pipe to Ship) 실증을 이미 진행하여 시행하고 있고, 울산은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트럭-선박(Truck to Ship) 방식, 벙커링 기자재 시험 등을 추진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한 벙커링 선박이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의 벙커링 방식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¹⁾은 조선해양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 1,191억 6,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선박해양의장설계디지털전환핵심기술개발 등 총 8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 119,165 | 119,165 | - | 119,165 | 119,165 | - | - | 194,412 | 194,412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73개에 916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규과제는 24개를 선정하여 27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25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지원내역]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계속·종료 | 신규 | 합계 |
|------|--------|--------|---------|
| 과제수 | 73 | 24 | 97 |
| 지원예산 | 91,694 | 27,471 | 119,165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51-302

나. 분석의견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최근 3년간 수요기업으로의 사업화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일부 과제에 사업화 성과가 편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기업의 사업화 계획과 투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과제 전반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화 실적을 살펴보면, 총 54개 과제에서 사업화 내수금액 430억 7,300만원과 수출금액 120억 9,9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도 사업화 성과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사업화 과제 수 | 수요기업으로 사업화 금액 | 사업화 내수금액(A) | 사업화 수출금액(B) | 사업화 성과 합계 (A+B) |
|----------|----------|---------------|-------------|-------------|-----------------|
| 2023 | 17 | - | 9,425 | 1,775 | 11,200 |
| 2024 | 11 | - | 7,744 | 33 | 7,777 |
| 2025 | 26 | - | 25,904 | 10,291 | 36,195 |
| 합계(중복제외) | 54(40) | - | 43,073 | 12,099 | 55,172 |

주: 2025년 성과는 검증 중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 중 수요기업으로의 사업화 실적이 낮게 발생하는 등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확산·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화 성과가 소수 과제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등 성과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먼저, 2023~2025년 기간에 사업화 실적이 있었던 40개 과제 중 수요기업이 참여한 과제는 17개로, 삼성중공업(주), 한화오션(주), HD현대중공업(주), SK오션플랜트, STX엔진(주), 대원마린텍 등 조선·해양 분야 주요 기업들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17개 과제에서 발생한 사업화 성과는 총 207억 700만원인데, 이 중 수요기업으로의 사업화 실적은 없었고, 타 조선사 및 기자재 협력사에 발생한 매출 46억 3,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기업 참여 주요 과제의 사업화 성과]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주관기관 | 수요기업 | 사업화 연도 | 사업화금액 | | |
|--|----------------|-----------|---------------|--------------|------------|-------------|
| | | | | 주관기관 자가실시 | 타 조선회 등 | 수요기업 사업화 |
| MW급 이상 암모니아 엔진용 배기가스 복합 후처리 시스템 개발 | (주)디에이치 콘트롤스 | STX엔진 (주) | 2025 | 10,884 | - | - |
| 저압 LCO2 운반선 핵심기자재 통합 실증 |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 한화오션 (주) | 2025 | 4,590 | - | - |
| 액체 CO2 운반선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CO2 상변화 고려 압력 제어기술 및 PRV 개발 | 정우이앤이 (주) | 한화오션 (주) | 2024~ 2025 | 1,491 | 967 | - |
| LCO2 화물운용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 Mt.H콘트롤 밸브주식회사 | 대원 마린텍 | 2025 | 1,980 | - | - |
| 기타 13개 과제 | - | - | 2023~ 2025 | 1,762 | 3,669 | - |
| 합계 | | | | 20,707 | 4,636 | - |

주: 2025년 성과는 검증 중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에 따르면, R&D 과제에서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요기업은 단순한 참여기관이 아니라, 개발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실제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업화를 희망하여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요기업이 참여한 과제에서 해당 기업으로의 구매·실시 성과가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

2)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표면적으로 수요기업이 참여한 과제에서 해당 기업으로의 적용·실시 성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주관기관의 사업화 자가실시 혹은 타 조선회 및 기자재부품 협력사로 사업화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신규과제 공고에서 수요기업 참여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구성 시 우대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개발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고, 조선·해양 분야는 기술 수요처가 제한적이고 대형 수요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기업 참여 여부가 개발기술의 실질적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과제 수행 결과 수요기업으로의 직접 사업화 실적은 제한적이거나, 타 조선사나 기자재 협력사로 사업화 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실적이 실제 수요기업의 사업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5년 조선해양기술개발(R&D) 사업 과제 공고 중 수요기업 관련 사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자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

다음으로 2023~2025년 사업화 실적이 발생한 40개 과제 중 실적 상위 5개 과제의 사업화 실적은 전체 사업화 실적의 61.6%를 차지하는 등 일부 과제에 사업화 성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 5개 과제의 사업화 성과 합계는 339억 9,600만원으로, 각 과제별 사업화 성과는 45억 9,000만원에서 108억 8,400만원 수준이었으나, 그 외 35개 과제의 사업화 성과 합계는 211억 7,500만원으로 평균 6억 500만원 수준이었다.

[2023~2025년도 사업화 성과 분포]

(단위: 백만원, %)

| 구분 | 사업화 성과 | 비중 |
|--|-----------|-------|
| MW급 이상 암모니아 엔진용 배기가스 복합 후처리 시스템 개발 | 10,884 | 19.7 |
|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및 Digital Bridge 개발 | 7,301 | 13.2 |
| LNG운반선용 4단 LD압축기 개발 | 6,114 | 11.1 |
| 중소형 선박 엔진용 복합 SCR 시스템 개발 | 5,107 | 9.3 |
| 저압 LCO2 운반선 핵심기자재 통합 실증 | 4,590 | 8.3 |
| 상위 5개 합계 | 33,996 | 61.6 |
| 그 외 35개 과제 | 21,175 | 38.4 |
| 합 계 | 55,171 | 100.0 |

주: 2025년 성과는 검증 중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일부 성공 과제를 제외한 상당수 과제는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다수의 과제에서는 기술개발 이후 실제 시장 진입이나 산업 현장 적용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고, 이는 사업 전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국회는 동 사업의 종료과제 중 상당수에서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기간 동안 사업화 금액도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해 사업화 성과가 개선되도록 종료과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지원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 내용 | | 시정요구 유형 |
|--|------------|--|------------|
|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사업명 | 일반회계-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3551-302) | 제도개선 |
| | 지적사항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017~2021년에 종료된 45개 과제에서 13건의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화 금액은 67억원으로 정부출연금 1,375억원 대비 저조하게 나타남 - 2017년~2021년 동안 종료된 45개 과제 중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32개 과제의 경우, 25개 과제는 사업화 준비 중이고 7개는 구체적인 사업화계획이 파악되지 않음 - 사업화 성과는 2019년 7억원, 2020년 14억원, 2021년 20억원임 | |
| | 시정요구 사항 | 산업통상부는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과가 개선되도록 종료과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 | |

자료: 국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 선정 시 수요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투자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 실적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¹⁾은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혈액, 소변 등 검체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며 공공데이터와 라이프로그²⁾를 수집연계하여 R&D 인프라로서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및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211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R&D) | 21,107 | 21,107 | - | 21,107 | 21,107 | - | - | 16,622 | 16,622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은 2023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5,353.73억원(국고 5,327.49억원, 민간 26.24억원) 규모로 추진되어왔으나,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총사업비가 5,868.54억 800만원으로 514.8억원 증액되었다. 총사업비 증액분은 중증질환자 및 일반국민참여자 72만명에 대한 참여인센티브(인당 5만원 수준) 363.4억원과 모집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및 시스템 연계비용 86억원, 대국민 홍보비용 65.4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651-442

2) 라이프로그(lifelog)란 '삶의 기록'을 뜻하는 말로, 취미, 건강 등에서 생성되는 개인 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동 사업은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해 2032년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00만명 규모의 9년 사업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하여 추진하되, 1단계 사업으로 5년간(2024~2028년) 77.2만명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국가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주요내용]

| 구분 | 1단계 (예타결과에 따라 1단계만 우선 추진) | | 2단계 (1단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 |
|------|--|--|--|
| | 2024~2026 | 2027~2028 | 2029~2032 |
| 사업기간 | 2024~2026 | 2027~2028 | 2029~2032 |
| 총사업비 | 5,868.54억원 | | 미정 |
| 참여자 | ~77.2만명 | | ~100만명 |
| 사업내용 | 임상·유전체 데이터 개방 - 임상정보(문진·검진·기초임상데이터·증례기록) - 유전체 데이터(희귀·중증·일반) | 질환군 오믹스 데이터 개방 - 임상정보(문진·검진·기초 임상데이터·증례기록·중증질환 특화정보) -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 2차 연계 데이터(공공데이터) | 통합 바이오 데이터 전체 개방 - 임상정보(문진·검진·기초 임상데이터·증례기록·중증질환 특화정보 등) -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 공공데이터, 라이프로그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간사 부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예산 비율은 보건복지부 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3%, 산업통상부 17.4%, 질병관리청 25.9%이다. 부처별로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모집·임상정보 연계 및 공공데이터 등 2차 자료 연계, 질병관리청은 검체수집·운송·저장 및 인체자원 제작을, 산업통상부는 기업 중심의 유전체 등 오믹스³⁾ 데이터 생산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석기관 중심의 오믹스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지원을 담당한다.

3) 오믹스(omics)는 개별 유전자(gene), 전사물(transcript), 단백질(ptotein), 대사물(metabolite) 연구에 대비되는 총체적 개념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분야를 의미한다.

[부처 간 역할 분담]

| 구분 | | 확보(모집·생산 등) | 이용 (공유·개방 등) |
|-------------------------|------------------------------|---------------------------------------|---|
| 참여자 (병원 모집, 검진센터 모집) |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연구 자원 | 검체(혈액, 소변, 조직) | 질병관리청 | |
| | 임상정보 | 보건복지부 | |
| |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 산업통상부(생산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석기관) | |
| | 2차 자료 연계 (공공데이터, 라이프로그 등) | 보건복지부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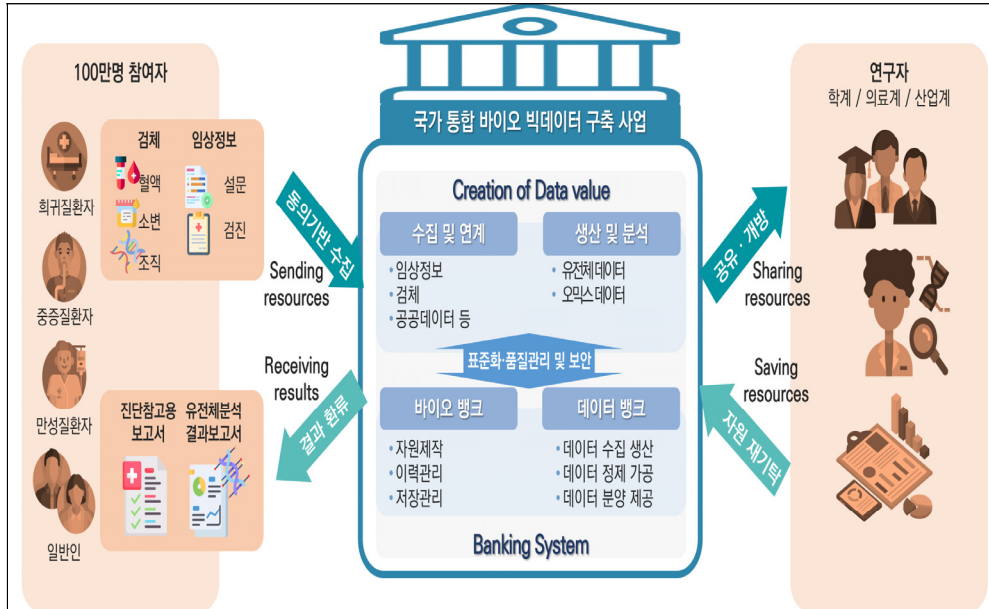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참여자 모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희귀중증질환자 모집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참여자 모집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사업 기간 연장 필요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경우 임상정보 수집이나 검체(혈액·조직·소변) 채취 및 인체자원 생산 등 핵심 역할이 대학병원 및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모집기관에서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일반국민참여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고, 설문이나 검진 등 임상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인체자원을 제작·운송하여 바이오뱅크를 거쳐 일부 인체자원은 입고 되고, 일부는 KOBIC(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유전체·오믹스 데이터로 생산·분석하게 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가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의 대상인 대표성 있는 참여자의 모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검체(혈액, 소변, 조직)나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바, 동 사업의 성공 여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⁴⁾

동 사업은 1차년도인 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참여자 모집 유인 부족 등으로 모집기관 선정이 2024년 12월말에 완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참여자 모집은 2025년 5월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이 모집기관 선정 및 참여자 모집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의 2024~2025년 참여자 모집실적 달성률은 2025년 12월말 기준 58.7%에 불과한 상황이다.

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023.9., p.68)에 따르면, '지역, 연령 등 여러 사회적 측면에 있어 전국민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참여자 모집 계획 고도화가 필요'하고, '상세 계획 및 실제 추진 단계에서 일반국민 또는 참여자의 의견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2024~2025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국민 총 20만 6,0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말 기준 12만 933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고, 2026년까지 참여자 모집 누적 목표는 39만 8,000명이나, 6월 4일 기준 18만 277명을 모집하여 4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24~2025 | | | ~2026 | | | ~2027 | ~2028 |
|-------|-----------|-----------|--------------|-----------|-----------|--------------|---------|---------|
| | 목표 (A) | 실적 (B) | 달성률 (B/A) | 목표 (A) | 실적 (B) | 달성률 (B/A) | | |
| 희귀질환자 | 8,800 | 3,263 | 37.1 | 16,000 | 4,704 | 29.4 | 24,000 | 32,000 |
| 중증질환자 | 36,000 | 7,005 | 19.5 | 70,800 | 12,644 | 17.9 | 104,800 | 138,800 |
| 일반인 | 161,200 | 110,665 | 68.7 | 311,200 | 162,929 | 52.4 | 446,200 | 581,200 |
| 합계 | 206,000 | 120,933 | 58.7 | 398,000 | 180,277 | 45.3 | 575,000 | 752,000 |

주: 2024~2025년 실적은 2025년 12월말 기준, 2026년 실적은 2026년 6월 4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참여자 모집 실적 저조 상황이 계속되자 산업통상부 등 참여부처는 각 모집기관별 참여자 모집 목표를 다음연도 이후로 순연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였고, 2025년 특정평가를 통해 확보한 참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모집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까지 75만 2,000명의 참여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참여자 목표 달성률도 저조한 상황이지만, 일반인에 비해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목표 달성률은 더욱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6월 4일 기준 전체 참여자 모집 목표 달성률은 45.3%인데 비해, 희귀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모집 목표 달성률은 각각 29.4%, 17.9%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모집 병원 19개 중 6월 4일 기준 목표 달성률이 10% 미만인 곳이 전북대학교병원(1.76%), 서울대학교병원(2.4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4.04%) 등 5개에 달한다.

[중증질환자 모집 달성률이 저조한 모집기관 현황]

(단위: 명, %)

| 구분 | 모집기관 | 모집목표(A) (~2026) | 모집인원(B) | 달성률(B/A) |
|----|---------------|--------------------|---------|----------|
| 중증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7,620 | 308 | 4.04 |
| | 서울대학교병원 | 3,810 | 94 | 2.47 |
| | 전남대학교병원 | 3,658 | 362 | 9.90 |
| | 전북대학교병원 | 2,380 | 42 | 1.76 |
|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1,582 | 80 | 5.06 |
| 암 | 국립암센터 | 3,048 | 370 | 12.14 |
|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6월 4일 기준)

이와 같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집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인당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부분 모집인원에 대한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참고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참여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모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희귀·중증질환자 모집이 구조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미달성 목표를 단순 이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질환군별 오믹스 데이터 구축은 암 환자 모집이 필수적으로, 이들에 대한 모집 실적이 저조할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 지연 원인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추진체계 및 참여자 모집 방식 개선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사업의 추가 지연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사업¹⁾은 바이오 후보물질을 고효율을 발굴하는 자동화 실험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51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및활용기반 구축(R&D) | 5,170 | 5,170 | - | 5,170 | 5,170 | - | - | 4,940 | 4,94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국고 1,244억 4,6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63억 2,100만원 규모로 착수되었다. 사업내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센터를 건립하고, 센터에 파운드리 단계별 장비를 도입하며, 이와 함께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장비 구축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센터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은 62억원이었고, 전액 집행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651-443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기간 | 2025~2029년 (총 5년) |
| 총사업비 | 1,263.21억원 (과기부 795.485억원, 산업부 448.975억원, 민간 18.75억원) |
| 사업내용 | ① 인프라구축 : 센터건립(과기부), 장비구축통합플랫폼 구축(산업부·과기부) ②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확산, 사업단 운영비(산업부·과기부) |
| 건축규모 | 연면적 8,865㎡ (지하 1층~지상 4층) |
| 구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 유성구)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은 착수연도부터 센터 구축 및 장비 도입 관련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연구개발기관의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칩을 설계·제조하듯이 생물체(미생물, 세포 등)를 설계·제작·시험·학습(D·B·T·L: Design-Build-Test-Learn)하는 자동화 연구시설을 의미한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반도체, AI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정부는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자동화·고속화 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산업통상부 소관 동 사업의 예산은 장비·통합플랫폼 구축 등 43억 2,000만원과 인력양성 1억 5,000만원, 사업단 운영비 7억원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예산 51억 7,000만원을 전액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교부하였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자 사업단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전액 집행하였으나, 12월말 기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실집행액은 8억 7,100만원, 실집행률은 16.8% 수준으로 저조하였다.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내용 | 2025 | | |
|---------|--------------|-------|------|------|
| | | 예산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인프라 구축 | · 장비구축(6종) | 2,154 | - | 0.0 |
| | · 통합플랫폼 구축 등 | 2,166 | 390 | 18.0 |
| 생태계 구축 | · 전문인력양성 | 150 | 38 | 25.3 |
| 사업단 운영비 | · 사업단 운영관리 | 700 | 443 | 63.3 |
| 합계 | | 5,170 | 871 | 16.8 |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5년 장비구축 예산 21억 5,400만원으로 단기 서열 분석기(Shot read sequence analyzer) 등 총 6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공고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26년 12월이 되어서야 공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6종의 장비를 2026년 12월 공고한 후 2027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5년 구축 계획 장비의 구축 진행 상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장비명 | 구축비용 | 정부출연금 (2025~2026) | 공고(예정)일 | 구축완료 (예정)일 |
|-------------------------------------|-------|----------------------|----------|---------------|
| Bioreactor fermentation system | 641 | 641 | 2026.12. | 2027.5. |
| Microbioreactor fermentation system | 831 | 831 | | |
| Multiple dispenser system | 509 | 509 | | |
| Colony picker | 440 | 440 | | |
| Short read sequence analyzer | 1,299 | 1,299 | | |
| LC-MS/MS (QTOF) | 554 | 554 | | |
| 합계 | 4,274 | 4,274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장비 구축 등 연구개발비 실적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센터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센터 건축은 총사업비 346억 5,1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2)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025년 9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3)에 따른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는 중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적정성 검토 후 12월 중 장비도입을 위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바이오파운드리센터 건립 추진경과]

| | |
|--------------|-------------------------------|
| 2025.07. |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사전협의 진행(산업부, 과기부) |
| 2025.09.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신청 및 약정 체결 |
| 2025.10.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 2026.01.~04. | 계획설계 완료 |
| 2026.05.~07. | 중간설계 진행 중 |
| 2026.09.~11. | 실시설계 완료 |
| 2026.12. | 설계적정성검토 완료 후 장비도입 추진 예정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바이오파운드리센터는 2027년 1월 착공 후 202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센터 건립 기간 중 도입하는 장비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임시공간이 필요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6년 4월 임시공간 구축을 완료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 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또한, 임시공간에 장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10월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면서, 건축 사업 외에 장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6년 1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장비 구축만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장비 도입 일정을 센터 설계와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제1항4)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제23조5)에 따라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 이후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2026년 12월 장비 도입 공고를 시행하려던 산업통상부의 계획에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또한, 설계 내용에 따라 도입하려던 장비의 사양이 변경될 경우 장비 도입 계획의 변경,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이 착수연도부터 센터 구축 및 장비 도입 관련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지연 및 실집행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 수행자가 설명으로 작성)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6. 적정공사기간 검토결과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불용액 발생 문제 등

가. 현황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¹⁾은 지역의 대중소 유통 간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상생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지역상생형유통 생태계구축 | 2,000 | 2,000 | - | 2,000 | 848 | - | 1,152 | 50 | 5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중소 유통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비 지원비율은 50%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4302-303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 사업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기간 | 2025~2026년 (총 2년) |
| 사업내용 |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문제 해결형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 사업비 지원 |
| 사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
| 지원계획 | (2025년) 4개 지자체, 최대 5억원씩 총 20억원 이내 (2026년) 1개 지자체, 5,000만원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은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공고 중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지역을 선정하여 대중소 유통기업의 현안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율 50%로 최대 5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5년 사업 집행 결과 4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20억원 중 8억 4,800만원만 집행되었고, 11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2026년에는 2025년 선정 지자체 4곳 중 1곳(안성시)만 5,000만원을 지원 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게 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2월 28일 마감기한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였다. 1차 공모 결과 3개 지자체가 신청하

였으나, 그 중 1개 지자체(경기도 안성시)만 선정되었고, 산업통상부는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 공모를 시행하였다. 2차 공모 결과 3개 지자체가 신규로 신청하였고, 해당 지자체가 모두 선정되었다.

[2025년도 공모차수별 신청 및 선정 현황]

| 구분 | 기간 | 신청 | 선정 |
|-------|--|----------------|----------------|
| 1차 공모 | (당초) 2025.2.3.~4.3. (연장) 2025.2.3.~5.9. | 3개 | 1개(안성) |
| 2차 공모 | 2025.7.25.~8.31. | 3개(부산, 전주, 청주) | 3개(부산, 전주, 청주) |

자료: 산업통상부

2차례 공고를 통해 4개 지자체를 모두 선정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비 규모가 8억 4,800만원에 불과하였고, 산업통상부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하고도 집행 잔액 11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2025년도 지자체별 신청금액 현황]

| 구분 | 안성 | 전주 | 청주 | 부산 | 합계 |
|--------|-------|-------|-------|-----|-------|
| 최대 가능액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20억원 |
| 신청액 | 0.5억원 | 2.5억원 | 0.5억원 | 5억원 | 8.5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중하였고, 지자체 경상보조 비목의 한계로 자본보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집행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사업기획 시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비 100% 지원을 추진했으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매칭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여 신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

2) 일례로 창원시의 경우 1차 공모 탈락 후 지방비 추경 문제로 2차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지방비 매칭 부담 과중, 비목의 제한성도 작용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자체의 수요가 반영되기 보다는 지역별 상이한 유통환경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사업내용을 기획하게 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업통상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 시 대중소 상생협력 유형의 예시로 ‘배송·물류지원형’, ‘홍보·마케팅 지원형’, ‘공동구매 지원형’ 등을 예상하였고, 1차 공고 시에는 여기에 ‘교육·컨설팅 지원형’, ‘디지털 전환 지원형’을 추가하여 5개 과제 유형별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차 공고 시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중소유통 판매촉진’, ‘중소유통 판로개척’, ‘중소유통 홍보행사’, ‘디지털 전환 지원’의 5개 예시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대중소 상생협력 유형 및 과제 예시]

| 구분 | 내용 | 변경 현황 | | |
|---------------------|--|-------|-------|-------|
| | | 예산 편성 | 1차 공고 | 2차 공고 |
| 배송·물류 지원 | 전통시장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동 활용 배송물류 플랫폼 설치운영 지원 | 포함 | 포함 | - |
|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행사)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지역경제 유통산업 공통 홍보/마케팅 지원 | 포함 | 포함 | 포함 |
| 공동구매 지원 (판로개척) | 대형마트 상품구매력을 활용, 중소기업과 공동구매 지원 | 포함 | 포함 | 포함 |
| 교육·컨설팅 지원 | 대형유통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추가 | - |
| 디지털 전환 지원 | 대형유통 디지털 전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 IT 컨설팅 지원 | - | 추가 | 포함 |
| 코리아세일 페스타 연계 | 11월 개최 예정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 대중소 공동 할인행사 진행 | - | - | 추가 |
| 중소유통 판매촉진 |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품 구매시 현금금 지급 | - | - | 추가 |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산업통상부는 1차 공고 기간 중인 2월 28일 공고 내용을 변경하면서 마감기한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지원대상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변경하였다.

[1차 공고 시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 접수기간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
| 당초 공고 | 2025.2.3.~4.3. | 기초지방자치단체 | 협약체결일~2025.12.31. |
| 변경 공고 | 2025.2.3.~5.9. |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 협약체결일~2026.12.31. |

자료: 각 공고문을 참조하여 재작성

이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지자체의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유형 예시를 두 번에 걸쳐 추가하고, 공모 지원 가능 지자체를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던 것에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2개년 과제 제출도 허용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 및 지자체 사업기획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의 수가 저조하였고, 사업금액 역시 지자체별 지원 한도인 5억원에 미달하였다.

물론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겠으나, 1차 공고 이후 2차 공고 시 새로운 지원 사례가 추가되거나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된 것은 당초 사업기획 시 지자체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결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지방비 매칭 부담이나 비목 제한과 같은 한계 외에도, 사업기획 단계에서 정책 목표 및 수요, 지원내용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목표 및 수요, 지방비 매칭 비율 및 비목 제한 등의 지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을 통해 추진된 지자체 과제 중 일부 사업은 전통시장 소비 환급금 지급 등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25년 선정된 4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교부된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100개소에서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소비진작 환급행사를 개최

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25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1회차,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회차에 걸쳐 소비진작 환급행사를 개최하였고, 국비와 지방비 1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다.

[2025년도 부산시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행사]

| 구분 | 1차 행사 (6월, 지방비) | 2/3차 행사 (11월/12월, 국비+지방비) |
|------|-------------------------------------|-------------------------------------|
| 환급기준 |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천원 (5만원 이상) 1만원 | (4만원 이상~7만원 미만) 1만원 (7만원 이상) 2만원 |
| 합산여부 | 당일 구매 금액 한정 | 행사 기간 내 구매금액 합산 가능 |
| 환급한도 | (1일) 1만원 (행사기간-3일) 3만원 | (1일) 2만원 (행사기간-3일) 6만원 |

자료: 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내용은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이미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사업에 시비 15억원을 편성하여 6월에 1차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산업통상부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5억원에 기존 시비 5억원을 매칭하여 기존 편성사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공시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대상을 살펴보더라도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사업 추진 목적과 달리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및 선순환 소비 유도’가 주된 목적이며, 지원대상 역시 ‘전통시장, 전통시장 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대형 유통기업과의 협력은 주로 행사 홍보 지원, 인력 지원, 구매상담 및 컨설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목적 |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재소비(선순환 소비) 유도 |
| 사업내용 |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지류형) 환급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전통시장+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
| 사업비 | 10억원(국고 5억원, 시비 5억원) * 기존 편성사업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비 15억원) 중 5억원 매칭 후, 기존 편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자료: 보조금통합포털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부산광역시에는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의 2025년 집행액 8억 4,800만원 중 가장 많은 5억원(58.9%)이 집행된 사업지인데, 해당 지역에서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고, 시비로 추진한 환급행사에 비해 환급한도를 2배 상향하였으나, 당초 산업통상부가 목표하였던 ‘대형 유통업체의 인프라나 노하우, 인력 등의 보유역량이 지역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산 소재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구매상담·컨설팅, 행사홍보 지원, 운영보조 인력 지원 등을 진행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인프라나 노하우, 인력 등의 보유역량이 지역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일부 달성한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만, 대중소 유통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PB상품 공동개발, 대형유통 플랫폼 내 입점 지원 등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부산에서는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환급금 지급 행사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 연계 필요성에 따른 지연

가. 현황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¹⁾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디지털화하여 개발한 표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소 유통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2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디지털유통물류 센터표준모델확산 | 2,400 | 2,400 | - | 2,400 | 2,400 | - | - | 1,680 | 1,68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산업통상부가 2021~2023년까지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사업(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유통 풀필먼트²⁾ 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동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사업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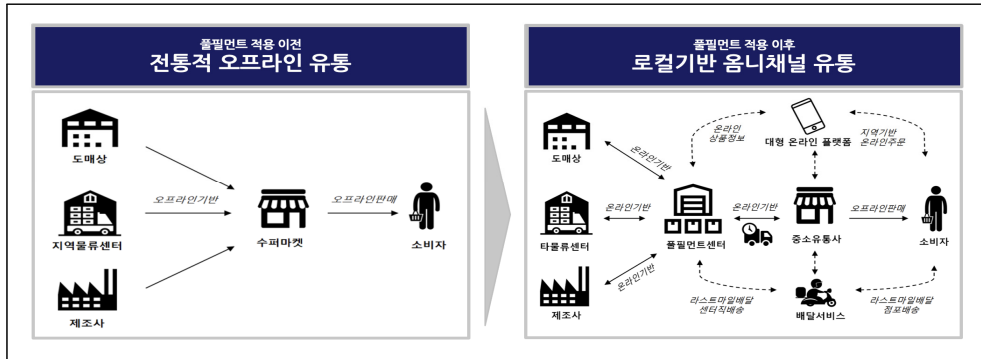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기 부천의 물류센터 3곳을 선정하여 풀필먼트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에는 총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4302-304

2) 풀필먼트(fullfillment)는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과 풀필먼트 유통 간 차이]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은 착수 이후 중소기업 AX 수요를 반영한 물류로봇 도입 시나리오 수립 및 중소기업부의 통합물류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2025년 표준모델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신규사업 기획 시 부처 간 유사·중복성 및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풀필먼트 표준모델³⁾을 2028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8개소 추가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개소씩 선정하여 설계·구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물류로봇(AMR)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소기업 AX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기관·주관기관 간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목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5년은 권역별 홍보, 부처 간 사업 연계 협의, 센터 공모·선정('25.9~'26.1, 2개소), 표준모델 고도화, 표준모델 데이터 허브 구축에 집중하도록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각각 2개소, 3개소, 3개소씩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였다.

3)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표준모델 '구축'은 시스템 설치 단위의 작업이 아니라 참여센터 공모, 선정평가, 현장분석 및 기초설계, 본설계, 시스템 구축·전환에 이르는 전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의 연도별 목표 및 실적 현황]

| 구분 | 기존 | | | | 변경 | | | |
|---------|------|------|------|------|------|------|------|------|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5 | 2026 | 2027 | 2028 |
| 표준모델 구축 | 2 | 2 | 2 | 2 | - | 2 | 3 | 3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표준모델 설계·구축 실적이 전무한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표준모델 구축이 ‘참여센터 공모·선정→현장분석·기초설계→본설계→시스템 구축’의 절차로 진행되며, 2025년에는 선행 과정에 해당하는 권역별 사업 홍보, 센터 공모 및 선정평가를 완료하여 2개소(광명·광주)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2개소에 대한 구축 공정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사업 착수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합물류시스템의 연계 적용 제안이 있어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처 간 협의를 병행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4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2개 신청기관 중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한 후, 6월 30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제천, 순천, 영호남권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5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물류시스템을 동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11월까지 부처 간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산업통상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준모델 구축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고, 11월부터 1월에 선정평가를 거쳐 5개 신청 지역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추진경과]

| | |
|----------------|---|
| 2025.4.4.~5.7. | 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및 확정(2개 신청, 1개 선정) |
| 2025.6.30.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 2025.8.~9. | 권역별 사업 홍보(제천/8.25., 순천/8.26., 영호남권/9.18. 등) |
| 2025.8.~11. | 산업부-중기부 시스템 연계 관련 협의 - 중기부 시스템의 본 사업 적용 검토를 위한 부처 간 협의 - 시스템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 정합성 확보 및 기술자료 공유 등 |
| 2025.9.~2026.1 | 중소유통물류센터 모집 공고 및 확정 -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 모집 공고(9.26.~10.31.) - 선정 평가 및 선정(2025.11.~2026.1.): 5개 중 2개 선정 |
| 2026.1.~ | 지원센터 선정 및 설계 착수,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액 22억 8,000만원 중 5억 2,500만원(23.0%)을 집행 하는데 그쳤다.⁴⁾

[2025회계연도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확산 사업의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교부액 | 사업수행기관 | | | |
|------------------|-----------|--------|------|------|-------|
| | | 예산현액 | 실집행액 | 집행률 | 이월액 |
|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확산 | 2,280 | 2,280 | 525 | 23.0 | 1,756 |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필요성은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실제로는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야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의 완성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4) 2025년 사업수행기관 실적행률이 낮은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표준모델 구축비 집행이 회계연도가 아닌 공정 진척(설계 완료 후 구축 착수)에 연동되는 사업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이월액 17억 5,600만원은 2026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하반기 광명광주 2개소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디지털 물류 및 풀필먼트 지원 분야는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⁵⁾라는 점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은 사전 기획 단계가 아닌 착수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물류시스템과의 연계 협의가 진행되었는 바, 산업통상부는 신규사업 기획 시 부처 간 유사·중복성 및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사업(2025년 22억원)', '스마트물류 서비스 및 사후관리(2025년 11억원)',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해외시장개척-물류인프라구축(2025년 28억원)', '소비자유통 시설지원(2025년 4억원)', '수출입 물류 항만-내륙연계 기술개발(2025년 45억원)' 등이 있다.

가. 현황

본부기본경비 사업¹⁾은 산업통상부 본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급식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63억 700만원 중 61억 1,17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9,5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이 중 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기획조정실, 감사실 등의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250-03목)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본부기본경비 중 특정업무경비(250-03목)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이·전용 감액 103만원을 포함한 3,617만원이며, 산업통상부는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또한, ② 관서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지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이나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본부기본경비 사업중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이·전용 증액 7,514만원을 합한 7억 9,763만원이며, 산업통상부는 이 중 7억 9,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본부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본예산 | 추경 |
| 본부기본경비 | 7,278 | 7,278 | - | △971 | 6,307 | 6,112 | - | 195 | 6,438 | 6,438 |
| 특정업무경비 | 37 | 37 | - | △1 | 36 | 36 | - | - | 33 | 33 |
| 관서업무추진비 | 723 | 723 | - | 75 | 798 | 791 | - | 7 | 658 | 658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7111-251

나. 분석의견

본부기본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개인별 정액 지급 특정업무경비를 부서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다시 개인별로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계좌이체로 집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 감사관실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및 활동비로 활용하도록 소속 직원 23명에게 개인별 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기획재정담당관실과 감사관실에 각각 1,380만원과 2,236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였다.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개인별 월 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 2025년 4월까지 개인별이 아닌 담당과에 현금으로 총액을 지급한 후 개인별로 현금을 배분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 담당과 계좌에 총액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별로 배분하였다. 또한, 감사관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담당과에서 현금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2025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집행일 | 비목 | 지급액 | 지급구분 | 수령인 | 지급용도 |
|-------------|-------------|------------------------|-------|------|------|--------------|
| 기획재정 담당관 | 2025.1.16. | 특정업무 경비 (250-03) | 1,150 | 현금지급 | ○○○ | 예산편성수당 지급 |
| | 2025.2.3. | | 1,150 | | | |
| | 2025.3.4. | | 1,150 | | | |
| | 2025.4.1. | | 1,150 | | | |
| | 2025.5.2. | | 1,150 | 계좌이체 | △△△ | |
| | 2025.6.2. | | 1,150 | | | |
| | 2025.7.1. | | 1,150 | | | |
| | 2025.8.1. | | 1,150 | | | |
| | 2025.9.1. | | 1,150 | | | |
| | 2025.10.2. | | 1,150 | | | |
| | 2025.11.3. | | 1,150 | | | |
| | 2025.12.1. | | 1,150 | | | |
| | 합계 | | | | | |
| 감사관 | 2025.1.17. | 특정업무 경비 (250-03) | 1,950 | 현금지급 | 감사관실 | 특정업무경비 지급 |
| | 2025.2.3. | | 1,950 | | | |
| | 2025.3.4. | | 1,950 | | | |
| | 2025.4.1. | | 1,950 | | | |
| | 2025.5.7. | | 1,950 | | | |
| | 2025.6.2. | | 1,950 | | | |
| | 2025.7.3. | | 1,950 | | | |
| | 2025.8.1. | | 1,950 | | | |
| | 2025.9.2. | | 1,950 | | | |
| | 2025.10.17. | | 1,500 | | | |
| | 2025.11.3. | | 1,600 | | | |
| | 2025.12.1. | | 1,715 | | | |
| | 합계 | | | | | |

자료: 2025년도 산업통상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및 지출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250-03목)는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책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별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 내용]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산업통상부가 개인별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부서 단위에서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별 계좌이체가 아닌 부서 단위로 계좌이체 한 후 이를 개인별로 다시 현금 배분하는 방식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별로 월정액 지급할 때에는 개인별 계좌이체를 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국내 교육훈련기관 파견자에게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 금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집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2)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3)에는 현금으로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 11. 6.>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

지급할 수 있는 용도로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나 운영수당과운영비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중에는 '해외출장정액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업무추진비에 대한 동 지침 내용 중에는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원소속기관은 업무수행 소요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내용]

- 4-2.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원소속기관은 업무수행 소요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경비(직급보조비 제외)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현금 지급할 수 없다.

자료: 재정경제부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균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런데 산업통상부의 2025년 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추진비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6명에 대해 월 30만원 또는 55만원씩의 정액을 계좌이체(현금)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국내교육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지급부서 | 비목 | 지급용도 | 수령인 | 월 지급액 | 연간 지급액 | 지급월 |
|-------|-------------------|-------------------------------|-----|-------|--------|-------|
| 운영지원과 | 업무추진비 (240-02) | 국내훈련 기관 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 | ○○○ | 550 | 5,500 | 2~11월 |
| | | | △△△ | 550 | 5,500 | 2~11월 |
| | | | ◎◎◎ | 550 | 5,500 | 2~11월 |
| | | | ◇◇◇ | 550 | 4,400 | 2~9월 |
| | | | ▲▲▲ | 300 | 2,400 | 2~9월 |
| | | | ●●● | 300 | 3,000 | 2~11월 |
| | 합계 | | | 2,500 | 26,300 | - |

자료: 2025년도 산업통상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및 지출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을 허용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급이 가능한 항목을 ‘해외출장정액경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산업통상부가 국내 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추진비를 별도의 증빙이나 사용내역 확인 없이 정액으로 계좌이체 방식 지급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추진비는 교육기간 중 연구·자료수집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사용범위, 지급한도 및 사후관리 기준 없이 운영될 경우 업무 관련성 및 집행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상 현금성 수당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⁴⁾

4) 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 금액의 경우 직무수행경비 지급단가(국장급 55만원, 과장급 30만원)를 준용하여 국내훈련기관 파견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내교육훈련기관 파견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증빙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클린카드 사용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1)에 따라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에특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는 2025년 10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다.²⁾

2025회계연도 에특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조 1,459억 100만원이었으나 5조 4,096억 3,2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이 중 5조 3,831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64억 3,3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 | | | | |
|----|-----------|------------|-----------|-----------|-----------|-------|--------|
| | 예산액 | 이체등 증감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세입 | 6,145,901 | - | 6,145,901 | 5,409,632 | 5,383,199 | - | 26,433 |

자료: 정부,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5회계연도 에특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2,200만원을 포함한 6조 1,470억 2,300만원으로, 이 중 5조 2,644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3억 7,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632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세출 | 6,145,901 | 1,122 | 105,614 △105,614 | 345,967 △345,967 | 6,147,023 | 5,264,425 | 19,372 | 863,225 |

자료: 정부,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14-1.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발생 문제

가. 현 황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⁴⁾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에 필요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799억 100만원 중 61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87억 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3)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1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석유비축사업출자 | 79,901 | 79,901 | 79,901 | 61,133 | 18,768 | - | 55,300 | 213,733 |
| 비축유 구입 | 49,281 | 49,281 | 49,281 | 30,733 | 18,548 | - | 26,300 | 181,733 |
| 비축기지 유지보수 | 30,620 | 30,620 | 30,620 | 30,400 | 220 | - | 29,000 | 32,00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비축유 구입과 비축기지 유지보수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된다.

먼저, ① 비축유 구입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위한 구매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492억 8,100만원 중 30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②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은 9개 석유비축시설⁵⁾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306억 2,000만원 중 304 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예결산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25 |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 비축유 구입 | · 원유 430천B×단가 85.07\$/B×환율1,347.2원/\$ | 49,281 | 30,733 | 18,548 |
| 비축기지 유지보수 | ·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비: 7,000백만원 | 30,620 | 30,400 | 220 |
| | · 노후 송유관교체 공사비: 13,500백만원 | | | |
| | · 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사업비: 10,120백만원 | | | |
| 합계 | | 79,901 | 61,133 | 18,768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은 원유기지 4개소(서산, 여수, 거제, 울산), 제품기지 4개소(구리, 용인, 곡성, 동해), LPG기지 1개소(평택)로 구분된다.

나. 분석의견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예특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비축유 구입 대금의 37.6%를 출자하지 못하고 이월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기업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겪은 후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석유비축목표를 담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에 따라 1억 10만 배럴 비축을 목표로 1억 60만 배럴을 비축하였고, 2026년부터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에 따라 2030년까지 1억 26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에 따른 비축 목표에 따라 2025년 43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할 계획으로 492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편성 당시 석유 예상단가는 배럴당 85.07달러였고, 환율은 달러당 1,347.2원을 적용하였다. 2025년 국제유가가 공급 증가, 완만한 수요 등에 따라 예상보다 하락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목표 구입량 보다 3.5만 배럴 많은 46.5만 배럴을 구입하였다.

[2025년도 비축유 구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계획(A) | | | 집행(B) | | | 증감 | | |
|------|-------------|---------------|--------------|-------------|---------------|--------------|-------------|---------------|--------------|
| | 물량 (만배럴) | 단가 (\$/배럴) | 환율 (원/\$) | 물량 (만배럴) | 단가 (\$/배럴) | 환율 (원/\$) | 물량 (만배럴) | 단가 (\$/배럴) | 환율 (원/\$) |
| 비축유 | 43 | 85.07 | 1,347.2 | 46.5 | 71.62 | 1,478.9 | +3.5 | △13.45 | +131.7 |
| 구입 | 49,281 | | | 49,281 |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목표 비축유 구입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2025년 3월 「2025년 비축유 구입 계획(안)」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산업통상부는 3월 6일 이를 승인하였다. 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3월 21일 1단계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3일 2단계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2월 23일에 계약물량이 입고되었다.

[비축유 구입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 2025.3.5. | · 「2025년 비축유 구입 계획(안)」 승인 요청: 석유공사 → 산업통상부 |
| 2025.3.6. | · 「2025년 비축유 구입 계획(안)」 승인: 산업통상부 → 석유공사 |
| 2025.3.21. | · 1단계 석유 구입 계약 체결: 석유공사 |
| 2025.9.3. | · 2단계 석유 구입 계약 체결: 석유공사 |
| 2025.12.23. | · 구입 물량 입고 완료 |
| 2026.1.8. | · 2025년 비축유 구입 실적 보고: 석유공사 → 산업통상부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구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8월과 10월에 출자 예산 492억 8,100만원 중 307억 3,3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87억 6,800만원은 예특회계의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025년도 비축유 구입 출자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교부액 | | | 이월액 |
|--------|--------|-------|--------|--------|--------|
| | | 8월 | 10월 | 합계 | |
| 비축유 구입 | 49,281 | 7,794 | 22,939 | 30,733 | 18,768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예특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187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사전계약 물량(46.5만 배럴) 입고 완료 후 15일 이내로 약속된 지급일(1월 7일)까지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 1월 부족액을 단기 차입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는 2026년 1월말 이월된 출자금 187억 6,800만원에 대한 교부를 완료하였다.

[비축유 대금 지급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 2025.12. | · 예특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 이월 결정: 산업통상부 |
| 2026.1.6. | · 미화 단기 차입 및 대금 지급: 한국석유공사 |
| 2026.1.29. | · 이월 출자금 교부: 산업통상부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와 같은 집행 사례는 공기업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 출자액 부족분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 1월초 원유 수입금액 결제를 위해 185억 4,800만원 상당의 미화를 단기 차입하기에 이르렀다. 차입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금리는 3.916% 수준이다.

2026년 1월말 산업통상부가 이월액을 교부하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약 6,000만원 가량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출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회사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피해가 전가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축유 대금 민간 차입 내용]

| 구분 | 내용 |
|------|-----------------------|
| 차입규모 | · 185억 4,800만원 가량의 미화 |
| 차입기간 | · 2026년 1월 6일 ~ 7월 3일 |
| 차입금리 | · 3.916%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이월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에특회계 일부 다른 사업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 2026년에도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재원 부족이라기보다는 조직 개편 이후 회계 관리·운용 주체 변경에 따른 부처 간 협의 부족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산업통상부는 에특회계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이월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세출사업에서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2026년에도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특회계 전체 차원의 절대적인 재원 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동 사업은 에특회계 세입 재원이 부족하여 187억 6,800만원의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무공해차 보급사업’,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에특회계 다른 사업은 2025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1조 9,009억 300만원 중 1조 5,94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지방비 미편성 및 수요 부족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3,061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8,654억 8,900만원 중 5,28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신청물량 저조에 따른 전기자 충전기 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 3,367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불용사유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무공해차 보급 | 1,900,903 | 1,594,659 | 98 | 306,146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지방비 미편성 및 수요 부족 등 집행잔액 발생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865,489 | 528,759 | - | 336,730 | 사업 신청물량 저조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 발생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에특회계 관리·운영 주체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에특회계의 세계잉여금 세입과목⁶⁾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액 이체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는 2025년 에특회계 세입·세출 차액 추정액에 해당하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으로 3,554억 5,200만원 편성되어 있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조직개편 이전인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2025회계연도 에특회계 전체의 세입·세출 차액이 상당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5회계연도 에특회계 전체로는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이월액 규모인 187억원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회계 전반의 재정여건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코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9-893

[에특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 | 2025 | | | | 2026 | |
|----------|------------|---------|-----------|-----------|--------------|---------|---------|
| | | 본예산 | 추경 (A) | 결산 (B) | 집행률 (B/A) | 본예산 | 추경 |
| 산업통상부 | 237,812 | 355,452 | 355,452 | - | 0.0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191,656 | 0.0 | 355,452 | 355,452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동일 회계 내에서 일부 사업은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고, 해당 사업 수행 공기업은 차입을 통해 세출을 충당한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에특회계 전체 차원의 절대적인 자원 부족이라기 보다는 부처 간 또는 사업 간 자원배분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7)

물론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 개념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현금성 자원과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회계 전체적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대규모 불용까지 존재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자원 부족에 따른 공기업의 차입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한 자금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에특회계 세출사업 집행 시 이와 같이 자금 배분 및 교부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8)

7)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말 에특회계 자금이 부족해지자 총괄부서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세수부족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산업통상부도 일정액의 이불용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업통상부는 세계잉여금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8) 산업통상부는 동 사안에 대해 에특회계 전체 총괄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책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14-2. 석탄비축자산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① 석탄비축자산구입비 사업⁹⁾은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¹⁰⁾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¹¹⁾에 따라 국내 무연탄 생산 종료를 대비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으로 사용되는 국내 무연탄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16억 3,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석탄비축자산구입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1,634 | 1,634 | 1,634 | 1,634 | - | - | 1,257 | 1,257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무연탄구입비 15억 6,100만원과 운송비 및 작업비 등 7,300만원으로 구분되며, 산업통상부는 2025년 총 8,700톤의 무연탄을 구입하여 비축 완료하였다.

9)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6-301

10) 「석탄산업법」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비축사업

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경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석탄비축자산구입비 사업 예결산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25 |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불용액 |
| 무연탄구입비 | · 8,700톤 × 179,380원/톤 = 1,561 | 1,561 | 1,561 | - |
| 비축탄작업비 | · 운송비, 하역작업비, 저탄장정리비 등: 73 | 73 | 73 | - |
| 합 계 | | 1,634 | 1,634 |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사업¹²⁾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사업을 통해 정부가 비축한 무연탄과 비축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현액 14억 2,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본예산 | 추경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1,426 | 1,426 | 1,426 | 1,426 | - | - | 1,140 | 1,14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물건비, 그리고 인천비축탄 방출비로 구분된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사업 예결산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25 |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불용액 |
| 인건비 | · 14명 × 59백만원 = 830백만원 | 830 | 830 | - |
| 물건비 | · 일반경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407백만원 | 407 | 407 | - |
| 인천비축탄 방출 | · 25,905원 × 7.3천원/톤 = 189백만원 | 189 | 189 | - |
| 합계 | | 1,426 | 1,426 |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6-303

나. 분석의견

석탄비축관리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간 석탄비축관리 업무는 대한석탄공사에서 수행해 왔으나, 2025년 6월 단계적 조기 폐광이 완료됨에 따라 기관 정리의 일환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자산과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석탄비축사업,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용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75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연탄을 구매하여 비축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수급 균형을 위해 재개되었다. 석탄비축관리 업무는 1983년부터 대한석탄공사에서 수탁받아 수행해 왔다.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3개 탄광(전남 화순광업소, 태백 장성광업소, 삼척 도계광업소)은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가능성, 연탄 수요 감소, 석탄 생산원가 급증 등의 이유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광 절차를 밟았다. 이에 2023년 6월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되었고,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라 공영 광업소는 모두 폐광되었다. 이후 국내 석탄 가행광산(可行鑛山)은 민영 탄광 1개소((주)경동 상덕광업소)만 남게 되었다.

[국내 공영·민영 탄광 현황]

| 구분 | 공영 | | | 민영 |
|-------|-----------------|-----------------|-----------------|-------------------------|
| | 전남 화순 | 태백 장성 | 삼척 도계 | 삼척 상덕 |
| 운영 여부 | 폐광 (2023.6.) | 폐광 (2024.6.) | 폐광 (2025.6.) | 운영 중 (2027.6. 폐광 예정) |

2025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 정리 방안을 마련 중으로,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산업통상부는 1983년부터 대한석탄공사에서 수행해 온 석탄비축관리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한석탄공사는 기관 정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탁수행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9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규정 개정 전·후]

| | |
|----------------------|--|
| 개정 전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개정 후 (2025.9.16.)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후 산업통상부는 대한석탄공사가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자산 등 관리대상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2025년에 예정된 석탄비축 물량 확보 및 인천비축탄 방출을 시행하도록 한 후 해당 내용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인계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후술하는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위수탁관계의 혼란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업무 위탁은 2025년 12월 8일이 되어야 이루어졌다. 이에 2025년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실질적으로 대한석탄공사에서 수행하였으며, 2026년 2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인수인계서를 체결한 후 6월 현재 2025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예산 중 일부(5억 8,600만원)는 대한석탄공사가 아닌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교부되었고, 대한석탄공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2025년 사업비를 충당한 후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당 사업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정산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및 관리비 예산의 기관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합계 |
|-----------|--------|----------|-------|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1,634 | - | 1,634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840 | 586 | 1,426 |
| 합 계 | 2,474 | 586 | 3,060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석탄비축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 교부기관과 실제 사업 수행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한석탄공사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우선 집행한 후 사후 정산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회계처리 및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특히, 위탁기관 변경이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사업비 집행내역, 자산관리 현황 등에 대한 명확한 정산과 책임관계 정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특히, 석탄비축관리 업무는 단순한 비축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비축장 유지·보수, 안전 관리, 비축탄 품질관리 및 방출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며, 오랜 기간 대한석탄공사에서 수행해 왔던 만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업무 이관 과정에서 관련 자산과 자료, 계약관계 및 운영 노하우 등이 누락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석탄 비축사무 위탁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나,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 비축사무와 재정사업은 산업통상부에 남아있게 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위수탁 관계 및 회계처리 등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석탄비축관리 업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해 왔으나, 공사의 주요 기능이 종료되고 향후 기관 정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5년 9월 9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시행일(9월 16일) 직후 10월 1일자로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회계사무의 위탁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위탁 주체 변경 전·후]

| | |
|----------------------|---|
| 개정 전 (2025.9.16.)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개정 후 (2025.10.1.)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두 부처 간 기능 조정 과정에서 「석탄산업법」과 관련 재정사업(석탄비축 자산구입비, 석탄비축자산관리비)은 산업통상부에서 그대로 소관하게 됨에 따라 석탄 비축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부에 공문을 통해 석탄 비축사무를 위임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산업통상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② 공단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수탁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해야하는지, ③ 공단이 비촉사무처리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한 후 산업통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 2025년 11월 법률자문을 시행하였다.

법률자문 결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부에 공문을 통해 석탄 비촉사무를 위탁하고, 산업통상부가 공단에 재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② 공단의 회계관계직원 임명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③ 공단의 비촉사무처리 내부규정은 산업통상부 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법률자문 결과]

| 질의 | 답변 |
|----------------------------------|--|
| ① 공문을 통해 기후부→ 산업부 업무 위임이 가능한지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아닌 '위탁'의 형태로 가능 |
| ② 공단의 회계관계직원 임명 후 기후부에 보고해야하는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기후부장관의 권한이므로 기후부장관과 협의 |
| ③ 공단이 내부규정 제정 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 | ①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산업부장관에게 석탄 비촉사무를 위탁하고, 공단과 산업부장관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산업부에 내부규정 승인 가능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산업통상부는 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¹³⁾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¹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③ 공단이 제정하는 석탄 비촉사무 관련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13)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문을 통해 위탁받았고, 이를 근거로 12월 8일 공단과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업무 위수탁 관계]

| 법령 | 집행 |
|---|--|
| <위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수탁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위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수탁기관: 산업통상부장관> ↓ <재수탁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자료: 산업통상부 설명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위탁 또는 위임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제17조부터 제42조까지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 제38조15)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임·위탁 사무에는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업무’를 행정기관 간 공문을 통해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¹⁶⁾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각 호 생략)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③ 삭제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제2항17)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임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위법령 등에서 다른 기관에 위임되거나 위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공단은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한 후 2026년 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였다.

이처럼 2025년 정부 조직개편 이후 석탄 비축사무와 관련한 하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음에 따라 「석탄산업법」 및 재정사업 소관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상 회계사무 위탁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며, 실제 사업 수행 및 자산 관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지휘·감독 체계와 회계상 책임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산 교부, 회계처리 및 자산관리, 내부규정 승인, 회계관계직원 임명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부처 간 해석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감사나 회계검사 과정에서도 법적 책임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¹⁸⁾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석탄산업법」 상 석탄 비축사무와 재정사업 관리 주체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상 석탄 비축사무 위탁 수행주체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사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시*를 근거로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2. 1. 선고 2022누793 판결

1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18) 산업통상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 정기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반면,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문책 요구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였다.

14-3. 에특회계의 법정부담금 세입감소 및 자원안보 세출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에특회계의 세입·세출은 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총수입 결산액은 4,516억 7,700만원, 총지출 결산액은 2조 2,164억 2,500만원이며,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 총수입 결산액은 1조 7,068억 700만원, 총지출 결산액은 2조 2,568억 3,2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 | 2025 | | | | 2026 | |
|-----|------------|-----------|-----------|-----------|--------------|-----------|-----------|
| | | 본예산 | 추경 (A) | 결산 (B) | 집행률 (B/A) | 본예산 | 추경 |
| 총수입 | 267,426 | 187,862 | 187,862 | 451,677 | 240.4 | 667,072 | 667,072 |
| 총지출 | 2,128,740 | 3,200,667 | 2,775,417 | 2,216,425 | 79.9 | 4,495,503 | 4,655,733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 | 2025 | | | | 2026 | |
|-----|------------|-----------|-----------|-----------|--------------|-----------|-----------|
| | | 본예산 | 추경 (A) | 결산 (B) | 집행률 (B/A) | 본예산 | 추경 |
| 총수입 | 1,883,351 | 2,391,744 | 2,391,744 | 1,706,807 | 67.1 | 1,858,213 | 1,858,213 |
| 총지출 | 2,446,270 | 2,166,446 | 2,382,426 | 2,256,832 | 94.7 | 813,894 | 1,004,727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기타 민간용자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 | | 2026 | |
|------------|---------|-----------|-----------|--------------|---------|---------|
| | 본예산 | 추경 (A) | 결산 (B) | 집행률 (B/A) | 본예산 | 추경 |
| 총수입 | 187,862 | 187,862 | 451,677 | 240.4 | 667,072 | 667,072 |
| 기타경상이전수입 | 87,069 | 87,069 | 273,622 | 314.3 | 191,208 | 191,208 |
| 기타잡수입 | 93,500 | 93,500 | 90,397 | 96.7 | 57,477 | 57,477 |
|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 - | - | 64,843 | - | 370,764 | 370,764 |
| 기타재산이자수입 | 2,215 | 2,215 | 20,635 | 931.6 | 14,713 | 14,713 |
| 기타 5개 사업 | 5,078 | 5,078 | 2,180 | 42.9 | 32,910 | 32,91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은 법정부담금이 대부분으로, 그 외에는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정부담금¹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²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및 석유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²¹⁾에 따른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²²⁾에 따른 광해방

19) 코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9-593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수납하기 위한 세입과목이다. 법정부담금의 2025년 예산은 1조 8,372억 8,2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조 3,544억 6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특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 | | 2026 | |
|------------|-----------|-----------|-----------|--------------|-----------|-----------|
| | 본예산 | 추경 (A) | 결산 (B) | 집행률 (B/A) | 본예산 | 추경 |
| 총수입 | 2,391,744 | 2,391,744 | 1,706,807 | 67.1 | 1,858,213 | 1,858,213 |
| 법정부담금 | 1,837,282 | 1,837,282 | 1,354,406 | 73.7 | 1,734,195 | 1,734,195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463,163 | 463,163 | 265,488 | 57.3 | 92,399 | 92,399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4,488 | 24,488 | 32,932 | 134.5 | 5,550 | 5,550 |
| 정부출자수입 | 8,596 | 8,596 | 24,396 | 283.8 | 6,460 | 6,460 |
| 기타경상이전수입 | 54,714 | 54,714 | 18,597 | 34.0 | 15,838 | 15,838 |
| 기타재산수입 | 3,252 | 3,252 | 9,780 | 300.7 | 3,522 | 3,522 |
| 기타 4개 사업 | 249 | 249 | 1208 | 500.0 | 249 | 249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2025년 예특회계 주요 수입원인 법정부담금 수입액이 예산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2026년에도 중동 전쟁과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자원안보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통상부는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세출 자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법정부담금 세입(1조 3,544억 600만원)은 산업통상부 소관 예특회계 세입 결산 총액(1조 7,068억 700만원)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25년 에트ହି계 법정부담금 부과기준]

| 구분 | 개요 |
|---------------|--|
| 석유수입 부과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석유(원유/석유제품, LNG)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L) : 원유·석유제품 16원/L, LNG 일반용 24,242 원/톤, LNG 발전용 3,800원/톤 |
| 석유판매 부과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석유(고급휘발유, 부탄)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L) : 고급휘발유 36원/L, LPG(부탄) 62,283원/톤 (≒36원/L) |
| 가스안전 관리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및 LPG 제조·판매자, LPG 또는 LNG 수입자에게 판매 LPG, LNG에 대해 일정액의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LPG 5원/kg, LNG 4.4원/㎥) : LPG 4.5원/kg, LNG 3.9원/㎥ |
| 광해방지 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로 인한 광산피해(광해)의 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 -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40% · 산림(토지)복구사업 : 채무보증금액 × 광종별 요율 ÷ 개발연수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에트ହି계 법정부담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사용 감소 등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법정부담금 수입액은 2022년 1조 8,030억 7,3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조 2,180억 5,9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조 4,092억 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 다시 1조 3,544억 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통상부는 법정부담금 예산을 1.8조원 이상으로 편성한 반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2조원~1.4조원 사이로 저조한 상황이다.

[2022~2025년도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2 | 1,650,005 | 1,650,005 | 1,650,005 | 1,812,875 | 1,803,073 | 99.5 | 9,802 | - |
| 2023 | 1,821,355 | 1,821,355 | 1,821,355 | 1,225,225 | 1,218,059 | 99.4 | 4,707 | 2,459 |
| 2024 | 1,894,449 | 1,894,449 | 1,894,449 | 1,411,635 | 1,409,209 | 99.8 | 2,427 | - |
| 2025 | 1,837,282 | 1,837,282 | 1,837,282 | 1,357,118 | 1,354,406 | 99.8 | 2,712 | -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법정부담금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석유화학 경기가 둔화되었고, LNG일반용 징수단가 인하²³⁾ 등으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이 편성 당시 추계에 비해 4,734억원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석유수입부과금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편성근거 | | | 집행결과 | | | 차액 (B-A) |
|------------------|---------|-----------|-----------|---------|-----------|-----------|-------------|
| | 물량 | 단가 | 계(A) | 물량 | 단가 | 계(B) | |
| 원유/석유제품 (천배럴) | 339,517 | 16원/ℓ | 863,730 | 250,061 | 16원/ℓ | 636,091 | △227,639 |
| LNG일반용 (천톤) | 23,300 | 24,242원/톤 | 564,840 | 17,841 | 20,605원/톤 | 315,918 | △248,922 |
| LNG발전용 (천톤) | 18,484 | 3,800원/톤 | 70,240 | 19,310 | 3,800원/톤 | 73,378 | 3,138 |
| 합계 | 381,301 | - | 1,498,810 | 287,212 | - | 1,025,387 | △473,423 |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설명에 따르면, 2026년 중동 전쟁과 국내 석유화학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2026년 1~3월은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으나 4월에는 46억 6,200만원, 5월에는 561억 8,100만원 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LNG일반용 징수단가: (2024년 7월 ~ 2025년 6월) 24,242원/톤 → 16,730원/톤
(2025년 7월 ~ 2025년 12월) 24,242원/톤 → 20,605원/톤

[2025년 대비 2026년 석유수입부담금 징수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징수결정액(A) | 2026년 징수결정액(B) | 차액(B-A) |
|----|----------------|----------------|---------|
| 1월 | 286,873 | 308,820 | 21,947 |
| 2월 | 332,697 | 359,609 | 26,912 |
| 3월 | 266,928 | 310,251 | 43,323 |
| 4월 | 295,342 | 290,680 | △4,662 |
| 5월 | 296,175 | 239,994 | △56,181 |

자료: 산업통상부

반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트회계 세출은 총 3,695억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향후 탄소중립이나 자원안보 정책에 따른 중장기 소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출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계획 대비 줄어들 경우 앞서 14-1에서 살펴본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경우처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에트회계 법정부담금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탄소중립이나 자원안보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세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투기업 현금지원 이월 과다 발생 및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의 보조금 교부 지연 문제

가. 현 황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및 건물 임대를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국내복귀기업의 국내 투자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3,642억 4,600만원이나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거점을 국내로 조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39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예산현액 4,037억 9,600만원 중 2,880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56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본예산 | 추경 |
| 투자유치 기반조성 | 364,246 | 403,796 | - | 403,796 | 288,023 | 115,631 | 142 | 383,981 | 383,981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지원 내역인 토지매입비, 임대료지원, 현금지원 내역사업과 국내복귀 투자기업 대상 지원 내역인 국내복귀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거점을 국내에 조성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에 ① 현금지원 내역 195억 5,000만원과 ② 국내복귀 투자보조 200억원을 증액하였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1-302

두 내역사업 집행 결과 ① 현금지원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2,195억 5,000만원 중 1,037억 7,800만원이 집행된 반면 1,156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② 국내복귀 투자보조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245억원이 각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나 보조사업자(지자체) 실집행 결과 953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91억 6,000만원은 이월되었다. ② 국내복귀 투자보조 내역사업의 실집행 이월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 편성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현금지원 및 국내복귀투자보조 내역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행방식) | 주요내용 | 2025 | | |
|-------------------------------|---|---------|---------|----------------------|
| | | 본예산 | 추경 | 집행액 (이월액) |
| 현금지원 (민간자본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 수반 등 일정요건 충족 외투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 현금지원 · (본예산) 14개사×14,286백만원=200,000 · (추경) 19,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업 2개사×9,500백만원=19,000 - Invest Korea Summit 등 일반수용비 = 390 - 글로벌 기업 유치활동 국외여비·업추비 = 160 | 200,000 | 219,550 | 103,778 (115,631) |
|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복귀기업의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이전비용 일부 지원 · (본예산) 10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기업 정산 26,926 - 신규기업 12개사×9,235백만원×70%=77,574 · (추경) 신규기업 2~3개사 지원 = 20,000 | 104,500 | 124,500 | 124,500 |

자료: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교부액 | 사업수행기관 | | | | | |
|--------------|-----------|---------|------------|-------------|------------|--------------|-------------|
| |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다음연도 이월액 |
| 국내복귀 투자보조 | 124,500 | 124,500 | - | 124,500 | 95,340 | 76.6 | 29,160 |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금지원 내역사업은 미국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되었으나, 외투기업 투자 철회 및 지연 등으로 본예산 일부와 추경 증액분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국제 발행을 통한 추경의 효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 확인을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액에 대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건축비 등의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현금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소부장, 국가전략산업 등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경우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금지원 비율은 투자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R&D 센터는 최대 50%, 첨단산업은 최대 40%, 기타 투자는 최대 30%까지 지원한다.³⁾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산업통상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에 따라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등에 대한 현금지원의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현금지원 사업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내용 | 추경 (증액분) |
|------|---|---------------------|
| 현금지원 | - (지원내용) 고도기술 수반 등 일정요건 충족 외투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 현금지원 - (지원비율) R&D센터 최대 50%, 첨단산업 40%, 기타 30% | 219,550 (19,550)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 본예산으로 총 14개사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추경안을 활용해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1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결과 11개 기업에 총 1,037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본예산 일부와 추경 증액분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현금지원 사업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내용 | 규모 |
|----|------------------------------------|---------|
| 예산 | 16개사 현금지원(219,000), 전략적 IR 활동(550) | 219,550 |
| 집행 | 11개사 현금지원(103,369), 전략적 IR 활동(409) | 103,778 |

자료: 산업통상부

현금지원 사업에서 50%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투자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으나, 10월 APEC 행사를 계기로 기존 협의 대상 기업들과 추가로 협상을 하거나 신규로 발굴하는 등, 외투기업의 투자가 구체화됨에 따라 잔여예산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투자가 구체화된 9개 기업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중 이월액 1,156억 3,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투자유치활동 → 외투기업 투자신고 및 투자계획서 제출 → 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 체결 → 현금지원'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2025년 12월말 기준 9개 기업 중 계약이 체결된 기업은 2개사였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도 2개사에 불

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자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4개사를 제외한 5개사는 외투기업 투자계획서 제출 전 협상 단계에 있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9개사 중 현금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기 계약체결 기업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 총 4개사이며, 5개사는 5월 한도산정위원회, 6월 29일 최종 결정단계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 7월 중 현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월액 1,156억 3,100만원 중 6월말 기준 부처 집행액은 562억 2,000만원으로 이월액의 50%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금지원 이월액 집행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광역시자체 | 지원규모 | | 투자추진단계 | 현금지급 (예정)일자 |
|-----|-------|---------|--------|-----------------------------------|----------------|
| | | 국비 | 지방비 | | |
| A사 | 대구 | 18,679 | 4,670 | 현금지급 완료 | 1월 |
| B사 | 경산 | 4,841 | 1,210 | | |
| C사 | 울산 | 9,600 | 2,400 | | |
| D사 | 인천 | 23,100 | 9,900 | | |
| E사 | 경북 | 22,240 | 5,560 | 한도위 완료 (5월), 외투위 완료 (6월) | 7월(예정) |
| F사 | 충북 | 1,280 | 320 | | 7월(예정) |
| G사 | 충남 | 15,016 | 3,754 | | 7월(예정) |
| H사 | 경북 | 8,210 | 2,053 | | 7월(예정) |
| I사 | 광주 | 12,665 | 3,166 | | 7월(예정) |
| 합계 | | 115,631 | 33,033 | |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지원 내역사업은 미국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되었으나, 외투기업의 투자 지연 등으로 본예산 일부와 추경 증액분 전액이 이월되었다.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의 효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향후 충분히 수요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액에 대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대상 중 일부 기업은 9월 중 지원 여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수개월 뒤로 순연되면서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의 2025년 본예산으로 기존기업에 대한 보조금 213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기업은 8개사를 선정하여 88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미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2~3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부처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기업의 경우 당초 지원 예정이었던 8개사 중 투자금 정산이 완료된 5개사에 대해 134억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투자금 정산이 지연된 나머지 3개사는 2026년 1월, 4월 및 5월에 각각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신규기업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개사를 선정하여 총 1,110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실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기업 5개사에 대한 134억 300만원과 신규기업 11개사 중 9개사에 819억 3,700만원은 연내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2개사에 대한 291억 6,000만원은 지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2025년도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 집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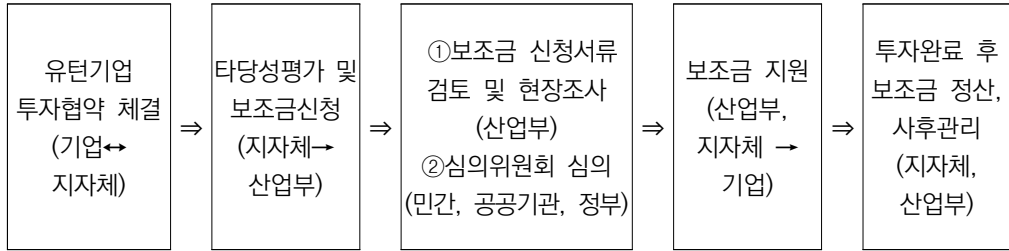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 당초 계획 | | 부처 교부액 | | 지자체 실집행액 | | 실집행 이월액 | |
|------|-------|---------|--------|---------|----------|---------|---------|--------|
| | 기업수 | 보조금 | 기업수 | 보조금 | 기업수 | 보조금 | 기업수 | 보조금 |
| 기존기업 | 8 | 26,926 | 5 | 13,403 | 5 | 13,403 | - | - |
| 신규기업 | 14~15 | 97,574 | 11 | 111,097 | 9 | 81,937 | 2 | 29,160 |
| 합계 | 22~23 | 124,500 | 16 | 124,500 | 14 | 103,778 | 2 | 29,160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사업은 ‘기업과 지자체 간 투자협약 체결 → 타당성평가 및 보조금 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 투자 지원 → 투자완료 후 정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내복귀 투자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경상남도의 A사와 충청남도의 B사로, A사의 경우 2025년 9월에 심의위원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B사의 경우 2025년 12월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실집행 이월 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 수행기관 | 지원기업 | 지원내용 | 지원확정일 | 국비 교부일 | 실집행일 | 금액(국비) |
|------|------|------|---------|-----------|--------------|--------|
| 경상남도 | A사 | 설비 | '25.9. | '25.12.08 | '26. 상반기(예정) | 9,288 |
| 충청남도 | B사 | 설비 | '25.12. | '25.12.12 | '26. 상반기(예정) | 19,872 |
| 합 계 | | | | | | 29,160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5년 9월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재정당국에 예산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예산 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비 교부 시점이 해당 지자체의 추경 편성 시기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지방비 매칭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음 연도로顺延되었다.

A사 사례와 같이 보조금 지원 여부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도 국비 배정과 지방비 매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일정과 공장 착공 등이 지연되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여 국내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 지연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이 결정된 기업에 대해 연내 국비 배정과 지방비 매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및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매칭 지연에 따른 실집행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경상남도 A사에 대한 국비 205억원 중 112억 2,000만원은 10월 22일, 46억원은 11월 28일, 나머지 46억 8,000만원은 12월 8일에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조금 심의·결정액 통보 직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했던 것과 다르게 지특회계 자금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국비를 분할·배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비 매칭도 지연되었다.

[경상남도 A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9.25. | 보조금 심의회 의결 |
| 2025.9.26. | 보조금 결정금액 통보(국비 205억원) |
| 2025.9.30. | 지자체(경남)의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
| 2025.10.22. | 국비 일부 교부(112.2억원) |
| 2025.11.28. | 국비 일부 교부(46억원) |
| 2025.12.8. | 국비 일부 교부(46.8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반면, 충청남도 B사의 경우 추경 증액분을 활용하여 신규로 선정된 기업이었으나,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11월에야 접수됨에 따라 보조금 심의 및 교부도 12월에 이루어졌고,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실집행 이월되었다.

[충청남도 B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11.19. | 기업의 보조금 신청 접수 |
| 2025.12.4. | 보조금 심의회 의결 |
| 2025.12.12. | 국비 교부(198.7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국비 교부 이후 지자체가 대응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이다. 이에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국비 교부 여부뿐만 아니라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회계연도 내 실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국비 교부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나 기업의 보조금 신청 일정 등 사업의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연도 내 실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기업의 보조금 신청 일정 및 심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회계연도 내 실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비 매칭 지연에 따른 실집행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7억 8,100만원이며, 2,013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1,983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29억 2,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6,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일반회계 | 249,821 | 249,821 | 249,821 | 178,788 | 176,039 | 2,688 | 61 | 98.5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20,960 | 20,960 | 20,960 | 22,573 | 22,337 | 236 | - | 99.0 |
| 합계 | 270,781 | 270,781 | 270,781 | 201,361 | 198,376 | 2,924 | 61 | 98.5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조 6,415억 1,7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9조 6,34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예산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6,171,533 | 9,189,886 | 9,190,997 | 9,185,063 | 437 | 5,497 | 99.9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35,711 | 35,711 | 35,711 | 35,711 | - | - | 100.0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414,809 | 414,809 | 414,809 | 413,982 | - | 827 | 99.8 |
| 합계 | 6,622,053 | 9,640,406 | 9,641,517 | 9,634,756 | 437 | 6,324 | 99.9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7조 3,590억 600만원이며, 39조 19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3.3%인 28조 5,901억 6,800만원을 수납하고 9조 246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4,046억 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입계획액 | | 계획현액 | 징수 결정액(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11,559,453 | 12,595,168 | 12,600,621 | 14,100,566 | 12,715,699 | 752,318 | 632,549 | 90.2 |
| 기술보증기금 | 3,308,026 | 3,378,026 | 3,378,026 | 11,517,131 | 4,291,482 | 6,453,590 | 772,059 | 37.3 |
|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7,085,996 | 11,385,812 | 11,385,812 | 13,401,744 | 11,582,987 | 1,818,757 | - | 86.4 |
| 합계 | 21,953,475 | 27,359,006 | 27,364,459 | 39,019,441 | 28,590,168 | 9,024,665 | 1,404,608 | 73.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7조 3,590억 600만원이며, 이 중 104.5%인 28조 5,90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261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지출계획액 | | 계획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11,559,453 | 12,595,168 | 12,600,621 | 12,715,699 | - | 25,089 | 100.9 |
| 기술보증기금 | 3,308,026 | 3,378,026 | 3,378,026 | 4,291,482 | - | 4,788 | 127.0 |
|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7,085,996 | 11,385,812 | 11,385,812 | 11,582,987 | - | 96,237 | 101.7 |
| 합계 | 21,953,475 | 27,359,006 | 27,364,459 | 28,590,168 | - | 126,114 | 104.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415억 9,100만원(4.7%)이 증가한 9조 8,62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74억 2,500만원(1.0%)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251,428 | 270,781 | 270,781 | 198,376 | △72,405 | △53,052 |
| 기금 | 9,513,574 | 9,221,460 | 9,150,055 | 9,664,051 | 513,996 | 150,477 |
| 합계 | 9,765,002 | 9,492,241 | 9,420,836 | 9,862,427 | 441,591 | 97,425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81억 300만원 (0.3%)이 감소한 20조 8,939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조 9,464억 9,400만원(39.8%)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예산 | 3,492,685 | 3,637,208 | 4,021,855 | 4,015,095 | △6,760 | 522,410 |
| 기금 | 11,454,792 | 11,611,588 | 16,940,219 | 16,878,876 | △61,343 | 5,424,084 |
| 합계 | 14,947,477 | 15,248,796 | 20,962,074 | 20,893,971 | △68,103 | 5,946,494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산은 48조 9,096억 6,500만원, 부채는 48조 4,189억 1,700만원으로 순자산은 4,907억 4,9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47조 3,933억 1,600만원, 유·무형자산 1조 5,077억 7,500만원, 기타자산 85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516억 5,100만원 (△1.7%)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상품과 대여금의 감소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9,258억 1,1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46조 5,624억 200만원, 총당부채 1조 6,394억 8,700만원, 기타부채 2,170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1,482억 1,300만원 (2.4%)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내예수금의 증가 등에 따라 차입금이 1조 639억 5,3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자 산 | 48,909,665 | 49,761,316 | △851,651 | △1.7 |
| Ⅰ. 금융자산 | 47,393,316 | 48,319,127 | △925,811 | △1.9 |
| Ⅱ. 유·무형자산 | 1,507,775 | 1,426,392 | 81,383 | 5.7 |
| Ⅲ. 기타자산 | 8,574 | 15,796 | △7,222 | △45.7 |
| 부 채 | 48,418,917 | 47,270,704 | 1,148,213 | 2.4 |
| Ⅰ. 차입부채 | 46,562,402 | 45,703,535 | 858,867 | 1.9 |
| Ⅱ. 총당부채 | 1,639,487 | 1,373,278 | 266,209 | 19.4 |
| Ⅲ. 기타부채 | 217,028 | 193,890 | 23,138 | 11.9 |
| 순 자 산 | 490,749 | 2,490,612 | △1,999,863 | △80.3 |
| Ⅰ. 기본순자산 | 12,620,998 | 12,620,998 | - | -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 △12,881,590 | △10,757,823 | △2,123,767 | △19.7 |
| Ⅲ. 순자산 조정 | 751,341 | 627,437 | 123,904 | 19.7 |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4,793억 6,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3조 7,331억 200만원, 관리운영비 3,470억 1,900만원, 비배분비용 5,619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6,558억 4,900만원, 비배분수익 5,168억 6,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900억 3,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4조 7,135억 6,600만원(60.8%) 증가한 12조 4,693억 9,800만원이며, 이는 출연비 및 보조비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4조 6,387억 1,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1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5조 583억 9,139만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1조 7,454억 4,15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202억 467만원과 경비 1,268억 1,43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5,366억 3,441만원, 기타국가운영비용 249억 9,453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12,077,253 | 7,438,534 | 4,638,719 | 62.4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13,733,102 | 9,698,014 | 4,035,088 | 41.6 |
| 나. 프로그램 수익 | 1,655,849 | 2,259,480 | △603,631 | △26.7 |
| II. 관리운영비 | 347,019 | 329,357 | 17,662 | 5.4 |
| III. 비배분비용 | 561,989 | 518,831 | 43,158 | 8.3 |
| IV. 비배분수익 | 516,863 | 530,890 | △14,027 | △2.6 |
|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 12,469,398 | 7,755,832 | 4,713,566 | 60.8 |
| VI. 비교환수익 등 | 990,031 | 885,667 | 104,364 | 11.8 |
| VII. 재정운영결과(V-VI) | 11,479,366 | 6,870,165 | 4,609,201 | 67.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4,906억 1,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907억 4,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9,998억 6,300만원(△80.3%)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조 6,092억 1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328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조 916억 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9조 6,582억 5,318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026억 5,149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209억 2,271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5억 3,172만원, 기타순자산의 증가 55억 1,317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기초순자산 | 2,490,612 | 3,105,742 | △615,130 | △19.8 |
| II. 재정운영결과 | 11,479,366 | 6,870,165 | 4,609,201 | 67.1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9,355,599 | 6,263,991 | 3,091,608 | 49.4 |
| IV. 조정항목 | 123,904 | △8,956 | 132,860 | 1,483.5 |
| V. 기말순자산(I-II+III+IV) | 490,749 | 2,490,612 | △1,999,863 | △80.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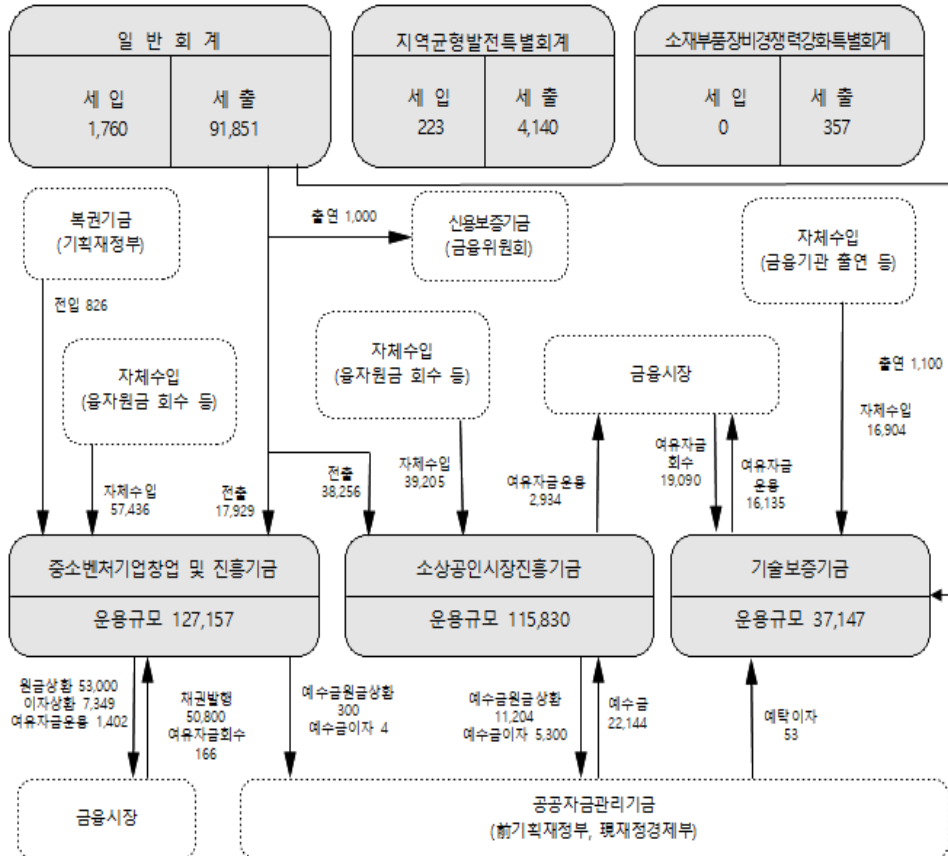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3조 8,256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1조 7,929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조 6,504억원을 상환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304억원을 상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신용보증기금출연, ② 정책자금 지원성과향상, ③ 소상공인성장지원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다른 보증계정 전용을 통한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운용배수 한도(20배)를 고려할 때 계정 간 전용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보증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400억원 전액 감액(400억원→0원)되었다.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은 2024년 집행부진을 사유로 일부 감액(784억원→756억원)되었으며,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2025년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공동마케팅 효과를 일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마케팅 예산 8억원 중 4억원이 감액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②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③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④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⑤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보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보증 공급규모 및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제조 기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통한 자체 거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으로 신규 추진된 ICT융합 스마트공장 지원 과제들의 연내 집행 실적이 부진한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및 지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 대비 개소가 지연된 글로벌 창업허브의 경우, 글로벌 VC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해외 진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거점센터 및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를 효과적으로 일원화 또는 연계 운영하여 aT센터 등 특화 분야 지원 센터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경우 개소 전 운영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의 경우 통신비를 사용처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배달·택배비 지원,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지원 사업 등의 경우 계획 대비 수요 부족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사업 기획 시 주의가 필요하다.

1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출연¹⁾(신용보증기금,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부는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신용보증기금출연 | - | 100,000 | - | - | 100,000 | 100,000 | - | - | 80,000 | 13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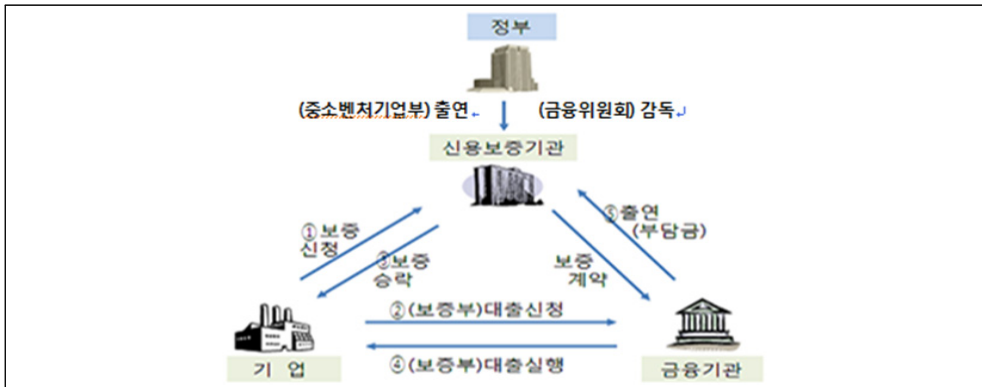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동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신청한 기업에게 보증을 공급하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실행받으며, 대출 부실 발생 시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본재산으로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231-881

[신용보증 지원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은 위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 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보증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1,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400억원 등 총 2,400억원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운용배수 12.5배 기준 총 3조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근거]

| 제1회 추경 예산 | 산출근거 |
|---------------------|---|
| 위기업 특례보증 1,000억원 | · 보증 공급금액 30,0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 2,400억원 (정부출연 1,0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1,40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증 지원대상 기업은 관세조치 피해기업 등 긴급위기 지원과 산업위기 피해기업·재난 피해기업 등 일반위기 지원으로 구분된다.

[위기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 유형 | 대상 | | 판단 기준 |
|----------|--------------|--------------------|---|
| 긴급 위기 | 관세조치 피해기업 | | ❶ 대미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 ❷ 수출·입 실적 감소 기업 ❸ 관세 조치 피해 업종 영위 기업 ❹ 중등 상황 피해기업 ❺ 그 외 직·간접 피해기업 |
| 일반 위기 | 산업위기 피해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 ❶ 전남 여수시('25.5.1.) -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❷ 충남 서산시('25.8.28.) -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❸ 경북 포항시('25.8.28.) - 철강 산업 위기 대응 ❹ 전남 광양시('25.11.20.) - 철강 산업 위기 대응 상기 지역의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협력업체 중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통보된 기업 |
| | |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 미지정 |
| | 재난 피해기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재난 = 자연재난(호우 등) + 사회재난(화재·항공사고 등) |

주: 2026년 초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긴급위기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일반보증료율 - 0.5%p'이 적용되며, 일반위기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일반보증료율 - 0.3%p'가 적용된다.

[위기기업 특례보증 지원 내용]

| 구 분 | 긴급위기 | 일반위기 |
|------|--------------------------|---------------------|
| 보증한도 | (운전) 5억원, (시설) 소요자금 | (운전) 3억원, (시설) 소요자금 |
| 보증비율 | 90% | |
| 보증료율 | 일반보증료율 - 0.5%p (상한 1.0%) | 일반보증료율 - 0.3%p |
| 심사방법 | 일반심사(심사방법 완화) | |
| 전결권 | 영업점장(전결권 완화) | |

주: 1. 위기 발생 시 금융위원회가 위기 수준 결정
 2.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비율 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5월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하고, 일반보증 계정에서 전용한 1,400억원과 정부출연금 1,0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보증공급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5년에는 4,403개사를 대상으로 1조 5,927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나, 이는 목표 보증 공급금액 3조원 대비 53.1%에 불과하며, 이에 운용배수도 예산 편성근거인 12.5배 대비 낮은 6.8배에 그쳤다.

[위aggi업 특례보증 지원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연월별 | | 지원 결정 | |
|------|-----|---------------------|--------------------|
| | | 기업 수 ¹⁾ | 보증규모 ¹⁾ |
| 2025 | 5월 | 93 | 42,480 |
| | 6월 | 332 | 119,170 |
| | 7월 | 583 | 205,887 |
| | 8월 | 790 | 267,895 |
| | 9월 | 1,173 | 423,786 |
| | 10월 | 730 | 267,558 |
| | 11월 | 597 | 217,712 |
| | 12월 | 173 | 48,236 |
| | 소계 | 4,403 ²⁾ | 1,592,724 |
| 2026 | 1월 | 160 | 75,470 |
| | 2월 | 310 | 96,447 |
| | 3월 | 719 | 249,882 |
| | 4월 | 907 | 338,197 |
| | 소계 | 2,069 ²⁾ | 759,996 |
| 합 계 | | 6,450 ²⁾ | 2,352,720 |

주: 1) 신규 공급 기준

2) 중복업체 제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기기업 특례보증 계정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개사, %, 배)

| 구 분 | 2025년 말 | 2026년 4월 말 |
|--------------------|---------|------------|
| 보증잔액 | 14,483 | 21,061 |
| 순 증 | 14,483 | 6,578 |
| 업체 수 ¹⁾ | 4,371 | 6,356 |
| 보증공급 ²⁾ | 15,949 | 7,689 |
| 보증부실 | 25 | 65 |
| 부실률 ³⁾ | 0.2 | 0.9 |
| 대위변제 | - | 30 |
| 변제율 ⁴⁾ | - | 0.4 |
| 정부출연금 | 1,000 | 500 |
| 순자산 | 2,125 | 2,496 |
| 운용배수 | 6.8 | 8.4 |

- 주: 1) 잔액 기준
 2) 총공급(신규+연장) 기준
 3) 부실률 = 보증부실금액/보증잔액
 4) 변제율 =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실제 보증공급 규모가 목표 규모 대비 부진함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위기기업 특례보증 계정의 보증공급 여력이 2026년 3월 말 기준 9,855 억원²⁾이 있음에도 중동 상황 피해기업에 대한 폭넓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경(4.10. 국회 의결)으로 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5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운용배수 12.5배 기준 총 1조 2,5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 (목표 보증 공급규모) 3조원 - (2025~2026.3. 보증 공급규모) 2조 145억원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근거]

| 예산 | 순증 | 산출근거 |
|-----------|--------------------------|---|
| 본예산 | AI 첨단산업 우대보증 800억원 | · 보증 공급금액 20,0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 1,600억원 (정부출연 8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800억원) |
| 제1회 추경 | 위기기업 특례보증 500억원 | · 보증 공급금액 12,5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 1,000억원 (정부출연 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500억원) |

자료: 중소기업부

그 결과 보증공급 여력은 4월 말 기준 여력 6,473억원³⁾에 신규 여력 1조 2,500억원까지 총 1조 8,973억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연내 남은 집행기간 8개월(5월~12월) 및 전년 동기간 8개월(2025년 5월~12월) 동안의 공급 실적(1조 5,927억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치로 판단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은 위기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보증공급을 보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위기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 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기기업 특례보증 공급 여력이 2026년도 추경으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보증공급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목표 보증 공급규모) 3조원 - (2025~2026.4. 보증 공급규모) 2조 3,527억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사전 기획 면밀히 수행 필요 등

가. 현황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¹⁾(출연·보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현액 2,869억 2,300만원의 99.9%인 2,86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ICT융합스마트 공장보급·확산 | 236,076 | 286,923 | - | - | 286,923 | 286,919 | - | 4 | 402,056 | 463,056 |
| 제조혁신 구축지원 | 221,166 | 270,141 | - | - | 270,141 | 270,137 | - | 4 | 317,290 | 373,290 |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 11,910 | 13,782 | - | - | 13,782 | 13,782 | - | - | 12,126 | 18,126 |
|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 3,000 | 3,000 | - | - | 3,000 | 3,000 | - | - | 8,140 | 8,140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 | - | - | - | - | - | - | - | 64,500 | 64,50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장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111-303

스마트공장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제조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공장으로, 국가표준(KSX9001)으로 지정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측정·관리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구분]

| 구분 | 수준 | 실적관리 | 주요 내용 |
|----------------|------|-------|-----------------------------|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 기초 | 기초공장 | 생산정보 수집(바코드, RFID 등) 및 모니터링 |
| | 중간 1 | 고도화공장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 | 중간 2 | | 생산정보 실시간 제어 |
| | 고도 | | CPS 기반 자율생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결과 2025년 말까지 누적 38,611개의 스마트공장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2025.12월 기준)]

(단위: 개,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기초 | 226 (81.6) | 791 (82.1) | 1,122 (71.9) | 1,844 (83.7) | 2,385 (82.2) | 3,546 (74.5) | 5,600 (78.4) | 3,693 (70.5) | 3,613 (70.8) | 1,565 (62.2) | 1,079 (41.2) | 1,443 (43.3) | 26,907 (69.7) |
| 중간1 | 44 (15.9) | 141 (14.6) | 416 (26.7) | 354 (16.1) | 474 (16.3) | 1,124 (23.6) | 1,466 (20.5) | 1,462 (27.9) | 1,426 (27.9) | 891 (35.4) | 1,387 (52.9) | 1,704 (51.2) | 10,889 (28.2) |
| 중간2 | 7 (2.5) | 31 (3.2) | 22 (1.4) | 5 (0.2) | 41 (1.4) | 87 (1.8) | 73 (1.0) | 85 (1.6) | 66 (1.3) | 62 (2.4) | 154 (5.9) | 182 (5.5) | 815 (2.1) |
| 합계 | 277 | 963 | 1,560 | 2,203 | 2,900 | 4,757 | 7,139 | 5,240 | 5,105 | 2,518 | 2,620 | 3,329 | 38,611 |

주: 정부 예산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사례와 수준확인 지원을 통해 확인된 사례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평균 생산성 34.4%, 품질 44.1% 향상 등 공정개선을 보였으며, 매출액 11.5% 및 고용 2.2명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성과]

| 공정개선 성과 | | | | 경영개선 성과 | | |
|---------|--------|--------|---------|---------|-------|--------|
| 생산성(P) | 품질(Q) | 원가(C) | 납기준수(D) | 매출액 | 고용 | 산업재해 |
| 34.4%↑ | 44.1%↑ | 28.2%↓ | 20.6%↑ | 11.5%↑ | 2.2명↑ | 15.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기준 스마트공장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공장 유형별 지원내용]

(단위: 개월, %)

| 내역사업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국비 지원율 |
|-------------------|-------------------|----------------------|---|-------------------------------|-----------|
| 제조혁신 구축 | 정부일반형 | 중소기업 | 부처·지역협업 고도화 | 9 | 50 |
| | 자율형공장-일반 | 중소기업 | AI기반 고도화 | 24 | 50 |
| | 자율형공장-AI | 중소기업 | AI도입지원 | 9 | 50 |
| | 대중소상생형-일반 | 중소기업 | 민간협업 구축 | 9 | 30 |
| | 대중소상생형-AI | 중소기업 | 민간협업 AI 도입 | 9 | 50 |
| | 디지털협업공장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 12 | 50 |
| | 제조로봇 | 중소중견기업 | 제조로봇 도입 특화 지원 | 8 | 50 |
| | 제조기반기업 (자동화지원) | 제조기반 중소기업 |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 | 8 | 50 |
| 수준확인 | 중소기업 |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진단 | - | 100 | |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 클라우드화 | 중소기업 |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 개발 지원 (개발솔루션의 SaaS화) | 개발기간 8개월 (실증기간 4개월) | 50 이내 |
| | 종합솔루션화 | 중소기업 |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 가능하고, 사회·정책 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 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복수솔루션의 SaaS개발) | 개발기간 12개월 (실증기간 6개월) | 50 이내 |
| | 역량진단 | 중소기업 | 공급기업 역량진단 | 1일 | 80 |
| | 제조DX멘토단 |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전 사전 기획 및 사후 지원 | 3~4 | 50 ~8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진 시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지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및 솔루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내내역사업 기준 선도형 제조혁신, 제조혁신 자동화,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등이 있다.

그 중 제1·2회 추경으로 신규·증액 편성된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대중소상생형(AI트랙), 제조로봇,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이다.

[2025년 본예산 및 추경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내내역사업명 | 유형 | 예산 | | |
|----------------|---------------|---------------|---------|--------|---------|
| | | | 본예산 | 추경 순증 | (추경 회차) |
| 제조혁신 구축 | 선도형 제조혁신 | 정부일반형 | 137,000 | - | - |
| | | 자율형공장 - 일반트랙 | 12,000 | - | - |
| | | 자율형공장 - AI트랙 | - | 20,000 | (2회) |
| | | 대중소상생형 - 일반트랙 | 30,000 | - | - |
| | | 대중소상생형 - AI트랙 | - | 4,000 | (2회) |
| | | 디지털협업공장 | 7,541 | - | - |
| | 제조혁신 자동화 | 제조로봇 | 25,000 | 20,000 | (1회) |
| | |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 7,625 | 4,975 | (1회) |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 클라우드화 | 1,340 | 1,072 | (1회) |
| | | 종합솔루션화 | 830 | 800 | (1회) |

자료: 중소기업부

그리고 제조로봇,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등 1회 추경 사업은 6월 말~8월 말에서야 과제가 개시되었고, 자율형공장(AI트랙)과 대중소상생형(AI트랙) 등 2회 추경 사업은 10월 말~11월 말에야 과제가 개시되었다.

[스마트공장 유형별 추경 사업 추진 일정]

| 유형 | 추경 사업 추진 일정 |
|------------------------------|---|
| 자율형공장 - 시트랙 (2차 추경) | '25.7.11. 사업 공고 '25.7.11.~8.14. 신청 '25.10.24.~12.24. 지원 결정 '25.11.17.~12.24. 과제 협약 '25.11.17.~'26.8. 과제 기간 |
| 대중소상생형 - 시트랙 (2차 추경) | '25.8.14.~9.19. 사업 공고 1차 및 신청 '25.9.24.~10.23. 사업 공고 2차 및 신청 '25.10.27.~11.11. 사업 공고 3차 및 신청 '25.10.31.~11.27. 과제 협약 '25.10.31.~'26.5.31. 과제 기간 |
| 제조로봇 (1차 추경) | '25.5.12.~6.9. 사업 공고 '25.5.12.~6.9. 신청 '25.7.25. 지원 결정 '25.8.18.~ 과제 협약 '25.8.18.~ 과제 개시 |
| 제조기반기업 (자동화지원) (1차 추경) | '25.5.12.~6.9. 사업 공고 '25.5.12.~6.9. 신청 '25.7.9. 지원 결정 '25.7.28.~ 과제 협약 '25.8.25.~ 과제 개시 |
| 클라우드화 (1차 추경) | '25.4.15. 사업 변경 공고 '25.4.1.~25. 신청(당초 신청기간 포함) '25.5.30. 지원 결정 '25.6.30.~ 과제 협약 '25.6.30.~ 과제 개시 |
| 종합솔루션화 (1차 추경) | '25.4.15. 사업 변경 공고 '25.4.1.~25. 신청(당초 신청기간 포함) '25.5.30. 지원 결정 '25.6.30.~ 과제 협약 '25.6.30.~ 과제 개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추경 예산으로 선정된 과제 기준 총 263개 중 40.7%인 107개만이 2025년 연내 완료되었고, 44.5%인 117개는 2026년 5월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상태였다.

[시기별 과제 추진 현황]

(2026. 5월 말 기준, 단위: 개, 개월)

| 유형 | 지원 현황 | | 본예산 | 추경 | 지원기간 |
|-------------------|--------------------|------------|-----|------------|-------------------------------|
| 자율형공장 - 시트랙 | 지원 결정 수 | | - | 100 | 9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 | -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 | -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 | 100 | |
| 대중소상생형 - 시트랙 | 지원 결정 수 | | - | 9 | 9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 | -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 | 4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 | 5 | |
| 제조로봇 | 지원 결정 수 | | 108 | 97 | 8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99 | 67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99 | 26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 | 4 | |
| 제조기반기업 (자동화지원) | 지원 결정 수 | | 75 | 52 | 8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71 | 40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4 | 9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 | 3 | |
| 클라우드화 | 지원 결정 수 | | 5 | 4 | 개발기간 8개월 (실증기간 4개월)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 | -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 | -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5 | 4 | |
| 종합솔루션화 | 지원 결정 수 | | 1 | 1 | 개발기간 12개월 (실증기간 6개월)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 | -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 | -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1 | 1 | |
| 계 | 지원 결정 수 | | 189 | 263 | - |
| | 25.12.31. 완료된 과제 수 | | 170 | 107 | |
| | 26년까지 | 26.5월까지 완료 | 13 | 39 | |
| | 진행된 과제 수 | 6월 진행 중 | 6 | 117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지원 기간이 통상 8~12개월이므로 연중에 편성되는 추경 특성상 추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집행이 차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조로봇,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유형 등 1회 추경 사업은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고, 과제 수행 기간상 연내 추진 완료 가능성

이 높지 않음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회 추경 신규 유형인 대중소상생형(AI트랙)의 경우 자율형공장(AI트랙)에 비해 첫 사업 공고일도 늦은 데다가 과제 선정을 위해 3차례나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²⁾, 추경 편성 전 사업 준비 및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회 추경 신규 사업 유형별 신청·지원 현황]

(단위: 개)

| 유형 | | 자율형공장 - AI트랙 | 대중소상생형 - AI트랙 | | | |
|----------------|------------|--|---|-----------|-----------|-----------|
| 추진일정 | | '25.7.11. 사업 공고 '25.7.11.~8.14. 신청 '25.10.24.~12.24. 지원 결정 '25.11.17.~12.24. 과제 협약 '25.11.17.~'26.8. 과제 기간 | '25.7.31. 대기업(LG) 협약 '25.8.14~9.19. 사업 공고 1차 및 신청 '25.9.24~10.23. 사업 공고 2차 및 신청 '25.10.27~11.11. 사업 공고 3차 및 신청 '25.10.31.~11.27. 과제 협약 '25.10.31.~'26.5.31. 과제 기간 | | | |
| 신청 지원 현황 | 신청 과제 수 | 500 | (1차) 8 | (2차) 1 | (3차) 1 | (계) 10 |
| | 지원 과제 수 | 100 | 7 | 1 | 1 | 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진 시 과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지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당시 LG전자 협력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12~15개)를 감안하여 지원 과제 수를 8개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공고 시 도입기업의 부담금(최대 3억) 부담 등의 사유로 즉시 사업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하여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다.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제조데이터 거래지원¹⁾(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연)은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을 지원하며, 거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현액 26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제조데이터 거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데이터인프라구축 (정보화) | 5,836 | 5,836 | - | - | 5,836 | 5,836 | - | - | 5,922 | 5,922 |
| 제조데이터 거래지원 | 2,650 | 2,650 | - | - | 2,650 | 2,650 | - | - | 2,650 | 2,65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크게 제조데이터 상품가공지원, 제조데이터 컨설팅, 제조데이터 거래환경 조성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분되며, 내내역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111-305의 내역사업

[내내역사업별 지원 내용]

| 내내역사업 | 지원내용 | 25년 예산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국비지원율 | 기업부담율 |
|---------------------|---|--------------|------|---------------------------|-----------|----------------------------|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제조데이터의 개념 화, 분석 및 분류, 전 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 공서비스 및 검증 프 로세스 등 지원 | 1,250 백만원 | 4개월 | 최대 5천만원 | 80% 이내 | 20% 이상 (10% 이상 현금부담) |
| 제조데이터 컨설팅 | 제조데이터 개요, 데 이터 수집 및 관리체 계, 활용방안, 거래 시스템 사용 등 제조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250 백만원 | 2개월 | 최대 5백만원 (컨설팅 지원) | 100% | - |
| 제조데이터 거래환경 조성 | 제조데이터 거래 라 이브러리(거래소) 운 영, 데이터 저장공간 등 인프라 제공 | 1,150 백만원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현재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은 등록 및 거래 실적이 부진한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시스템의 등록 및 거래 실적이 부진함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개소한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시장을 통해 기업·기관간 자유로운 제조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 거래시스템이다.

한편, 제조데이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사업 및 제조데이터 컨설팅 사업 추진 결과,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40건, 46건, 45건 등 3년간 총 131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었으며, 해당 데이터셋은 모두 거래시스템에 등록되었다.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및 제조데이터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사업 | 연도 | 지원 과제수 | | 지원금액 | | 데이터셋 구축수 | |
|---------------------|------|--------|----|-------|-------|----------|----|
| |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2023 | 25 | 25 | 1,250 | 1,250 | 25 | 40 |
| | 2024 | 25 | 25 | 1,250 | 1,250 | 25 | 46 |
| | 2025 | 25 | 25 | 1,250 | 1,250 | 25 | 45 |
| 제조데이터 컨설팅 | 2023 | 50 | 50 | 250 | 250 | - | - |
| | 2024 | 50 | 50 | 250 | 250 | - | - |
| | 2025 | 50 | 50 | 250 | 250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3년간 정부 사업 지원을 받아 구축·등록된 131건의 데이터셋 외에 민간 자체적으로 등록한 57건의 데이터셋을 합하여 총 188건의 유료 데이터셋이 등록되었다.

그런데 거래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025년에는 민간 자체적으로 등록한 데이터셋이 전무한바, 기업의 데이터셋 등록 유인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2024년에는 각각 3억 4,000만원대의 규모로 데이터셋 거래가 이뤄졌으나, 2025년에는 거래규모가 1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 상품(유료) 데이터셋 등록건수 | | | 상품(유료) 데이터셋 거래 | |
|------|------------------|------|-----|----------------|-------|
| | 정부지원 | 민간자체 | 합계 | 거래건수 | 거래금액 |
| 2023 | 40 | 48 | 88 | 59 | 343.0 |
| 2024 | 46 | 9 | 55 | 94 | 348.2 |
| 2025 | 45 | - | 45 | 30 | 1.1 |
| 합계 | 131 | 57 | 188 | 183 | 692.3 |

주: 정부가 무료 공유한 150종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2023, 2024년에는 데이터셋 구매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²⁾, 3년간 총 거래금액인 6억 9,200만원 가운데 96.4%인 6억 6,700만원이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거래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2023~2025년 제조데이터 제조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 현황]

(단위: 건, 억원, %)

| 구분 | 데이터셋 구매지원 사업 지원을 통한 거래 | 민간 자체 거래 | 계 |
|---------------|------------------------|---------------|-----------------|
| 거래 건수 | 87 | 96 | 183 |
| 거래 규모 [비중] | 6.67 [96.4] | 0.25 [3.6] | 6.92 [1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제조데이터 거래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거래시스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조데이터셋 수요 및 공급이 모두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제조데이터 가치만큼을 현물로 인정해주는 ‘현물인정제’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제조데이터의 가치평가를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가치에 대한 기업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제조데이터의 거래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12월~2026년 2월 동안 제조데이터 가치평가 및 현물인정제도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향후 제조데이터 가치분석 모델 개발(‘26.5.~7.),

2) [제조데이터 상품구매 지원 사업]

| 목적 | 제조현장 및 솔루션 공급기업 등의 데이터 상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비용 지원 |
|-------|--|
| 편성 연혁 | (‘23) 편성 → (‘25) 종료 |
| 예산 | (‘23) 500백만원(50건×10백만원) (‘24) 250백만원(25건×10백만원) |
| 지원 현황 | (‘23) 53건 구매 지원 (‘24) 34건 구매 지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물인정제 실증 추진('26.8.~12.) 등을 거쳐 2027년부터 현물인정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3년간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운영 실적을 토대로 판단할 때 아직까지는 기업의 제조데이터셋 등록 및 구매 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 제조데이터는 특성상 산업별·기업별·설비별로 다르게 나타나 표준화 및 타 공정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물인정제 도입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의 등록 및 거래 실적이 부진함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¹⁾(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은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현액 5,779억 8,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R&D) | 567,983 | 577,983 | - | - | 577,983 | 577,983 | - | - | 494,243 | 494,243 |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 186,404 | 186,404 | - | - | 186,404 | 186,404 | - | - | - | - |
| 시장확대형 기술개발 | 280,611 | 290,611 | - | - | 290,611 | 290,611 | - | - | - | - |
| 시장대응형 기술개발 | 100,968 | 100,968 | - | - | 100,968 | 100,968 | - | - | - | - |
| 글로벌선도 기술개발 | - | - | - | - | - | - | - | - | 273,993 | 273,993 |
|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 - | - | - | - | - | - | - | - | 220,249 | 220,2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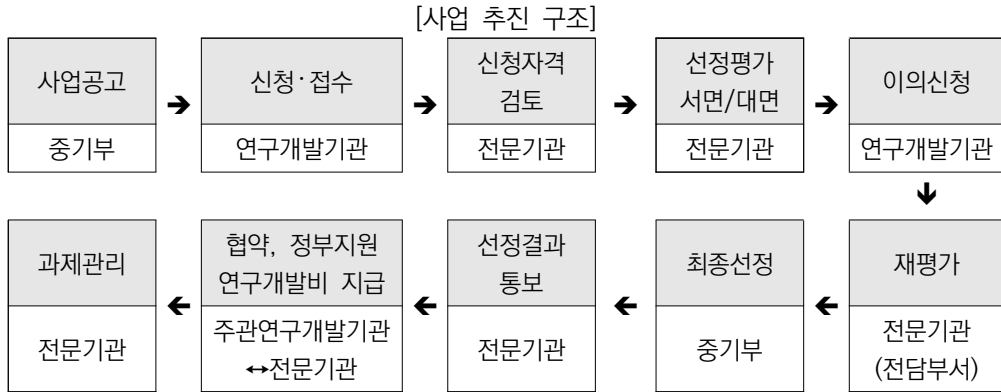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기업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신청하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선정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김다은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134-302



주: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5년 기준 등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등 3개의 내역과 14개의 내내역은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R&D)(26년 신규)²⁾,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26년 신규)³⁾ 등 3개의 세부사업에 분리 편성되는 등 사업구조가 개편되었다.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선점 및 유망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 '선 민간투자 → 후 정부투자'의 민간 검증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형태의 사업은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R&D)에, 그리고 이전 기술개발 및 수요 기반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에 편성되었다.

[사업 개편 방식]

| 세부사업명 | 기준 |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선점 및 유망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R&D) | '선 민간투자 → 후 정부투자'의 민간 검증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 | 이전 기술개발 및 수요 기반 기술 개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코드: 일반회계 2134-486

3) 코드: 일반회계 2134-485

내내역별 구체적인 사업 이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개편 내용]

| | | |
|---|---|---|
| <p>(세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p> <p>(내역) 수출지향형</p> <p>(내역) 시장확대형</p> <p>(내내역) 글로벌협력형</p> <p>(내내역) 공동효과형</p> <p>(내내역) 인증실증달성형</p> <p>(내내역) 전략기술*</p> <p>(내내역) 후불형</p> <p>(내역) 시장대응형</p> <p>(내내역) 일반</p> <p>(내내역) 소부장</p> <p>(내내역) 구조혁신</p> | ➔ | <p>(세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p> <p>(이관·신설, 내역) 글로벌선도기술개발</p> <p>(이관, 내내역) 수출지향형</p> <p>(이관, 내내역) 글로벌협력형</p> <p>(이관·신설, 내역)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p> <p>(신설, 내내역) 국가전략기술*</p> <p>(이관, 내내역) 소부장</p> <p>(이관, 내내역) 구조혁신</p> <p>(이관, 내내역) 일반</p> <p>(이관, 폐지, 내내역) 공동효과형</p> <p>(이관, 폐지, 내내역) 인증실증달성형</p> <p>(이관, 폐지, 내내역) 전략기술</p> <p>(이관, 폐지, 내내역) 후불형</p> |
| <p>(세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p> <p>(내역) 시장확대형</p> <p>(내내역) VC추천(스케일업팁스)</p> <p>(내내역) 글로벌 팁스</p> <p>(내내역) 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DCP)</p> <p>(내역) 시장대응형</p> <p>(내내역) 융자연계형</p> | ➔ | <p>(신설, 세부)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R&D)</p> <p>(이관·신설, 내역) 스케일업팁스</p> <p>(이관·신설, 내역) 글로벌 팁스</p> <p>(이관·신설, 내역)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p> <p>(이관·신설, 내역) 융자연계형</p> |
| <p>(세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p> <p>(내역) 시장확대형</p> <p>(내내역) 기술이전사업화</p> <p>(내내역) 구매연계·상생협력</p> | ➔ | <p>(신설, 세부)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p> <p>(이관·신설, 내역) 기술이전사업화</p> <p>(신설, 내역) TRL 점프업</p> <p>(이관·신설, 내역) 구매연계·상생협력</p> |

주: 2025년 내내역 '전략기술'은 26년 내내역 '국가전략기술'에 통합·이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 및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신규 운영사 선정 시에도 기존 비수도권 거점 투자사에 대한 가점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수도권 편중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내역사업 시장확대형의 내내역에 해당하는 스케일업팁스(VC추천형, 글로벌형) 사업은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해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R&D 사업으로, 국내·외 민간시장으로부터 기술 경쟁력, 시장성 등을 검증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사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한 후 R&D 지원 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후 선정하며, 선정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전과정을 운영사에서 지원하는 구조이다.

[사업 구조]

| 구분 |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 운영사 추천 | ① 유망기업 발굴 ↓ | 운영사 | · 수시모집 |
| | ② 투자심사 및 추천 ↓ | 운영사 | ·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추천 |
| R&D | ③ 선정평가 ↓ | 전문기관 | · 사업계획서 검토/대면평가 |
| | ④ 협약체결 ↓ | 전문기관 | · 기정원-선정기업 등 간 협약 |
| | ⑤ R&D 수행 ↓ | 선정기업, 운영사 | · 연구개발수행 및 R&D 전주기 지원 |
| | ⑥ 사업수행 점검 | 전문기관 | · R&D, 후속투자, 진도점검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2025.5.9.

구체적으로, VC추천형은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12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글로벌형은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100만불 이상 등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보유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⁴⁾

[스케일업팁스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 VC추천형 | 글로벌형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지원요건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글로벌 진출 기반 보유 (해외투자 100만불 이상, 해외매출 3년간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등 현지 활동 기반) |
| 지원내용 | R&D자금 지원 | R&D자금 지원 |
| 지원한도 | 최대 12억원 | 최대 15억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국비지원율 | 75% 이내 | 75% 이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2025.5.9.

4) 참고로, 2026년 기준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스케일업팁스(성장) | | 글로벌팁스(글로벌) | | |
|-----------|------------|---------|----------------|---------|------|
| | 민간 先 투자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해외투자 | | |
| 정부 R&D 출연 | 일반형 | 3년 20억원 | 200개사 | 4년 50억원 | 90개사 |
| | 특화형 | 3년 30억원 | 50개사 | 4년 60억원 | 5개사 |
| | 정책지정형 | 3년 30억원 | 50개사 | 4년 60억원 | 5개사 |

- 주: 1. 일반형: 추천권 부여 없이 유망기업을 선별·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2. 특화형: 특화 운영사에게 일정 배수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6대 전략산업의 유망 기업을 선별·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
 3. 정책지정형: 부처(26년 기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지재처, 우주청)에서 정책 수요에 따라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2.27.

또한,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민간 투자사(또는 학·연·컨설턴트가 포함된 컨소시엄)로, 배정받은 연간 추천권 갯수 내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기업에 대한 R&D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성장 지원, 후속투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 사업 집행 결과, VC추천형의 경우 신규 과제 152개 및 계속 과제 327개 등 총 479개의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366억 1,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출연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또한, 글로벌형의 경우 신규과제 24개의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57억 9,2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출연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스케일업팁스(VC추천형, 글로벌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 | 중기부 |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지원 과제수 |
|-------|----|---------|---------|-------------|-----------------------|---------|-----|-----------|
| | | 예산액 | | 집행액 (교부) | 교부액 | 집행액 | 불용액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VC추천형 | 신규 | 18,616 | 28,616 | 28,616 | 28,616 | 28,616 | - | 152 |
| | 계속 | 108,001 | 108,001 | 108,001 | 108,001 | 108,001 | - | 327 |
| | 계 | 126,617 | 136,617 | 136,617 | 136,617 | 136,617 | - | 479 |
| 글로벌형 | 신규 | 5,792 | 5,792 | 5,792 | 5,792 | 5,792 | - | 2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추천·선정 과제

2025년 신규 과제 기준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는 VC추천형에 196개의 추천권을 사용하였고, 글로벌형에 37개의 추천권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추천권이 사용된 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VC추천형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2023년 59.7%에서 2025년 67.9%로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형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75.7%에 달하는 등 추천권 사용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의 추천권 사용 기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

| 구분 | | 2022 | 2023 | 2024 | 2025 |
|-------|------|------|-------------|-------------|-------------|
| VC추천형 | 계 | 50 | 181 | 216 | 196 |
| | 수도권 | 31 | 108 | 132 | 133 |
| | 비중 | 62.0 | 59.7 | 61.1 | 67.9 |
| | 비수도권 | 19 | 73 | 84 | 63 |
| 글로벌형 | 계 | - | - | - | 37 |
| | 수도권 | - | - | - | 28 |
| | 비중 | - | - | - | 75.7 |
| | 비수도권 | - | - | - | 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5월 9일부터 사업 공고 및 수시 신청을 통해 추천된 기업 중 VC추천형은 152개, 글로벌형은 24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는데⁵⁾, 지원 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VC추천형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63.8%까지 증가하였고, 글로벌형의 경우 지원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75.0%를 차지하는 등 지원 기업의 수도권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5) 2025년 스케일업팁스 사업 추진일정

| 구분 | VC추천형 | | | 글로벌형 | | |
|------|-----------------|----------------------|----|-----------------|----------------------|----|
| | 기간 | 과제 수(개) | | 기간 | 과제 수(개) | |
| 사업공고 | 2025. 5. 9. | - | | 2025. 5. 9. | - | |
| 신청기간 | 2025.5.~11.(수시) | - | | 2025.5.~10.(수시) | - | |
| 지원결정 | 2025.6.~12.(수시) | 152 | | 2025.6.~12.(수시) | 24 | |
| 협약일 | 2025.6.~12.(수시) | 152 | | 2025.6.~12.(수시) | 24 | |
| 월별 | 협약월 | 과제기간 | - | 협약월 | 과제기간 | - |
| | 6월 | 25.6.1. ~ 28.5.31. | 23 | 6월 | 25.6.1. ~ 28.5.31. | 7 |
| | 7월 | 25.7.1. ~ 28.6.30. | 10 | 7월 | 25.7.1. ~ 28.6.30. | 2 |
| | 8월 | 25.8.1. ~ 28.7.31. | 23 | - | - | - |
| | 9월 | 25.9.1. ~ 28.8.30. | 37 | - | - | - |
| | 10월 | 25.10.1. ~ 28.9.30. | 21 | - | - | - |
| | 11월 | 25.11.1. ~ 28.10.31. | 27 | 11월 | 25.11.1. ~ 28.10.31. | 11 |
| | 12월 | 25.12.1. ~ 28.11.30. | 11 | 12월 | 25.12.1. ~ 28.11.30. | 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팁스 지원 기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 구분 | | 2022 | 2023 | 2024 | 2025 | |
|-------|-----------|------|--------|---------|-------------|-------------|
| VC추천형 | 기업 수 | 계 | 41 | 150 | 180 | 152 |
| | | 수도권 | 25 | 88 | 105 | 97 |
| | | 비중 | 61.0 | 58.7 | 58.3 | 63.8 |
| | | 비수도권 | 16 | 62 | 75 | 55 |
| | R&D 지원 규모 | 계 | 23,814 | 180,000 | 216,000 | 182,400 |
| | | 수도권 | 14,536 | 105,600 | 126,000 | 116,400 |
| | | 비중 | 61.0 | 58.7 | 58.3 | 63.8 |
| | | 비수도권 | 9,278 | 74,400 | 90,000 | 66,000 |
| 글로벌형 | 기업 수 | 계 | - | - | - | 24 |
| | | 수도권 | - | - | - | 18 |
| | | 비중 | - | - | - | 75.0 |
| | | 비수도권 | - | - | - | 6 |
| | R&D 지원 규모 | 계 | - | - | - | 36,000 |
| | | 수도권 | - | - | - | 27,000 |
| | | 비중 | - | - | - | 75.0 |
| | | 비수도권 | - | - | - | 9,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팁스R&D 사업⁶⁾의 경우, 운영사의 추천권이 사용된 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원 기업 수 및 R&D 지원 규모의 수도권 비중은 연도별 증감은 다소 있으나 2022년부터 2025까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R&D'(일반회계, 2134-309)

| 팁스(TIPS)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부담 |
|----------|--|-------|---------|---------------|
| 일반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1~2억원 이상의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24 개월 | 최대 5억원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 딥테크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 및 추천을 받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5억원 | |
| 글로벌 트랙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 및 추천을 받고, 해외 투자자(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로부터 10만불 이상 투자유치를 받는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36 개월 | 최대 12억원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2025.4.9.

[팁스R&D 운영사의 추천권 사용 기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계 | 629 | 848 | 1,004 | 870 |
| 수도권 | 470 | 553 | 648 | 535 |
| 비중 | 74.7 | 65.2 | 64.5 | 61.5 |
| 비수도권 | 159 | 295 | 356 | 33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지원 기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 기업 수 | 계 | 500 | 720 | 900 | 700 |
| | 수도권 | 370 | 464 | 583 | 441 |
| | 비중 | 74.0 | 64.4 | 64.8 | 63.0 |
| | 비수도권 | 130 | 256 | 317 | 259 |
| R&D 지원 규모 | 계 | 249,637 | 479,347 | 599,900 | 506,000 |
| | 수도권 | 184,640 | 306,600 | 376,450 | 326,600 |
| | 비중 | 74.0 | 64.0 | 62.8 | 64.5 |
| | 비수도권 | 64,997 | 172,747 | 223,450 | 179,4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이므로 지원 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며, 특히 창업 생태계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유치하여야 하는 투자 규모 요건을 완화(스케일업팁스(성장): 10→7억원, 글로벌팁스: 15→10억원)하고,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 관련 지원계획]

| 구 분 | |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 | | '25년 | '26년 |
| 신청 자격 | 스케일업 팁스 (성장)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 투자유치 |
| | 글로벌 팁스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 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
| 가점 | 공통 | 〈신 설〉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5점 ¹⁾ |

주: 1) -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3점

-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
하는 경우 2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2.27.

선정 평가는 6~9월 동안, 협약 체결은 7~10월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 및 가점 부여에 따른 비수도권 기업 선정 효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2026년 신청·선정·협약 일정>

| 구분 | | 지원규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
| 스케일업 팁스 (성장) | 일반형 | 상반기(1회) | 100개 내외 | 5월 | 6~7월 | 8월 |
| | | 하반기(1회) | 100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 특화형 | 상반기(1회) | 25개 내외 | 4월 | 5~6월 | 7월 |
| | | 하반기(1회) | 25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정책지정형 | 상반기(1회) | 50개 내외 | 부처별 별도 공고 | | |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상반기(1회) | 45개 내외 | 5월 | 6~7월 | 8월 |
| | | 하반기(1회) | 45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 특화형 | 상반기(1회) | 5개 내외 | 4월 | 5~6월 | 7월 |
| | 정책지정형 | 상반기(1회) | 5개 내외 | 부처별 별도 공고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2.27.

(2) 운영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 개편 및 신규 과제 수 증가 등에 대비하여 2026년 59개의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였다.⁸⁾

선정 과정에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는 지역(비수도권) 거점 투자사에 가점 3점을 부여하였으나⁹⁾ 신규 59개 운영사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운영사가 54개 선정되는 등 수도권 비중이 90.4%로 높아졌다.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의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

| 구분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 계 | 10 | 19 | 19 | 24 | 83 |
| | 수도권 | 8 | 17 | 17 | 21 | 75 |
| | 비중 | 80.0 | 89.5 | 89.5 | 87.5 | 90.4 |
| | 비수도권 | 2 | 2 | 2 | 3 | 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사는 유관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R&D 전 주기에 걸쳐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R&D 종료 후에도 후속투자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바, 기업과의 지리적 연계도 중요해 보인다.

8) <2026년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유형>

| 구분 | 특화 운영사 | 일반 운영사 |
|-------|----------------------------------|---|
| 구성 | 컨소시엄(투자사 + 학·연·컨설턴트) | 민간투자사 단독 *R&D 과제 신청 및 수행 시 대학, 연구소, 컨설팅 기관 등과 자율 매칭·협력 |
| 운영 방식 | 범위 내 일정 배수만큼 추천권 부여 | 추천권 부여 대신 과제 단위 자율경쟁 |
| 역할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
| 수행 과제 | 스케일업팁스(성장, 글로벌형) 중 특화형 | 스케일업팁스(성장, 글로벌형) 중 일반형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 2025.12.29.

9)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 2025.12.29.

[운영사 역할]

- 유망 중소벤처 발굴 및 투자
 - * 지역혁신기업 및 핵심기술분야(국가 전략기술, 지역특화산업 등) 집중 발굴
- 유망 중소벤처, 대학, 연구소, 컨설팅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 참여
-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R&D 전주기, 사업화 등 기업성장 지원
- 유망 중소벤처의 R&D 후속투자, 글로벌 진출 등 마일스톤 관리 등
 - * 마일스톤 관리,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필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 2025.12.29.

그런데 운영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경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바, 운영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및 동법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기준¹⁰⁾, 522개의 민간투자사 중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 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0.>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86.4%인 451개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은 있다.

[국내 민간투자사의 지역별 현황]

(2026.5. 기준, 단위: 개사, %)

| 구분 | 벤처 투자회사 |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창업기획자 | 외국 투자회사 | 기타 ¹⁾ | 계 |
|------|------------|---------------|-----------------|-------|------------|------------------|-------------|
| 계 | 254 | 97 | 57 | 100 | 1 | 13 | 522 |
| 수도권 | 226 | 90 | 52 | 70 | 0 | 13 | 451 |
| 비중 | 89.0 | 92.8 | 91.2 | 70.0 | 0.0 | 100.0 | 86.4 |
| 비수도권 | 28 | 7 | 5 | 30 | 1 | 0 | 71 |

주: 1) 기타 =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1. 「벤처투자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기준이며, 투자사 유형 구분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5.12.29.)상 지원자격에 따른 것임

2. 해외 소재한 13개의 외국투자회사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수도권의 국내 민간투자사 수 대비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수 비중이 16.6%로 비수도권 비중 11.3%에 비해 5.3%p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간투자사 대비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의 지역별 비중]

(2026년 기준, 단위: 개사, %)

| 구분 | 국내 민간투자사 수 (A)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수 (B) | 국내 민간투자사 수 대비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수 비중(B/A) |
|------|-------------------|---------------------|--|
| 계 | 522 | 83 | 15.9 |
| 수도권 | 451 | 75 | 16.6 |
| 비수도권 | 71 | 8 | 11.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한 비수도권 거점 투자사에 대한 가점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사의 수도권 편중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투자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역 운영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지역 기업 투자라는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여 사업 운영의 지역 균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 및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신규 운영사 선정 시에도 기존 비수도권 거점 투자사에 대한 가점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수도권 편중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의 입주·멤버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배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 등

가. 현 황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¹⁾(창업진흥원, 보조)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현액 318억 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글로벌창업 생태계촉진 | 50,410 | 50,410 | - | - | 50,410 | 50,410 | - | - | 23,325 | 23,325 |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31,885 | 31,885 | - | - | 31,885 | 31,885 | - | - |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허브(Startup Venture Campus Seoul)는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인프라(사무공간 등) 제공 및 글로벌진출·오픈이노베이션·투자·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설이다.

서울 홍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2층의 공간(연면적 13,275㎡(4,016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입주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독립공간 57개실 및 회의실 3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5134-311의 내역사업

[글로벌 창업허브 공간구성]

| 층수 | 기능 | 공간 구성 |
|--------|------|--|
| 11~12F | 랜드마크 | · 칠링존, 글로벌 라운지 등 랜드마크 행사장 |
| 4~10F | 입주공간 | · 앵커기업, VC, 스타트업 등 입주기업 사무공간, 회의실 등 |
| 1~3F | 네트워킹 | · 강연, IR, 밋업(meet-up) 등 행사에 활용 가능한 라운지 |
| B1 | K-컬처 | · K-컬처 전시공간 등 |
| B2 | 휴게공간 | · 입주기업 전용으로 이용 가능한 휴게공간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K-StartHub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6.2.9.

나. 분석의견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창업허브는 계획 대비 개소가 지연되었는바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의 2025년 예산에는 2025년 말까지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구축비 314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축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창업진흥원에 교부된 민간자본보조액 314억 4,500만원 중 38%인 119억 4,0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2%인 195억 500만원은 이월되었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목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 | | | |
|--------|--------|--------|--------|--------|--------|-----|-------|
| | 추경 예산 | 교부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
| 민간경상보조 | 440 | 440 | 440 | 440 | - | - | 100.0 |
| 민간자본보조 | 31,445 | 31,445 | 31,445 | 11,940 | 19,505 | - | 38.0 |
| 합 계 | 31,885 | 31,885 | 31,885 | 12,380 | 19,505 | - | 38.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이월액 195억 500만원 가운데 2026년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58%인 113억 800만원에 불과한 등 구축 일정 관리·감독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6회계연도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목 | 창업진흥원 | | | | | | | 실집행률 |
|--------|------------------|-------|-------|-------|-------|--------|------|------|
|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집행액 | | | | | 계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계 | | |
| 민간자본보조 | 19,505 | 1,221 | 1,665 | 2,743 | 5,679 | 11,308 | 58.0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6년 2월 글로벌 창업허브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26년 3월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리모델링은 4월 30일에야 완료되었고, 4월 1일 선정 완료된 입주기업은 5월 11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6월까지 순차적 입주), 프로그램 운영은 6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추진 일정]

| 계획(2025년 말 기준) | | 실제(2026. 5월 기준) | |
|----------------|-----------------------|------------------|--------------------|
| 연월일 | 주요 일정 | 연월일 | 주요 일정 |
| '25. 7.~ | 리모델링 공사 시작 | '25. 7.~ | 리모델링 공사 시작 |
| '25. 9. | 운영사 공모 | '25.9.18.~10.31. | 운영기관 공모 |
| '25. 11. | 운영사 선정 | '25.11.24. | 운영사 선정 |
| - | - | '26.1.1. | 운영사 계약 |
| '26. 2. | 조성(리모델링) 완료 예정 | '26.2. 9~3.6. |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26. 3. | 개소 예정 | '26.4.1. | 입주기업 선정 |
| | | '26.4.30. | 리모델링 공사 완료일 |
| | | '26.5.11. | 입주사 입주 개시 |
| | | '26.5.20. | 개소식 |
| | | '26. 6.~ | 프로그램 운영 시작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글로벌 창업허브는 계획 대비 개소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는바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창업허브를 통해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 내 입주 예정인 협력기관은 창업진흥원·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개 운영기관, 8개 앵커기업, 7개 투자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VIC 등 2개 유관기관 등 총 19개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입주 협력기관 및 입주기업 현황]

| 협력기업·기관 및 입주기업(기관 수) | | | 수행기능 | 참여인원 | | 사용 사무공간 | |
|------------------------------|-----------------|------------------------|--|---------|-----|-------------------------------|-------|
| | | | | 총 | 상주 | 실 수 | 규모(㎡) |
| 협 력 기 관 (19) | 운영 기관 (2) | 창업 진흥원 (전문기관) | 협력 네트워크 발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기획, 성과 통계 관리 등 | 8명 | 7명 | 1실 (15인실) | 74.5 |
| | | 한국엔젤 투자협회 (주관기관) | 프로그램 운영, 기업 지원, 행사 지원 등 | 13명 | 13명 | 1실 (17인실) | 70.0 |
| | 앵커기업(8) | |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업 과제 수행 | 각 2~4명 | | 7실 ¹⁾ (각 2~4인실) | 76.0 |
| | 투자사(7) | | IR, 직·간접투자, 투자컨설팅 등 투자 유치 지원 | 각 1~10명 | | 1실 ¹⁾ (2~10인실) | 47.0 |
| | 유관 기관 (2) | 중진공 |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혁신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6명 | 6명 | 1실 (10인실) | 29.0 |
| | | KVIC | 해외 VC, LP 등의 외국인 신고, 세무 절차 및 투자계약 법률자문 등 *벤처투자외환센터 | 6명 | 6명 | 1실 (14인실) | 42.9 |
| 입주기업(43) | | | - | - | 43실 | 1,035.3 | |
| 계(62) | | | - | - | 55실 | 1,374.6 | |

주: 1) 앵커기업과 투자사 중 일부는 공유오피스 사용

1. 입주 공간 배치는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 이후 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글로벌 창업허브 내 독립사무공간은 총 55실로, 그 중 12개실에 대해서는 운영기관(2실)·앵커기업(7실)·투자사(1실)·유관기관(2실)이 사용할 예정으로, 실제 입주 가능한 기업 수는 43개사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사(주관기관)가 따로 있음에도 창업진흥원에서 7명이 상주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VIC(한국벤처투자)에서 상주인원 대비 대규모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등 총 사무공간의 약 24.7%(339.3㎡)를 협력기관의 공간으로 배

치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입주기업의 입주공간 및 입주·멤버십기업의 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3)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최근 3년간('23~'25)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졸업기업에 대한 서류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 입주기업 선정 기준]

| 구분 | 기준 |
|------------|--|
| 가점 (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tartHub 특화 분야 창업기업 - (AI, Beauty·Fashion, Content·Culture) |
| 서류평가 면제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졸업기업 |
| | • TIPS 졸업기업 |
| |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졸업기업 |
| | • 야기유니콘 육성사업 졸업기업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K-StartHub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6.2.9.

그 결과 43개의 입주기업(모두 국내기업) 중 88.4%인 38개사가 AI 등 특화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졸업기업이 7개사, 신산업창업기업이 6개사, 일반 기업은 5개사가 선정되었다.

[유형별 입주기업 신청·선정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 일반 | 특화분야 | | | 신산업 창업 |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졸업기업 | | | | 계 |
|----|----|------|--------------------|---------------------|-----------|--------------------------------------|--------------|------------------------------|-----------------------|-----|
| | | AI | Beauty· Fashion | Content· Culture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졸업기업 | TIPS 졸업기업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졸업기업 | 야기유니콘 육성사업 졸업기업 | |
| 신청 | 23 | 90 | 27 | 23 | 8 | 3 | 1 | 14 | 2 | 163 |
| 선정 | 5 | 25 | 7 | 6 | 6 | - | - | 6 | 1 | 43 |

주: 최초 입주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참고로 멤버십기업(72개사 선정 완료)이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90개의 좌석(202.5㎡)으로 구성됨

3) 현재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협력기관 입주계약 만료 시 기존 협력기관 활용공간을 입주기업 활용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사를 통한 글로벌 진출, 대학 인터십 연계, IR 등 투자 연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제공 프로그램 내용]

| 유형 | 프로그램 내용 | 수행기관 |
|----------------|--|-----------------------|
| 오픈 이노베이션 |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PoC, MVP 개발,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 멘토링 지원 *기업당 7,500만원 내외 지원 | 한국엔젤투자협회, 앵커기업(8개사) |
| 글로벌 진출 및 자문 지원 | 글로벌 진출 준비도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기업당 5,000만원 내외 지원 | 한국엔젤투자협회, 파트너사(124개사) |
| | 기술, 법률, 세무 등 경영 자문 서비스 바우처 제공 *바우처 기업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
| 대학 연계 | 내·외국 인턴십 연계, 기술 이전, R&D지원 | 한국엔젤투자협회, 대학(6개) |
| 투자 연계 | IR, 투자 컨설팅·교육, 투자 컨퍼런스, 국내외 투자자 연계 | 한국엔젤투자협회, 투자사(7개사) |
| 네트워킹 | 스타트업·투자사·유관기관 등 교류, 명사 초청 강연 및 네트워킹 등 | 한국엔젤투자협회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할 앵커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등의 대기업이 있으며, 투자 유치 지원을 지원할 투자사들은 Shorooq Partners, Antler 등의 글로벌 VC가 선정되었다.

[앵커기업 및 투자사 현황]

| 구분 | 협업기업 현황 |
|---------|--|
| 앵커기업(8) |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현대자동차, IBM, 현대건설, 포스코, 벤츠코리아 |
| 투자사(7) | Shorooq Partners, Antler, 큐네스티, Sazze Partners, Jolt Capital, Vertex, 뮤어우즈 벤처스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AI, Beauty·Fashion, Content·Culture 등 특화 분야 창업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기업을 분야별로 선정한 취지에 맞게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라는 글로벌 창업허브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글로벌 VC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글로벌 창업허브를 통해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5월부터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으로부터 운영기관(창업진흥원)이 수취하는 공간 임대료 및 대관료의 국고 수입으로의 납입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의 사용 등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7년에는 운영기관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명확히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 건물 임차료·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운영비는 2025년 예산 및 2026년 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창업진흥원 출연)에 편성되어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 예산 | 출연 운영비 내용 |
|-------|---|--------|----------------------|
| 2025년 | 창업사업화지원(일반회계, 5132-302) -창업패키지 -창업성장패키지 | 8,500 | 임차료·관리비 |
| 2026년 | 창업사업화지원(일반회계, 5132-302) -창업패키지 -특화창업패키지 | 17,460 | 임차료·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

주: 건물 임대차계약(2024.9.20.,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창업진흥원)상 계약기간은 2025.2.1.~2030.1.31. (60개월)이나, 특약사항에 따라 초기 4개월(2025.2.~5.)간 임차료 면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출연기관이자 건물 임차인인 창업진흥원(운영기관)은 국고로부터 임대료·관리비를 지원받아 임대인에게 납부하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는 동시에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으로부터 공간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을 수취한다.

[글로벌 창업허브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의 납부 내역]

| 유형 | 공간 지원 내용 | 기업 납부 내역 |
|-------|----------|--|
| 입주기업 | 독립공간 입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1평(약 3.3㎡)당 133,117원 (계약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 계약면적 : 독립형 사무공간 면적 x 입주사 공용면적(회의실 등) 비율(2.62) ** 임대료 예시(부가세 포함) : 2인실(계약면적 8.33평) - 월 121만원, 5인실(계약면적 14.50평) - 월 210만원 ○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실비로 관리비 부과 ○ (보증금) 공간별 3개월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 |
| 멤버십기업 | 공유공간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료 월 35만원 * 등록기간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가입 시 이용금액의 5% 할인을 적용 |

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K-StartHub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6.2.9.
2. 창업진흥원, 「2026년 Startup Venture Campus Seoul(舊 글로벌 창업허브) 멤버십 (확장형) 모집공고」, 2026.4.8.

또한, 입주기업의 입주 및 멤버십기업의 공간 사용이 5~6월 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진흥원의 공간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은 5월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7조4)의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세입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에는 창업진흥원의 수입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의 수입을 국고로 반납할지 운영사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상태이다.

원칙적으로는 창업진흥원의 수입 전액을 국고 수입으로 반납할 필요가 있으나, 2026년 국고로 출연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활한 프로

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럼 운영을 위해 부족분을 운영사의 수입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입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7년에는 적정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창업진흥원 수입 전액을 국고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5월부터 입주기업 및 멤버십기업으로부터 창업진흥원(운영기관)이 수취하는 공간 임대료 및 대관료의 국고 수입으로의 납입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의 사용 등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7년에는 창업진흥원의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명확히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은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이차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584억 9,600만원의 88.7%인 51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 75,588 | 75,588 | - | - | 75,588 | 68,615 | - | 6,973 | 73,783 | 73,783 |
|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58,496 | 58,496 | - | - | 58,496 | 51,879 | - | 6,617 | 56,484 | 56,484 |
|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 12,406 | 12,406 | - | - | 12,406 | 8,544 | - | 3,862 | 11,165 | 11,16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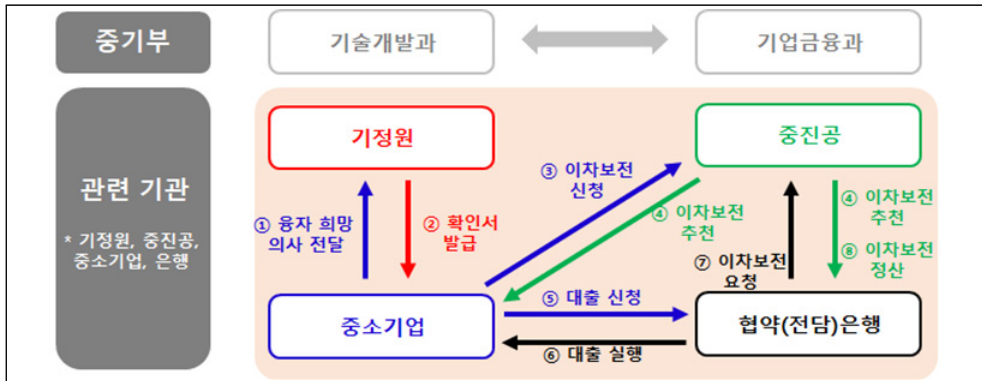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연구개발비의 협약금액 대비 감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R&D 수행기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종료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이 'R&D 수행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받아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하며,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이후 공단이 이차보전금을 은행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53-301의 내역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2025년 사업 기준 대출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총 5년으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R&D 부족지급액의 최대 2배로 하되 10억원 이내이며, 이차보전율은 연 최대 5.5%이다.²⁾

나. 분석의견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수요 및 홍보 효과 부족으로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4년에는 R&D 계속·종료비가 감액된 2,688개 과제의 감액분 2,146억원의 2배 수준인 4,364억원의 예상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이차보전 예산 12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2024년 기대대출규모 1,492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과 2025년 예상 신규 대출규모 1,52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합하여 예산 12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2024.3.19.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변경공고」, 2025.7.7.

[연도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산출근거 |
|------|--------|---|
| 2024 | 12,000 | (신규) 436,400백만원 × 0.5(평균) × 5.5%(이차보전율) |
| 2025 | 12,406 | (기존) 149,200백만원 × 5.5% (이차보전율) + (신규) 152,600백만원 × 0.5(평균) × 5.5%(이차보전율) |
| 2026 | 11,165 | (기존) 202,991백만원 × 5.5% (이차보전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 2024년에는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34.8%에 불과하였고, 2025년에는 실집행률이 68.9%로 2024년 대비 다소 개선되어 보이나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다.

[연도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 개사)

| 연도 | 이차보전금 계획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지원 | | |
|------|--------------|-------|------|----------|---------|--------|
| | | | | 이차보전금 지원 | 해당 대출규모 | 지원기업 수 |
| 2024 | 12,000 | 4,170 | 34.8 | 4,170 | 148,073 | 753 |
| 2025 | 12,406 | 8,544 | 68.9 | 8,544 | 188,705 | 91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연례적 불용 문제는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수요 과다 산정, 타 부처와의 협업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R&D 사업비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으로 상환 의무가 없지만 대출을 전제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는바, R&D 수행기관은 대출 유인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R&D 사업비 감액분에 대해 대출을 받기보다는 연구중단 등으로 대응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감액대상이었던 2,477개의 과제 중 169개가 연구중단(사업포기)을 결정하였으며, 중단된 R&D 규모는 125억 6,900만원으로 감액대상 R&D 규모인 2,045억 8,500만원 중 6.1%에 해당했다.³⁾

또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여 수요를 과다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신규 목표 대출규모는 1,526억원으로, 2024년 신규 목표 대출규모 4,364억원 대비 감소하긴 하였으나, 수요를 여전히 과다산정한 탓에 목표 대비 신규 신청은 36.4%인 556억원, 신규 지원은 26.6%인 406억원에 불과하였다.

[2025년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지원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 목표 | 신청 | | 지원 | |
|---------------|---------|--------|---------|--------|---------|
| | 대출규모 | 신청기업 수 | 대출규모 | 지원기업 수 | 대출규모 |
| 2024년 기존 신청기업 | 436,400 | 857 | 195,499 | 753 | 148,073 |
| 2025년 신규 신청기업 | 152,600 | 215 | 55,596 | 160 | 40,632 |
| 합 계 | - | 1,072 | 251,095 | 913 | 188,70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타 부처와의 협업 및 홍보의 실질적인 효과가 부진했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타 소관 R&D 수행기관이 R&D 협약금액 감액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2024년 이차보전 지원을 신규 신청한 대출규모를 R&D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360억 3,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69.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7., pp.293~299.

[부처별 2024년 신규 이차보전 신청·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 R&D 소관 부처 | 신청 현황 | | | 지원 현황 |
|--------------|---------------------|----------------|-------------|-----------------|
| | 24년 R&D 협약액 감액규모 | 이차보전 대상 대출규모 | | 이차보전 대상 대출규모 |
| | | 규모 | 비중 | |
| 중기부 | 79,596 | 136,035 | 69.6 | 110,100 |
| 과기부 | 24,143 | 31,974 | 16.4 | 20,780 |
| 해양수산부 | 4,796 | 5,403 | 2.8 | 5,397 |
| 환경부 | 3,592 | 5,122 | 2.6 | 3,184 |
| 기타 | 10,390 | 16,965 | 8.7 | 8,612 |
| 합 계 | 122,519 | 195,499 | 100.0 | 148,073 |

주: 2024년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소관 R&D 수행기관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 및 홍보를 통해 타 부처 소관 R&D 수행기관의 수요를 확보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2025년 이차보전 지원을 신규 신청한 대출규모를 R&D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320억 1,1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7.6%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부처별 2025년 신규 이차보전 신청·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 R&D 소관 부처 | 신청 현황 | | | 지원 현황 |
|--------------|---------------------|---------------|-------------|-----------------|
| | 25년 R&D 협약액 감액규모 | 이차보전 대상 대출규모 | | 이차보전 대상 대출규모 |
| | | 규모 | 비중 | |
| 중기부 | 47,853 | 32,011 | 57.6 | 24,085 |
| 산업부 | 32,391 | 12,698 | 22.8 | 8,892 |
| 과기부 | 7,902 | 2,316 | 4.2 | 1,988 |
| 문체부 | 4,911 | 3,658 | 6.6 | 1,654 |
| 기타 | 5,544 | 4,913 | 8.8 | 4,013 |
| 합 계 | 98,602 | 55,596 | 100.0 | 40,632 |

주: 2025년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소관 R&D 수행기관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 기대대출규모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라, 2025년 신규 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지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안내를 위한 공문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 홍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협업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인 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보다 효과적인 협업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홍보 현황]

| 홍보주체 | 추진 내용 | | | |
|---------------------------|-------------|-----------------------------------|----------|-----|
| | 방식 | 홍보 내용 | | |
| 중소벤처기업부 | 공문 | 공문시행을 통하여 타부처 홍보(14개 부처, 2회)를 실시 | | |
| | 상담회, 이메일 | 안내 및 홍보일 | 안내기관 수 | 비고 |
| | | '25.01.14~02.07 | 413개사 | 상담회 |
| | | 2025.05.14 | 735개사 | 이메일 |
| | | 2025.06.04 | 56개사 | |
| | | 2025.06.24 | 708개사 | |
| 2025.06.27 | 50개사 | | | |
|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공문 | 각 부처별 전문기관으로 총 7회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 | | |
| | | 홍보요청일 | 요청기관 | |
| | | 2025.04.01 | 21개 전문기관 | |
| | | 2025.05.13 | 13개 전문기관 | |
| | | 2025.05.19 | | |
| | | 2025.07.31 | | |
| | | 2025.09.09 | | |
| | | 2025.09.30 | | |
| 2025.11.06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6년 예산에는 신규 대출에 대한 지원 없이 기대대출규모 2,03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만으로 11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 대출규모가 1,887억원임을 고려하면 2026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협약 기업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가. 현황

동반성장 네트워크론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은 발주서를 기반으로 수주 기업에 납품 전 생산자금을 우선지원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1,4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밸류체인 안정화 | 200,000 | 200,000 | - | - | 200,000 | 199,996 | - | 4 | 200,000 | 200,000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140,000 | 140,000 | - | - | 140,000 | 140,000 | - | - | 140,000 | 14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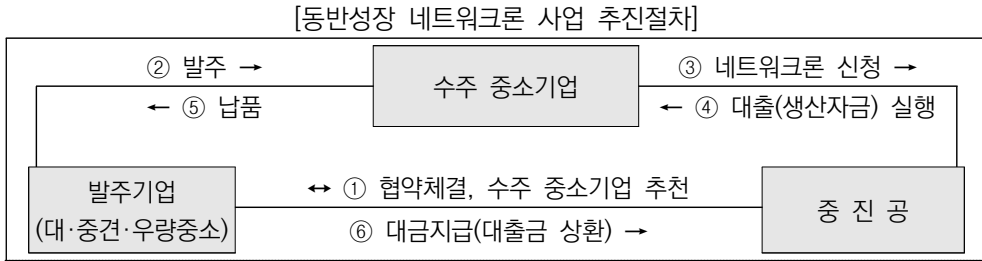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발표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지원 형태로 제안된 후 2024년도부터 예산 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중소기업)이 추천한 수주 중소기업에 대해 발주를 하면, 수주 중소기업은 공단에 네트워크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이 실행된 수주 중소기업이 발주기업에 납품하면 공단은 발주기업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7의 내역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출한도는 수주기업 기준 건당 발주금액의 80% 이내에서 연 15억원이고, 대출기간은 30~365일 사이에서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로 결정된다.²⁾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공공조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동반성장 협약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추진 결과 2024년에는 147개의 수주 중소기업, 34개의 발주기업이 참여하여 258건의 거래에 대해 1,0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2025년에는 196개의 수주 중소기업, 51개의 발주기업이 참여하여 298건의 거래에 대해 1,395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공고」, 2025.1.9.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단위: 개사, 백만원, 건)

| 대출기간 | 구분 | 2024 | 2025 |
|-----------|--------|---------|---------|
| 15일~30일 | 수주기업 수 | 1 | 2 |
| | 발주기업 수 | 1 | 1 |
| | 대출금액 | 44 | 267 |
| | 대출 건 | 1 | 3 |
| 45일~90일 | 수주기업 수 | 20 | 16 |
| | 발주기업 수 | 7 | 8 |
| | 대출금액 | 16,308 | 10,296 |
| | 대출 건 | 55 | 52 |
| 105일~135일 | 수주기업 수 | 10 | 2 |
| | 발주기업 수 | 3 | 1 |
| | 대출금액 | 7,334 | 1,487 |
| | 대출 건 | 15 | 8 |
| 150일~180일 | 수주기업 수 | 35 | 27 |
| | 발주기업 수 | 7 | 12 |
| | 대출금액 | 21,459 | 18,465 |
| | 대출 건 | 75 | 73 |
| 195일~270일 | 수주기업 수 | 11 | 5 |
| | 발주기업 수 | 2 | 2 |
| | 대출금액 | 9,512 | 4,072 |
| | 대출 건 | 17 | 6 |
| 285일~ | 수주기업 수 | 6 | 15 |
| | 발주기업 수 | 1 | 4 |
| | 대출금액 | 5,733 | 9,820 |
| | 대출 건 | 14 | 19 |
| 1년 | 수주기업 수 | 64 | 129 |
| | 발주기업 수 | 13 | 23 |
| | 대출금액 | 39,610 | 95,093 |
| | 대출 건 | 81 | 137 |
| 계 | 수주기업 수 | 147 | 196 |
| | 발주기업 수 | 34 | 51 |
| | 대출금액 | 100,000 | 139,500 |
| | 대출 건 | 258 | 298 |

주: 2024년 기준 협약기업 56개사 중 발주 신청기업이 34개사로, 34개사는 모두 사업 지원을 받음
 2025년 기준 협약기업 87개사 중 발주 신청기업이 53개사로, 그 중 51개사가 사업 지원을 받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년간의 사업 수행 결과 수주 중소기업의 납품 연체로 인한 대출 부실이 1건 14억 800만원의 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2년 누적 대출금액 2,395억원 대비 0.6%로, 대출 부실은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부실 발생 현황]

(2025.12월 말 기준, 단위: 개사, 백만원, 건)

| 구분 | 납품 미이행 부실 (수주기업 부실) | | | | 납품 이행 후 부실 (발주기업 부실) | | | |
|------|------------------------|--------|-------|------|-------------------------|--------|------|------|
| | 수주기업 수 | 발주기업 수 | 대출금액 | 대출 건 | 수주기업 수 | 발주기업 수 | 대출금액 | 대출 건 |
| 2024 | 1 | 1 | 1,408 | 1 | - | - | - | - |
| 2025 | - | - | - | - | - | - | - | - |

주: 1. 부실 발생한 1건은 부도/파산/회생 등과 무관한 단순 납품 연체로 인한 것임

2. 부실금액: 사고(3개월 이상 연체)금액 - 사고금액 회수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수주 중소기업에게 납품에 필요한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및 매출채권 양도를 한 후에는 발주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수주 중소기업에 대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에는 10월에 예산의 조기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사업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³⁾

다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반성장 협약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협약에 따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 가능)이며, 발주기업은 수주기업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⁴⁾

3) [연도별 신청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건)

| 연도 | 신청 수주기업 수 | 발주기업 수 | 신청금액 | 신청 건 |
|------|-----------|--------|---------|------|
| 2024 | 152 | 34 | 120,016 | 295 |
| 2025 | 211 | 53 | 179,328 | 36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0조 (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협약 상태만이 유지될 경우 기존의 협약 기업과 수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만 공고히 될 뿐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 기업은 총 87개로, 누적 기업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2023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이 9,892개임을 고려할 때⁵⁾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 협약 기업 수]

(단위: 개사)

| 규모별 | 2024 | 2025 | 누적 |
|---------|------|------|----|
| 대기업 | 6 | 9 | 15 |
| 중견기업 | 19 | 4 | 23 |
| 우량 중소기업 | 31 | 18 | 49 |
| 합 계 | 56 | 31 | 8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산에 사업 홍보, 수요발굴 출장비 등이 반영되어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 협약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동반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통보 이전에 통지한 발주서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매출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업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이 중단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발주기업은 수주기업과 함께 동반상생의 실현을 위해, 수주기업이 결제일에 대금 등의 지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적극 수립하는 등 수주기업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5)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6)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네트워크론 활용 발주기업은 '동반성장지수'의 평가지표 중 상생협력 활동 관련 지표에 점수가 반영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집행액 | 편성 근거 |
|------|-----|-----|--|
| 2025 | 39 | 3 | 사업홍보, 업무협약, 평가위 운영 등 기타 사업 운영비 10백만원×4분기 |
| | 5 | 5 | 네트워크론 수요발굴, 업무협약 등 출장비 150천원×3회×12개월 |
| 2026 | 39 | - | 홍보물제작,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운영 등 기타운영비 10백만원×4분기 |
| | 5 | - | 수요발굴 업무협약 등 출장비용(150천원×3회×12개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거래기업(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상생대기업·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⁷⁾⁸⁾의 경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액공제⁹⁾, 환출이자, 장려금 등의 세제혜택 및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 구분 | 동반성장 종합평가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
| 동반성장지수 | 평가점수(=동반성장 종합평가 50%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50%)를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 |
| 대상 | 1·2차 중소기업, 대기업 | 대기업 |
| 평가주체 | 동반성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 평가기준 | 협력사 채감도 조사 70점+가점 30점 | 상생협력 지원 등 100점 |
| 네트워크론 활용 발주기업의 해당사항 | '창의·자발적 상생활동'(최대 2점) -대·중견기업 상생협력 활동 평가비례명 | '상생협력 지원: 금융지원'(0.5점) -발주기업 협약체결 시 적용[계량]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 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 8) 기존의 외상매출채권은 1차 거래기업까지만 발행되는 것과 달리, 상생결제제도는 4차 거래기업까지 발행이 가능(자료: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 9)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 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

[상생결제제도 기능 및 혜택]

| 구분 | 내용 |
|----|---|
|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대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하위 기업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유동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매출채권은 경영 환경에 따라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회수,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등의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② 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가능 |
|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의 범위에서 법인세 공제 가능 ○ 환출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조기 현금화할 경우,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즉시 지급 ○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거래기업의 채권 만기일 기준 '할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MMDA에 준하는 금리로 채권 발행 거래기업에게 지급 |

자료: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이를 참고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공공조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동반성장 협약 기업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해외거점센터의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방지 및 해외거점센터·유관기관 해외사무소의 기능 중심의 일원화 또는 연계·운영 필요

가. 현황

글로벌비즈니스센터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교역지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부는 계획현액 176억 9,300만원의 99.8%인 17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²⁾(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는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지원을 위해 세계 혁신거점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부는 138억 9,600만원의 98.2%인 13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 및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글로벌화지원 플랫폼 | 32,141 | 32,141 | 5,453 | - | 37,594 | 37,304 | - | 290 | 39,407 | 39,407 |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17,693 | 17,693 | - | - | 17,693 | 17,650 | - | 43 | 17,693 | 17,693 |
|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 13,896 | 13,896 | - | - | 13,896 | 13,650 | - | 246 | 13,896 | 13,896 |

자료: 중소기업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입주·비입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제공, 현지 법인 설립 지원, 법률·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152-301의 내역사업

2) 코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152-301의 내역사업

회계 자문, 바이어 매칭 및 전시회 참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지 진출 정보 제공,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능]

| 구분 | 내용 |
|-------------|---|
| 공간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공간인 독립실 제공(기본 1년, 최대 3년) *시·공간적으로 다수 기업이 공유하여 활용 가능 **임대료 업체부담 비율: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100% ○ 비입주기업 및 협력기관 등이 자유롭게 예약·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제공 |
| 현지 법인 설립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회계법인 자문 |
| 사업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네트워크 활용 시장조사 ○ 유망산업 법률·회계 자문 ○ 대형물 입점, 전시회 참여 등 |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 유망국 정보제공 및 컨설팅 ○ 4대 신흥시장 수출 유망품목 현지진출 지원 ○ 기존 시장 수출 감소 품목에 대한 수출국 다변화 정보제공 등 |
| 현지 진출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발굴(한인단체 등), 해외진출 노하우(선배기업인), 해외규제·정책(법무·회계·노무), 지역별 전략품목(정보제공·컨설팅) 등 4대 분야 멘토단 구성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 및 심층상담 지원 ○ 해외규제 정책 안내서 제작 |
| 네트워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유망 대학과 협업하여 해당 대학의 졸업예정 인력의 GBC 입주 및 지원기업과의 현지채용 매칭 등 지원 강화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세부추진 계획(안)」, 2025.3.

2025년 기준 총 14개국에서 22개소가 운영되었고, 272개의 독립실에 330개사가 입주하였으며, 12억 8,300만불의 수출, 56개의 해외 법인 설립, 2,764억원의 투자 유치 등을 기록하였다.

[2025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현황]

(단위: ㎡, 실, 개, 개사, 백만불, 개사, 억원)

| 센터 | 지역 | 공간규모 | 독립 실수 | 공유 좌석 수 | 입주 기업 수 | 수출 실적 | 해외 법인 설립 기업 수 | 투자 유치 실적 | 개소 연도 |
|---------|-------|--------|----------|------------|---------------|----------|---------------------|-------------|----------|
| 뉴욕 | 미국 | 589 | 11 | 16 | 22 | 15 | 4 | 3 | 2006 |
| LA | | 1,072 | 20 | 12 | 24 | 68 | 4 | - | 2003 |
| 워싱턴D.C. | | 576 | 10 | 12 | 10 | 8 | 2 | 70 | 2004 |
| 시카고 | | 801 | 16 | 5 | 20 | 143 | 4 | 3 | 1998 |
| 멕시코시티 | 멕시코 | 299 | 9 | 2 | 6 | 67 | 2 | - | 2008 |
| 산티아고 | 칠레 | 662 | 8 | 6 | 6 | 1 | - | - | 2016 |
| 프랑크푸르트 | 독일 | 1,339 | 15 | 8 | 17 | 50 | 1 | - | 2000 |
| 두바이 | UAE | 487 | 15 | 14 | 22 | 65 | 1 | 44 | 2006 |
| 리야드 | 사우디 | 369 | 10 | 14 | 14 | 115 | 3 | 1,176 | 2023 |
| 모스크바 | 러시아 | 404 | 8 | 8 | 9 | 121 | 3 | - | 2006 |
| 알마티 | 카자흐스탄 | 285 | 7 | 6 | 8 | 13 | - | - | 2014 |
| 베이징 | 중국 | 1,070 | 10 | 10 | 9 | 14 | 1 | 62 | 2002 |
| 상하이 | | 2,188 | 16 | 24 | 20 | 66 | 4 | 124 | 2006 |
| 선전 | | 722 | 10 | 6 | 15 | 76 | 1 | 183 | 2022 |
| 충칭 | | 527 | 8 | 4 | 7 | 167 | - | - | 2016 |
| 칭다오 | | 1,989 | 10 | 16 | (2025.12. 개소) | | | | 2025 |
| 도쿄 | 일본 | 614 | 19 | 8 | 26 | 40 | 7 | 867 | 2004 |
| 호치민 | 베트남 | 500 | 15 | 12 | 15 | 44 | 1 | - | 2004 |
| 하노이 | | 508 | 15 | 6 | 20 | 49 | 3 | - | 2014 |
| 방콕 | 태국 | 398 | 10 | 9 | 13 | 68 | 1 | 232 | 2017 |
| 뉴델리 | 인도 | 1,367 | 15 | 45 | 24 | 90 | 4 | - | 2006 |
|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 963 | 15 | 20 | 23 | 3 | 10 | - | 2024 |
| 합 계 | | 17,728 | 272 | 263 | 330 | 1,283 | 56 | 2,764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KSC)는 국내·외 투자를 받은 이력 또는 최근 3년 이내 진출지역의 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법인 설립, 법률·회계 자문, AC·VC 매칭(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물리적 공간을 두고 있는 거점형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물리적 공간이 없는 프로그램형의 경우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유형별 기능]

| 구분 | 거점형 | 프로그램형 |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
| 형태 | 현지에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고 입주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현지 물리적 공간 없이 국내외에서 단기(20주 내외) AC 프로그램 제공 |
| 센터 현황 | 미국(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프랑스(파리), 베트남(하노이), 일본(도쿄) 등 6개소 | 미국(뉴욕), 일본(오사카), UAE(두바이) 등 3개소 |
| 지원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점 조기정착 지원 - 현지 입주공간(독립실) 및 인프라(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제공 - 법인 설립, 비자발급, 계좌개설 등 행정 절차 지원 -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전략보고서 제공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 기술·경영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등 전략 멘토링 - 글로벌 대기업 및 CVC와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VC, AC 등 파트너 매칭 - 투자유치 프로그램(IR, 데모데이) 운영 및 사업 파트너와의 기술 제휴·공동 R&D 등 시장진출 지원 ○ 지속적인 성과창출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 연계 등을 통한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파트너사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 PoC, 협력 파트너사 발굴 등(국내·외 총 20주 내외) - (사업화 자금) 해외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 비고 | - | 非인프라 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하여 단계적 폐지 예정 * (24년) 8개 → (25년) 3개 → (27년) 0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중 거점형의 경우 2025년 기준 총 5개국에서 5개소가 운영되었고, 74개의 독립실에 119개사가 입주하였으며, 1,059억원의 수출, 14개의 해외 법인 설립, 5,805억원의 투자 유치 등을 기록하였다.

[2025년 거점형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운영 현황]

(단위: m², 실, 개, 개사, 억원, 개사, 억원)

| 센터 | 지역 | 공간 규모 | 독립실 수 | 공유 좌석 수 | 입주 기업 수 | 수출 실적 | 해외법인 설립기업 수 | 투자 유치 실적 | 개소 연도 |
|-------------------|------|-------|-------|---------|--------------|-------|-------------|----------|-------|
| 시애틀 | 미국 | 896 | 16 | 14 | 24 | 64 | 3 | 214 | 2019 |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277 | 15 | 5 | 29 | 66 | 5 | 694 | 2020 |
| 파리 | 프랑스 | 50 | 18 | 17 | 24 | 888 | 2 | 623 | 2022 |
| 하노이 | 베트남 | 107 | 10 | - | 17 | 12 | - | 311 | 2023 |
| 도쿄 | 일본 | 89 | 15 | 2 | 25 | 29 | 4 | 3,963 | 2024 |
|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 미국 | 451 | 20 | 18 | (2026.1. 개소) | | | | 2026 |
| 합 계 | | 1,870 | 94 | 56 | 119 | 1,059 | 14 | 5,805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타 부처 소관 해외거점센터인 aT센터, IT지원센터, KIC 등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창업기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및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의 해외거점센터와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기능 중심으로 일원화 또는 연계·운영하여 효과적인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과제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³⁾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거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KSC 등 창업기업 지원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Startup Venture Campus; SVC)’를 2030년까지 7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⁴⁾

3) <과제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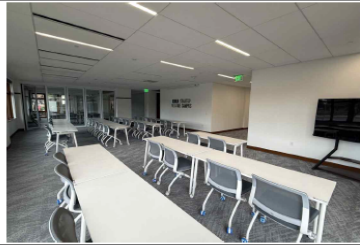

- (창업국가 실현)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산
- 스타트업·벤처 해외캠퍼스 및 글로벌 모펀드 조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round X) 확대

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주요 지역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6.4.16.

SVC는 KSC, GBC 등 분산된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거점들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민간 VC가 입주한 상태에서 창업기업 보육·투자유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이다.

첫 SVC로 2026년 1월 9일 개소한 실리콘밸리 SVC는 기존 한국벤처투자 사무소를 확대하여 세계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2층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행사장, 입주공간,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리콘밸리 SVC 개요]

| 구분 | 내용 | |
|-------|---|--|
| 개소일 | 2026. 1. 9. | |
| 위치 | 100 Middlefield Road, Menlo Park,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 공항 및 현지 VC 밀집 지역으로 접근성 우수 *세계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사업가, 모험 자본투자자, 연구기관 등 보유  | |
| 규모 | ○(총면적) 10,341 ft ² ○(구성) 1층은 기업간 협업, 교류, 행사 등 네트워킹 공간, 2층은 입주기업, 지원기관 업무공간으로 구성 | |
| 특화 업종 | AI, 지능형 로봇, 반도체, 항공·우주/방산, 바이오·헬스, 서비스플랫폼 | |
| 주요 시설 | 행사장 | 입주공간 |
| |  |  |

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고] K-스타트업센터 (KSC) 소개 자료」, 2026.4.16.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 「실리콘밸리 통합사무소 운영계획(안)」, 2025.4.

또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할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입주 지원기관과 마루SF, 네이버 벤처스, 현대 크레들 등의 협업기업들이 창업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4월 16일부터 입주 희망 기업을 상시 모집 중이다.⁵⁾

[실리콘밸리 SVC 지원체계]

| 구분 | 내용 | |
|--------------|---------------|--|
| 전체 지원체계 | | |
| 입주 지원기관 (인원) | 중진공 (1) | 창업기업 입주관리 및 액셀러레이팅 등 현지화 |
| | 창진원 (1) | 창업기업 실태조사, 빅테크 매칭 등 사업화 지원, 국내외 Global TIPS, 초격차 등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 | 한국벤처투자 (2) | SVC 총괄관리, 글로벌펀드 조성·관리, VC 네트워킹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기술보증기금 (2) | 현지 법인 설립 및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투자자금 지원 및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 보증 지원 |
| | 신용보증기금 (미정) | 대출 보증 지원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 |
| 외부 협업 | 아산나눔재단 (마루SF) | 시설(숙소)사용, 공동IR, 스타트업 프로그램 상호협력 *25.11. 설립된 공익재단 |
| | 네이버 (벤처스) | 공동협력펀드 조성 등 투자협력 *25.6. 설립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
| | 현대차 (크레들) | 스타트업 교류, 국내 스타트업 공동투자 등 * 2017년 말 설립된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및 제출 자료 재가공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주요 지역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6.1.12.
2.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5)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4.16.

SVC의 경우 현지 매니저만을 채용하여 운영하던 기존 KSC와 달리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기관이 입주한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지원기관 간 협업이 원활해지고 엑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투자자금 및 보증 제공 등의 지원이 보다 적시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인바 개편 방향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2026년 상반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GBC가 없는 싱가포르 내 KSC를 SVC로 개편하고, KSC가 없는 지역인 뉴욕 내 GBC에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가 협업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SVC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GBC와 KSC가 모두 설립되어 있는 도쿄 내 GBC-KSC를 확장하여 SVC를 추진할 계획이었다.⁶⁾

만일 도쿄 SVC가 GBC-KSC의 통합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현재와 같은 GBC-KSC 분리체제와 대비하여 기업들이 타 센터의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각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함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창업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바,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벤처·스타트업 수요가 집중된 지역(싱가포르 등)은 'SVC'로, 일반 수출 중소기업(소비재 등) 수요가 많은 지역(상하이·뷰티 등)은 'K-중기마루'로 중소기업 지원 거점들을 통합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⁷⁾, GBC 및 KSC 등의 해외거점센터 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지원대상 기업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SVC와 같이 GBC 및 KSC 등의 해외거점센터와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기능 중심으로 일원화 또는 연계·운영하여 효과적인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주요 지역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6.1.1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美 실리콘밸리에 민·관 협력으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개소」, 2026.4.16.

7) <개편 방향>

한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해외거점센터를 통해 특정 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타 부처의 기업 지원 해외거점센터 현황]

|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기관 | aT센터 (Agro-Trade Center) | IT지원센터 | KIC (글로벌혁신센터; Korea Innovation Center) |
| 해외거점 현황 | 중국(홍콩, 상하이, 베이징, 다롄, 칭다오),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미국(휴스턴, LA, 뉴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일본(오사카, 도쿄), 태국(방콕),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등 20개소 | 워싱턴, 실리콘밸리, 유럽, 중국 등 4개소 | 실리콘밸리,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UAE 등 7개소 |
| 역할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정보 수집·전파, 식문화 홍보,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사무소 설립 등 지원 | 바이오, ICT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시장 발굴·네트워킹 등 글로벌 사업화 지원 | ICT·반도체·빅테크 등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해외 파트너 발굴·IR 개최·네트워킹 등 해외 비즈니스 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향 | 내용 |
|----------|--|
| ① 통합·거점화 | GBC + KSC → 통합브랜드 “K-중기마루” + SVC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나, 주요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 - 권역별 핵심지역을 본부로 지정(거점화)하고, 민간 운영위탁 또는 폐쇄 후 인력 등 자원을 본부 재배치하여 규모 확대 (인력·조직 추가 X) - 기존 소규모 거점은 지사 체제로 운영, 민간위탁 거점 도입 |
| ② 고도화 | 현지 특성에 따라 뷰티 등 전략품목 특화지원체계 구축 *(예) 상하이-뷰티 / 뉴델리-중간재 / 뉴욕-테크 등 - 거점별 특화프로그램, 온라인수출 지원, 글로벌 K-브랜드 육성(상설 팝업스토어 등), 해외진출바우처 등 특화지원 제공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9개소의 해외 aT센터를 통해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소의 해외 IT지원센터 및 7개소의 해외 KIC(글로벌혁신센터)를 통해 ICT 등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SVC 등의 해외거점센터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aT센터, IT지원센터, KIC 등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창업기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타 부처 소관 해외거점센터인 aT센터, IT지원센터, KIC 등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창업기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와 같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의 해외거점센터와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기능 중심으로 일원화 또는 연계·운영하여 효과적인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스마트트레이드허브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물류거점 내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60억 500만원의 99.9%인 60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글로벌화지원 플랫폼 | 32,141 | 32,141 | 5,453 | - | 37,594 | 37,304 | - | 290 | 39,407 | 39,407 |
| 스마트 트레이드허브 | 552 | 552 | 5,453 | - | 6,005 | 6,004 | - | 1 | 7,118 | 7,11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트레이드허브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축되는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연면적 26,129㎡, 중간층 포함 3층)로, 인천공항 공사가 제2공항물류단지 내 물류센터 건물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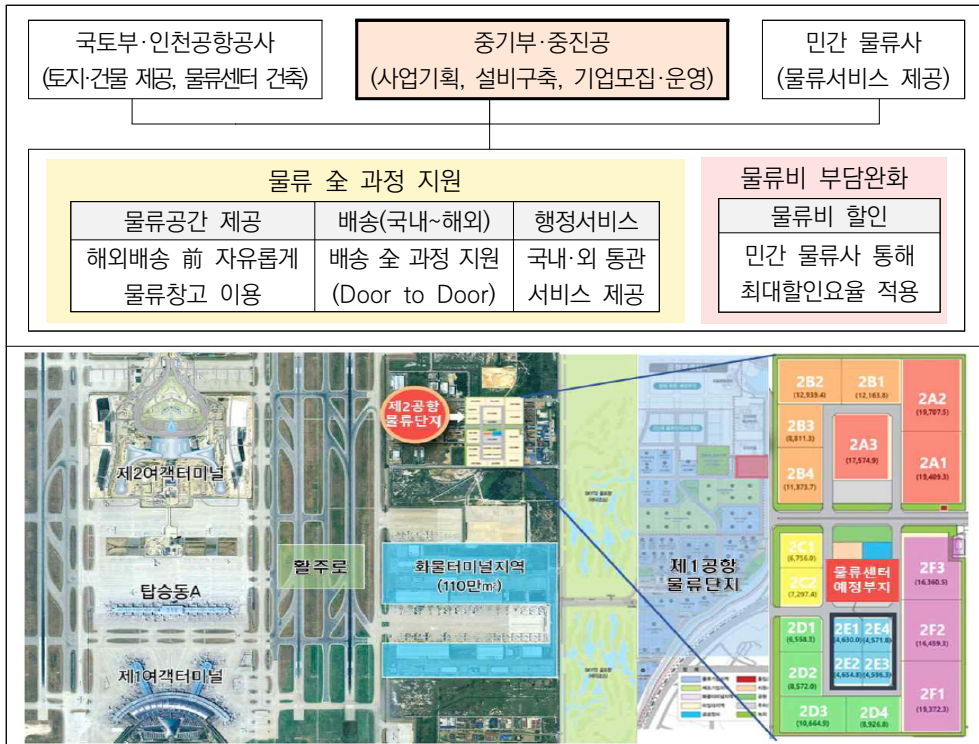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152-301의 내역사업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예상 처리 물동량]

| 구 분 | 처리 물동량(월) | 시간당 처리수량 | 비 고 |
|--------------|-----------|------------|------------------------|
| 특송장(By-Pass) | 600,000건 | min 3,900건 | 특송 건당 평균 무게 약 0.76Kg |
| 상용화주터미널 | 804ULD | - | ULD 당 평균 무게 약 2,400Kg |
| 풀필먼트 | 162,000건 | min 1,000건 | 2,653pallet/32,382Tote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추진체계 및 사업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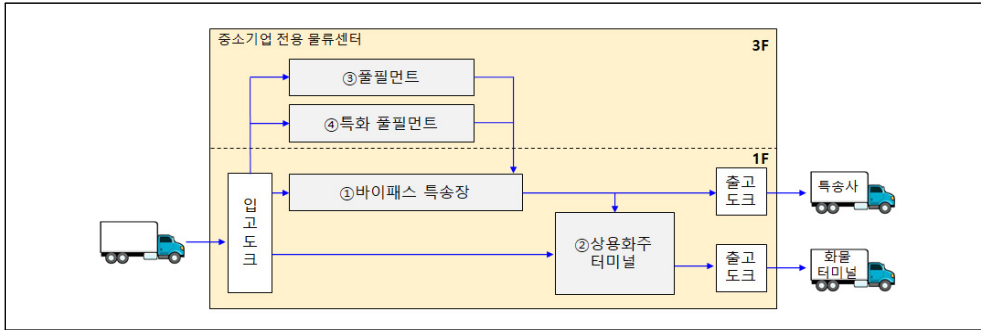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희망 중소기업은 스마트트레이드허브 내 민간물류사를 통해 해외 운송, 풀필먼트 서비스²⁾, 수출 통관 등 수출 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2) 상품보관, 주문처리, 포장, 배송, 재고관리 등 물류 처리 전과정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예상 물류 흐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3.9.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구축 사업 추진 결과, 2023년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 12월 말 건물 건축에 착공하였고, 2026년 2월 설비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9월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약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12월 말에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 구분 | 물류센터 건물 건축 추진 현황 (인천공항공사) | 물류센터 장비 구축 추진 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현황 | (‘21.7.) 중기부·중진공-국토부·인천공항공사 개발협약 체결 (‘22.12.) 센터 건축 및 설비 구축 예산 반영 | (‘23.2~6.) 운영사 모집·계약 * 삼성SDS 등 5개 물류사 컨소시엄 |
| | (‘23.8~11.) 기본설계 (‘23.12.~) 실시설계 (‘24.6~7.) 건축설계 완료 (‘24.10.) 실시계획승인(건축인허가: 서울지방항공청장) (‘24.9~11.) 건축 용역 공고 (‘24.12.) 시공사 선정(HJ중공업) (24.12말.) 착공 | (‘23.9.) 설비구축 용역 입찰 (‘23.11.) 설비구축사 1차 계약 *J&DK 컨소시엄(J&DK, LGCNS) (‘24.6.) 주요 설비에 대한 발주·제작 진행 및 물류설비 상세설계 완료 (‘24.8~12.) 물류설비 설치 공정 점검 및 인터페이스 협의 (‘24.12.) 물류설비 감리단 선정 (‘25.1.) 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
| 계획 | (‘26.12초.) 건축 완료 (‘26.10~12.) 시운전 (‘26.12말.) 운영 개시 | (‘26.2~9.) 설비 구축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은 반복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추가적인 계획 변경 없이 스마트트레이드허브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은 2023년 추진된 이래 반복적인 구축·개소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사업 초기에는 2024년까지 물류센터 조성 및 물류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물류센터 처리물량 확대 및 물류설비 동선을 고려하여 층수 확대를 위한 설계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준공·개소가 2025년 말로 연기되었다.

2024년에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비 설치공정 변경(바닥공사 완료 이후 물류설비 설치로 변경) 및 공항 주변 건축물의 전파영향성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개소가 2026년 9월경으로 다시 연기되었다.³⁾

이에 중소기업부의 2025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물류설비 설치를 시작하여 2026년 9월에 물류센터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26년 3월 기준 실제로는 물류설비 구축이 2026년 2월부터 시작되어 9월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10~12월간 시운전을 거쳐 12월 말에 개소·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11.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 구 분 | 세부 내용 |
|------------------------|--|
| 기업 일반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의 55.9%가 뷰티·화장품에 집중 ○ ①연간 수출 5억원 미만(74.6%), ②월평균 해외 주문건수 500건 미만(68.1%), ③물류 담당인력 없음(57.4%) 등으로 해외 수출입 물류 관련 전문 역량 부족 |
| 물류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소량 경량화 중심의 항공 운송 수요 多 - 운영 상품의 78.5%가 주문 건당 평균 출고 중량 2kg 미만 - 평시 대비 성수기 물량이 2배 이상이라는 기업이 82.4% - 운영 품목 수 50개 이상(64.9%)으로 소량 다품목 운영 ▶ 집중적 물량, 소규모 다품목 물량으로 中企 물류난이도 高 |
| 수출물류 애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의 수출물류 관련 애로사항은 ①국제 운송(58.3점), ②반품·교환처리(58.2점), ③성수기 물량처리(49.3점) 순으로 응답 |
| 스마트 트레이드허브 이용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이용 희망 여부 - 응답기업의 74.0%(조건부 이용 의향 포함)가 이용 의향 有 - ①풀필먼트 서비스(58.8%), ②현지공항 인접 출고 거점 위주(23.5%) ○ 물류센터 활용 조건으로, ①물류비용이 현재보다 저렴할 경우(88.0%), ②현지공항 플랫폼서비스 고객 접근성이 편리한 경우(54.2%), ③성수기 배송 리드타임 단축될 경우(43.4%) 순으로 응답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이 해외 수출입 물류 관련 전문역량이 부족한 동시에, 소량 경량화 중심의 항공 운송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74%가 물류센터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는데, 물류센터 활용 조건으로는 ‘현재보다 저렴한 물류비용’이 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때 물류비용은 인건비, 토지·건축물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물류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협의 하에 산정 예정이다.4)

4) 물류비용 책정 방식

| |
|--|
| <p>Ⅲ. 운영사 의무 이행사항</p> <p>2. 과업범위</p> <p>나. 중소기업 물류지원</p> <p>3) 운영사는 물류센터 이용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함 (물류비 책정 기준은 자율 제시하되,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p> <p>* 단, 물류비는 공단과 최종 협의를 거쳐 책정해야 함</p> |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 선정 - 제안요청서(RFP) -」, 2023.2.

한편, 운영사의 수입·지출 항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물류 서비스 비용, 물류 보관 비용 등의 수입으로 물류원가, 인건비, 토지·건물 임대료 등의 지출을 충당할 예정으로 운영사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는 없으며, 물류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운영사가 부담하는 통상의 유지보수 비용 제외)은 물류설비의 소유권이 귀속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할 예정이다5).

또한, 동 지침의 상생협력 방안 관련 규정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영사는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의 물류비 인하를 위해 활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5)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 운영지침」

제15조(유지관리 및 업무분장) ① 운영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물류센터 및 운영설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나 관련법규에 의한 점검·검사 등 다음 각 호의 통상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단, 물류센터 건설공사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1. 운영사가 사용하는 공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경비, 청소,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 소모품 교체

2. 물류센터 및 운영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점검 및 검사

② 물류센터 구조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장애발생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책임으로 시설을 보수한다. 다만, 운영사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운영사 책임으로 시설을 보수한다.

⑧ 물류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은 운영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증진공이 투자한 시설유지에 필요한 보험 및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6)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 운영지침」

제27조(상생협력 방안) 증진공과 운영사는 각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1. 본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 영업이익률이 최근 3개년 국가 평균 항공 운송,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5.1.31 수익성지표 H51, H52 합산평균)의 영업이익률을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운영사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인하를 위해 활용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사업총괄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위 증빙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준 등과 같은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과 운영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운영사 수입·지출 항목]

| 구 분 | | 수입·지출 방식 | 비고 |
|-------------------|----------------------|--|--|
| 수입 | 물류 서비스 | 중소기업 → 운영사 | - |
| | 물류 보관 비용 (풀필먼트) | 중소기업 → 운영사 | - |
| 지출 | 물류원가 | 운영사 → 협력사* | *물류서비스 제공 협력사 (해외 현지 배송사, 국내 픽업 택배사, 박스·테이프 등 자재 제작사 등) |
| | 직접원가 (인건비, 유류비 등) | 운영사 → 임직원, 협력사* | |
|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 운영사 → 중진공 | 중진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임대료 대납 후 수입처리 |
| |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 제외) | 운영사 → 중진공 | |
| | 전기 사용료 | 운영사 → 한국전력공사 | - |
| 통상적인 유지보수관리 비용 | 운영사 → 관계 인력·기업 | ① 운영사가 사용하는 공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경비, 청소,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 소모품 교체 ② 물류센터·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점검 및 검사 | |

주: 1. 운영사 대상 국비 지원 없음
 2. 물류설비는 중진공 소유 자산으로 중진공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통상의 유지보수 제외)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현재 물류비용·물류보관비용 등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항공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센터 완공 전 중소기업이 원하는 물류비 수준, 토지·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등 예상 운영비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개소 직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개소 전 운영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방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 준비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개소 후 항공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물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¹⁾(‘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스타트업 SW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외개발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에 SW 인력을 매칭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1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창업성공패키지 | 100,031 | 100,031 | - | - | 100,031 | 99,996 | - | 35 | 106,431 | 106,431 |
| 스타트업 시 기술인력 양성 | 3,900 | 3,900 | - | - | 3,900 | 3,895 | - | 5 | 3,900 | 3,900 |
|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 1,600 | 1,600 | - | - | 1,600 | 1,600 | - | - | 1,000 | 1,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베트남 현지대학 졸업(예정)자 및 현지 경력자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및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대상 베트남 SW 전문인력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²⁾(23.6.23) 및 국가간 활발한 교류²⁾, 베트남 IT 시장의 지속 성장³⁾, 국내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52-302의 내내역사업

2) 중소기업 수출액(‘22년, 달러) : (3위) 베트남(110억) / 무역(‘21년, 달러) : (1위) 베트남(807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ICT 분야 매출(TOPDev, 단위 : 10억달러) : (‘16) 60.9 → (‘21) 136.1(5년 전 대비 2.2배 성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베트남 개발인력 선호⁴⁾ 등이 고려된 것이다.

사업 추진 결과 2024년에는 107명, 2025년에는 145명의 베트남 SW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였고, 2025년에는 ① 교육반-베트남 대학 연계 과정(60명), ② 취업반-경력자 채용 과정(140명)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사업은 취업 연계 지원인력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고 취업인력에 대한 이직 추적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AI의 발달로 기초 SW인력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지속 추진 시에도 성과를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사업은 크게 ① 교육반, ② 취업반으로 구성된다⁵⁾.

교육반은 베트남 현지 대학과 협업하여 대학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SW 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800시간, 24주)을 진행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반은 베트남 현지 SW 경력자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집·매칭하되, 매칭된 경력자·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등 적응 교육을 진행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4) 외국인 SW 전문인력 채용 선호 국가 베트남 31.0%, 2위(1위 인도 36.4, 3위 중국 11.8)
(자료: 중기부 설문조사, '23.6.)

5) 2026년부터는 교육반 유형 폐지

| '24년 | '25년 | '26년 |
|----------|----------|----------|
| 교육반 200명 | 교육반 60명 | 교육반 폐지 |
| 취업반 운영 X | 취업반 140명 | 취업반 200명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유형별 추진 방식]

| 구분 | ① 교육반 | ② 취업반 |
|------------------|---|---|
| 차이점 | 베트남 대학 연계 과정 | 경력자 채용 과정 |
| 대상인원 (25년 기준) | 60명 | 140명 |
| 대상자 |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 베트남 현지 SW 경력자 및 전공자 |
| 지원 내용 | 베트남 현지 대학*과 협업하여 교육생 선발 후 SW 실무교육 (24주, 800시간) 후 채용 연계 * 다낭 한-베 정보통신대학(VKU), 호치민 기술대학교(HUTECH) | 경력자 상시 모집·매칭 추진, 매칭 완료된 경력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등 적응 교육 진행 |
| 추진 절차 | 1차 서류심사(3배수 선발) → 2차 역량평가(과락 선별) → 3차 심층면접(1배수 선별) * 온라인마케팅(소셜미디어, 검색엔진, IT 커뮤니티 등)과 주요 대학교 및 교육기관 홍보를 통해 신청 | 1차(3배수 선발): 서류심사 → 2차: 실무코딩 테스트 → 3차: 기술면접 및 심층평가 * 국내기업 수요는 잡코리아 베트남 SW 개발자 채용 매칭지원관 (전용관) 운영을 통한 수요 발굴 |
| 교육 내용 | SW 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 - 기초 공통, 실무, 취업교육,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 기업맞춤형 프로젝트 미션(해커톤 등)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결과 2024년에는 교육반의 경우 540명의 신청자 중 200명이 선정되어 18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 107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반은 운영되지 않았다.

2025년에는 교육반의 경우 403명의 신청자 중 60명이 선정되어 전원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 10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반의 경우 135명이 취업하였다.

[지원유형별 취업 현황]

(단위: 명, 개사)

| 구분 | 취업 인원 계 | 교육반 | | | | | 취업반 | |
|------|---------|-----|-----|-----|------|-----------|------|-----------|
| | | 신청 | 선정 | 수료 | 취업인원 | 취업대상 기업 수 | 취업인원 | 취업대상 기업 수 |
| 2024 | 107 | 540 | 200 | 182 | 107 | 10 | - | - |
| 2025 | 145 | 403 | 60 | 60 | 10 | 4 | 135 | 2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2년간 취업한 252명 가운데 87.3%인 220명이 베트남 지사로 현지 고용되었고, 그 외 리모트 인턴십 형태가 28명, 국내 고용 형태가 4명이었다.

[고용형태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 국내 고용 | 현지 고용 (베트남 지사) | 리모트 인턴십 ¹⁾ | 계 |
|------|-------|----------------|-----------------------|-----|
| 2024 | 3 | 104 | - | 107 |
| 2025 | 1 | 116 | 28 | 145 |
| 합계 | 4 | 220 | 28 | 252 |

주: 1) 리모트 인턴십 = 수행사가 현지 인력을 채용, 근태관리 및 멘토링 등 참여기업의 프로젝트 수행을 관리 및 기타 인프라(사무공간, 편의시설 등)를 지원해주는 방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고용유지기간을 살펴보면 2년간 취업한 252명 가운데 3개월 이하가 212명으로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인 30명, 6개월 이상이 4.0%인 1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기간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 ~3개월 |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계 |
|------|------|---------------|--------|-----|
| 2024 | 93 | 13 | 1 | 107 |
| 2025 | 119 | 17 | 9 | 145 |
| 합계 | 212 | 30 | 10 | 25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6년 3월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252명 중 13명으로 5.2%에 불과했으며, 2024년에 취업한 107명은 전원 이직하였다.

[취업 연계 지원대상의 고용유지 여부(2026. 3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 취업 유지 | 이직 | 계 |
|------|-------|-----|-----|
| 2024 | - | 107 | 107 |
| 2025 | 13 | 132 | 145 |
| 합 계 | 13 | 239 | 25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동 사업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은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SW 실무교육(24주, 800시간)만으로 직무에 즉시 투입하는 것의 낮은 효과성, 베트남 SW 인력의 국내 기업의 기대 대비 높은 임금, 활발한 베트남 IT 이직시장⁶⁾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취업 연계 지원인원의 84.1%가 3개월 내 이직하는 것은 실효적인 취업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이직자들의 이직 기업 국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⁷⁾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취업한 인력의 대부분이 3개월만에 이직하여 베트남 회사로 취직할 경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기간이 짧은 이유를 파악하고 취업 연계 지원 효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취업 연계 지원 후 최소 2~3년간은 지원대상자들의 취업·이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업 성과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IT 개발 종사자 인원이 1년 9개월 전 대비 7.8% 감소한 6만 322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AI 확산에 따른 IT 개발자 고용이 위축되고 있으며⁸⁾, 특히 신규 개발자의 업무를 숙련 개발자가

6)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베트남 IT 개발자 연봉과 이직률 분석」한국 진출 시 장점과 전망, 2025.3.20.

7)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종료 이후 베트남 인력의 연락 두절 및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의 사유로 이직 현황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8) 매일경제, 「한국서도 AI 붐 고용충격 조짐 ... IT개발자 일자리 5000개 증발」, 2026.2.26.

AI를 이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숙련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신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다⁹⁾).

이를 고려하면 동 사업이 추진된 배경인 한국-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가 체결된 2023년과 달리 현재 베트남 현지 SW 경력자 및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베트남 IT 시장 현황, 베트남 SW 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전면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¹⁰⁾

종합하면,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 사업은 취업 연계 지원인력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고 취업인력에 대한 이직 추적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AI의 발달로 기초 SW인력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지속 추진 시에도 성과를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9) 서울신문, 「“AI에 첫 출근 뺏겼다”… 신입 채용 16% 급감」, 2026.3.16.

10)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 중소기업 75.4%는 SW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54.5%가 해외인력 채용 피력(「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25년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KTC) 사업 참여자 만족도 4.5점(5점 만점)

가. 현황

기술보증대위변제¹⁾(기술보증기금 수행)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²⁾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5,681억 원의 99.9%인 1조 5,67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기술보증 대위변제 | 1,330,200 | 1,568,100 | - | - | 1,568,100 | 1,567,690 | - | 410 | 1,527,500 | 1,527,5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보증을 신청하면 예비검토·기술 현장평가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후, 기술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며,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을 행사한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기술보증기금 2441-300

2)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보증 및 대위변제 절차]

| | | |
|------------------|---|---|
| 보증신청 | ▶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 예비검토 | ▶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보증액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
|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 ▶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 기술평가 | ▶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 기술보증 사고발생 | ▶ | 부도, 신용불량, 연체 등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사고발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
|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 ▶ |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대위변제(구상권발생) |
| 구상권행사 | ▶ |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 말 도입 예정인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하여 사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부실예측 정확도 제고에 따른 기업 선별력 강화로 보증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보증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정 수준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술보증 지원 결과 신규보증 규모는 6조 4,006억원, 보증잔액은 29조 9,242억원으로, 보증잔액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운용배수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9.8배에 달하였다.

또한, 2025년 사고금액은 1조 5,563억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였는데, 보증잔액 증가율 대비 사고금액 증가율이 더 큼에 따라 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5년 5.2%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연도별 기술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배)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신규보증 | | 48,480 | 78,208 | 49,276 | 42,638 | 60,957 | 55,156 | 64,006 |
| 보증잔액(A) | | 218,052 | 254,453 | 262,684 | 265,029 | 279,176 | 284,713 | 299,242 |
| 사고금액(순증)(B) | | 9,848 | 8,611 | 6,693 | 7,197 | 11,832 | 13,473 | 15,563 |
| 사고율 | 계획 | 4.8 | 4.8 | 4.5 | 4.8 | 4.0 | 4.6 | 4.9 |
| | 실제 (B/A) | 4.5 | 3.4 | 2.5 | 2.7 | 4.2 | 4.7 | 5.2 |
| 기본재산(C) | | 15,570 | 21,100 | 29,176 | 33,670 | 34,424 | 33,174 | 30,638 |
| 운용배수(A/C) | | 14.0 | 12.1 | 9.0 | 7.9 | 8.1 | 8.6 | 9.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사고금액(당기 순증액, C)이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 보증해지액(D) 및 대위변제발생액(D+E)이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각각 1조 5,351억원, 1조 5,677억원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연말 보증잔액 | A | 254,453 | 262,684 | 265,029 | 279,176 | 284,713 | 299,242 |
| 연말 사고잔액 | B+C-D | 2,834 | 2,909 | 3,528 | 4,544 | 5,081 | 5,293 |
| 전기 보증사고잔액 | B | 2,359 | 2,834 | 2,909 | 3,528 | 4,544 | 5,081 |
| 당기 보증사고순증액 | C | 8,611 | 6,693 | 7,197 | 11,832 | 13,473 | 15,563 |
| 대위변제 보증해지액 | D | 8,136 | 6,618 | 6,578 | 10,816 | 12,936 | 15,351 |
| 대위변제 보증해지율 | D/A | 3.2 | 2.5 | 2.5 | 3.9 | 4.5 | 5.1 |
| 대위변제발생액 | D+E | 8,254 | 6,702 | 6,678 | 11,058 | 13,248 | 15,677 |
| 종속채무 등 | E | 118 | 84 | 100 | 242 | 312 | 326 |
| 대위변제 발생률 | (D+E)/A | 3.2 | 2.6 | 2.5 | 4.0 | 4.7 | 5.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20), 경제복합위기('23년), 통상리스크('25년) 등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자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온전한 회복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연장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보증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부터 이연된 부실의 현실화 및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증잔액 및 사고율 증가에 따른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 부족 소요분을 충당하기 위해 통화금융기관예치금을 감액하고 기술보증 대위변제액을 2,379억원(당초 계획 대비 17.9%) 증액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일자 | 구분 | 변경 증액(A) | | | 변경 감액(B) | | |
|-------|-------------|----------------------|--------------------|---------|----------------------|----------------------|----------|
| | | 세부사업명 | 세목 | 금액 | 세부사업명 | 세목 | 금액 |
| 11.5. | 기재부협약, 자체변경 | 기술보증 대위변제 (2441-300) |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 237,900 | 통화금융 기관예치 (9701-971) | 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470-02) | △237,9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에도 보증기업 부실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액 추가 소요로 인해 기금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다.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획액 | | 계획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2022 | 1,291,500 | 1,291,500 | 1,291,500 | 662,649 | 51.3 | 51.3 | 628,851 |
| 2023 | 1,053,500 | 1,109,500 | 1,109,500 | 1,105,880 | 99.7 | 99.7 | 3,620 |
| 2024 | 1,330,195 | 1,330,195 | 1,330,195 | 1,329,686 | 100.0 | 100.0 | 509 |
| 2025 | 1,330,200 | 1,568,100 | 1,568,100 | 1,567,690 | 100.0 | 100.0 | 410 |
| 2026 | 1,527,500 | - | -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보증공급 및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이 기금 부채 증가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획액 | | 계획현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2022 | 112,000 | 112,000 | 112,000 | 112,000 | 100.0 | 100.0 | - |
| 2023 | - | - | - | - | - | - | - |
| 2024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 | 100.0 | - |
| 2025 | 4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00.0 | 100.0 | - |
| 2026 | 60,000 | - | -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기술보증기금 재무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2025년말(A) | 2024년말(B) | 증감(A-B) |
|-------|---------------|-----------|-----------|---------|
| 자산 | 총 자산 | 49,803 | 49,374 | 429 |
| | 총 부채 | 18,428 | 15,614 | 2,814 |
| | 순자산 | 31,375 | 33,760 | △2,385 |
| 재정 운영 | 총수익 | 15,266 | 14,071 | 1,195 |
| | 총비용 | 19,899 | 15,704 | 4,195 |
|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 △4,633 | △1,633 | △3,000 |

주: 1. 총 부채의 증가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의 증가(+233억원)와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 총당부채 증가(+2,633억원) 등에 기인함

2. 총 비용의 증가는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대손상각비 증가(+2,362억원) 및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 등에 따른 대위변제준비비 증가(+1,258억원) 등에 기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은 고도화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2026년 말까지 전산화 완료한 후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개선할 예정이다.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고도화 사업 현황 및 계획]

| 일정 | 추진 내용 |
|------------|---|
| '25.3. | 「리스크관리시스템 재구축 종합계획」수립 |
| '25.4.~12. |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재구축 사업 추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input type="checkbox"/> 기존 통계모형 대비 장점 - (높은 예측성능) 데이터 모형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ML방법론 (XGBoost) - (단순 구조) 하부모형 통합, 세그먼트(평가단위) 단순화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용이 - (높은 안정성) 투입항목 수가 크게 확대*되어 항목 의존도 완화 등 모형 안정성 확보 * 투입항목 수: (기존) 16개 → (개선) 90개 </div> |
| '26.5. |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전산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 공고 |
| '26.7.~12. |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전산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

자료: 1. 기술보증기금 제출 자료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전산시스템 재구축」 제안요청서, 2026.5.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6년 말 도입 예정인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사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부실예측 정확도 제고에 따른 기업 선별력 강화로 보증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보증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정 수준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기획 필요

가. 현황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¹⁾(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²⁾할 때 발생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7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지역신용보증 재단재보증 | 210,940 | 825,646 | - | - | 825,646 | 825,646 | - | - | 168,128 | 168,128 |
|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7,400 | 7,400 | - | - | 7,400 | 7,400 | - | - | 1,480 | 1,48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은 2024년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중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가운데 전환보증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① 상환기간 연장, ②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③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구 6등급) 보증료율의 0.2%p 인하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³⁾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234-303의 내역사업

2)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등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전환보증 지원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금리 | 은행 산출금리 | - |
| 보증료율 | 지역신보 산출 보증료율 | 저신용자 0.2%p 감면 |
| 보증비율 | 기존 보증의 보증비율 | - |
| 취급은행 | 기존 보증의 채권은행 | - |
| 중도상환 수수료 | 전체 면제 | 대출 후 경과기간(1개월~3년 미만)에 따라 일할 계산적용(1.100%~0.001%), 3년부터는 수수료 없음 → 예시 : 5천만원 대출 후 1년 6개월 경과 시 중도상환 수수료율 0.55%, 수수료 27.5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으로, 신용등급은 무관하나, 보증제한업종 영위·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전환보증 지원조건]

| 구분 | 지원 조건 |
|-----------------------|---|
| 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 신용등급 | 제한없음 |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 목록 | 협약 금융회사* *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아이엠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2개 서민금융업권(신협, 농협) 1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
| 제한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
| 보증료율 | 재단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단,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대한민국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년 7월 3일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대출경과기간별 대출·보증 현황,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 수요를 판단하여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계획액은 64,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12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74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때 64,000개사는 2025년 전환보증 목표인 2조원에 기업당 평균 보증잔액 3,100만원을 나누는 값이며, 12만원은 기업당 평균 보증잔액 3,100만원에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1.1% 및 평균 잔여기간 비율 33.3%(36개월 중 12개월)를 적용한 값이다.

[2025년 계획액 산출내역]

| |
|--|
| 74억원 = 6.4만개사 × 12만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 6.4만개사 = 2조원* ÷ 31백만원(기업당 평균 보증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보증 지원계획 : (‘24하) 1조원, (‘25년) 2조원 (‘26년) 2조원 ■ 기업당 중도상환수수료 : 12만원 = 0.37%*×3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경과기간을 평균 24개월로 가정 : 1.1% × 12개월 / 36개월 = 0.37% |

자료: 중소기업부

그런데 실제로는 2025년 전환보증 목표 규모인 2조원의 91.3%에 해당하는 1조 8,258억원의 규모로만 전환보증이 이뤄졌다.

[연도별 전환보증규모]

(단위: 억원, %)

| 구분 | 전체 지원대상 | | 전환보증 지원 | | | | |
|------|-----------------|---------------|---------|--------|---------------|--------------|-------------------|
|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보증규모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규모 | 목표(A) | 신청 | 전환보증 지원규모 (B) | 전환보증 지원 대출규모 | 목표 대비 지원 비율 (B/A) |
| 2024 | 427,917 | 445,747 | 10,000 | 10,991 | 9,175 | 9,440 | 91.8 |
| 2025 | 440,513 | 458,868 | 20,000 | 20,041 | 18,258 | 18,784 | 91.3 |

주: 전환보증 지원은 2024년부터,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국비 지원은 2025년부터 시작(2024년에는 금융회사 부담)

자료: 중소기업부

또한, 64,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12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하려는 목표와는 달리 4,98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16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건, 개사, 백만원)

| 구분 | 전환보증 지원 | | |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 | | | |
|------|---------|--------|--------|-----------------|-------|--------------|----------|------------|
|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수수료 지원규모 | |
| 2024 | 3분기 | 11,465 | 13,467 | 317,408 | - | - | - | - |
| | 4분기 | 21,784 | 28,559 | 600,126 | - | - | - | - |
| | 계 | 33,249 | 42,026 | 917,534 | - | - | - | - |
| 2025 | 1분기 | 19,141 | 20,876 | 447,444 | 1,292 | 1,239 | 42,628 | 166 |
| | 2분기 | 29,220 | 31,237 | 748,715 | 1,500 | 1,444 | 58,600 | 209 |
| | 3분기 | 13,596 | 14,577 | 434,880 | 1,898 | 1,846 | 72,925 | 318 |
| | 4분기 | 5,828 | 6,105 | 194,759 | 513 | 497 | 25,230 | 99 |
| | 계 | 67,785 | 72,795 | 1,825,798 | 5,203 | 4,981 | 199,383 | 792 |

주: 전환보증 지원은 2024년부터,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국비 지원은 2025년부터 시작(2024년에는 금융회사 부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액 74억원을 전액 출연하였으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교부액 74억원 가운데 10.7%에 불과한 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년 출연기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부처 | | 출연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 | | |
|-------|-------|-----------------|---------|-------|---------|-----|-------|------------|
| 수정 계획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7,400 | 7,400 | 7,400 | - | 7,400 | 792 | - | 6,608 | 10.7 |

주: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은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선지원한 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수수료 지원규모는 792백만원이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산 완료된 금액은 693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도상환수수료가 거의 없는 대출경과기간이 긴 기업들의 전환보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의 일정한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⁴⁾,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출경과기간이 적은 기업들에 대한 전환보증 지원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전환보증 신청 유인은 보증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출경과기간이 긴 기업들에게 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총 2조 7,433억원의 전환보증 지원규모 중 40.1%가 대출경과기간이 3년을 초과한 기업들로 나타났으며,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규모의 79.6%를 차지한 대출경과기간 6개월 초과 1.5년 미만 기업의 전환보증 지원규모는 총 지원규모 대비 2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출경과기간별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건, 개사, 백만원, %)

| 구분 | 전환보증 지원 | | | |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 | | | |
|-----------------------|---------------|---------------|------------------|-------------|-----------------|--------------|---------------|-------------|-------------|
|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보증규모 비중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수수료 지원규모 | 수수료 지원규모 비중 |
| 1개월 ~6개월 | 1,800 | 770 | 47,237 | 1.7 | 218 | 199 | 6,902 | 20 | 2.5 |
| 6개월초과 ~1년 | 6,310 | 4,561 | 228,528 | 8.3 | 859 | 797 | 34,313 | 173 | 21.8 |
| 1년초과 ~1.5년 | 15,029 | 12,036 | 566,737 | 20.7 | 2,180 | 2,088 | 91,110 | 458 | 57.8 |
| 1.5년초과 ~2년 | 9,951 | 7,191 | 271,928 | 9.9 | 657 | 629 | 25,042 | 72 | 9.1 |
| 2년초과 ~2.5년 | 15,143 | 10,781 | 334,886 | 12.2 | 890 | 878 | 29,998 | 63 | 8.0 |
| 2.5년초과 ~3년이하 | 9,833 | 7,478 | 192,842 | 7.0 | 398 | 389 | 11,998 | 6 | 0.8 |
| 3년초과 | 56,755 | 53,732 | 1,101,173 | 40.1 | 1 | 1 | 20 | 0.02 | 0.0 |
| 계 | 114,821 | 96,549 | 2,743,332 | 100.0 | 5,203 | 4,981 | 199,383 | 792 | 100.0 |

주: 전환보증 지원은 2024년부터,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국비 지원은 2025년부터 시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대출경과기간이 긴 기업들의 경우 전환보증 수요는 클 것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고려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편성 당시 기업들의 대출경과기간을 평균 24개월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로 가정하는 등 평균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중도상환수수료 지원규모는 보다 면밀하게 대출경과기간별 기대 수요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금융정책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7월 12일 개정(2025년 1월 13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및 대출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의 행정비

용·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5).

또한, 2025년 10월 29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각 조합은 여수신업무방범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6),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7).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⑥ 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4. 7. 12.>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신설 2024. 7. 12.>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제4조(표준규정 등) ② 여수신업무방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⁸⁾⁹⁾,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한 결과 2025년 15개 금융회사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0.8%대로 나타났다.

[2025년 보증부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단위: %)

| 기간 | 대출유형 | 중도상환수수료율 |
|----------|-------|----------|
| '25년 1분기 | 보증부대출 | 0.54 |
| '25년 2분기 | 보증부대출 | 0.82 |
| '25년 3분기 | 보증부대출 | 0.62 |
| '25년 4분기 | 보증부대출 | 0.89 |

주: 중도상환수수료율 = 전 협약 금융회사 15개사의 평균값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각 금융회사별로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동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 때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¹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실적이 부진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

- 7)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10.22.
- 8)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10.22.
- 9) 참고로, 2025년 1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 |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 | | 신용대출 | | | |
|----|------------|-------------|------|-------------|------------------------|-------------|------|-------------|------|-------------|------|-------------|
| | 고정 | | 변동 | | 고정 | | 변동 | | 고정 | | 변동 | |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국민 | 1.40 | 0.58 | 1.20 | 0.58 | 0.70 | 0.79 | 0.60 | 0.59 | 0.70 | 0.02 | 0.60 | 0.02 |
| 농협 | 1.40 | 0.65 | 1.20 | 0.65 | 0.70 | 0.53 | 0.60 | 0.53 | 0.70 | 0.01 | 0.60 | 0.01 |
| 신한 | 1.40 | 0.61 | 1.20 | 0.60 | 0.80 | 0.76 | 0.70 | 0.72 | 0.80 | 0.03 | 0.70 | 0.03 |
| 우리 | 1.40 | 0.74 | 1.20 | 0.74 | 0.70 | 0.52 | 0.60 | 0.37 | 0.70 | 0.04 | 0.60 | 0.04 |
| 하나 | 1.40 | 0.66 | 1.20 | 0.66 | 0.70 | 0.61 | 0.70 | 0.61 | 0.70 | 0.04 | 0.70 | 0.04 |

자료: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1.9.

- 10) 전환보증 시 계약갱신이 이뤄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출경과기간별 기대 수요 및 정책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¹⁾.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대출 및 상환 구조와 사업 기대 수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11) 참고로, 2026년 5월 말 기준, 2026년 예산 14억 8,000만원 중 1억 1,000만원(7.43%)을 집행함

(단위: 건, 개사, 백만원)

| 구분 | 전환보증 지원 | | |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 | | | |
|------|---------|--------|--------|-----------------|-------|-------|----------|-----|
|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건수 | 기업수 | 보증규모 | 수수료 지원규모 | |
| 2026 | 1~3월 | 13,896 | 13,218 | 436,167 | 1,316 | 1,278 | 62,220 | 110 |
| | 4~5월 | 20,703 | 19,768 | 607,079 | - | - | - | - |
| | 계 | 34,599 | 32,986 | 1,043,246 | 1,316 | 1,278 | 62,220 | 110 |

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 선감면 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분기별로 후청구하는 구조임에 따라,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1분기 정산 실적이며, 2분기 실적은 7월 초 집계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가. 현 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¹⁾(25년 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은 배달·택배 비용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 활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686억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소상공인 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 | - | 1,927,379 | 1,926,985 | - | 444 | 621,243 | 661,243 |
| 소상공인 역량강화 | 240,674 | 205,632 | - | - | 205,632 | 205,189 | - | 443 | 21,603 | 21,603 |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203,700 | 168,658 | - | - | 168,658 | 168,658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을 대상으로 소요된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① 신속지급 트랙과 ② 확인지급 트랙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 트랙과 확인지급 트랙 모두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상공인이 지출한 2024년 1월 ~ 2025년 12월 동안의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되 최대 한도는 30만원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내역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트랙]

| 구분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
| 지원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떡깨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직접배달 비용은 건당 5,000원 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12.31. 이전 개업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담배도매업·유흥주점업·부동산업 등)은 제외 | |
| 지원내용 | 2024.1월~20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용 | |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
| 신청시기 | 2. 17.~ | 4. 21.~ |

- 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5.2.10.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2025.4.21.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2025.5.19.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 구분 | 신청 | 지원 요건 및 실적 확인 | | 최종 대상통보 | 지원금 지급 |
|----------|-----------------------------------|---|--|--|--------------------------|
| 신속 지급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 비지원.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정보 검증 (보류) 매출액·업종 미충족 → 의견제출 → 재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 별도 증빙자료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 확인 지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제출 → 증빙자료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심의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2025.5.19.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당초 계획액 대비 실적행이 부진하였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수요를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규모가 급증하면서 배달·택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4년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 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부담 현황]

(단위: 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
|--------|------------|------------|------------|----------|
| | | | 비용 | 전년 대비 |
| 연간 배달비 | 12,806,556 | 12,670,764 | 13,348,646 | +677,882 |
| 연간 택배비 | 10,759,416 | 10,667,568 | 11,065,812 | +398,24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5.1.

(원자료: 「2023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024.7~8월 소상공인 택배 비용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37억원의 예산 편성 당시 전체 소상공인 중 매출액 1.04억원 미만인 주요업종(제조·도소매·음식·정보통신) 소상공인 가운데 42%인 67.9만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산출근거]

(단위: 개사)

| 전체 소상공인 | 정책자금제외업종, 비활동기업 제외 |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주요업종 (제조,도소매, 음식,정보통신) | 지원대상 (주요업종×42% ¹⁾) |
|-----------|--------------------|-----------------|------------------------|--------------------------------|
| 7,335,397 | 5,337,186 | 3,097,282 | 1,616,671 | 679,001 |

주: 1) 2022년 통계청 서비스업실태조사의 음식업·도소매업 배달 판매 비중 42%를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2025년 1월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1,946억원의 예산을 통해 64.9만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고, 2월·4월부터 각각 신속지급·확인지급 지원을 시작하였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예산 집행계획]

| 구분 | 예산 | 세부 내역 |
|------|---------|--|
| 총 예산 | 2,037억원 | - |
| 직접비 | 1,946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9만명 x 30만원 ■ 민원종합센터 운영 : 60억원 ■ 시스템 구축·감리 및 운영 : 18.3억원 ■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도우미 운영 : 4.5억원 ■ 홍보비 : 6.2억원 ■ 기타 운영비 : 2억원 |
| 간접비 | 91억원 | |

주: 2022년 통계청 서비스업실태조사의 음식업·도소매업 배달 판매 비중 42%를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5.1.

그런데 4월까지 지원 완료된 집행 금액이 신속지급 128.1억원, 확인지급 2.3억
원, 총 130.5억원으로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1,946억원 대비 6.7%에 불과하였다.

[2~4월 배달·택배비 신청·지원 현황]

(단위: 건, 억원)

| 월별 | 트랙 | 신청 | | 지원 | |
|----|------|---------|-------|--------|-------|
| | | 신청건수 | 신청규모 | 지원건수 | 지원규모 |
| 2월 | 신속지급 | 66,980 | 200.9 | 17,234 | 50.2 |
| | 확인지급 | 79,132 | 237.4 | 0 | 0 |
| | 계 | 146,112 | 438.3 | 17,234 | 50.2 |
| 3월 | 신속지급 | 9,671 | 29 | 13,182 | 37.6 |
| | 확인지급 | 17,640 | 52.9 | 0 | 0 |
| | 계 | 27,311 | 81.9 | 13,182 | 37.6 |
| 4월 | 신속지급 | 11,748 | 35.2 | 14,025 | 40.3 |
| | 확인지급 | 56,886 | 170.7 | 827 | 2.3 |
| | 계 | 68,634 | 205.9 | 14,852 | 42.7 |
| 합계 | 신속지급 | 88,399 | 265.1 | 44,441 | 128.1 |
| | 확인지급 | 153,658 | 461.0 | 827 | 2.3 |
| | 계 | 242,057 | 726.1 | 45,268 | 130.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기업부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5월에는 수정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에 연 매출액 1.04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기업을 추가하였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공고 현황]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
| 공고일 | 2.10. | 4.21 | 5.19. | 12.8. |
| 신청기간 | 2.17. ~ 예산 소진시 | 4.21. ~ 예산 소진시 | 5.19. ~ 예산 소진시 | 5.19. ~ 12.24. |
| 지원대상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신속지급+확인지급 | |
| 매출기준 | '23 또는 '24 연매출 0원 초과 1.04억원 미만 | | | '23 또는 '24 연매출 1.04억원 이상 3억원 이하 |
| | - | | | |
| 배달·택배 실적 대상 | '24.1월 ~ '25.12.31. | | | '24.1월 ~ '25.12.25.까지 증빙자료 |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0만원 | | | |

주: 2022년 통계청 서비스업실태조사의 음식업·도소매업 배달 판매 비중 42%를 적용함

자료: 중소기업부,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공고」

그 결과 총 2,678억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규모 가운데 1,447.9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초 배달·택배비용 지원 예산 1,946억원 대비 74.4%로 여전히 다소 부진한 수치로 판단된다.²⁾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부는 사업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확인지급 대상자가 건별 증빙을 위한 영수증 확보·제출에 부담을 느껴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

* 지원신청 소상공인(892,672명) 중 배달·택배 영수증 미제출(169,100명) 및 제출 후 미보완자(65,114명) 비중이 26%

[2025년 배달·택배비 신청·지원 현황]

(단위: 건, 억원)

| 기간 | 트랙 | 신청 | | 지원 | |
|-------|------|---------|---------|---------|----------------|
| | | 신청건수 | 신청규모 | 지원건수 | 지원규모 |
| 2~12월 | 신속지급 | 190,015 | 570.0 | 166,499 | 478.4 |
| | 확인지급 | 702,657 | 2,108.0 | 363,489 | 969.5 |
| | 계 | 892,672 | 2,678.0 | 529,988 | 1,447.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사업 계획액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획액 | 변경예산 ¹⁾ | 산출단가 | 실집행액 |
|----------------------|----------------|--------------------|--|----------------|
| 배달·택배비용 지원 | 194,600 | 158,958 | 지원대상 53만명 × 지원액 30만원 | 144,796 |
| 민원종합센터 운영 | 6,000 | 6,200 | 상반기 3,113백만원 + 하반기 3,087백만원 | 6,166 |
| 시스템 구축·감리·운영 | 1,830 | 2,300 | 시스템 구축 830백만원 +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임차 970백만원 + 본인인증 등 500백만원 | 2,132 |
|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도우미 운영 | 450 | 450 | 일 파견료 114천원 × 25일 × 158명 | 447 |
| 홍보비 | 620 | 538 | 콘텐츠 제작 60백만원 + 매체송출 442백만원 + 기타 홍보 36백만원 | 536 |
| 기타 운영비 | 200 | 212 | 청년인턴 인건비, 소모품비, 심의수당, 국내여비 등 | 193 |
| 계 | 203,700 | 168,658 | - | 154,270 |

주: 1) 세부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은누리상품권 발행)으로 35,042백만원 전용('25년 제6차 소진기금 운용위 심의·의결)(중기부, '25.10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매출액 범위별 지원규모를 살펴볼 때 '1.04억원 이상'에 대한 지원규모가 총 지원규모 대비 42.9%인 621.5억원이므로, 지원기준이 사업 추진 도중 '0원 초과 1.04억원 미만'에서 '0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배달·택배비 지원 실적은 더욱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범위별 지원 현황]

(단위: 건, 억원)

| 매출액 범위 | 신청 | 지원 | |
|--------------------------|---------|---------|--------------|
| | 건수 | 건수 | 규모 |
| 1.04억원 미만 | 575,464 | 312,516 | 826.4 |
| 1.04억원 이상 ~3억원 이하 | 270,089 | 217,472 | 621.5 |
| 3억원 초과 | 47,119 | - | - |
| 합 계 | 892,672 | 529,988 | 1,447.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예산 집행률은 제고되고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 변경하였다는 것은 예산 산출 당시 수요를 과다 산정하는 등 사업 사전 기획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수요를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¹⁾(25년 한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구매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구매 전용 신용카드(1,000만원 한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313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소상공인 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 | - | 1,927,379 | 1,926,935 | - | 444 | 621,243 | 661,243 |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 | 131,356 | - | - | 131,356 | 131,356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0만원 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신용카드(보증비율 90%, 기업은행 취급)로,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카드 유효기간인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²⁾.

동 카드는 중·저신용 대상 시중카드(사용한도 평균 400만원 내외)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이용한도,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최초 1년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추진 기본계획(수정)」, 2025.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202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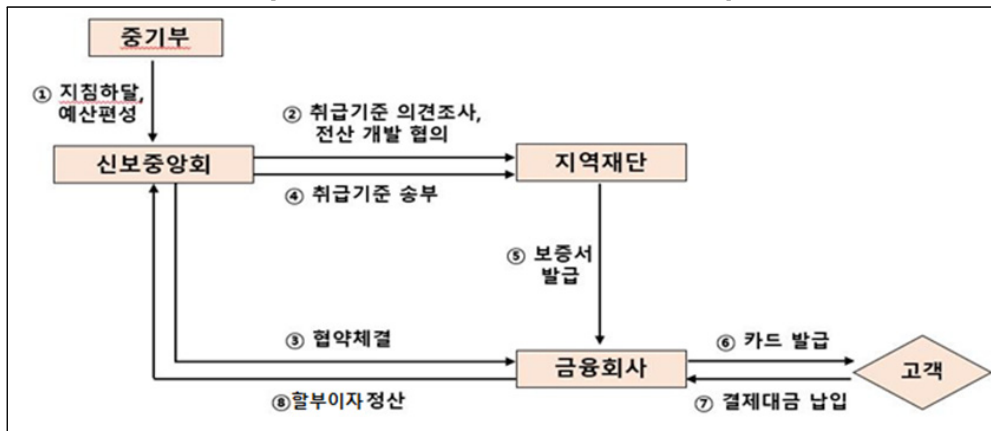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인사업자)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9.30.

간 납입대금의 3% 캐시백(최대 10만원) 지원, 금융권 총부채(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합산 등을 장점으로 한다.

동 카드를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879점(구 3~7 등급), 사업자등록 후 업력 1년 초과, 최근 2개월 동안 200만원 이상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법인사업자(휴폐업·연체 기업 제외)여야 한다.

소상공인이 보증신청 및 카드신청을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금융회사의 보증서부 대출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며, 소상공인이 사용한 결제금액은 '소상공인→금융회사→카드사용처'의 방향으로 지급되고, 할부 이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금융회사'의 방향으로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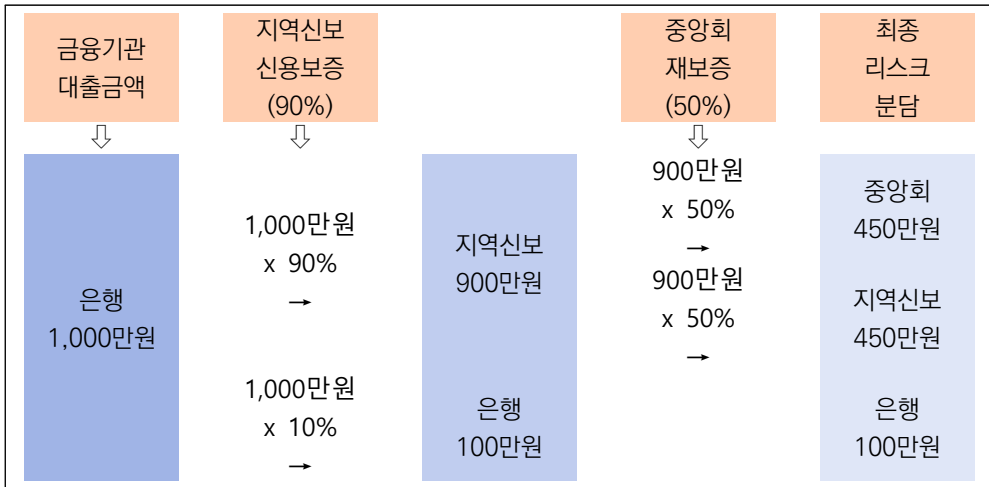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추진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추진 기본계획(수정)」, 2025.9.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90%,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이 50%인바, 소상공인의 연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최종 리스크는 금융회사 10%, 지역신용보증재단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위험분담 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추진 기본계획(수정)」, 2025.9.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기획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70,000명을 대상으로 비즈플러스카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1,260억원,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 재원으로 53억 5,600만원을 집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액 세부 산출근거]

| 구분 | 산출근거 |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 126,000백만원(7만명×1,000만원×부실률 20%×보증비율 90%) |
|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 5,356백만원(7만명×1,000만원×금리 2.66%×6개월) |
| 계 | 131,356백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2025년 7월 ~ 2026년 2월 동안 사업 추진 결과, 카드발급을 신청한 11,259명 중 11,237명에 대해서 발급이 이뤄져 목표인원 70,000명 대비 발급인원은 16.1%에 그쳤으며, 월별 신청·발급인원이 매달 감소세를 보인 결과 총 발급인원의 80.8%에 해당하는 9,085명에 대한 발급 지원이 사업 초반 4개월에 완료되었다.

또한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약 8개월 동안 1,564억 2,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연월별 비즈플러스카드 신청·발급·결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월 | 카드 신청 인원 | | 카드 발급 인원 | | 결제 금액 | |
|----------------------|---------------|---------------|---------------|---------------|----------------|----------------|
| | 월별 | 누적 | 월별 | 누적 | 월별 | 누적 |
| '25.7월 | 3,986 | 3,986 | 3,979 | 3,979 | 5,283 | 5,283 |
| '25.8월 | 2,785 | 6,771 | 2,780 | 6,759 | 21,966 | 27,249 |
| '25.9월 | 1,144 | 7,915 | 1,142 | 7,901 | 21,836 | 49,086 |
| '25.10월 | 1,186 | 9,101 | 1,184 | 9,085 | 19,517 | 68,602 |
| '25.11월 | 1,000 | 10,101 | 998 | 10,083 | 20,807 | 89,410 |
| '25.12월 | 950 | 11,051 | 947 | 11,030 | 24,608 | 114,017 |
| '26.1월 ¹⁾ | 202 | 11,253 | 201 | 11,231 | 23,997 | 138,014 |
| '26.2월 ¹⁾ | 6 | 11,259 | 6 | 11,237 | 18,409 | 156,423 |
| 계 | 11,259 | 11,259 | 11,237 | 11,237 | 156,423 | 156,423 |

주: 1) 보증신청(~'25.12.31) 후 '26년에 카드 발급을 진행한 사업자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한 14,721개사 중 11,299개사에게 보증이 지원되었고, 그 중 11,259개사가 기업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11,237개사가 발급을 받음

자료: 중소기업부

그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명목으로 편성된 1,260억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전액 출연되었으나 그 중 7.2%에 불과한 90억 4,500만원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재출연되었고, 그 외 1,169억 5,500만원은 중앙회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별 보증재원 출연금 현황(2026.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계획액 | 지역신용 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 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출연 | |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출연 |
| 126,000 | 강원 | 423 | 세종 | 212 |
| | 경기 | 231 | 울산 | 289 |
| | 경남 | 1,013 | 인천 | 816 |
| | 경북 | 840 | 전남 | 567 |
| | 광주 | 581 | 전북 | 556 |
| | 대구 | 648 | 제주 | 373 |
| | 대전 | 627 | 충남 | 632 |
| | 부산 | 523 | 충북 | 489 |
| | 서울 | 225 | 계 | 9,045 |

주: 2026년 3월부터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지원을 재개하여 3~5월간 재출연한 금액은 1,74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발급인원이 11,237명에 불과함에 따라 이자비용 지원규모도 6억 6,400만원으로 계획액 53억 5,600만원 대비 12.4%에 그쳤으며,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총 1,564억 2,300만원의 카드 결제금액 중 6개월 무이자 할부 금액은 50.3%인 786억 6,100만원에 불과한 등 6개월 무이자 할부에 대한 수요 자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부 개월별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 현황(2026. 2월 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할부 개월 |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 대상 | | | 이자비용 미지원 대상 | 비즈플러스 카드 결제규모 (‘25.7월~’26.2월) |
|------------|-------------------|---------------|--------------|----------------|-------------------------------------|
| | 승인 건수 | 결제규모 | 이자비용 지원규모 | | |
| 1개월 | - | - | - | 31,605 | 31,605 |
| 2개월 | 14,943 | 2,855 | 9 | - | 2,855 |
| 3개월 | 53,710 | 19,439 | 65 | - | 19,439 |
| 4개월 | 4,660 | 1,935 | 10 | - | 1,935 |
| 5개월 | 60,976 | 21,928 | 114 | - | 21,928 |
| 6개월 | 96,858 | 78,661 | 466 | - | 78,661 |
| 계 | 231,147 | 124,818 | 664 | 31,605 | 156,423 |
| 계획액 | - | - | 5,356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비즈플러스카드에 대한 수요가 목표 대비 부진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증부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등 유사 사업의 존재 및 수요 과다 산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유사 사업 존재

서울·대전·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부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경기·부산·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부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보증부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카드 지원 사업]

| 구분 | 지원유형 | 운영기관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사업현황 |
|------------------------------------|------------|-------------------------------|---|--|------------------------|
| 서울특별시 (서울형 지역업자 안심통장) | 마이너스 통장 | 서울신보, 카카오뱅크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신용점수) NICE 600점 이상 (매출액) 3개월간 200만원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CD금리+2.0%p (2025.3월 기준 4.84%) (만기)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5년) | '25년~ |
| 경기도 (소상공인 힘내GO카드) | 신용카드 | 경기신보, IBK기업은행 |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신용점수) NICE 595점 이상 | (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없음 (지원기간) 최대 5년 (캐시백) 3% (연 최대 10만원) | '24년(시범) '25년~(본) |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3無 희망잇기카드) | 신용카드 | 부산신보, BNK부산은행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신용점수) 관계 없음 | (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없음 (지원기간) 최대 5년 | '25년~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신용카드 | 신보중앙회 및 각 지역신보, IBK기업은행 | 소상공인 (신용점수) NICE 595점 이상 879점 이하 |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없음 (지원기간) 최대 5년 (캐시백) 3% (연 최대 10만원) | '25년~ |
| 제주도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 신용카드 | 제주신보, IBK기업은행 | 제주도 소재 소상공인 | (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최대 6개월 무이자 (기간) 1년씩 최대 5년 (캐시백) 1% (연 최대 10만원) | '25.7월~ |
| 대전시 (함께하는 마이너스 통장) | 마이너스 통장 | 대전신보, 하나은행 |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 (신용점수) NICE 780점 이상 (매출액) 1년 1천만원 이상 |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CD91일물 + 2.0%이내 (보증) 100% | '25.9월~ *하나은행 출연 |
| 충북도 (사장님 마음행복 안심통장) | 마이너스 통장 | 충북신보, 카카오뱅크 | 충북도 내 소상공인 (업력) 1년 초과 (신용점수) NICE 840점 이상 (매출액) 최근 3개월 200만원 이상 |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CD(91일) + 2.1% 이내 (기간) 1년씩 최대 5년 (보증) 90% | '25.7월~ |

자료: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등의 자료로 제작됨

그런데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카드와 비즈플러스카드의 중복 발급은 가능하나 각 한도의 합계가 총 1,000만원으로 관리되는바, 이로 인해 비즈플러스카드의 추가 발급 유인 또는 사용 가능 한도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들 가운데 대전을 제외하고, 경기·부산·서울·제주·충북신용보증재단의 비즈플러스카드 발급을 위한 보증규모가 20~50억원대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별 비즈플러스카드 보증 지원 현황(2026. 2월 말 기준)]

(단위: 개사, 백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 신청 기업 수 | 보증 지원 기업 수 | 보증규모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 신청 기업 수 | 보증 지원 기업 수 | 보증규모 |
|-----------|--------------|------------|--------------|-----------|---------------|---------------|----------------|
| 강원 | 721 | 533 | 4,797 | 세종 | 356 | 258 | 2,322 |
| 경기 | 618 | 482 | 4,001 | 울산 | 434 | 339 | 3,051 |
| 경남 | 1,485 | 1,227 | 11,039 | 인천 | 1,331 | 977 | 8,820 |
| 경북 | 1,408 | 1,133 | 10,197 | 전남 | 849 | 667 | 6,003 |
| 광주 | 856 | 679 | 6,111 | 전북 | 878 | 661 | 5,949 |
| 대구 | 1,110 | 815 | 7,335 | 제주 | 592 | 465 | 4,185 |
| 대전 | 943 | 740 | 6,660 | 충남 | 982 | 761 | 6,849 |
| 부산 | 1,031 | 708 | 5,693 | 충북 | 780 | 581 | 5,229 |
| 서울 | 347 | 273 | 2,457 | 계 | 14,721 | 11,299 | 100,698 |

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한 14,721개사 중 11,299개사에게 보증이 지원되었고, 그 중 11,259개사가 기업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11,237개사가 발급을 받음
 자료: 중소기업부

참고로 중소기업부는 2026년 3월부터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지원을 재개하면서³⁾, 2025년과는 달리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유사 상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비즈플러스카드는 한도 제한 없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다.

3) 2026년도 예산에 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기업은행에서 부담 예정)

[2025·2026년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 요건]

| 2025 | 2026 |
|---------------------------------|---|
| 지역신보 자체상품과 중복하여 이용시 카드 한도 제한 | 지역신보 유사상품 이용 시에도 한도 제한 없이 1,000만원 지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6.3.20.

이에 2026년 3~5월간 5,632명이 발급을 신청하였고, 그 중 5,628명에 대해 발급이 이뤄졌다.

[2026년 3~5월 비즈플러스카드 신청·발급 현황]

(단위: 명)

| 연월 | 카드 신청 인원 | | 카드 발급 인원 | |
|--------|----------|-------|----------|-------|
| | 월별 | 누적 | 월별 | 누적 |
| '26.3월 | 800 | 800 | 799 | 799 |
| '26.4월 | 3,226 | 4,026 | 3,224 | 4,023 |
| '26.5월 | 1,606 | 5,632 | 1,605 | 5,628 |
| 계 | 5,632 | 5,632 | 5,628 | 5,62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일정 지연 및 수요 과다 산정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추경 제1회 사업으로 예산안은 2025년 5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상 첫 신청 공고는 6월 25일에 게시되어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개시되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업은행 간 협약은 7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법인사업자 대상 신청 공고는 9월 30일이 되어서야 게시되어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개시되었다.

법인사업자 기준으로는 사업 추진이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본격 진행 된 것인바, 사업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로부터 일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 추진 내용 |
|-------------|---|
| 2025. 5. 1. | 추경안 국회 의결 |
| 6. 25. | 개인사업자 대상 첫 신청 공고 게시 |
| 7. 9.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관) - 기업은행(금융회사) 협약 |
| 7. 14.~ | 개인사업자 신청 개시 *경기 지역 8. 18.~ |
| 9. 30. | 개인사업자 대상 신청 수정 공고 게시 법인사업자 대상 신청 공고 게시 |
| 10. 1.~ | 법인사업자 신청 개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 6월 25일 게시된 첫 신청 공고에서는 NICE 신용평점 595점~839점(구 4~7등급)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으나 9월 30일 게시된 신청 수정 공고에서는 NICE 신용평점 840~879점(구 3등급)의 소상공인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지원대상 요건이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대상 요건]

| 구분 | 개인사업자 | | | 법인사업자 | |
|----------------------|---|--------------------------|-----------------------------|----------------------------------|-----------------------------|
| | 2025년 1차 2025. 6. 25. | 2025년 2차 2025. 9. 30. | 2026년 1차 2026. 3. 20. | 2025년 1차 2025. 9. 30. | 2026년 1차 2026. 3. 20. |
| 신청기간 | 7. 14.~ *경기 지역 8. 18.~ | | 3. 23.~ | 10. 1.~ | 3. 23.~ |
| 지원대상 요건 (신용평점) | NICE 신용평점 595점~839점 (구 4~7등급) NICE 신용평점 840~879점 (구 3등급) 추가 | | | NICE 신용평점 595점~879점 (구 3~7등급) | |
| 지원대상 요건 (업력) | 1년 이상 | | NICE 신용평점 880~964점 추가 | - | NICE 신용평점 880~964점 추가 |
| | 1년 이상 |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2026

대상 확대 결과, NICE 신용평점 840~879점(구 3등급)의 소상공인의 경우 417명이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아 1,564억 2,300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해 1,000만원의 이자비용이 지원되었다.

[신용등급별 카드 지원 현황(2026. 2월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NICE 신용점수 (구 등급) | 카드 신청 인원 | 카드 발급 인원 | 결제 금액 | 이자비용 지원규모 |
|------------------|----------|----------|---------|-----------|
| 7등급 | 1,634 | 1,630 | 25,691 | 114 |
| 6등급 | 1,878 | 1,874 | 28,691 | 121 |
| 5등급 | 2,823 | 2,817 | 40,002 | 171 |
| 4등급 | 4,506 | 4,499 | 58,614 | 248 |
| 3등급 | 418 | 417 | 3,425 | 10 |
| 계 | 11,259 | 11,237 | 156,423 | 66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NICE 신용평점 840~879점(구 3등급)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대비 높지는 않으나(발급 인원 기준 3.7%),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 변경하였다는 것은 예산 산출 당시 수요를 과다 산정하는 등 사업 사전 기획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유사 사업의 존재, 수요 과다 산정 등으로 인해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실적 및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이 부진하게 나타난바, 그 결과 계획 대비 실제 사업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기획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지원 사업 종료 후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남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는 등 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70,000명을 대상으로 비즈플러스카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1,260억원의 보증재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였는데, 2026년 2월까지 카드 발급인원이 11,237명(2025년 12월 말까지 보증신청을 완료한 자 기준)에 불과하여 2026년 3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카드 발급 지원을 재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원 예정이다.

그런데 2025년 7월~2026년 5월 동안의 카드 발급인원이 16,868명인바, 2026년 말까지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70,000명의 목표인원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일 카드 발급인원이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1,260억원의 보증재원은 과도하게 출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증사고 충당 등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제외하고는 남은 출연금을 정산하여 국고로 회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지원을 위해 53억 5,6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였는데, 실제 이자 지원금액은 6억 6,400만원에 불과한바, 나머지 46억 9,200만원 역시 과도하게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고 반납이 필요해 보인다.⁴⁾

따라서 중소기업부는 2026년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지원 사업 종료 후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남은 보증재원 및 집행하지 못한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자비용 등의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는 등 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비목으로 반납을 검토 중이다.

| V.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 | | |
|------------------------|----------------|-----------------|--|
|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 | | |
| 관 | 항 | 목 | 내역 |
| 12 경상이전수입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 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 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가. 현황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은 소상공인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항목별 필요비용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5,659억 8,000만원의 99.9%인 1조 5,65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소상공인 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 | - | 1,927,379 | 1,926,935 | - | 444 | 621,243 | 661,243 |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 | 1,565,980 | - | - | 1,565,980 | 1,565,979 | - | 1 | 579,005 | 579,005 |

주: 2026년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로 사업명 변경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제 1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 등에 크레딧 50만원을 지급하여, 크레딧을 공과금(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4대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다은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①'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이하면서,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담배 중개업, 사행성업 등)인 경우 제외 |
| 지원목표 | 311.1만개사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 등에 크레딧 50만원 지급 |
| 사용처 | 공과금(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4대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 |
| 지원한도 | 5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결과 신청기업 381.3만개사 중 306.9만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조 5,345억 700만원의 크레딧이 지원되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카드 유형별 신청·지원 현황]

(2026.1.31. 기준,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 신청·접수 | | | 검증완료 | | | 크레딧 지원결정금액 ¹⁾ |
|--------|-----------|---------|-----------|-----------|-----------|---------|-----------------------------|
| | 신청 | 취소 | 실접수 | 계 | 대상선정 | 대상제외 | |
| 신용체크카드 | 3,801,690 | 270,354 | 3,531,336 | 3,531,336 | 3,060,779 | 470,557 | 1,534,507 |
| 선불카드 | 11,493 | 654 | 10,839 | 10,839 | 8,233 | 2,606 | |
| 계 | 3,813,183 | 271,008 | 3,542,175 | 3,542,175 | 3,069,012 | 473,163 | |

주: 1) 크레딧 지원결정금액 = 지원 결정 기업 수×5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매출액 범위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기업이 44.9%, 1.04억원 이하 기업이 70.3%, 1.5억원 이하 기업이 82.1% 등으로 선정되었다.

[매출액 범위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지원 현황]

(기준일: 2026.1.31., 단위: 개사, %, 백만원)

| 연매출액 범위 | 신청기업 수 | 지원대상 선정기업 | | |
|-------------|-----------|-----------|-----------------------|-----------|
| | | 기업 수 | 전체 대비 비중 (기업 수 기준) | 지원결정금액 |
| 확인 불가 | 588,929 | - | - | - |
| ~ 5천만원 이하 | 1,476,064 | 1,377,630 | 44.9 | 688,815 |
| ~ 1.04억원 이하 | 807,357 | 779,497 | 25.4 | 389,749 |
| ~ 1.5억원 이하 | 372,063 | 361,736 | 11.8 | 180,868 |
| ~ 2억원 이하 | 262,442 | 254,678 | 8.3 | 127,339 |
| ~ 2.5억원 이하 | 175,458 | 169,447 | 5.5 | 84,724 |
| ~ 3억원 이하 | 130,870 | 126,024 | 4.1 | 63,012 |
| 계 | 3,813,183 | 3,069,012 | 100.0 | 1,534,507 |

주: 1. 확인불가 = 매출기준 지원요건 범위 제외로 연매출액 0원 또는 3억원 초과

2. 크레딧 지원결정금액 = 지원 결정 기업 수×5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 수요 부족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을 2026년 1월까지 집행하였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 설계를 면밀히 수행하여 수요 과다 산정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월 25일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게시하여 연말까지 공과금(전기료·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부담경감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목적 외 사용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집행 부진으로 사용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하였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추진 내용]

| 구분 | 2025 | | | 2026 |
|------|--|--------|-------------------|----------------------------|
| | 1차 | 2차 | 3차 | |
| 공고일 | 2025.6.25. | 8.19. | 11.26. | 2026.1.28. |
| 신청기간 | 2025.7.14.~11.28. | | 2025.7.14.~12.10. | 2026.2.9.~12.18. |
|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이하 | |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04억 미만 |
| 지원한도 | 50만원 | | | 25만원 |
| 사용처 | 공과금(전기료·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차량 연료비 | | 통신비 |
| 사용기간 | ~2025.12.31. | | ~2026.1.31.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2026.12.31. |

주: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으로 사업 명이 변경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경영안정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2026

(1) 목적 외 사용 부작용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9일 2차 공고를 게시하여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4대보험료에 차량 연료비·통신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부담경감크레딧으로 사용된 통신비가 1,849억원, 차량 연료비가 5,278억원으로 총 사용금액 중 각각 12.4%, 35.3%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기존 공과금·4대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별 크레딧 사용 현황]

(2026.1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 | 전기 | 가스요금 | 상하수도 요금 | 4대보험 계 | 통신비 | 차량 연료비 |
|------|-----------|---------|--------|------------|-----------|---------|---------|
| 사용금액 | 1,492,753 | 310,497 | 51,740 | 18,769 | 399,039 | 184,912 | 527,796 |
| 비중 | 100 | 20.8 | 3.5 | 1.3 | 26.7 | 12.4 | 35.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사업 추진 전 소상공인의 수요 양상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설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처 항목에서 통신비를 다시 삭제하였다.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바일 게임 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액이 통신비에 포함됨에 따라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과 무관한 곳에 크레딧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용처 항목별로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11월 12일 부담경감크레딧 수혜자 298만명을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자진취소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 19,395건에 대해 11억 2,400만원의 결제액이 자진취소되었는데, 이는 통신비 사용액 1,849억 1,200만원 대비 0.6%에 해당한다.

[자진취소 현황(2026. 1월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건)

| 자진취소 | | | 총 통신비 사용 규모 |
|-------|-------|--------|-------------|
| 인원 | 규모 | 건수 | |
| 8,364 | 1,124 | 19,395 | 184,91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진취소 유도 외에 부정사용과 관련한 별도 환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2) 사용기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6일 3차 공고를 통해 크레딧 사용기간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는데, 이는 2025년 연말까지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월별 부담경감크레딧 사용 현황(2026. 1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연월 | 사용금액 | 비중 |
|--------------|---------------|------------|
| 25.7월 | 102,110 | 6.8 |
| 25.8월 | 452,409 | 30.3 |
| 25.9월 | 387,693 | 26.0 |
| 25.10월 | 241,154 | 16.2 |
| 25.11월 | 165,517 | 11.1 |
| 25.12월 | 93,093 | 6.2 |
| 26.1월 | 50,777 | 3.4 |
| 계 | 1,492,753 | 1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럼에도 지원결정금액 1조 5,345억원 중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제 사용된 크레딧은 97.3%인 1조 4,928억원으로 전액 소진되지 못하였는바, 사업 수요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결정금액 및 사용 크레딧 현황(2026. 1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구분 | 지원결정금액 | 크레딧 사용금액 | 사용률 |
|-----|-----------|-----------|------|
| 크레딧 | 1,534,507 | 1,492,753 | 97.3 |

주: 크레딧 지원결정금액 = 지원 결정 기업 수×5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 소상공인의 사업 수요, 사용처 항목별 목적 외 사용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 설계를 면밀히 수행하여 수요 과다 산정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성과관리 필요

가. 현황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¹⁾(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은 집적 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23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소공인 특화지원 | 119,870 | 119,870 | - | - | 119,870 | 119,870 | - | - | 135,261 | 135,261 |
| 지역소공인 육성 | 15,620 | 15,620 | - | - | 15,620 | 15,620 | - | - | 17,967 | 17,967 |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2,320 | 2,320 | - | - | 2,320 | 2,320 | - | - | 4,320 | 4,32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은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의 내내역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로 20~50인 이상 집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²⁾ 내 설립할 수 있는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2016년에 지정된 3개의 집적지구부터 2024년에 지정된 5개의 집적지구 등을 포함하여 2026년 초 기준 총 56개의 집적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

| 년도 | 집적지구 | 업종 | 년도 | 집적지구 | 업종 |
|-------------|------------------------|----------|--------------|----------------|-----------|
| '16 (3개)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 기계·금속 | '20 (10개) | 대전 대덕구 오정동 | 금속 가공제품 등 |
| | 서울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기타 제품 | | 인천 동구 송현동, 송림동 | 금속 가공제품 등 |
|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가죽·가방·신발 | | 전북 전주시 팔복동 | 금속 가공제품 |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행정 구역 | 기 준 |
|---------------------|-------------|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 50인이상(업체 수) |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 40인이상(업체 수) |
| 군의 읍·면 | 20인이상(업체 수) |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년도 | 집적지구 | 업종 | 년도 | 집적지구 | 업종 |
|-------------|--------------------------------------|-------------------|-------------------------|---|----------------|
| '17 (8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인쇄 등 | | 경기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비금속광물 |
| |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동 | 기계·금속 | | 경기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가구 |
| | 경기 양주시 남면 | 섬유제품 | |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5가 | 기타제품 |
| | 경기 용인시 영덕동 | 전자부품, 등 통신장비 | | 부산 금정구 서동 | 의복 등 |
| | 부산 동구 범일동 | 의류 | | 서울 마포구 서교동 | 인쇄 등 |
|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 식료품 | | 경북 영주시 풍기읍 | 식료품 |
| | 강원 강릉시 사천면 | 식료품 | | 경기 화성시 봉담읍 | 금속가공제품 |
| '18 (5개)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의류 | '21 (10개) | 서울 도봉구 창동 | 양말제조 |
| | 서울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의류 | | 서울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의류봉제 |
| | 경기 군포시 군포1동 | 금속가공 | | 대구 북구 노원동 | 안경·안경 렌즈제조업 |
| | 경기 포천시 가산면 | 가구 |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가방제조업 |
| | 대구 중구 대봉1동 | 의류 | |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 표면처리 |
| '19 (9개) | 광주 동구 서남동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경기 고양시 장항동 | 인쇄 | |
| |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비금속 광물제품 | 충남 홍성군 광천읍 | 식료품 | |
| | 전북 순창군 순창읍 | 식료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 야생차 | |
|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식료품 | 경기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 | |
| | 경기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기타 기계 등 | 충남 금산군 금산읍 | - | |
|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전자부품 등 통신장비 | '22 (3개) | 경기 화성시 동탄5동 | 반도체 베이스 |
| | 대구 중구 성내동 | 기타 제품 | 서울 광진구 증곡동 | 봉제 | |
|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섬유제품 제조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 봉제 | |
| | 서울 중랑구 면목상봉동 | 패션·봉제 | '23 (3개) |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2동, 승인제1동, 승인제2동 | 봉제 |
| - | - | | 전북 부안군 진서면 | 젓갈제조업 | |
| | | | 강원 원주시 우산동 | 기타 기계 등 | |
| | | | 대전 동구 정동·중동 | 인쇄특화 | |
| | |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섬유·봉제 | |
| | | | 전남 무안군 청계면 | 생활도자 | |
| | |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제조가공 | |
| | | | 서울 강북구 미아동 | 패션·봉제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가운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로 선정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당 2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율은 50%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 지원기간 | 2년 |
| 국비 지원 규모 | 센터당 총 25억원 이내 지원 |
| 분담률 | 국비 50%, 지방비 5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설립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에 대해 소공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상 300평 내외 규모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 세부 내용 |
|---------|--|
| 공용장비 |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
| 전시·판매장 |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 교류·창작공간 |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 상생프로그램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모」, 2025.1.7.

2026년 5월 기준 9개의 센터가 개소하였고, 5개의 센터가 기획·공사 단계로, 총 14개의 센터가 선정되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선정 현황]

| 선정 연도 | 시도 | 집적지구 | 분야 | 공동인프라 | 사업기간 | 개소(예정)일 |
|-------|----|---------------|--------------------|---------------------------------------|---------|--------------------------------|
| '19 | 충남 | 공주시 | 섬유 |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분석실 등 | '19~'21 | '21.4. 개소 |
| | 서울 | 중랑구 | 섬유/의류 가죽,가방, 신발 | 구축 중 | '19~'26 | 공사 중 '26.10. 예정 |
| '20 | 경북 | 영주시 | 식료품 | 공용제조가공실, 공동 작업실, 공용저온창고 등 | '20~'22 | '23.5. 개소 |
| | 경기 | 화성시 (봉담읍) | 금속가공 | 공동작업장, 측정실, 장비운용실 등 | '20~'22 | '22.10. 개소 |
| '21 | 경남 | 하동군 | 식료품 | 전시판매장, 발효실, 스마트장비 등 | '21~'23 | '24.1. 개소 |
| '22 | 경기 | 화성시 (동탄5동) | 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 공용장비실, 공용전시실, 클린룸, 교육장 등 | '22~'23 | '23.12. 개소 |
| | 서울 | 광진구 | 섬유제품 의류봉제 | 공동작업실, 교육실, 개발실, 전시실, 스튜디오 등 | '22~'23 | '23.11. 개소 |
| | 서울 | 동대문구 | 섬유제품 | 재단실, CAD실, 샘플실, 공동작업장 | '22~'23 | '24.1. 개소 |
| '23 | 서울 | 종로구 | 의류봉제 | 재단실, 공동작업실, CAD실, 개발실 등 | '23~'25 | '25.1. 개소 |
| | 전북 | 부안군 | 식료품 | 식품제조가공실,소포장실, 제품관리실, 창작 스튜디오, 청년창업실 등 | '23~'25 | 리모델링 및 부대공사 등 '26.6. 예정 |
| | 강원 | 원주시 | 기타기계·장비 | 공용장비실, 교육실 (CAD, 로봇), 회의실 등 | '23~'25 | '25.12. 개소 |
| '25 | 경북 | 경산시 | 금속가공, 기타기계·장비 | 구축 중 | '25~'26 | 설계용역 및 장비도입 등 '26.12. 예정 |
| | 전남 | 무안군 | 비금속 광물 | 구축 중 | '25~'26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6.12. 예정 |
| '26 | 서울 | 강북구 | 의류봉제 | 구축 중 | '26~'27 | '26.3월 신규 선정 '27.12. 예정 |

주: 2026년 5월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사업 일정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신규 선정될 2개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 대해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 편성내역]

| 구분 | 편성내역 |
|------|---|
| 구축비용 | 2,0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5,000백만원 × 국비 50% × 1차년도 40% × 2곳 내외 |
| 운영경비 | 32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 계 | 2,320백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9월 6일 시행한 예비공모 결과 7개의 지자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4개의 지자체가 2025년 1월 7일 시행한 본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전남 무안군과 경북 경산시 등 2개 지자체가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신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선정 일정]

| 구분 | 공모일 | 참여 지자체 | 선정일 |
|------|-----------|--|------------|
| 예비공모 | 2024.9.6. | 전남 영광군, 대전시, 서울 성동구, 전남 무안군, 경북 경산시, 대구 수성구, 서울 강북구 | 2024.1.31. |
| 본공모 | 2025.1.7. | 서울 성동구, 전남 무안군, 경북 경산시, 서울 강북구 | 2025.3.5. |

주: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 예비공모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본공모 전 보완할 경우 본공모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 2024.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별로 10억원씩을 교부하였는데, 전남 무안군은 국비 교부액의 98.2%를 차년도로 이월하고, 경북 경산시는 국비 교부액의 33.9%를 이월하는 등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2025년 신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자체별 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지자체 | 교부액(A) | 집행액 | 이월액(B) | 불용액 | 이월률(B/A) |
|--------|--------|------------|--------|-----|-------------|
| 전남 무안군 | 1,000 | 18 | 982 | - | 98.2 |
| 경북 경산시 | 1,000 | 661 | 339 | - | 33.9 |
| 계 | 2,000 | 679 | 1,321 | - | 66.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두 지자체의 집행액은 각각 1,800만원, 6억 6,100만원으로 국비 1차년도 1차(2025.5.) 교부액인 7억원에 미달하는 규모인바, 지자체별 2차 교부액은 (2025.10.) 전액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신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 구분 | 국비 | | 지방비 | | 총 사업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 전남 무안군 | 금액 | 700 300 | 1,500 | - | 2,500 | 5,000 |
| | 교부일 | 2025.5. 2025.10. | (예정) | - | (예정) | |
| 경북 경산시 | 금액 | 700 300 | 1,500 | 420 180 | 1,900 | 5,000 |
| | 교부일 | 2025.5. 2025.10. | (예정) | 2025.5. 2025.10. | (예정)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전남 무안군의 경우 1차년도에 광역지자체에서 3억원, 기초지자체에서 7억원 등 총 10억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³⁾, 실제로는 1차년도에 지방비 매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바⁴⁾,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지자체의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채로 국비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전남 무안군 국비-지방비 매칭 계획

[전남 무안군 국비-지방비 매칭 계획]

(단위: 백만원)

| 사업차수 | 국비 | 지방비 | | 계 |
|------|-------|-----|-------|-------|
| | | 광역 | 기초 | |
| 1차년도 | 1,000 | 300 | 700 | 2,000 |
| 2차년도 | 1,500 | 450 | 1,050 | 3,000 |
| 계 | 2,500 | 750 | 1,750 | 5,000 |

자료: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계획서(무안군)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2개년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소까지 약 3년 내외 소요(전북 부안군, 강원 원주시) 등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2024년에도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선정된 전북 부안군 및 원주시의 경우 2023년 교부 후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 일부를 2025년으로 재이월하는 등⁵⁾ 연례적인 예산 이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자체별 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 연도 | 지자체 | 차수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현액 (A) | 집행액 | 차년도 이월액 (B) | 불용액 | 이월률 (B/A) |
|-------|--------------------------------|----------|-------|---------|----------|-------|-------------|-----|-----------|
| 2023 | 서울 종로구 | 1차 년도 | 426 | - | 426 | 7 | 419 | - | 98.4 |
| | 전북 부안군 | | 1,146 | - | 1,146 | 10 | 1,136 | - | 99.1 |
| | 강원 원주시 | | 1,428 | - | 1,428 | 5 | 1,423 | - | 99.6 |
| 2024 | 서울 종로구 (25.1. 개소) | 2차 년도 | 284 | 419 | 703 | 680 | - | 23 | 0.0 |
| | 전북 부안군 | | 764 | 1,136 | 1,900 | 452 | 1,444 | 4 | 76.0 |
| | 강원 원주시 | | 952 | 1,423 | 2,375 | 1,489 | 887 | - | 37.3 |
| 2025 | 전북 부안군 (26.6. 개소 예정) | 3차 년도 | - | 1,444 | 1,444 | 1,423 | - | 21 | 0.0 |
| | 강원 원주시 (25.12. 개소) | | - | 867 | 867 | 867 | - | - | 0.0 |
| | 경북 경산시 | 1차 | 1,000 | - | 1,000 | 661 | 339 | - | 33.9 |
| | 전남 무안군 | 년도 | 1,000 | - | 1,000 | 18 | 982 | - | 98.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는 구축비를 단년도로 지원하다가 2023년부터는 2개년도로 분할 지원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예산 이월 및 개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구축비 지원 연차 확대 등 사업 추진상 개선이 필요하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이월 또는 재이월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전북 부안군의 경우 재이월 승인 신청을 회계연도가 바뀐 2025년 1월에 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2025.8.)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비 지원 연차]

| 사업연도 | 구축비 지원 연차 |
|-----------|-------------|
| 2019~2022 | 1개년도 단년도 지원 |
| 2023~2026 | 2개년도 분할 지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사업 일정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 중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이용·미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증가·고용창출·생존율 등의 기간별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을 지원하되 개소 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비용 부담 방식]

| 구분 | 내용 | 부담 주체 |
|-----|---|-------|
| 구축비 | ○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 국가 |
| | ○ 스마트 장비, 온라인 쇼룸(스튜디오), 디지털 체험공간 | |
| 운영비 | 부지 매입비 | 지자체 |
| |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 |
| 운영비 | 센터 운영 비용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2025.12.31. 재구성

이처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주체는 각 지자체이나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축비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장비 공동 이용,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공인의 안정적인 매출 발생을 지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완료 후 기본적으로 5년간만 운영 결과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바⁶⁾, 센터별 장비 활용 건수, 전시회·세미나 개최 건수,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입점 품목, 입점 수, 판매액 등), 기술교육 현황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 센터 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추이 등의 자료를 센터별로 모두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개, 건, 회, 개, 천원)

| 지자체 | 공동장비 | | 전시회·세미나 개최 수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
|--------------|------|-------|-----------------|------------|--------|
| | 장비 수 | 활용 건수 | | 입점 품목 수 | 판매액 |
| 충남 공주시 | 132 | 1,236 | 9 | 100 | 60,200 |
| 경북 영주시 | 117 | 544 | 2 | - | - |
| 경기 화성시(봉담읍) | 21 | 2,023 | - | - | - |
| 경남 하동군 | 4 | 94 | 7 | - | - |
| 경기 화성시(동탄5동) | 110 | 1,209 | - | - | - |
| 서울 광진구 | 67 | 3,125 | 6 | - | - |
| 서울 동대문구 | - | 2,771 | 3 | - | - |
| 서울 종로구 | 38 | 1,666 | - | - | - |
| 강원 원주시 | 48 | 2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매출액 추이 관리 현황]

| 자료 보유 여부 | 해당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
|----------|---|
| 보유 |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서울 동대문구 |
| 미보유 | 경북 영주시, 경기 화성시(봉담읍), 경기 화성시(동탄5동), 서울 광진구 |

주: 2025년 이후 개소 센터 제외한 7개 센터 대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침」

제39조(보고서의 제출) ④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 인프라 조성·운영현황 등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이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특화업종의 소공인 기준 센터 이용·미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추이, 고용창출 실적, 생존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효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7)에 따른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성과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축비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이용·미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증가·고용창출·생존율 등의 기간별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한 사업 수요 파악 필요

가. 현 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¹⁾(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제공 및 성실상환 의지 고취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이자 등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71억 2,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소상공인 재기지원 | 274,806 | 360,455 | - | - | 360,455 | 360,455 | - | - | 351,649 | 376,249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 - | 7,123 | - | - | 7,123 | 7,123 | - | - | 12,418 | 12,41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4131-319의 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중 일시적 경영애로(매출감소, 중·저신용 등)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추가 분할상환 및 1%p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 지원내용]

| 구분 | | 지원내용 | |
|----------|--------|--|--|
| 지원대상 |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진기금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요건 ① '20~'23년 연말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②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③ 다중채무자(정책자금 채무 외 '20~'23년 발생한 잔존채무 1개 이상), ④ 부실징후(1년 내 신용도 하락) 포착·모니터링 중 **지원 제외 : 정책자금 중·장기연체(31일 이상), 세금 체납, 휴·폐업, 새출발기금·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차주 등 (단, 해당 사유 해소시 지원 가능) | |
| 상환기간연장 | | 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
| 금리 감면 | 정상차주 | (기존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0.2%p) - 금리감면 1%p | *거치기간 중인 대출에 대해 지원 확정 시 잔여 거치기간 소멸 + 실행 익월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
| | 단기연체차주 | (기존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0.4%p) - 금리감면 1%p | |
| (예시) | | 원금 3천만원, 이율 4.28%의 소상공인 : 7년 연장 시 최초 대비 월 상환액 약 60만원(△64%) 경감 효과 - (최초) 월 94만원, 3년 → (기존5년 상환연장 ¹⁾) 월 42만원, 8년 → (특례7년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월 34만원, 10년 | |

주: 1) 금융지원 3종 세트(2024. 8.~)의 일환으로 상환연장 지원이 이미 추진되었음

(1) 상환연장: 기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2) 전환보증: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만기가 도래한 지역신용보증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1년 거치 4년 분할)

(3)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2025.7.30.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편성 당시 20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이 635,794개사(대출잔액 7조 2,259억 5,600만원), 그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265,454개사(대출잔액 2조 8,491억 8,200만원)임을 고려하여 그 중 절반인 132,727개사(대출잔액 1조 4,245억 9,100만원)를 대상으로 추가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 목표]

(2025.5.30.기준, 단위: 개사, 백만원)

| 소상공 직접대출 유형 | 구분 | 2020.4~2025.6월 사업을 영위한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 | | |
|-------------------|--------|---|------------------|------------------|
| | | 그 중 일시적 경영애로 등 사업지원대상 | | 그 중 사업 지원 목표 |
| | | 소상공인 수 | 대출잔액 | |
| 성장기반 자금 | 소상공인 수 | 33,983 | 14,913 | 7,457 |
| | 대출잔액 | 1,737,509 | 801,889 | 400,945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수 | 55,685 | 22,119 | 11,059 |
| | 대출잔액 | 404,486 | 131,385 | 65,692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수 | 518,634 | 215,326 | 107,663 |
| | 대출잔액 | 4,413,814 | 1,585,717 | 792,858 |
| 채무조정 | 소상공인 수 | 27,492 | 13,097 | 6,548 |
| | 대출잔액 | 670,147 | 330,191 | 165,095 |
| 계 | 소상공인 수 | 635,794 | 265,454 | 132,727 |
| | 대출잔액 | 7,225,956 | 2,849,182 | 1,424,591 |

자료: 중소기업부

그리고 예산은 대출잔액 약 1.4조원에 대해 금리 1%p씩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7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사업 예산 세부 산출근거]

| 구분 | 산출근거 |
|----------|---|
| 금리 감면 지원 | 7,123백만원 = 직접대출 잔액 1.4조원 × 1%p × 6개월 |

자료: 중소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 분할상환지원 사업과 같이 신규 사업 편성 시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 소상공인의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안이 2025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7월 30일 사업 1차 공고를 게시하여 당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 추진 일정]

| 연월일 | 추진 내용 |
|------------------------|----------------------|
| '25.7.4. | 추경안 국회 의결 |
| '25.7.28. | 사업기획 |
| '25.7.30. | 사업 1차 공고 게시 |
| '25.7.30. ~ '25.12.19. | 사업 신청기간(1차 공고 기준) |
| '25.12.12. | 사업 2차 공고 게시 |
| '25.7.30. ~ '26.6.30. | 사업 신청기간 수정(2차 공고 기준) |

자료: 중소기업부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 결과 총 대출규모가 6,735억 5,600만원인 26,712개의 계좌에 대해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금리감면은 총 대출액의 1%p 중 6개월치 이자인 31억 7,100만원이 지원되었다.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신청·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신청 | |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지원결정 | | |
|------|----------------|---------|------------------|----------------|--------------|
| | 계좌 수 | 대출규모 | 계좌 수 | 대출규모 | 금리감면규모 |
| 2025 | 34,856 | 890,904 | 26,712 | 673,556 | 3,171 |

주: 회차별로 대출잔액의 일부를 상환(원리금상환)하므로 회차가 지날수록 잔여 대출규모는 당초 대출 규모보다 감소하는바, 실제 금리감면규모(3,171백만원)는 당초 대출규모 673,556백만원에 대한 이자 1%p의 6개월분(3,368백만원) 대비 낮게 나타남

자료: 중소기업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려는 목표 기업 수(132,727개사) 및 대출규모(대출잔액 1조 4,245억 9,100만원) 대비 실제 지원 실적이 부진한 탓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 71억 2,3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2.0%인 29억 9,000만원만 실집행하고 나머지 58.0%인 41억 3,300만원은 이월하였다.

[2025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부처 | | 사업보조기관(소진공) | | | | |
|-------|-------|-------------|--------|-----|-------|----------|
| 계획액 | 교부액 | 교부액(A) | 집행액(B) | 불용액 | 이월액 | 집행률(B/A) |
| 7,123 | 7,123 | 7,123 | 2,990 | - | 4,133 | 42.0 |

주: 2025년 지원결정 금리감면규모 3,171백만원 중 2,990백만원을 2025년 내 집행 완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12월 12일 2차 공고를 게시하여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는데, 2026년 5월 말 누적 기준 지원결정된 계좌는 38,496개, 대출규모는 1조 716억 600만원, 금리감면규모는 44억 9,000만원으로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하는 수치(대출규모 기준 75.2%)이다.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신청·지원 현황]

(2026.5월 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신청 | |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지원결정 | | |
|----------------------|----------------|-----------|------------------|------------------|--------------|
| | 계좌 수 | 대출규모 | 계좌 수 | 대출규모 | 금리감면규모 |
| 2026. 1~5월 | 14,243 | 525,594 | 11,784 | 398,050 | 1,319 |
| 누적 계 (2025, 2026) | 49,099 | 1,416,498 | 38,496 | 1,071,606 | 4,49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2026년도에는 총 1.4조원 대출액의 1%p씩 11개월치의 금리감면을 지원하기 위해³⁾ 124억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의 높은 이월률(58.0%), 2025년~2026년 5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결정 대출규모의 목표 달성률(75.2%), 2025년 대비 2026년의 월별 금리감면 지원 기업 수·대출규모의 감소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의 집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⁴⁾.

3) 지원대상: 2025년 1·2차 공고(신청기간: '25.7.30. ~ '26.6.30.)를 통해 지원결정된 소상공인

[연월별 금리감면 지원결정 현황]

(2026.5월 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월 | 금리감면 지원결정 | | |
|----------|-----------|-----------|--------|
| | 계좌 수 | 대출규모 | 금리감면규모 |
| '25. 7월 | 32 | 675 | 3 |
| '25. 8월 | 5,534 | 140,863 | 671 |
| '25. 9월 | 5,047 | 129,949 | 606 |
| '25. 10월 | 5,652 | 125,614 | 584 |
| '25. 11월 | 5,121 | 126,507 | 590 |
| '25. 12월 | 5,326 | 149,949 | 717 |
| '26. 1월 | 2,203 | 68,844 | 326 |
| '26. 2월 | 1,469 | 43,510 | 210 |
| '26. 3월 | 2,407 | 70,562 | 344 |
| '26. 4월 | 2,632 | 90,131 | 439 |
| '26. 5월 | 3,073 | 125,004 | - |
| 계 | 38,496 | 1,071,606 | 4,490 |

자료: 중소기업부

이를 고려하면 동 사업 추진 시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상환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연장 전 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원 신청이 부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잔액을 5,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기존 5년 상환기간 내 정상상환하는 경우 원금 상환기간 3년 동안 월 평균 상환액이 146만원, 총 이자액이 270만원인 반면,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경우 원금 상환기간 10년 동안 월 평균 상환액은 47만원으로 감소하나 총 이자액은 681만원으로 증가한다.

4) 2025·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26.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예산 | 부처 | | 사업수행기관(소진공) | | | | | | | |
|------|----------|--------|-------------|-------|-------|--------|-------|-------|----------|-------|
| | 계획액 | 교부액 | 교부액(A) | 잔고액 | 교부현액 | 집행액(B) | 불용액 | 이월액 | 집행률(B/A) | |
| 2025 | 25.12월말 | | | - | | | | 4,133 | 41.98 | 63.04 |
| | 2026.5월말 | 7,123 | 7,123 | 7,123 | 4,133 | 7,123 | 1,500 | - | 21.06 | |
| 2026 | | 12,418 | 8,692 | 8,692 | - | 8,692 | 7,806 | - | - | 62.86 |

자료: 중소기업부

[정상상환 및 분할상환 적용 시 총 이자비용 예시(대출잔액 5,000만원, 5년 연장 가정)]
(단위: 원)

| 구분 | | 정상상환 | 분할상환 |
|-------------------|-----------------------------------|----------------------|--------------------------------------|
| 대출잔액 | | 50,000,000 | |
| 적용금리 | | 3% | 2.2% (기존 3% + 가산 0.2%p + △1%p) |
| 상환구조 | 전체 | 5년 * 거치 2년, 상환 3년 | 10년 * 거치기간 없음 |
| | 원금 상환기간 | 36개월 | 120개월 |
| 원금 상환기간 중 납부금액 | 원금(A) | 50,000,000 | 50,000,000 |
| | 이자액(B) | 2,697,917 | 6,806,250 |
| | 총 상환액(A+B) | 52,697,917 | 56,806,250 |
| | 월 평균 상환액 [(A+B)/ (원금 상환기간)] | 1,463,831 | 473,38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최대 5년 상환연장 제도가 이미 시행되어 추가 상환연장의 유인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기 위해 동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5년 상환연장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소상공인은 기존 상환기간에 더하여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⁵⁾

그리고 2025년 7월부터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된 소상공인 차주의 경우 최대 7년 상환연장 및 대출이자 1%p를 지원하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되지 않는 소상공인 차주의 경우 대출이자 지원 없이 최대 7년 상환연장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기존에 최대 5년 상환연장 지원을 받은 차주가 최대 7년 상환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종 상환연장기간은 기존 상환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년이다.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2024.8.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도 비교]

| 구분 | '24.8.~ | '25.7.~ | |
|------|---|---|--------------------------------|
| | 최대 5년 상환연장 | 코로나 피해 분할상환 특례 (2025년 예산 사업) | 최대 7년 상환연장 |
| 지원대상 | 경영애로 직접대출 정책자금 차주 | | |
| | 경영애로 | 코로나19 피해 인정 ('20.4~'25.6월 중 영업) | 코로나19 피해 미인정 |
| 지원요건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 다중채무 |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 코로나19 기간 중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 1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
| 매출 |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 '20~'23년 대비 2024년 감소 | 전기 대비 감소 |
| 신용도 |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 | |
| 부실징후 | 최근 1년 내 신용도 지표 하락 | 신청 시 1년 내 신용도 지표 하락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 |
| 금리 |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0.2~0.4%p) |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0.2~0.4%p) -1%p |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0.2~0.4%p) |
| 상환기간 | 다수 계좌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다수 계좌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
| | 최대 5년 연장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연장기간 포함 최대 7년 | | |

주: '최대 5년 상환연장' 제도 이전 코로나19 기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제도 시행
 (('21.9.) 1차 만기연장(6개월), ('22.3.) 2차 만기연장(1년), ('23.3.) 3차 만기연장(최대 ~'25.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2024년 8월~2025년 7월 동안 28,308개사의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상환 연장 지원을 받았으며 대출규모는 7,359억 4,900만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중 2025년 7월~12월 동안 코로나 피해 분할상환 특례 또는 최대 7년 상환연장 지원을 모두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17,579개사(62.1%), 대출규모는 4,359억 9,000만원(59.2%)으로, 최대 5년 상환연장 지원을 받은 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연장의 유인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대 5년 상환연장 지원 후 추가 연장 지원 여부]

(단위: 개사, 백만원)

| '24.8.16.~'25.7.29. 동안 '최대 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받은 소상공인 | | | | |
|---|---|--|----------------------------------|----------------|
| 구분 | 이후 '25.7.30.~'25.12.31. 동안 추가 연장 지원 여부 | | | 계 |
| | 분할상환 특례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 인정) | 최대 7년 상환연장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 미인정) | 분할상환 특례/ 최대 7년 상환연장 모두 미지원 | |
| 소상공인 수 | 10,598 | 131 | 17,579 | 28,308 |
| 대출규모 ¹⁾ (최대 5년 상환연장 약정 기준) | 296,976 | 2,983 | 435,990 | 735,949 |
| 대출규모 ²⁾ (최대 7년 상환연장 약정 기준) | 267,011 | 2,644 | - | 705,645 |

주: 1) 5년 상환연장제도 ('24.8.16.~'25.7.29.) 약정금액
 2) 7년 상환연장제도 ('25.7.30.~'25.12.31.) 약정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셋째, 동 사업에 따라 지원결정 시 복수의 대출이 통합계좌로 운용되어 대출 관리의 자유도가 하락함에 따른 수요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할상환 신청한 대출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로 운용되는바, 잔존만기가 짧고 원리금 상환 중인 대출만 먼저 빠르게 상환 완료하는 방법 등 각각의 대출에 대한 별도 스케줄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신청이 부진했을 수 있다.

[복수대출의 통합계좌 운용 방식]

| 구분 | | 내용 | | | |
|--|---|---|---|---|--|
| 운용 방식 | 통합계좌 |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 | |
| | 상환계좌 : 필수 |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 | |
| | 거치계좌 : 선택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 | | |
| 예시 | 통합전 | 통합여부 | 통합후 | 통합계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계좌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 : 3백만원 - 잔존만기 : 11개월 - 금리 : 고정 1.5% - 원리금 상환중 |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계좌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금리 통합계좌(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 : 15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1.051% ■ 변동금리 통합계좌(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 : 20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0.6% ■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연장 ⇒ 114개월 상환 - 평균금리에서 -0.8%p 금리감면 적용 ⇒ 고정금리 0.25% - 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계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 : 12백만원 - 잔존만기 : 24개월 - 금리 : 고정 1% - 원리금 상환중 | 필수 | | | | |

주: 2026년 4월 누적 기준 지원기업 31,052개사 중 거치계좌 포함한 기업이 7,762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공고」, 2025.7.30.

이처럼 사업 수요가 부진한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부족할 경우 편성 예산 대비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부담 완화 등의 사업 효과는 저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사업 편성 시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 소상공인의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 시 사업 연속성 유지 필요

가.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¹⁾(2009~,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취약상권의 매출을 진작시키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4,937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 465,205 | 1,940,172 | - | - | 1,940,172 | 1,940,172 | - | - | 564,895 | 565,495 |
| 온누리상품권 발행 | 390,748 | 493,715 | - | - | 493,715 | 493,715 | - | - | 457,958 | 457,95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2025년 2월 말까지는 지류·모바일·카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3월부터는 모바일·카드형이 디지털형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류·디지털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발행되고 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의 내역사업

[온누리상품권 유형 변화 내역]

| 유형 | 구분 | ~2025. 2월말 | 유형 | 구분 | 2025. 3월~ |
|-----|------|--------------------------------|-----|------|--|
| 지류 | 금액유형 | 5천원, 1·3만원 | 지류 | 금액유형 | 5천원, 1·3만원 |
| | 공급기관 | 한국조폐공사 | | 공급기관 | 한국조폐공사 |
| | 구매처 | 16개 금융기관 | | 구매처 | 16개 금융기관 |
| | 구매한도 | 월 150만원('24년), 월 50만원('25년) | | 구매한도 | 월 50만원 |
| 모바일 | 금액유형 | 5천원 단위 | 디지털 | 금액유형 | 1천원 단위 |
| | 공급기관 | 비즈플레이, 하나은행 | | 공급기관 | 한국조폐공사 |
| | 구매처 | 전용앱(온누리페이) | | 구매처 | 전용앱(디지털온누리) |
| | 구매한도 | 월 200만원 | | 구매한도 | 월 200만원(~'25.10월) 월 100만원('25.11월~) |
| 카드 | 금액유형 | 5천원 단위 | 디지털 | 구매처 | 전용앱(디지털온누리) |
| | 공급기관 | KT, BC카드 | | 구매한도 | 월 200만원(~'25.10월) 월 100만원('25.11월~) |
| | 구매처 | 전용앱(온누리상품권) | | | |
| | 구매한도 | 월 200만원 | | | |

주: 16개 공급기관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수협중앙회, 신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구, 부산, 전북, 광주,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영업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당초 계획에는 3,90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신규 내내역 사업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경으로 679억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2025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 및 디지털 상품권 10% 할인 발행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50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편성방식 | 예산 | 편성내역 |
|----------|---------|---|
| 당초 계획액 | 390,748 | = 지류 비할인 22,400백만원(0.8조원 x 2.8%) + 지류 5% 할인 70,200백만원(0.9조원 x 7.8%) + 디지털 5% 할인 128,340백만원(2.3조원 x 5.58%) + 디지털 10% 할인 158,700백만원(1.5조원 x 10.58%) + 기타운영비 11,108백만원 |
| 1회 추경 | 67,925 | =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64,500백만원(월 12,900백만원 x 5개월) +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지원 3,425백만원 (월 1,141.65백만원 x 3개월) |
| 기금운용계획변경 | 35,042 | = '25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10.29~11.9)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 6,148백만원 + 디지털 상품권 10% 할인 발행 연장을 위한 예산부족분 28,894백만원 |
| 계 | 493,715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4차례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환급행사를 추진하여 10월 말 예산이 소진되면서 타 사업의 예산을 자체변경하여 온누리상품권 할인 지원을 연장하였는바, 사전에 할인을 및 발행규모 등과 관련한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예산을 통해 지류 상품권은 비할인·5% 할인을 통해 총 1조 7,000억원, 디지털 상품권은 5%·10% 할인을 통해 총 3조 8,000억원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추가 할인 특별판매 및 환급행사를 4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① 설 명절 특별판매 행사를 통해 1월 10일~2월 10일 동안 디지털 상품권 구매 시 15%를 할인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해당 기간에 8,452억 5,9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발행·판매됨에 따라 1,275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② 설 명절 15% 환급행사를 통해 1월 10일~2월 10일 동안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환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해당 기간에 3,775억 5,3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결제됨에 따라 152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③ 미리 온 동행축제 기간 20% 환급행사를 통해 3월 17일~28일 동안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해당 기간에 957억 7,3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결제됨에 따라 99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④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환급행사를 통해 10월 29일~11월 9일 동안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5%~15%를 환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해당 기간에 1,239억 1,7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결제됨에 따라 53억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추가 할인 특별판매·환급행사 추진 현황]

| 행사명 | 추진 현황 | | | | |
|---------------------|---|----------------|----------------|-----------|---------|
| ① 설 명절 특별판매 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기간: '25.1.10~2.10 ○ 할인율: 디지털온누리(카드형, 모바일형) 구매시 15% 할인 ○ 구매한도: 2백만원 ○ 집행액: 127,528백만원 ○ 행사 기간 상품권 유형별 판매금액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 | 구분 | 지류 | 모바일 | 카드형 | 계 |
| | 비할인 | 73,938 | △16 | 7,004 | 80,926 |
| | 5% 할인 | 113,448 | - | - | 113,448 |
| | 10% 할인 | - | △450 | △568 | △1,018* |
| | 15% 할인 | - | 333,021 | 506,268 | 839,290 |
| 계 | 187,387 | 332,555 | 512,704 | 1,032,646 | |
| 주: '-'의 경우 취소 또는 환불 | | | | | |
| ② 설 명절 15% 환급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기간: '25.1.10~2.10 | | | | |

2) 디지털 상품권의 경우 발행 = 판매

| 행사명 | 추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률: 디지털온누리(카드형, 모바일형) 결제액의 15% ○ 최소결제액, 환급한도: 최소 7천원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까지 환급 ○ 환급조건: 천원단위로 환급(천원미만 절사) ○ 집행액: 15,251백만원 ○ 행사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환급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결제규모</th> <th>결제인원</th> <th>환급규모</th> <th>환급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차(1.10~17)</td> <td>77,940</td> <td>530,073</td> <td>2,532</td> <td>285,797</td> </tr> <tr> <td>2차(1.18~24)</td> <td>86,511</td> <td>595,337</td> <td>3,461</td> <td>335,532</td> </tr> <tr> <td>3차(1.25~31)</td> <td>90,466</td> <td>679,993</td> <td>4,448</td> <td>387,136</td> </tr> <tr> <td>4차(2.1~10)</td> <td>122,636</td> <td>732,884</td> <td>4,810</td> <td>424,676</td> </tr> <tr> <td>계</td> <td>377,553</td> <td>2,538,287</td> <td>15,251</td> <td>1,433,141</td> </tr> </tbody> </table> <p>주: 회차별 결제인원·환급인원은 중복제거, 합계는 중복포함</p>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1차(1.10~17) | 77,940 | 530,073 | 2,532 | 285,797 | 2차(1.18~24) | 86,511 | 595,337 | 3,461 | 335,532 | 3차(1.25~31) | 90,466 | 679,993 | 4,448 | 387,136 | 4차(2.1~10) | 122,636 | 732,884 | 4,810 | 424,676 | 계 | 377,553 | 2,538,287 | 15,251 | 1,433,141 |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1.10~17) | 77,940 | 530,073 | 2,532 | 285,7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1.18~24) | 86,511 | 595,337 | 3,461 | 335,5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1.25~31) | 90,466 | 679,993 | 4,448 | 387,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차(2.1~10) | 122,636 | 732,884 | 4,810 | 424,6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377,553 | 2,538,287 | 15,251 | 1,433,1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③ 미리 온 동행축제 기간 20% 환급행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비자 유입을 통한 소비촉진 ○ 기간: '25.3.17~3.28 ○ 환급률: 디지털온누리 결제액의 20% ○ 최소결제액, 환급한도: 최소 5천원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까지 환급 ○ 환급조건: 천원단위로 환급(천원미만 절사) ○ 집행액: 9,905백만원 ○ 행사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환급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결제규모</th> <th>결제인원</th> <th>환급규모</th> <th>환급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차(3.17~22)</td> <td>48,178</td> <td>496,063</td> <td>4,922</td> <td>460,417</td> </tr> <tr> <td>2차(3.23~28)</td> <td>47,595</td> <td>504,762</td> <td>4,983</td> <td>455,400</td> </tr> <tr> <td>계</td> <td>95,773</td> <td>1,000,825</td> <td>9,905</td> <td>915,817</td> </tr> </tbody> </table> <p>주: 회차별 결제인원·환급인원은 중복제거, 합계는 중복포함</p>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1차(3.17~22) | 48,178 | 496,063 | 4,922 | 460,417 | 2차(3.23~28) | 47,595 | 504,762 | 4,983 | 455,400 | 계 | 95,773 | 1,000,825 | 9,905 | 915,817 | | | | | | | | | | |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3.17~22) | 48,178 | 496,063 | 4,922 | 460,4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3.23~28) | 47,595 | 504,762 | 4,983 | 455,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95,773 | 1,000,825 | 9,905 | 915,8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④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환급행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부추진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소비혜택 마련, 내수 회복세 유지 ○ 기간: '25.10.29~11.9 ○ 환급률: 디지털온누리 결제액의 수도권 5%, 비수도권 10%,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및 특별재난지역(특별지역) 15% ○ 최소결제액/환급한도: [수도권] 2만원/1만원, [비수도권] 1만원/1.5만원, [특별지역] 6,667원/2만원 ○ 환급조건: 천원단위로 환급(천원미만 절사) ○ (예산) 6,148백만원, (집행액) 5,346백만원 ○ 행사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환급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사명 | 추진 현황 | | | | |
|----------------------------------|--------------------------|----------------|-----------|--------------|---------|
| | (단위: 백만원, 명) | | | | |
|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 | 수도권 | 50,485 | 856,640 | 1,433 | 350,381 |
| | 비수도권 | 58,532 | 682,553 | 2,713 | 372,082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4,900 | 121,342 | 1,200 | 121,153 |
| | 계 | 123,917 | 1,660,535 | 5,346 | 843,616 |
| 주: 회차별 결제인원·환급인원은 중복제거, 합계는 중복포함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당초 계획 기준, 지류 상품권은 목표 규모 1조 7,000억원 대비 76.5%에 불과한 1조 3,000억원의 규모만 발행되었고, 디지털 상품권은 목표 규모 3조 8,000억원 대비 70.2%에 불과한 2조 6,690억 5,100만원의 규모만 발행되었다.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목표 대비 발행 규모]

(단위: 백만원)

| 상품권 유형 | 할인율 | 목표 | | 발행 | |
|--------|-----|-----------------------|------------------|-------------------|------------------|
| | | 당초 계획액 | 발행규모 | 집행액 ¹⁾ | 발행규모 |
| 지류 | 비할인 | 22,400 | 800,000 | 10,140 | 1,300,000 |
| | 5% | 70,200 | 900,000 | | |
| | 소계 | 92,600 | 1,700,000 | 10,140 | 1,300,000 |
| 디지털 | 비할인 | 0 | 0 | 224 | 133,828 |
| | 5% | 128,340 | 2,300,000 | 0 | △12 |
| | 10% | 158,700 | 1,500,000 | 179,448 | 1,711,609 |
| | 15% | 0 | 0 | 127,661 | 823,626 |
| | 소계 | 287,040 | 3,800,000 | 307,333 | 2,669,051 |
| 계 | | 379,640 ²⁾ | 5,500,000 | 317,473 | 3,969,051 |

주: 1) 집행액 = 발행·운영 수수료 반영(지류 0.78%, 모바일 0.6%, 카드 0.42%, 디지털 0.484%)

2)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 379,640백만원

= 당초 총 계획액 390,748백만원 - 기타 운영비 11,10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계획에 없었던 추가 할인 및 환급으로 사업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중소기업부는 10% 할인 디지털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10월 28일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288억 9,400만원을 마련하였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자체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세부사업명) | 예산 | 사유 |
|-----------------------|---------------------------|---------|---|
| 자체변경 (2025.10.28.) |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35,042 | '25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10.29~11.9)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 6,148백만원 |
| |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성장지원) | △35,042 | + 디지털 상품권 10% 할인 발행 연장을 위한 예산부족분 28,894백만원 |

자료: 중소기업부

그러나 그마저도 11월 초에 소진되어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이 10%에서 비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추가 할인 특별판매 및 환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제 발행규모가 계획 대비 72.2%인 3조 9,690억 5,100만원에 불과했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연말에는 할인된 디지털 상품권 발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계획 대비 할인율을 상향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조기 소진, 타 사업 예산의 변경을 통한 증액 집행, 목표 발행규모 미달성 등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사전에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부는 사전에 할인율 및 발행규모 등과 관련한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권 공급기관 등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시 서비스 전환 지연, 지원실적·정보간 일관성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4년까지는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비즈플레이·KT에서 공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하여 디지털 상품권으로 운영하되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공급기관 선정 일정]

| 연월일 | 추진일정 |
|---------------------------|------------------------------|
| '24. 6. 27.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조달용역 공고 게시 |
| '24. 6. 27. ~ 7. 25.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입찰 기간 |
| '24. 7. 30.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기술평가일 |
| '24. 8. 28.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선정일 |
| '24. 9. 3.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계약일 |
| '24. 9. 3. ~ '26. 12. 31. | 디지털 온누리 통합운영 대행용역 계약기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 지연, 지원실적·정보간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서비스 전환 지연

한국조폐공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이관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자간 데이터 이관 갈등, 자체 앱 개발 등의 이슈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비즈플레이·KT에서 2월 중순까지는 연장 지원하였으나 3월 1일 한국조폐공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출시하기 전까지 2월 15일~28일 동안은 앱 사용(구매·환불·결제·취소 등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온누리상품권 공급기관 이관 내역]

| 이관 이전 공급기관 | 유형 | | 이관 이후 공급기관 |
|-----------------------------|-----|-----|-------------------------|
| 한국조폐공사 | 지류 | | 한국조폐공사 |
| 비즈플레이, 하나은행 (전용앱(온누리페이)) | 모바일 | 디지털 | 한국조폐공사 (전용앱(디지털온누리)) |
| KT, BC카드 (전용앱(온누리상품권)) | 카드 | | |
| 이관 일정 | | | |
| ~2024.12.31. | 계획 | | 2025.1.1.~2026.12.31. |
| ~2025.2.14. | 실제 | | 2025.3.1.~2026.12.3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해당 기간에 앱을 이용하려던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충전·결제·환불 등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잔액 및 거래내역의 정합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회원정보·보유잔액·거래내역 등의 안정적 이관과 정산 오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 변경 및 서비스 전환(모바일·카드 → 디지털)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관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운영사 변경 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실적·정보간 일관성 부족

2024년~2025년 사이에 카드형·모바일형이 디지털형으로 통합되면서 운영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간 주소관리 체계가 달라 기간별·지역별 데이터를 통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특정 지역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두 차례 추진하였다.

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환급행사를 통해 디지털 상품권 결제 지역에 따라 환급률(수도권 5%, 비수도권 10%,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및 특별재난지역(특별 지역) 15%), 최소 결제금액(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 6,667원), 환 급 한도(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5만원, 특별지역 2만원) 등으로 차별화하여 특별 지역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지역에서 149억원이 결제되 었다.

② 특별재난지역 환급 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49곳(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10%~20%를 환급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서 454억 5,700만원 이 결제되었다.

[특정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

| 사업 | 추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환급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부추진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소비혜택 마련, 내수 회복세 유지 ○ 기간: '25.10.29~11.9 ○ 환급률: 디지털은누리 결제액의 수도권 5%, 비수도권 10%,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및 특별재난지역(특별지역) 15% ○ 최소결제액/환급한도: [수도권] 2만원/1만원, [비수도권] 1만원/1.5만원, [특별지역] 6,667원/2만원 ○ 환급조건: 천원단위로 환급(천원미만 절사) ○ (예산) 6,148백만원, (집행액) 5,346백만원 ○ 행사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환급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결제규모</th> <th>결제인원</th> <th>환급규모</th> <th>환급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50,485</td> <td>856,640</td> <td>1,433</td> <td>350,381</td> </tr> <tr> <td>비수도권</td> <td>58,532</td> <td>682,553</td> <td>2,713</td> <td>372,082</td> </tr> <tr> <td>특별재난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td> <td>14,900</td> <td>121,342</td> <td>1,200</td> <td>121,153</td> </tr> <tr> <td>계</td> <td>123,917</td> <td>1,660,535</td> <td>5,346</td> <td>843,616</td> </tr> </tbody> </table>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수도권 | 50,485 | 856,640 | 1,433 | 350,381 | 비수도권 | 58,532 | 682,553 | 2,713 | 372,082 | 특별재난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4,900 | 121,342 | 1,200 | 121,153 | 계 | 123,917 | 1,660,535 | 5,346 | 843,616 |
| | 구분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 | 50,485 | 856,640 | 1,433 | 350,381 | | | | | |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58,532 | 682,553 | 2,713 | 372,082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4,900 | 121,342 | 1,200 | 121,153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23,917 | 1,660,535 | 5,346 | 843,616 | | | | | | | | | | | | | | | | | | | | | | |
| 주: 회차별 결제인원·환급인원은 중복제거, 합계는 중복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특별재난지역 환급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특별재난지역 내 소비 진작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49곳(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 ○ 기간: '25.8.24~12.31. *10.15. 예산 조기 소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 추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률(최소결제액) : 회차별 디지털 상품권 5천원~1만원 이상 누적 사용시 10%~20% 환급 - (1~5회차, 8.24~9.27) 10% 환급(1만원이상 사용) - (6~8회차, 9.28~10.15) 20% 환급(5천원이상 사용) ○ 환급한도: 합산 2만원 한도 ○ 환급조건: 천원단위로 환급(천원미만 절사) ○ (예산) 3,425백만원, (집행액) 3,633백만원 ○ 행사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환급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회차</th> <th>결제규모</th> <th>결제인원</th> <th>환급규모</th> <th>환급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회차(8.24~30)</td> <td>5,138</td> <td>45,501</td> <td>267</td> <td>35,590</td> </tr> <tr> <td>2~5회차(8.31~9.27)</td> <td>25,430</td> <td>208,157</td> <td>1,434</td> <td>186,843</td> </tr> <tr> <td>6~8회차(9.28~10.15)</td> <td>14,889</td> <td>119,210</td> <td>1,933</td> <td>170,781</td> </tr> <tr> <td>계</td> <td>45,457</td> <td>452,868</td> <td>3,633</td> <td>393,214</td> </tr> </tbody> </table> <p>주: 회차별 결제인원·환급인원은 중복제거, 회차간 및 합계는 중복포함</p> | 회차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1회차(8.24~30) | 5,138 | 45,501 | 267 | 35,590 | 2~5회차(8.31~9.27) | 25,430 | 208,157 | 1,434 | 186,843 | 6~8회차(9.28~10.15) | 14,889 | 119,210 | 1,933 | 170,781 | 계 | 45,457 | 452,868 | 3,633 | 393,214 |
| 회차 | 결제규모 | 결제인원 | 환급규모 | 환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1회차(8.24~30) | 5,138 | 45,501 | 267 | 35,590 | | | | | | | | | | | | | | | | | | | | | | |
| 2~5회차(8.31~9.27) | 25,430 | 208,157 | 1,434 | 186,843 | | | | | | | | | | | | | | | | | | | | | | |
| 6~8회차(9.28~10.15) | 14,889 | 119,210 | 1,933 | 170,781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45,457 | 452,868 | 3,633 | 393,214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때 지역간 환급률, 최소 결제금액, 환급한도 등을 차별화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려 한 사업의 효과를 사후에 판단하기 위해 전년 동기간 대비 결제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운영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간 주소관리 체계가 달라 기간별·지역별 데이터 추출을 통한 비교가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 단절은 온누리상품권 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원실적·정보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이관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상품권 공급기관 등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전환 지연, 지원실적·정보간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³⁾.

3)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수행의 책임성, 운영 안정성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위탁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 제고 등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상생페이백¹⁾(25년 한시,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특정 기간 카드 소비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증가 시, 소비증가분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 및 내수를 촉진하려는 2025년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현액 1조 3,7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상생페이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계획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수정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 465,205 | 1,940,172 | - | - | 1,940,172 | 1,940,172 | - | - | 564,895 | 565,495 |
| 상생페이백 | - | 1,370,000 | - | - | 1,370,000 | 1,370,000 | -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사업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2025년 9~12월간 월별 카드 총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3만원의 한도가 지급되며, 환급금은 다음달 매 15일 자정부터 신청순으로 지급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의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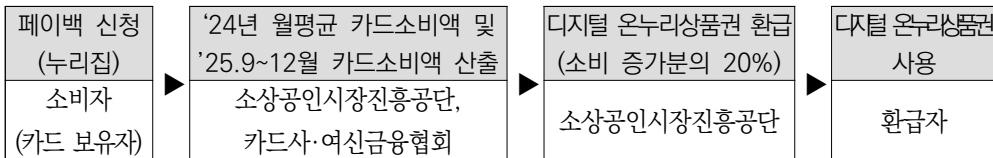
[2025년 상생페이백 사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서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 지원방식 | 2025년 9~12월간 월별 카드 총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 지원한도 | 9~11월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 12월은 잔여 예산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3만원 |
| 대상소비 |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간편결제(xx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 지원기간 | 9.1(월) ~ 12.31(수) |
| 지급시점 | 소비증가액 산정기간(9~12월)의 다음달 매 15일 자정부터 신청순으로 지급 |
| 예산 |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사업 3차 수정 기본계획」, 2025.11.26.

동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페이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2025년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절차]



주: 신용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겸영여신업자 =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방은행, 교보증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9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사업 3차 수정 기본계획」, 2025.11.26.

나. 분석의견

상생페이백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소비액 인정 사용처 안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 제고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0일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를 게시하여 3개월(9월~11월)간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페이백 예산이 3개월 내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 11월 27일 수정 공고를 통해 12월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2025년 상생페이백 사업 공고 현황]

| 구분 | 1차 공고 | 3차 수정공고 |
|------|---|---|
| 공고일 | 8.20. | 11.27. |
| 신청기간 | 9.15.~11.30. | 12.1.~12.31. |
| 소비기간 | 9~11월 | 12월 |
| 지급한도 | 월별 10만원 | 월별 3만원 |
| 소급지급 |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경우, 과거 기간의 미수령 페이백도 소급 지급 | 12월 신청자의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급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1만원 내 지급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2025.8.20.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3차 수정 공고」, 2025.11.27.

페이백 지원이 4개월간 추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교부액 중 16.7%인 2,28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년 상생페이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부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
|-----------|-----------|------------|-----------|-----------|---------|------------|
| 계획액 | 집행액 | 교부액 | 교부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 실집행률 (B/A) |
| 1,370,000 | 1,370,000 | 1,369,984 | 1,369,984 | 1,141,675 | 228,309 | 83.3 |

주: 소진공 미교부액 16백만원 = 국내여비 12백만원 + 사업추진비 4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결과 총 신청인원 1,564만명 중 1,170만명에 대해 1조 3,061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이 이뤄졌으며, 9~12월간 월별 1인당 평균 소비증가분은 63~67만원대, 총 소비증가액²⁾은 17조 7,971억 7,913만원으로 나타났다.

2) 월별 지급자별 소비증가분의 9~12월간의 합계

[2025년 상생페이백 신청·지원 현황]

(2026. 3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원/명)

| 신청/소비기간 | 신청인원 ¹⁾ | 지급일 | 지급 현황 | | |
|---------|--------------------|-----------------|----------------------|--------------------|----------------------------|
| | | | 지급인원 ²⁾ | 환급규모 ³⁾ | 1인당 평균 소비증가분 ⁴⁾ |
| 9월 | 9,457,239 | 2025.10.15. | 6,300,858 | 344,322 | 639,423 |
| 10월 | 3,230,826 | 2025.11.15. | 6,712,891 | 378,712 | 634,480 |
| 11월 | 1,916,146 | 2025.12.15. | 6,943,772 | 394,689 | 651,088 |
| 12월 | 1,032,813 | 2026.1.15. | 7,463,530 | 188,380 | 673,818 |
| 계 | 15,637,024 | - ⁵⁾ | 11,704,786 (중복제외) | 1,306,103 | - |

- 주: 1) 해당 월 상생페이백 신청인원
 2) 해당 월 소비실적에 대한 지급인원(해당 월 지급일 이후 소급지급 인원 포함)
 3) 해당 월 소비실적에 대한 지급금액(해당 월 지급일 이후 소급지급 금액 포함)
 4) 2025.9~12월별 소비증가분 / 2025.9~12월별 지원인원
 5) 2월 15일: 5차 페이백 지급(카드매입 지연 등 과소지급에 대한 소급)
 3월 15일: 6차 페이백 지급(카드매입 지연 등 과소지급에 대한 소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9~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이뤄진 페이백 1조 3,061억원(2026. 2월 기준) 가운데 2026년 5월 기준 1조 364억원(79.4%)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통상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경우 본래 소비하려던 사람에게 페이백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³⁾, 이를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1인당 평균 소비증가분 전체를 동 사업의 효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 증가 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3) 또한,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구원 중 1인에게 카드 몰아쓰기를 한 경우나 2026년 상반기 소비를 2025년 4분기에 당겨 쓰기를 한 경우 등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소비 시점의 변화만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연월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백만원, %)

| 연월 | 2023 | | 2024 | | 2025 | |
|-----------|-------------------|---------------|-------------------|---------------|-------------------|---------------|
|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01 | 65,249,137 | 8.0 | 71,204,004 | 9.1 | 70,415,777 | △1.1 |
| 02 | 61,364,252 | 17.0 | 65,231,848 | 6.3 | 68,907,283 | 5.6 |
| 03 | 67,985,694 | 13.0 | 70,463,501 | 3.6 | 73,276,893 | 4.0 |
| 04 | 65,849,440 | 7.8 | 69,635,523 | 5.7 | 71,797,010 | 3.1 |
| 05 | 68,651,322 | 5.7 | 71,470,287 | 4.1 | 73,998,501 | 3.5 |
| 06 | 67,925,702 | 8.0 | 69,465,828 | 2.3 | 71,945,249 | 3.6 |
| 07 | 69,618,266 | 5.8 | 72,481,951 | 4.1 | 75,869,746 | 4.7 |
| 08 | 68,908,280 | 6.0 | 71,014,563 | 3.1 | 73,184,139 | 3.1 |
| 09 | 68,518,321 | 7.3 | 70,148,013 | 2.4 | 74,544,442 | 6.3 |
| 10 | 70,920,168 | 6.8 | 73,065,817 | 3.0 | 73,832,191 | 1.0 |
| 11 | 69,743,590 | 6.9 | 71,922,129 | 3.1 | 75,211,668 | 4.6 |
| 12 | 69,841,395 | 4.4 | 73,073,496 | 4.6 | 76,480,638 | 4.7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7.5.1. 신용카드'

한편,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 제고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비액 인정 사용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액이 인정되는 사용처와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다.

인정 사용처 중 전통시장, 교습소·학원, 영화관 등이나 불인정 사용처 중 유흥·사행업종, 세금·공공요금 등과 같이 업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비 시점에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장이 프랜차이즈 중 대기업 직영매장인지 소상공인 운영 가맹점인지, 해당 지역 하나로마트 주변에 유사업종이 있는지 등을 개인이 소비 시점에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불인정 사용처]

| 소비액 인정 사용처 |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분식점, 빵집, 떡집, 정육점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꽃가게 ○ 교습소·학원, 약국·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치과의원 등) ○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 동네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 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인정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세금·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 (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판매 편의점·마트 등 유사업종 없는 일부 면지역의 하나로마트 ○ (프랜차이즈 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직영점과 <u>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 가맹점(편의점, 커피전문점 등)</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 (대형병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2025.8.20.

이는페이백 대상이 된 소비증가분이 다소 우연적 요소에 의해 변동되고,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 의도가 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상생페이백 신청 사이트에서 소비액 인정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행정안전부 사업)의 경우 각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가맹점별로 사용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임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려 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관련 안내 방식]

| 구분 | 방식 | | | | | | | |
|---|--|---|-------|------|----|---|---|--|
|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가능 매장 직접 안내 | | | | | | | |
| 민간 지도 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 <table border="1" data-bbox="432 501 1172 825"> <thead> <tr> <th data-bbox="432 501 689 540">네이버지도</th> <th data-bbox="689 501 946 540">카카오맵</th> <th data-bbox="946 501 1172 540">티맵</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2 540 689 825">  </td> <td data-bbox="689 540 946 825">  </td> <td data-bbox="946 540 1172 825">  </td> </tr> </tbody> </table> | | 네이버지도 | 카카오맵 | 티맵 |  |  |  |
| 네이버지도 | 카카오맵 | 티맵 | | | | | | |
|  |  |  | | | | | | |
| 스티커 부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 |  | | | | | | |

자료: 1.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2025.7.28.
 2.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민간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7.29.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온라인 신청 지원 및 안내를 위해 248개 전통시장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을 평일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연령대별 인구 대비 신청·지원 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20대~50대에서는 신청 비중이 37~53%, 지원 비중이 27~39%의 범위로 나타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신청 비중이 21% 이하, 지원 비중이 16% 이하로 나타났다.

[2025년 연령대별 인구 및 상생페이백 신청·지원 현황]

(단위: 명, %)

| 연령대 | 전체 | 상생페이백 | | | |
|---------------|------------|------------|-------------|------------|-------------|
| | | 신청 | | 지원 | |
| | 인구 수 | 인원 | 인구 대비 비중 | 인원 | 인구 대비 비중 |
| 9세 이하 | 2,986,799 | - | - | - | - |
| 10대 | 4,538,674 | 134,138 | 3.0 | 123,188 | 2.7 |
| 20대 | 6,136,764 | 2,692,565 | 43.9 | 2,087,102 | 34.0 |
| 30대 | 6,975,568 | 3,739,320 | 53.6 | 2,755,064 | 39.5 |
| 40대 | 7,717,016 | 3,786,429 | 49.1 | 2,800,231 | 36.3 |
| 50대 | 8,660,370 | 3,204,979 | 37.0 | 2,357,192 | 27.2 |
| 60대 | 7,844,071 | 1,658,544 | 21.1 | 1,257,794 | 16.0 |
| 70대 | 4,347,619 | 369,082 | 8.5 | 281,585 | 6.5 |
| 80대 이상 | 2,477,683 | 50,836 | 2.1 | 36,956 | 1.5 |
| 계 | 51,684,564 | 15,635,893 | 30.3 | 11,699,112 | 22.6 |

주: 상생페이백 신청·지원 중 10대는 만 19세(06.12.31. 이전 출생자)

자료: 1. 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 중위 가정), 2022

2. 상생페이백 신청·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현금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 특성상 연령대별로 인구 대비 신청·지원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60대 이상에서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수가 평균 2.2개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인구 대비 신청 비중이 개선될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최근 1년 이내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수]

(단위: 장)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모바일카드 ¹⁾ | 계 |
|--------|------|------|---------------------|-----|
| 20대 | 1.3 | 0.9 | 1.0 | 3.2 |
| 30대 | 2.0 | 0.9 | 1.2 | 4.1 |
| 40대 | 2.3 | 0.9 | 1.0 | 4.2 |
| 50대 | 2.2 | 0.9 | 0.6 | 3.7 |
| 60대 이상 | 1.4 | 0.7 | 0.1 | 2.2 |
| 계 | 1.8 | 0.8 | 0.7 | 3.3 |

주: 1) 모바일카드 = 실물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드사 앱(앱카드)이나 간편 결제 앱(삼성페이 등)에 등록해두고 결제에 이용하는 지급수단

1. 시·도별, 지역크기별, 주택유형별로 층화 후 비례배분하여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4.11.~12.)

자료: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및 조사결과」, 2025.3.

이처럼 60대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원 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및 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상생페이백 사업과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 개선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10억 5,200만원이며, 7,74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6%인 7,712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29억 8,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 |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81,052 | 781,052 | 781,052 | 774,266 | 771,289 | 2,987 | - | 99.6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898억 7,700만원이며, 이 중 97.1%인 7,669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7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예산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회계 | - | - | 1,605 | 1,122 | 113 | 371 | 69.9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81,052 | 781,052 | 781,052 | 758,637 | - | 22,415 | 97.1 |
|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회계 | 7,220 | 7,220 | 7,220 | 7,220 | - | - | 100.0 |
| 합계 | 788,272 | 788,272 | 789,877 | 766,979 | 113 | 22,786 | 97.1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 5,600만원 ($\Delta 0.3\%$)이 감소한 6,43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29억 2,100만원(5.4%)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수입 | 610,708 | 645,885 | 645,885 | 643,629 | $\Delta 2,256$ | 32,921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5,100만원($\Delta 0.5\%$)이 감소한 5,61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53억 4,400만원(2.8%)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A) | 2025 | | | | 전년 대비 (C-A) |
|-----|---------------|---------|---------|-----------|----------------|----------------|
| | | 예산 | | 결산 (C) | 예산 대비 (C-B) | |
| | | 본예산 | 추경(B) | | | |
| 총지출 | 545,918 | 564,113 | 564,113 | 561,262 | $\Delta 2,851$ | 15,344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지식재산처의 자산은 5,041억 1,700만원, 부채는 2,526억 6,700만원으로 순자산은 2,514억 5,0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966억 6,500만원, 유무형자산 1,071억 2,800만원, 기타자산 3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5억 2,500만원(△2.6%)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114억 6,2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87억 200만원, 총당부채 6,400만원, 기타부채 2,439억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억 1,200만원(△0.4%) 감소하였다. 이는 차입부채가 11억 4,9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자 산 | 504,117 | 517,642 | △13,525 | △2.6 |
| Ⅰ. 금융자산 | 396,665 | 408,127 | △11,462 | △2.8 |
| Ⅱ. 유무형자산 | 107,128 | 105,704 | 1,424 | 1.3 |
| Ⅲ. 기타자산 | 324 | 3,811 | △3,487 | △91.5 |
| 부 채 | 252,667 | 253,779 | △1,112 | △0.4 |
| Ⅰ. 차입부채 | 8,702 | 9,851 | △1,149 | △11.7 |
| Ⅱ. 총당부채 | 64 | 16 | 48 | 300.0 |
| Ⅲ. 기타부채 | 243,901 | 243,912 | △11 | △0.0 |
| 순 자 산 | 251,450 | 263,863 | △12,413 | △4.7 |
| Ⅰ. 기본순자산 | 230,318 | 229,492 | 826 | 0.4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 △27,951 | △14,717 | △13,234 | △89.9 |
| Ⅲ. 순자산 조정 | 49,082 | 49,088 | △6 | △0.0 |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19억 3,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593억 5,600만원, 관리운영비 170억 1,400만원, 비배분비용 3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442억 4,700만원, 비배분수익 27억 9,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22억 7,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50억 2,600만원(55.2%) 감소한 △703억 3,700만원이며, 이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수익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수익이 전년 대비 513억 2,2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1,419억 9,000만원),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프로그램(547억 1,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6억 3,000만원과 운영비 30억 8,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3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 △84,891 | △55,958 | △28,933 | △51.7 |
| 가. 프로그램 총원가 | 559,356 | 536,967 | 22,389 | 4.2 |
| 나. 프로그램 수익 | 644,247 | 592,925 | 51,322 | 8.7 |
| II. 관리운영비 | 17,014 | 14,538 | 2,476 | 17.0 |
| III. 비배분비용 | 335 | - | 335 | △100.0 |
| IV. 비배분수익 | 2,794 | 3,892 | △1,098 | △28.2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 △70,337 | △45,311 | △25,026 | △55.2 |
| VI. 비교환수익 등 | △92,275 | △73,820 | △18,455 | △25.0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21,938 | 28,509 | △6,571 | △23.0 |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638억 6,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514억 5,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4억 1,300만원(△4.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65억 7,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1억 8,8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83억 4,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83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600만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 11억 8,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회계연도(A) | 2024 회계연도(B) | 전년도 대비 증감 | |
|-----------------------------|-----------------|-----------------|-----------|----------|
| | | | A-B | (A-B)/B |
| I. 기초순자산 | 263,863 | 292,380 | △28,517 | △9.8 |
| II. 재정운영결과 | 21,938 | 28,509 | △6,571 | △23.0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8,345 | - | 8,345 | - |
| IV. 조정항목 | 1,179 | △9 | 1,188 | 13,200.0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 251,450 | 263,863 | △12,413 | △4.7 |

자료: 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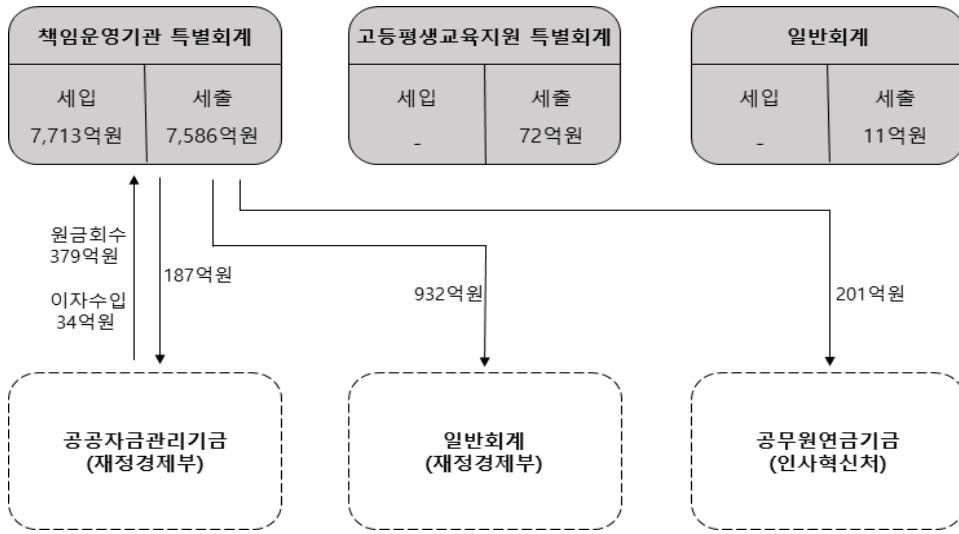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의 회계·기금 간,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32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01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87억원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379억원, 예탁이자수입 34억원을 받았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 부대의견 채택건수는 없다.

지식재산처는 ① 국내특허심사지원 및 상표조사분석 사업 확대를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및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고, ② AI심사지원시스템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며, ③ 우수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상표 전문기관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전문기관 등록요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상표 전문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평가 전반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모두의 아이디어’ 신규 플랫폼 구축 및 홍보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재산처는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수납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행 변리사에 대한 관리·의무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상표 심사지원 사업의 전문기관 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상표 심사지원 사업¹⁾은 상표 조사분석, 상표분류, 도형상표분류, 상품DB 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2025년도 예산현액 106억 8,100만원 중 10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상표 심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2026 | | |
|---------|--------|--------|-----------|----------|--------|-------------|------|--------|--------|
|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본예산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상표 심사지원 | 10,681 | 10,681 | ±7 | 10,681 | 10,664 | - | 17 | 11,833 | 11,833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나. 분석의견

2022~2023년 상표 전문기관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전문기관 등록요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상표 전문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평가 전반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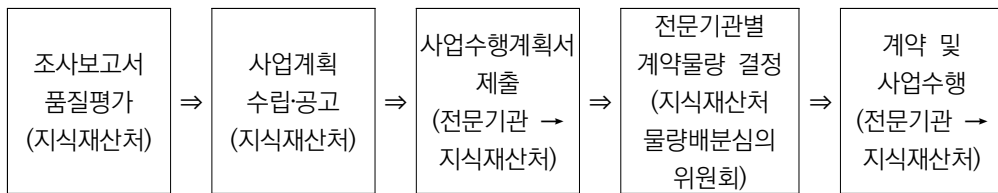
1) 코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1031-301

상표 조사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지식 재산처는 「상표법」 제51조2)에 따라 전문기관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처는 「상표법」 제51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등록된 신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조사 물량을 배분하고 있고, 기존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있다. 조사 물량 배정을 위해서는 ‘상표 물량산정심의위원회³⁾’를 두고 있으며, 심의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별로 결정된 계약물량에 따라 계약체결 후 사업이 진행된다.

[상표 전문기관 조사분석사업 추진 절차]



자료: 지식재산처

2)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표 물량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직원 2인,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

최근 3년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상표 전문기관은 2023년 13개에서 2024년 10개로 감소하였고, 2025년과 2026년에도 10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상표 전문기관 등록·지정 현황]

| 구분 | 전문기관명 | 등록·지정 연도 | 용역 수행 여부 | | | |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 상표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2003 | 수행 | 수행 | 수행 | 수행 |
| | (주)케이티지 | 2015 | 수행 | 수행 | 수행 | 수행 |
| | (주)○○○ | 2005 | 계약해지 | 미수행 | 미수행 | 수행 |
| | (주)◇◇◇ | 2015 | 계약해지 | 미수행 | 미수행 | 수행 |
| | (주)명유 | 2020 | 수행 | 수행 | 수행 | 수행 |
| | (주)토탈리프 | 2020 | 수행 | 수행 | 수행 | 수행 |
| | (주)이현아이피 | 2022 | 수행 | 수행 | 수행 | 수행 |
| | (주)비엠피 | 2022 | 미수행 | 미수행 | 미수행 | 수행 |
| | (주)위즈윈 | 2022 | 미수행 | 미수행 | 미수행 | 수행 |
| | (주)피엔티 | 2008 | 미수행 | 미수행 | 미수행 | 수행 |
| | (주)○○○ | 2020 | 수행 | | 등록취소 | |
| | (주)◆◆◆ | 2022 | 수행 | | 등록취소 | |
| | (주)△△△ | 2022 | 수행 | | 등록취소 | |

자료: 지식재산처

그런데 2022~2023년에 상표 전문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역량평가 및 등록요건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2개 기관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하여 제재처분을 받았으며, 1개 기관에서 지식재산처 현직 공무원이 전문기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전문기관 관리 소홀 사례

상표 전문기관인 (주)○○○와 (주)△△△은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지식재산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와는 16억 3,700만원, (주)△△△과는 9,500만원(2023년 1회)의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와 ㈜△△△의 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체명 | 연도 | 계약명 | 계약금액 |
|------|------|------------------------|-------|
| ㈜○○○ | 2021 | 2021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527 |
| | 2022 | 2022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498 |
| | 2023 | 2023년 상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360 |
| | | 2023년 하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252 |
| | | 합계 | 1,637 |
| ㈜△△△ | 2023 | 2023년 상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95 |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나 2023년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한 자체감사 결과 ㈜△△△은 전문기관 신규 등록 이후 역량평가에 부정으로 응시한 혐의를 받아 2023년 하반기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24년 2월 업체에서 등록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의 경우에는 2023년 자체감사 결과 ㈜△△△가 2022년 역량평가를 부정으로 응시하는데 관여하였고,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가 변리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2024년 1월 확인되었고, 2024년 2월 업체에서 등록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와 ㈜△△△의 전문기관 취소 경과]

| 업체명 | 일자 | 조치사항 | 내용 |
|------|----------|------------|------------------------------------|
| ㈜○○○ | 2023.6. | 지재처 자체감사 | 2022년 역량평가 부정 응시 혐의 |
| | 2023.7. | 계약 미체결 | 2022년 역량평가 응시 하자 |
| | 2023.11. | 역량평가 합격 취소 | 2022년 역량평가 응시 하자 |
| | 2024.2. | 등록 취소 | 등록취소 신청에 따른 승인 |
| ㈜△△△ | 2023.6. | 지재처 자체감사 | 2022년 역량평가 부정 응시 관여 및 전문기관 등록요건 위반 |
| | 2024.1. | 계약 미체결 | 전 대표의 타기관(변리업) 임원 겸직 |
| | 2024.2. | 등록 취소 | 등록취소 신청(내부 사정)에 따른 승인 |

자료: 지식재산처

② 지식재산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에 따른 제재처분 사례

상표 전문기관인 (주)○○○은 2005년, (주)◇◇◇은 2015년에 상표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지식재산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와는 83억 6,300만원, (주)◇◇◇과는 25억 8,3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근5년간 (주)○○○와 (주)◇◇◇의 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체명 | 구분 | 연도 | 계약명 | 계약금액 |
|--------|----|------|-----------------------------|-------|
| (주)○○○ | 상표 | 2021 | 2021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등 6건 | 2,553 |
| | | 2022 | 2022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등 8건 | 2,896 |
| | | 2023 | 2023년 하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등 9건 | 2,914 |
| | 합계 | | | 8,363 |
| (주)◇◇◇ | 상표 | 2021 | 2021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904 |
| | | 2022 | 2022년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870 |
| | | 2023 | 2023년 상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809 |
| | 합계 | | | 2,583 |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나 2023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두 기관에서 지식재산처 고위공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통보되었고, 이에 2023년 10월 지식재산처는 두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당 고위공직자는 2023년 12월 파면되었다. 이후 2024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검찰이 해당 두 기관 대표와 관련 공직자를 기소하였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2월 두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였고, 물량산정심의회에서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에서 두 업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⁴⁾ 이에 두 업체는 2024년 2월 ‘계약해지 무효 확인’과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취소’를

4)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주)○○○가 ‘2024년 디자인 심사활용정보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해 용역의 경우 (주)○○○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후 조달청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5년 10월 두 업체에 대한 벌금형⁵⁾이 확정되었고,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에서도 지식재산처가 승소함에 따라 2025년 11월 두 업체 모두 부정당업자지정 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하였고, 제재처분을 수용하였다.

[㈜○○○○와 ㈜◇◇◇◇의 제재처분 경과]

| 업체명 | 일자 | 조치사항 | 내용 |
|--------------------|----------|----------------------|--|
| (주)○○○○ (주)◇◇◇◇ | 2023.9.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두 기관이 지재처 고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
| | 2023.10. | 계약해지 | 청렴의무 위반(감사원 감사 결과) |
| | 2023.12. | 파면 | 감사원 감사결과(23.9.)에 따른 해당 공직자 파면 |
| | 2024.2. | 검찰 기소 | 해당 기관 대표 및 공직자 기소 |
| | | 부정당업자 지정 | 청렴의무 위반 |
| | | 계약 미체결 | 물량산정심의회 의결로 사업 배제 |
| | | 행정소송 |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취소 소 제기 |
| | 2025.10. | 판결 | 해당 기관 벌금형 확정,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 지재처 승소, 부정당업자지정 처분 취소의 소 취하, 제재처분 수용 |
| 2025.11. | 제재기간 종료 | 2026년부터 전문기관 역할 수행 중 | |

자료: 지식재산처

③ 지식재산처 현직 공무원이 전문기관 설립운영에 관여

(주)◇◇◇◇은 2022년 4월 상표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고, 같은 해 8월 신규 전문기관 역량평가를 통과하였다. 지식재산처는 2023년 1월부터 상표 조사분석 업무를 의뢰받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1억 2,6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5) 1심(2025.1.22.)에서 (주)○○○○은 벌금 500만원, (주)◇◇◇◇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2025.9.11.) 및 대법원(2026.1.29.)에서 각각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최근5년간 (주)◆◆◆의 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체명 | 구분 | 연도 | 계약명 | 계약금액 |
|--------|----|------|------------------------|------|
| (주)◆◆◆ | 상표 | 2023 | 2023년 상반기 국내상표 조사분석 사업 | 126 |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나 2022년 4월 지식재산처 자체감사 결과 지식재산처 현직 공무원이 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식재산처는 동 사건을 2022년 6월 감사원으로 이첩하였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직원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2023년 하반기 상표 조사분석 업무에 대해서는 동 업체에 맡기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1월 해당 업체는 조사원 퇴사 등으로 '조사원 5인 이상'이라는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2023년 12월 결국 해당 업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하였고, 지식재산처가 이를 승인하였다.

2024년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상표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영리활동을 하여 상표 조사분석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해당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는 (주)◆◆◆을 「상표법」 제52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였다. 동 사안은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2026년 6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주]◆◆◆의 감사 추진 경과

| 업체명 | 일자 | 조치사항 | 내용 |
|--------|-----------|-------------|---|
| (주)◆◆◆ | 2022.4. | 자체감사 | 지식재산처 현직 공무원이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 여부 확인 |
| | 2022.6. | 감사원으로 사건 이첩 | 자체조사 결과 증거확보 및 혐의 입증 곤란 |
| | 2023.7. | 계약 미체결 | 감사원 감사 중 지식재산처 직원 관여 확인 |
| | 2023.11. | 업무정지 (사전통지) | 등록요건(조사원 5인) 미충족 |
| | 2023.12. | 등록 취소 | 등록취소 신청(경영 악화)에 따른 승인 |
| | 2024.5. ~ | 징계수사 | 감사원 감사결과(24.4.)에 따른 중앙징계심의회 회부 및 검찰송치(24.12.) |

자료: 지식재산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2023년에 상표 전문기관 중에는 업체에서 등록요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식재산처 공무원과 연관된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는 등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상표 전문기관 13개 중 5개 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일부 소수 기관의 일탈 행위나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상표 조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후 전문기관의 등록과 역량평가, 보안점검 및 품질평가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상표 조사분석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불공정 사업 수행의 우려가 있거나, 품질이 낮은 상표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4년 5월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처 직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조사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식재산처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상표 조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 등록, 역량평가, 보안점검 및 품질평가 등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한 것은, 기존 개별 부서 중심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개별 기관의 일탈이기보다는 전문기관 관리체계 전반의 내부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문기관 등록 이후에도 역량평가 부정 응시, 현직 공무원의 설립·운영 관여 등 등록요건 위반 및 관리 소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점검 체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한 상표 전문기관 관리체계가 형식적인 평가·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표 및 디자인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요건 유지 여부, 조사원 운영 현황, 차명 운영 여부, 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낙찰차액 전용을 통한 신규 플랫폼 구축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가. 현황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거래지원) 사업¹⁾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범국가 집단지성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2025년 예산현액은 14억 1,500만원 중 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아-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본예산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26,853 | 26,853 | - | ±299 | 26,853 | 26,851 | - | 2 | 34,698 | 34,698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5,563 | 5,563 | - | ±299 | 5,858 | 5,855 | - | 2 | 4,657 | 4,657 |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거래지원) | 1,121 | 1,121 | - | 294 | 1,415 | 1,414 | - | 1 | 6,251 ¹⁾ | 6,251 ¹⁾ |

주: 1) 아이디어 거래지원은 지식재산 거래 지원 내역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2026년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내역으로 분리됨

1.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2025년까지 '지식재산 거래 지원' 내역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2026년 예산에는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었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비목은 전산자원 임차를 위한 임차료(210-07목)와 아이디어 거래 지원 기획·관리 및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로 구분되며, 예산 현액 기준 임차료(210-07목)는 1억 4,100만원이고, 관리용역비(210-15목)는 12억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32-303의 내내역사업

7,400만원이다. 지식재산처는 임차료 1억 4,1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관리용역비의 경우 예산현액 12억 7,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거래지원) 사업 예산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 내용 | 2025 | | | |
|---------------|-------------------------------|------|-----|-------|-------|
| | | 본예산 | 이전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 임차료(210-07) | 전산자원 임차 등 | 141 | - | 141 | 140 |
| 관리용역비(210-15) | 아이디어 거래지원 기획·관리, 플랫폼 운영 용역 | 980 | 294 | 1,274 | 1,274 |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이며, 동 세부사업에는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외에 지식재산 거래 지원,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활용확산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의 4개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 2026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본예산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26,853 | 26,853 | - | ±299 | 26,853 | 26,851 | - | 2 | 34,698 | 34,698 |
| 지식재산거래 지원 | 5,563 | 5,563 | - | ±299 | 5,857 | 5,855 | - | 2 | 4,657 | 4,657 |
| 지식재산평가 지원 | 13,600 | 13,600 | - | △203 | 13,397 | 13,397 | - | - | 15,090 | 15,090 |
| 지식재산활용 확산 인프라 구축 | 740 | 740 | - | △66 | 674 | 674 | - | - | - | - |
| 민관협력 IP전략 지원 | 2,450 | 2,450 | - | △25 | 2,425 | 2,425 | - | - | 4,200 | 4,200 |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4,500 | 4,500 | - | - | 4,500 | 4,500 | - | - | 4,500 | 4,50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나. 분석의견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플랫폼 품 구축 및 홍보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용의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아이디어 거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로 9억 8,000만원을 배정하여 아이디어 거래지원 기획·관리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https://www.ipmarket.or.kr/idearo/>)’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2025년 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한국발명진흥회’를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25년 8월 29일 지식재산처 승인을 받아 기존과업의 상당 부분을 축소하고, 2026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도 8억 8,500만원에서 12억 7,15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025년 아이디어 거래지원 용역계약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 예산 | 사업계약 내역 | | | | |
|-------------|------------------|-------|---------|---------|------------------|
| | 계약명 | 계약금액 | | 수주업체 | 계약기간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980 | 2025년 아이디어 거래 지원 | 888.5 | 1,271.5 | 한국발명진흥회 | 2025.2.28~12.31. |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기존 과업내용은 ① 아이디어 공모확산, ② 아이디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③ 아이디어 거래시장 조성의 3개 전략과 전략별 세부 추진과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부 추진과업들 중 상당수의 과업들을 미추진하거나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일례로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과제 중 ‘로봇활용 아이디어 경진 대회’와 외부기관 수상 우수 아이디어 확보, 공급자 유입 확대 과업은 추진하지 않

있고, 아이디어로 플랫폼의 검색·거래기능을 강화하려던 계획과 우수사례 발굴 등의 확산 전략도 미추진하였다. 또한, 민간·공공 아이디어 공모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한 정부·민간기업 과제 발굴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아이디어로 홍보는 과업 진행 중 일부를 중단하고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의 홍보전략 수립으로 대체하였다. 아이디어로 시스템의 안정화 및 사용성 향상을 추진하려던 과업도 일부를 중단한 후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업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이렇게 기존 과업을 미추진하거나 변경하면서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④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과업을 신규로 추가하도록 과업을 변경하였다. 이에 발명진흥회는 2026년초에 즉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기업 수용의 10개 과제를 발굴·구체화하였으며,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소통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을 구축하였고,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https://www.ipmarket.or.kr/idearo/moduidea>)’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편된 아이디어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체 선정 등 홍보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이디어 거래지원’ 영역의 과업 변경내용]

| 전략 | 세부 추진과업 | 미추진/추가 또는 변경 과업내용 |
|--------------------|-------------------------------|---|
| ① 아이디어 공모확산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아이디어 공모 및 활용 지원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한 정부-민간기업 과제 발굴 |
| |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과제 개최 | 5개 중 1개 미추진 (로봇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
| | 외부기관 수상 우수 아이디어 확보, 공급자 유입확대 | 미추진 |
| | 아이디어로 홍보 | 홍보 진행 중 과업일부 중단,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홍보전략 수립 등 추진 |
| ② 아이디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 아이디어로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성 향상 추진 | 진행중 과업일부 중단,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과업 수행 |
| | 아이디어 아카이브 고도화 (검색시스템, 거래기능 등) | 미추진 |
| ③ 아이디어 거래 시장 조성 | 우수사례 발굴, 아이디어 성과 공유 | 미추진 |



| | | |
|-----------------------|----------------|---|
| ④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신규 추가) | 사업계획 수립 등 | 운영계획 등 2026년 즉시 실행을 위한 준비 - 사업 프로세스 구축, - 대국민 서비스 센터 운영 준비 등 |
| | 공모과제 발굴 등 | 정부-기업 과제(10건) 발굴, RFP 작성 |
| | 범부처 추진단 운영지원 | 각 부처 소통 지원 |
| | 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 | 아이디어 심사 전문가 풀 구축 |
| | 아이디어 플랫폼 전면개편 |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 구축 - 개편 아이디어 플랫폼 정책 및 화면 설계,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W/SW 확보, 개편 홈페이지 테스트 및 업로드 등 |
| | 개편 아이디어 플랫폼 홍보 | 홍보 마케팅전략 수립 등 - 홍보콘텐츠(포스터, 영상 등) 제작, - 매체 선정 등 홍보전략 수립 등 |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과업 변경 및 신규 과업 추가에 따라 용역관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2025년 8월 29일 같은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낙찰차액 2억 94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15목)로 전용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와의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5회계연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전용 (2025. 8.29.) | 지식재산활용 (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1332-303) | 320-02 (민간 위탁 사업비) | 294 | 지식재산활용 (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1332-303) | 210-15 (관리 용역비) | '아이디어로' 플랫폼 개편 예산 추가 소요 |

자료: 지식재산처

이와 같이 전용을 통해 지식재산처가 2025년 8월부터 '아이디어 거래지원' 영역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것은 2026년 예산안에 동 내내역사업이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내역으로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²⁾ 2026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2025년 '아이디어 거래지원' 사업 본예산(11억 2,100만원) 대비 51억 3,000만원 증액된 62억 5,100만원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정·자유주체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링을 거친 후 다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가 전용을 통해 기존 아이디어 플랫폼을 확대·개편하여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준비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³⁾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 세항 또는 목의 전용을 허용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모두

2)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2026년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을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2025년에는 계획되지 않았고, 2026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던 점에서 동 사업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전용 가능 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⁴⁾

또한,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 불용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일반용역비(210-14목)'의 경우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용역과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유발, 용역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용역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 관련 조항]

| |
|---|
| <p>1-12. 일반용역비(210-14목)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용역과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유발, 용역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비록 동 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목)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관리용역비(210-15목) 역시 동일한 용역성 경비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지식재산처가 민간위탁사업의 낙찰차액을 관리용역비로 전용하여 차년도 신규 추진 예정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준비 및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한 것은 '용역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는 2026년 착수할 계획이었던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2025년 기존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 과업을 변경하여 신규 공모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홍보자료 제작 등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의 경우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을 신속하게 확대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5년에 과업 변경 및 전용을 통해 구축한 홈페이지, 홍보 제작물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플랫폼 구축, 홍보 등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인된 예산 규모에 맞춰 우수 아이디어 선별 및 포상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및 재정통제 기능 존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용을 통한 기존 사업의 확대·개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태료·가산금 수납 관리 강화 및 변리사 관리·의무교육 재설계 필요

가. 현황

과태료¹⁾는 「변리사법」 제15조²⁾ 및 제27조³⁾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입항목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20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9,100만원이 수납되고, 19억 3,5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과태료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본예산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과태료 | 30 | 30 | - | 30 | 2,026 | 91 | 1,935 | - | 30 | 30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가산금⁴⁾은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중 납부기한이 초과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세입항목으로, 20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10억 6,4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2,1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 4,3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6-563

2)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리사법」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4) 코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8-581

[2025회계연도 가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 | | | | | | 2026 | |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본예산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가산금 | - | - | - | - | 1,064 | 21 | 1,043 | - |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변리사법」 제3조5)에 따라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들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법」 제5조6)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11조7)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변리사법」 제15조는 등록된 변리사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마다 24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최초 도입되었다.

5)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리사 의무 연수교육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적 | 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 |
| 교육주관 | 대한변리사회 |
| 교육대상 | 등록 변리사 |
| 교육시간 | 2년 24시간 이상,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 |
| 도입시기 | 2011년 11월 |

자료: 지식재산처

또한, 이를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변리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2년을 주기로 산정되는 연수교육 실적에 기반하여 교육 미이수가 연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 | 1회 | 연속 2회 | 연속 3회 이상 |
| 연수교육 실적: 없음 | 150 | 300 | 500 |
| 연수교육 실적: 50% 미만 | 100 | 200 | 400 |
| 연수교육 실적: 50% 이상 75% 미만 | 75 | 150 | 300 |
| 연수교육 실적: 75% 이상 100% 미만 | 50 | 100 | 200 |

자료: 「변리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별표 3]

나. 분석의견

지식재산처는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수납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현행 변리사에 대한 관리·의무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은 2023년 24억 7,500만원에서 2024년 29억 4,2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29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수납액이 1억 1,200만원으로 2023년(4,200만원)이나 2024년(3,100만원)에 비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2025년 과태료·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 징수결정 | | | 수납액 | 미수납 | | 불납결손액 |
|------|------|-------|-------|-----|-------|-----|-------|
| | 당해 | 이월 | 계 | | 금액 | 건수 | |
| 2023 | - | - | 42 | 42 | 2,475 | 491 | - |
| 2024 | 498 | 2,474 | 2,972 | 31 | 2,942 | 616 | - |
| 2025 | 148 | 2,942 | 3,090 | 112 | 2,978 | 505 | - |

자료: 지식재산처

그간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2~2015년 314명이었던 데 비해 2022~2023년에는 14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과태료 미납 인원은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및 과태료 납부 현황(2025.12.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과태료 부과 대상 | | 납부 | | 미납부 | | 면제·유예 | |
|-----------|-----------|-----|-----|-----|-----|-----|-------|-----|
| | 인원수 | 과태료 | 인원수 | 과태료 | 인원수 | 과태료 | 인원수 | 과태료 |
| 2012~2015 | 314 | 580 | 134 | 147 | 90 | 214 | 90 | 219 |
| 2016~2017 | 281 | 800 | 93 | 125 | 111 | 398 | 77 | 277 |
| 2018~2019 | 169 | 550 | 41 | 57 | 102 | 395 | 26 | 98 |
| 2020~2021 | 160 | 552 | 35 | 60 | 106 | 402 | 19 | 90 |
| 2022~2023 | 141 | 496 | 35 | 61 | 96 | 390 | 10 | 45 |
| 2024~2025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주: 1. 미납부 과태료 금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됨

2. 면제·유예: 휴·폐업, 해외체류, 사망, 법원통보 등에 따른 면제·유예를 의미

3. 2024~2025년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2026년 7월 이후 집계 가능

자료: 지식재산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25년 납부독촉 등 징수활동(1,088건)을 전년(169건) 대비 6배 이상 늘려 수납액도 소폭 향상되었으나, 변리사 의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이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리사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등 규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의무연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갱신)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84호)」이 2025년 4월 발의되었으며, 2026년 5월 현재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84호)」의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변리사 등록 유효기간 | - | 5년 |
| 변리사 등록 갱신 | - |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 등록 또는 등록 갱신 거부 | 금고 이상 실행 등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 거부 | 공무원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 등 조항, 변리사회 가입 의무 위반 조항,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조항 등 신설, 등록 갱신 거부 신설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와 함께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 문제와 관련하여 2026년 국세청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통해 수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하고 있다.⁸⁾

그러나 의무연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변리사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즉,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도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편, 법 제정 전에는 부처 간 업무협약을 근거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20헌바21·56병합).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인 변리사를 단일 변리사회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사 건 2020헌바21, 56(병합)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청구인 유○○ 외 5명

이 사건은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합니다)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10.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자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따라서 지식재산청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 수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연수의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현행 변리사에 대한 관리·의무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